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9. 12

심태섭 외

서 언

최근 무역환경이 글로벌화·세계화되면서 자본거래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이 마련되었다. EU국가를 중심으로 IFRS를 도입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본격적인 도입(2009년부터 조기 도입 가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다.

이러한 발표 일정에 따라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이미 발표된 IFRS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K-IFRS 도입의 진전에 따라 각 기업에서도 대대적으로 K-IFRS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 측면에서의 IFRS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에 비하여 세제 측면에서의 준비는 상당히 느리게 준비되고 있다. 물론 세법의 입장에서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이 원칙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K-IFRS 도입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2009년 말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에, 세제당국에서도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본 보고서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긴요한 연구로 생각된다. 물론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안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항목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혹은 전체 항목을 다루지만 지나치게 간단하게 다룬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는 현재 발표된 K-IFRS의 거의 모든 기준서의 내용과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 간의 차이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심태섭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의 총괄하에 세법연구센터의 김진수 박사, 구자은·기은선·김태훈·정희선·조진권 회계사와 송은주 주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서울시립대학교의 최원석 교수, 이영한 교수, 한영회계법인의 오윤택 부대표, 삼일회계법인의 황철진 상무, 기획재정부의 안세준 법인세제과장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세 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원고 정리에 수고해 준 이남희 연구행정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 준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세제당국의 법인세법 개정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내의 많은 조세와 회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도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인 도입(2009년부터 조기 도입 가능)을 앞두고 있다. 이에 회계와 관련되어 상장기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되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 중이지만 세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작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과세당국에서는 구체적인 법인세법의 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이후인 2010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인바, 비상장기업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으로 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기간 이전에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기업의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K-IFRS의 여러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FRS의 기준서별로 현행 기업회계기준

(K-GAAP) 및 현행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정책 시사점

가.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본 연구에서 우선 여러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K-IFRS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많은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미실현손익인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K-IFRS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것이다. 앞에 언급한 공정가치평가 규정을 포함하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비한정 내용연수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 전입액 포함),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등 여러 항목이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K-IFRS의 도입으로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금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고조정으로 할 경우 법인의 의도적인 조세회피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강제신고조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K-IFRS 이후에도 계속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 간의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는 현재의 관련 세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는 세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나 손익의 인식 등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기능통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계화·글로벌화된 기업환경에서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K-IFRS에 규정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능통화의 적용 범위나 과세소득의 산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인 IFRS의 도입으로 법인세법 입장에서 법률상 불확정개념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많은 불확정개념이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원칙중심인 IFRS의 도입으로 법률상 불확정개념이 증가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 간의 회계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져 기업 간의 과세형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며, 또한 이로 인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법인세법상 관점에서 K-IFRS에 포함된 많은 불확정개념을 보다 확정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받아들이л 필요가 있다.

나. 개별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다음으로 개별 항목별로 앞으로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재무제표의 형식과 과세소득산출을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다. K-IFRS는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형식이 없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과세소득계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을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S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법인세법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아파트분양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예약매출) 손익을 완성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장기공사인 경우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므로 K-IFRS와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종업원급여 중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부분이다. K-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종업원퇴직급여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청산개념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인식된 K-IFRS의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K-IFRS에 의한 외화환산을 법인세법상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은행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미실현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현행 법인세법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은행업에 대하여 현재의 법인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은행업무에 속하는 외화의 취급을 과세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K-IFRS가 도입된 이후에 은행업에 대하여도 현행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기존에 인정되어 왔던 후입선출법이 K-IFRS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재고자산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향후 후입선출법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왔던 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러한 금액을 일정기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경우, K-IFRS의 도입으로 하나의 개별자산 내에서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K-IFRS에서는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전체 개별자산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갖는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K-IFRS하에서 인식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현행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없다. 손

상차손에 따른 장부가액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에 대한 결산조정항목으로 인정 여부 등의 여러 문제로 K-IFRS에 의한 손상차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에 K-IFRS에 의하여 인식한 손상차손 중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형자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K-IFRS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류가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법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자산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IFRS의 규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수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K-IFRS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손상차손의 형태로 인식하므로 신고조정으로 전환하고 손상차손에 의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환우선주의 분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IFRS에 의하면 상환우선주는 의무적 상환 여부에 따라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많은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의 대손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의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상 대손충

당금 계상액의 감소는 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세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험업의 경우,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를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규정은 보험업법에 의한 규정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비상위험준비금 등에 대한 것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방법에서 K-IFRS의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지분통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K-IFRS 도입기업은 장부가액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등 K-IFRS 도입기업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지분통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던 사업결합이 거의 없으므로, K-IFRS에 따라서 처리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법도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처리하는 K-IFRS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행과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중도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앞으로 IFRS의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정 여부도 매번 검

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의 차이가 계속 커지거나, 기업회계기준이 계속 변동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 접근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8
3. 본 연구의 구성	28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29
1. 일반사항	29
가. 재무제표의 표시	29
나. 연결재무제표	46
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4
2. 수익과 원가	60
가. 수익	60
나. 건설계약	77
다. 종업원급여	93
라. 주식기준보상	109
마. 환율변동효과	119
바. 법인세	136
사. 중단영업	145
아. 보고기간후사건	150

3. 자산과 부채.....	160
가. 재고자산.....	160
나. 유형자산.....	172
다. 차입원가.....	193
라. 투자부동산.....	207
마. 무형자산	227
바. 자산손상.....	249
사.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62
아. 리스.....	277
자.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298
차.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315
카.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325
4. 금융상품.....	340
가. 금융상품 : 표시.....	340
나.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355
다. 보험계약.....	394
5. 결합회계.....	414
가. 사업결합.....	414
나. 관계기업투자.....	437
다.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451
6.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세제에 관한 연구:	
은행업을 중심으로	458
가. K-IFRS를 적용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458
나. K-IFRS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에 미치는 주요 내용.....	459
다. K-IFRS 도입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약.....	492
7. K-IFRS의 최초 채택.....	494

가. K-IFRS 제1101호의 주요 내용·····	494
나.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502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외국의 사례·····	506
1. IFRS 규정의 법인세법 규정으로의 적합성 여부·····	506
가. IFRS의 기본개념과 세법·····	506
나. 과세규정 제정권한·····	509
2.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510
가.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방법·····	510
나. 각 대응방법의 장·단점·····	512
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응방법·····	513
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15
3.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	517
가. 영국의 경우·····	517
나. 독일의 경우·····	520
다. 호주의 경우·····	522
라. 싱가포르의 경우·····	525
마. 기타 외국의 경우·····	527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	531
1.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사항 ·····	531
가. 법인세법의 원칙·····	531
나. 납세자에 대한 고려 ·····	534
2.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	538
가.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538
나. 개별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556
다. 향후 연도별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안.....	571
 V. 결 론.....	 574
참고문헌.....	577

표 목 차

〈표 II-1〉 K-IFRS하에서 비용의 표시방법.....	35
〈표 II-2〉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요약.....	45
〈표 II-3〉 주요 국가의 연결대상 지분율.....	52
〈표 II-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53
〈표 II-5〉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요약.....	60
〈표 II-6〉 수익의 정의 비교.....	62
〈표 II-7〉 수익인식의 일반요건.....	63
〈표 II-8〉 항목별 수익인식의 추가요건.....	64
〈표 II-9〉 주요 수익항목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65
〈표 II-10〉 조특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2
〈표 II-11〉 수익에 대한 요약.....	76
〈표 II-12〉 건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80
〈표 II-13〉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	82
〈표 II-14〉 건설계약의 수익/비용 인식방법 비교.....	83
〈표 II-15〉 건설계약에 대한 요약.....	93
〈표 II-16〉 종업원급여에 대한 요약.....	108
〈표 II-17〉 K-IFRS 제1102호와 K-GAAP 제22호의 비교.....	114
〈표 II-18〉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요약.....	118
〈표 II-19〉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126
〈표 II-20〉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요약.....	134
〈표 II-21〉 법인세비용에 대한 요약.....	145

〈표 II -22〉 중단영업의 정의.....	146
〈표 II -23〉 중단영업에 대한 요약.....	149
〈표 II -24〉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157
〈표 II -25〉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요약.....	159
〈표 II -26〉 K-IFRS 제1002호 적용제외 항목.....	162
〈표 II -27〉 무신고 등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167
〈표 II -28〉 재고자산에 대한 요약.....	171
〈표 II -29〉 취득원가의 구성요소 중 복구원가.....	175
〈표 II -30〉 재평가 관련 내용정리.....	178
〈표 II -31〉 유형자산의 유형별 공정가치.....	179
〈표 II -3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182
〈표 II -33〉 복구원가 관련 세무조정.....	185
〈표 II -34〉 재평가로 인해 공정가치 증가 시 세무조정.....	188
〈표 II -35〉 재평가로 인해 공정가치 감소 시 세무조정.....	188
〈표 II -36〉 유형자산에 대한 요약.....	192
〈표 II -37〉 차입원가의 자본화 여부.....	194
〈표 II -38〉 자본화대상 자산.....	196
〈표 II -39〉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199
〈표 II -40〉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사항.....	203
〈표 II -41〉 차입원가에 대한 요약.....	206
〈표 II -4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규정.....	208
〈표 II -43〉 투자부동산의 범위.....	209
〈표 II -44〉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211
〈표 II -45〉 투자부동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214
〈표 II -46〉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회계처리.....	215
〈표 II -47〉 투자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 시 과세문제.....	218
〈표 II -48〉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220

〈표 II -49〉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24
〈표 II -50〉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약	225
〈표 II -51〉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의 조건	228
〈표 II -52〉 취득형태별 취득원가 및 인식기준	231
〈표 II -53〉 재평가모형에 의한 무형자산의 재평가	238
〈표 II -54〉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240
〈표 II -55〉 세법상 무형자산 감가상각 규정	241
〈표 II -56〉 무형자산에 대한 요약	248
〈표 II -57〉 자산손상 적용 자산	250
〈표 II -58〉 자산손상에 대한 요약	262
〈표 II -5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기준	264
〈표 II -6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266
〈표 II -6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268
〈표 II -62〉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액손실	270
〈표 II -6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기준 변경이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272
〈표 II -6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274
〈표 II -65〉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요약	276
〈표 II -66〉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거래	280
〈표 II -67〉 리스에 대한 요약	297
〈표 II -68〉 정부보조금의 정의와 분류기준	299
〈표 II -69〉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302
〈표 II -70〉 정부보조금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305
〈표 II -71〉 정부보조금 상환의무 발생에 대한 회계처리	306
〈표 II -72〉 정부보조금에 대한 공시사항	307
〈표 II -73〉 정부보조금에 대한 요약	315
〈표 II -7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요약	325

〈표 II-75〉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요약·····	339
〈표 II-76〉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	341
〈표 II-77〉 자기지분상품결제 시 금융상품의 분류 ·····	342
〈표 II-78〉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352
〈표 II-79〉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한 요약·····	355
〈표 II-80〉 금융상품의 분류·····	357
〈표 II-81〉 매매일 회계처리와 결제일 회계처리·····	360
〈표 II-82〉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과 측정·····	361
〈표 II-83〉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손익 ·····	363
〈표 II-84〉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367
〈표 II-85〉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369
〈표 II-86〉 금융상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379
〈표 II-87〉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382
〈표 II-88〉 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	384
〈표 II-89〉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387
〈표 II-90〉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약·····	392
〈표 II-91〉 기준서의 적용대상·····	395
〈표 II-92〉 보험계약에 대한 요약·····	413
〈표 II-93〉 사업결합 요약·····	436
〈표 II-94〉 각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446
〈표 II-95〉 지분법의 지분가액 조정에 대한 세무조정·····	448
〈표 II-96〉 관계기업투자 요약·····	450
〈표 II-97〉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요약·····	457
〈표 II-98〉 은행업의 영업수익 ·····	459
〈표 II-99〉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464
〈표 II-100〉 은행의 이자수익 인식조건·····	466
〈표 II-101〉 금융상품의 분류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474

〈표 II-102〉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477
〈표 II-103〉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손상차손).....	479
〈표 II-104〉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의 평가 변천.....	483
〈표 II-105〉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관청 및 판례 해석.....	487
〈표 II-106〉 K-IFRS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에 미치는 내용 분석 요약...	493
〈표 III-1〉 IFRS 도입에 대한 대응방법의 장·단점.....	512
〈표 III-2〉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IFRS 적용과 세법 대응방법.....	514
〈표 IV-1〉 기업회계기준이 언급된 세법의 관련 규정.....	548

그림 목차

[그림 Ⅱ-1] 추출원가의 분류.....	317
[그림 Ⅱ-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 및 공시기준	330
[그림 Ⅱ-3] 우발자산의 공시기준.....	330
[그림 Ⅱ-4] 금융자산의 제거 흐름도.....	373
[그림 Ⅱ-5] 자산유동화의 발행 개요.....	46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각종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국가 간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국가 간의 자본이동도 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이 제정되었다. IFRS는 1973년에 설립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IASC)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IASC가 2001년에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IAS)을 현재와 같은 IFRS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IFRS는 기존의 다른 국제적 회계기준과 다른 여러 특징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국가 간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제정된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보고에서 고품질,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갖춘 이해 가능하고 강제성이 있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이다. 두 번째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가 특징이다. 이는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과는 다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회계기준이다. 기업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예측 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IFRS는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에서 원칙중심의 기준체제로 IFRS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로 종전의 기준과 달리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며,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¹⁾.

IFRS는 국가 간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에서는 EU 금융시장 통합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하였다. IFRS의 적용 의무화로 EU 내에서 회계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미국 등 해외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²⁾. 미국의 경우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를 중심으로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IFRS의 합치 및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US GAAP과의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2008년 8월 미국 SEC는 자국 기업에 대한 IFRS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장 대기업은 2014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중기업은 2015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소기업은 2016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FASB와 IASB 간에 US GAAP과 IFRS와

1) 금융감독원(2008) pp.13-14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2) 금융감독원(2008) p. 29.

의 일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다³⁾.

이외 캐나다도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호주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도 2007년부터 실질적으로 IFRS와 합치된 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5년 3월에 일본회계기준위원회와 IASB 간의 회계기준 합치에 대한 합의 이래로, 일본 GAAP과 IFRS를 합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IFRS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⁴⁾.

이러한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IFRS를 도입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며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에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 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장기업에서는 2009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IFRS의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 측면에서 IFRS를 반영하는 본격적인 작업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확정된 이후인 2010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기에, IFRS를 도입한다고 하여 세법이 변화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서는 IFRS라는 대대적인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회계시스템의 전반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도입될 IFRS에 따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세제당국에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⁶⁾.

3) 한국회계기준원(2008b) 참조.

4) 일본의 IFRS의 도입에 따른 논의는 한국회계기준원(2008b)의 내용을 참조할 것.

5) 이러한 취지의 내용으로 조세일보 2009. 5. 19. 「재정부, IFRS 도입 “세법 큰 변화없

그러나 IFRS를 도입하더라도 세법의 변화가 없다면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가 더욱 커져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세법에 맞는 여러 세무조정사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납세순응비용은 자연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IFRS의 도입에 따라 세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자체의 입장에서 IFRS의 도입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즉 현재 법인세법의 일부 규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구할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사용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계산 시 지급이자차감액을 구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을 이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3호). 이에 따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 IFRS로 대체되는 시점 이후에도 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IFRS는 원칙중심의 규정이기에 해당 기업이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기업의 회계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종전의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을 가정한 현행 법인세법에서 원칙중심의 IFRS에 따른 회계처리에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을 그대로 이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로 현행 회계기준, 앞으로 적용될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어” … ‘느긋’ 참조.

6) 2009년 초 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내에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임.

법인세법과 IFRS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세법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인 경우가 많다. 또한 IFRS 전체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그 분석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세정당국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K-IFRS 전체 기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다른 기존의 연구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제당국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고서로서 다른 기존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법 관련 주무부서가 IFRS 시대를 맞이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FRS의 적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마련되고 있다⁷⁾. 그러나 법인세법의 개선방향보다는 현재의 법인세법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세무조정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간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별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앞으로 법인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하여 현재 IFRS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대표적으로 정창모 외(2008),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한영회계법인(2008)이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IFRS, 현행 회계기준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비교·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이미 제정된 IFRS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새로 필요한 기준은 수시로 제정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2008년 말 현재의 IFRS의 기준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기준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법 중에서 IFRS 도입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의 경우도 2008년 말 현재의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기간중 IFRS나 법인세법에 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3.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우선, 현행 IFRS 중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의 대응방안으로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현재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로 분석된 법인세법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우선, 현행 IFRS 중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이라 함)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IFRS의 규정 중 우선 회계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분석하고, 이어 수익과 원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주요 항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일반사항

우선 회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K-IFRS, K-GAAP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한다.

가.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하여는 IFRS 기준서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 Presentati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 Disclosures”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로 제정이 되어 있다.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 (금융업)”에 규정되어 있다.

K-IFRS에서는 특수 업종의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K-GAAP에서는 금융업의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하여 K-GAAP 제24호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K-IFRS과 K-GAAP의 비교

가) 재무제표의 구성

K-IFRS에서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포함한다. 한편 기업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GAAP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한편 전달하려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자 간의 주요한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비해 K-GAAP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K-GAAP과 달리 K-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⁸⁾. 셋째, K-GAAP에

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보고서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 명칭에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K-IFRS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FRS 도입 이후에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되며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넷째, K-GAAP과 달리 K-IFRS하에서는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 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 작성해야 한다.

나) 재무상태표의 구조와 내용

① 자산·부채 항목의 표시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으며⁸⁾, 세부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본문 또는 주석에 선택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K-GAAP에서는 계정과목별 설명과 함께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8) 금융위원회에서는 상법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K-IFRS를 개정하였음(K-IFRS 문단한138.1 참조).

9)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현금 및 현금성자산,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충당부채, 금융부채,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K-IFRS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② 자본 항목의 표시

K-IFRS에는 자본 항목의 표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실무적용지침에 예시된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은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타자본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K-GAAP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세부적인 계정과목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K-IFRS와 K-GAAP 간에 중요한 차이는 없다.

③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K-IFRS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재무상태표 표시방법으로 보고 있다. 즉,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K-GAAP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본문에 포함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의 표시방법으로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K-IFRS 도입 이후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 있는바,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K-GAAP에 비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① 표시방법

K-IFRS에서는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 순손익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
- (2) 두 개의 보고서 :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본문의 표시내용

K-IFRS에서는 수익, 금융원가, 지분법관련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같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수익 및 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⁰⁾.

10)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 (2)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 (3) 유형자산의 처분
- (4) 투자자산의 처분
- (5) 중단영업
- (6) 소송사건의 해결
- (7)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이에 비해 K-GAAP에서는 계정과목별 설명과 함께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③ 손익의 분류표시

K-IFRS에서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합계의 제목이나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IFRS에서는 영업활동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영업활동의 성과(영업손익) 역시 손익계산서 본문의 항목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업손익을 공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영업손익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경우,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예를 들면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은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 즉, K-IFRS에서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영업손익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K-GAAP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④ 비용의 표시방법

K-IFRS에서는 비용의 표시방법으로 <표 II-1>과 같이 성격별 분류방법과 기능별 분류방법,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서에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능별 표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¹⁾.

K-GAAP에서 규정하는 손익계산서의 형식은 기능별 분류방법과 유사하

며,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 추가적인 주석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II-1〉 K-IFRS하에서 비용의 표시방법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 (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음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함.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함	
수익	X	수익	X
기타 수익	X	매출원가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매출충이익	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	기타 수익	X
종업원급여비용	X	물류원가	(X)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X	관리비	(X)
기타 비용	X	기타비용	(X)
총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라) 자본변동표의 구조와 내용

K-IFRS에서는 자본변동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 (2) 자본의 구성요소별로, K-IFRS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 (3) 자본의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11)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추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가) 당기순손익

(나)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

(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K-GAAP에서는 자본변동표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잉여금(또는 결손금)의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변동표와 관련하여 K-IFRS와 K-GAAP 간에 중요한 차이는 없다.

2) 법인세법의 규정

재무제표와 관련된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¹²⁾. 특히,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¹³⁾. 한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서식을 제출하는

12)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13)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¹⁴⁾.

- (1) 별지 제3호의 2 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 2 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 (2) 별지 제3호의 3 서식(1) 및 별지 제3호의 3 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 (3) 별지 제3호의 3 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 3 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서식에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용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 작성 시 “Ⅱ. 매출원가상 당기총원가란”에 원가금액이 기재되면 반드시 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¹⁵⁾.

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¹⁶⁾.

-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연결집단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 (2) 각 연결법인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

상기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¹⁷⁾.

14)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15) 「표준재무제표」 제출요령, 2002. 4. 11 국세청고시.

16) 법인세법 제76조의 17 제2항.

17) 법인세법 제76조의 17 제3항.

다) 재무제표의 명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등에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라)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외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¹⁸⁾.

마) 중단사업손익의 구분표시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한다(서면2팀-1304, 2008.06.25). 즉, 법인세법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을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다.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준거기준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18) 법인세법 제61조.

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⁹⁾.

이 규정에서의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²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²¹⁾.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 기준

이에 따라 K-IFRS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19) 법인세법 제43조.

20)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21)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① 재무제표의 명칭

법인세법의 각 조항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은 (구)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대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K-IFRS에 맞춰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대차대조표는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상 재무제표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K-IFRS하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 경우 “K-IFRS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포함함”이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다른 명칭에 의한 재무제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K-IFRS의 재무제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제출의무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K-IFRS에서도 “상법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²²⁾.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에서도 요구하는 재무제표이며²³⁾, 앞으로 기업회계에서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식공시사항으로 계속 작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이 없거나 세무조정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K-IFRS에서는 배당 이외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은 부의 자본조정 항목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형태로 상각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처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²⁴⁾.

다) 표준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형식

K-IFRS에서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의 항목만을 대분류 수준에서 재무제표로 예시하고 있어, 재무제표의 본문이 상당히 요약된 형태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손익계산서의 경우 비용의 표시방법으로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바,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무제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표준재무제표는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K-GAAP에 맞추어져 있고, 입력항목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용과 금융기관용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K-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 별지 서식의 표준재무제표를 작

22) K-IFRS 제1001호 문단한138.1.

23) 상법 제447조.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윤택(2009)의 pp. 64~65를 참조.

성하기 위해서는 계정재분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표준재무제표 이외에 기업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한 여러 내용을 얻기 위하여는 K-IFRS하에서 분류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별지의 서식을 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납세협력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전산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무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무행정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별지의 서식 역시 K-IFRS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재항목으로 입력항목을 간소화하되, 그 외의 항목은 세무관리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기업에게 제출의무를 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세무관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무정보를 세무정보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XBRL²⁵⁾시스템을 국세행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²⁶⁾.

라)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

K-IFRS에 따르면 기업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기에, K-IFRS하에서 법인세법상 기업의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기본재무제표가 어떠한 재무제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K-IFRS하에서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하거나 법규 등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²⁷⁾,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

25)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확장형 경영보고언어)은 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교환·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보고용 국제표준화 언어임.

26) 정창모 외(2008) p. 32.

27) K-IFRS 제1027호 문단6.

출을 위한 재무제표는 K-IFRS의 별도재무제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감법 제2조에 규정된 외부감사의 대상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²⁸⁾,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기본재무제표는 기업별 별도재무제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법인세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 당기순손익 혹은 총포괄손익?

K-IFRS가 채택되면서 기존의 손익계산서의 명칭이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되며, 기존의 당기순손익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반영한 총포괄손익도 별도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을 포괄손익계산서의 총포괄손익에서 출발할 것인지,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할 것인지를 법인세법상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K-IFRS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위험회피, 자산재평가차익,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원가주의에 의하여 미실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이러한 항목은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에는 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 항목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서 제거가 되거나 실제 거래가 실현되는 시

28)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에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²⁹⁾.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을 각 사업연도계산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바) 중단사업손익

K-IFRS에서는 K-GAAP과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손익을 별도로 구분표시하도록 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매출액과 같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구분된 중단사업손익을 세무상 목적에 따라 사용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4)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9) 오현택(2008) p. 66.

〈표 II-2〉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재무제표의 명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이 외의 명칭도 보충적으로 사용 가능)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이 외의 명칭도 대체적으로 사용 가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의 명칭 상이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별개의 손익계산서)로 재무제표의 명칭을 일치 시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에 포함됨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포함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을 요구
재무제표의 형식	정형화된 서식 제공	최소한의 항목 예시	K-GAAP에 맞춘 계정과목 분류체계 이용	다양한 형태의 재무제표 출현으로 세무행정부담 가중	표준재무제표 양식, 세무상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혹은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별도재무제표로 명시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	N/A	N/A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재무제표 명칭 변경으로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별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 N/A는 해당 내용이 관련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Not applicable)

나.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는 IFRS 기준서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와 해석서인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 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로 제정되어 있다. K-GAAP에서는 2007년 1월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에 규정되어 있다.

1) K-IFRS, K-GAAP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별 K-IFRS, K-GAAP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재무제표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K-IFRS 제1027호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³⁰⁾. 이에 비하여 현행 K-GAAP의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법인세법상 주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다³¹⁾. 다만, 2010년 1월 1일

30)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별도재무제표도 외부감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외감법 제2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31) K-IFRS에서는 개별재무제표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종속기업, 관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만 이 경우에도 연결법인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기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재무제표는 여전히 개별재무제표이다.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K-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배기업은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일정한 조건(K-IFRS 제1027호 문단10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³²⁾.

- (1) 지배기업이 100% 종속기업인 경우 또는 100% 종속기업이 아닌 경우 다른 소수주주 모두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 (2) 지배기업의 주식 및 채무가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공모시장의 증권발행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3)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

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 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만우 외, 2009, p. 57). 이에 비하여 별도재무제표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의 각 개별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의미함. K-IFRS에 의하면 별도재무제표란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함(K-IFRS 제1027호 문단 4). 즉,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지분법과 같이 피투자자의 성과나 순자산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간단한 방법인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표시한 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 함.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만우 외(2009)의 pp. 56~59를 참조.

32) K-IFRS 제1027호 문단10.

을 지배한다고 본다³³⁾”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지배회사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종전 외감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최상위 지배회사(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6일에 이 시행령은 K-IFRS규정에 따르도록 개정되었다. 즉 관련 외감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³⁴⁾.

-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 대한 K-IFRS와 K-GAAP 간의 규정 차이는 해소되었다.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규정을 비교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에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의무는 연결모법인에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K-IFRS의 경우는 과반수의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의 경우는 100% 출자한 경우만 연결납세규정이 적용된다.

33) K-IFRS 제1027호 문단13.

34)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K-IFRS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실질지배력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K-IFRS에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³⁵⁾.

- (1)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경우.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³⁶⁾.
 -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현행 K-GAAP의 경우는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외감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외감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의결권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결권 주식의 30%를 초과 소

35) K-IFRS 제1027호 문단10을 요약한 것임.

3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참조.

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등도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6일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K-IFRS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⁷⁾.

- ① 법 제1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K-IFRS와 K-GAAP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차이는 해소되었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37)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51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완전지배하는 종속법인만이 연결대상법인이 된다. 이에 따라 과반수보유를 연결대상으로 하는 K-IFRS와 K-GAAP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2)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 중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이다. K-IFRS 규정에서는 과반수를 보유하는 기준이 연결범위로 되어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100% 보유를 연결납세대상 범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연결납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이며, 현행 법인세법의 100% 보유기준은 연결납세제도가 정착될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K-IFRS와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규정이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주요 OECD 국가의 연결납세제도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는 <표 Ⅱ-3>과 같다.

〈표 II-3〉 주요 국가의 연결대상 지분율¹⁾

국가	지분율(%)
일본, 호주, 덴마크	100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95
포르투갈	90
미국	80(시행초기 95)
영국, 스페인	75
독일, 멕시코	50

주: 1) 김진수(2004)의 p.15와 신찬수(2005)의 p. 272를 수정한 것임

이상에서 보듯이 연결납세제도를 이미 도입한 국가 중에는 K-IFRS처럼 50%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규정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적은 수의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납세를 위한 별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불편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규정이 통일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방법과 법인세법상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면, 앞에 언급한 기업의 불편함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을 기본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연결소득을 산출한 이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손익대체형”에 비하여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하며 연결이론에도 충실하다.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없으며, 아마도 연결법인 간의 내부거래손익 제거 등 기업회계상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수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업회계상 방법과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인세법에서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내부거래손익 제거 등의 기업회계와 동일한 절차는 기업회계기준(즉 K-IFRS)을 따르도록 한다면,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기업의 애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의 기준을 통일하기가 어렵다면, 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연결납세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연결납세 과세소득 산출 시 기업의 애로를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주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명시적으로 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최상위 지배회사	모든 지배회사	100% 소유기업	서로 목적이 다름	현행규정 유지
연결대상 종속회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모든 종속회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모든 종속회사	100% 소유기업		
연결방법	소득통산형	소득통산형	소득통산형	구체적인 기준 미비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 혹은 상호 연결되게 규정

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해서는 IFRS 기준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1008호로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로 제정되어 있다.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K-IFRS와 K-GAAP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에 대하여 K-IFRS, K-GAAP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회계정책의 변경

K-IFRS에서는 “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GAAP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K-GAAP과 K-IFRS 모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K-IFRS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 등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등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계정책 변경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

의하고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와 K-GAAP 모두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규정상 다소 차이가 있다. 즉,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K-IFRS는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초의 회계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일,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초 회계기간이 당기일 경우에는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K-IFRS와 K-GAAP이 동일하게 됨을 의미한다.

K-GAAP에서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비유동자산상각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취득단가산정방법의 변경 등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에서는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됨에 따라 기업이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사용된 기법의 변경이므로 추정의 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적용의 대상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전진법 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어 소급적용 대상이 축소된다.

또한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³⁸⁾, 감가상각계산방법³⁹⁾ 등 기존의 회계정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신고 또는 승인을 얻도록

38)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39)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하고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 및 당기 이후에 반영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세법에서는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K-IFRS에서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및 미래 기간에 전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K-GAAP의 경우도 K-IFRS와 마찬가지로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GAAP에서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만을 기술하고 있고 재무상태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K-IFRS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재무상태표 항목에만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하도록 규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추가하였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의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의 효과를 당기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경우에는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세법에서 정한 손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오류수정

K-IFRS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K-GAAP에서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오류수정의 누적효과를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에 반영하고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해서만 K-IFRS에 마찬가지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FRS와 K-GAAP 간의 차이점은 “중대한 오류”의 개념이다. 중대한 오류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의 오류”로서 일반적인 중요성 원칙보다는 엄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K-GAAP에서는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상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당기에 발견한 과거의 중요한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왔다⁴⁰⁾. 이에 비하여 K-IFRS에서는 중대한 오류의 개념을 삭제하고 중요한 오류⁴¹⁾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K-GAAP에 따르면 재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류의 누적적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K-GAAP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적용의 예외를 참조하여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할 것이다⁴²⁾. 이에 K-IFRS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였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기간에 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해 오류의 효과를 당기 손익금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에 의해 오류의 효과를 손익금에 반영할 수 없다.

40) 한국회계기준원(2008b) p. 90.

41) 중요성의 개념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정의한 중요성 원칙에 의한다.

42) 한국회계기준원(2008b) p. 92.

라) 공시사항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 회계변동연도와 직전 3년간 연도별로 재계산된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등 기타 중요 변동항목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해서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조정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비교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3개년의 변동항목을 공시하던 것에 비해 실무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K-IFRS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K-IFRS의 최초 적용으로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류수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시기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공시사항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공시와 관련한 실무상 부담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와 K-GAAP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변경됨으로써 소급법 적용의 대상이 감소하였다. 또한 오류수정의 경우 소급법 적용 범위가 “중대한 오류”에서 “중요한 오류”로 변경되었다. “중대한 오류”의 개념이 중요성 개념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볼 때 소급법이 적용되는 오류의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59

K-IFRS와 K-GAAP이 동일하게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K-IFRS의 도입으로 세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전진법을 채택하고 있기에, K-IFRS나 K-GAAP에 의하여 소급처리된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부인하고 당기 이후 기간에 세법상 손금이나 익금으로 인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의 관점에서 회계정책이나 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기업회계상의 입장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미 확정된 세액의 변경, 이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 등 실무적인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법인세법의 처리와 기업회계 처리상의 차이는 K-IFRS가 도입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처리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기업회계상 소급적용하고 있지만 세법상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기에 세법에서 정하는 손금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항목을 현재의 결산조정항목에서 강제신고조정항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⁴³⁾.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과 관련된 내용은 <표 Ⅱ-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3) 이러한 문제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항목의 문제점이기에, 결산조정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본 연구의 제Ⅳ장의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참조할 것.

〈표 II-5〉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회계정책의 변경	원칙 : 소급법 예외 : 전진법	소급법 적용	전진적으로 적용	결산조정항목에 대한 경정청구 불가	강제 신고 항목으로 의 전환
오류수정	중대한 오류 : 소급법 적용	중요한 오류 : 소급법 적용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예외 : 결산조정항목	한 경정청구 불가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적용	전진법 적용	전진적으로 적용	차이 없음	

2. 수익과 원가

이하에서는 K-IFRS 중 수익과 원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고자 한다⁴⁴⁾.

가. 수익

K-IFRS 제1018호 수익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제18호 “Revenue”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규정되어 있다.

1) K-IFRS, K-GAAP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수익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주요 수익항목으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44)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는 설명의 편의상 별도의 절에서 설명함.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61

배당수익 등이 있다.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다. K-IFRS, K-GAAP 및 법인세법에서는 각각 일반적인 수익인식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주요 수익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인식요건을 특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수익의 정의, 수익인식의 일반요건, 항목별 수익인식 요건,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K-IFRS, K-GAAP 및 법인세법상 규정의 차이를 정리하기로 한다.

가) 수익의 정의

K-IFRS상 수익이라 함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한다⁴⁵⁾. K-GAAP에서는 문구는 약간 다르나 동일한 의미에서 수익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인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지만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익과 익금의 정의는 <표 Ⅱ-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5) K-IFRS 제1018호 문단7.

〈표 II-6〉 수익의 정의 비교

규정	내용
K-IFRS 제1018호 문단7, 문단8	7. 수익 :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며,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K-GAAP 제4호 문단5	5.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나) 수익인식의 일반요건

K-IFRS와 K-GAAP는 모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i)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과 ii) 그 신뢰성 있는 측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K-GAAP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K-IFRS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데 이영한(2007)에 의하면 통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63

은 80%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가능성이 높은(probable)’은 50%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K-GAAP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수익의 인식이 더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회계기준과는 달리 권리의 확정시점에 익금을 인식한다.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7>과 같다.

<표 II-7> 수익인식의 일반요건

규정	내용
K-IFRS 제1018호 목적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K-GAAP 제4호 문단2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항목별 수익인식 요건

K-IFRS 및 K-GAAP에서는 수익인식의 일반요건에 추가하여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등 주요 수익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개별 인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항목별 수익인식의 추가요건에서는 K-IFRS와 K-GAAP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항목별 수익인식의 추가요건

규정	내용
재화의 판매 ¹⁾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 (4) 일반요건에 해당함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 ²⁾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1), (2) 일반요건에 해당함 (3)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³⁾	(1)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9 및 문단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2)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3)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주: 1) K-IFRS 제1018호 문단14

2) K-IFRS 제1018호 문단20

3) K-IFRS 제1018호 문단30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K-GAAP과는 별도로 주요 수익항목에 대해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9〉와 같다.

〈표 Ⅱ-9〉 주요 수익항목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규정	내용
재화의 판매 ¹⁾	○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품 등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용역의 제공 ²⁾	○ 원칙 : 용역제공 완료일 ○ 예외 -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작업진행률 기준 -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³⁾	○ 이자수익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 선수입이자는 제외. • 결산확정시 기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 단, 원천징수되는 이자 제외 - 기타의 법인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 결산확정시 기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 단, 원천징수되는 이자 제외 ○ 배당금수익 -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3)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라) 기타 차이

① 적용배제 항목의 추가

수익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K-IFRS와 K-GAAP에서의 적용배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K-GAAP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및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에 대해 적용을 배제⁴⁶⁾하는 반면, K-IFRS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의 변동⁴⁷⁾ 및 수확물의 최초인식⁴⁸⁾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K-IFRS하에서는 K-GAAP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전일지라도 최초인식 시점 및 공정가치 변동 시점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 확정시점이므로 회사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판매 전에 수익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서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② 고객충성제도⁴⁹⁾ 관련 수익인식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매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K-IFRS 제2113

46) K-GAAP 제4호 문단3 (바).

47) K-IFRS 제1018호 문단6 (6).

48) K-IFRS 제1018호 문단6 (7).

49)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됨.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기업은 고객보상점수(흔히 ‘포인트’라고 한다)를 부여하며, 고객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K-IFRS 해석서 제2113호 문단1).

50) K-GAAP 제17호 문단9.

호 “고객충성제도”에서는 K-IFRS 제1018호의 문단13⁵¹⁾을 적용하여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즉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회계상 전체 이익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에 지출될 고객충성제도 관련 예상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차감할 경우 구매포인트 등이 발생한 시점 및 고객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변동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을 보면, 관련 유권해석⁵²⁾에 의하면 고객이 구매포인트 등을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시점 및 이를 사용한 시점의 세무조정사항⁵³⁾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③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K-GAAP에서는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⁴⁾. 하지만 K-IFRS 제1018호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K-IFRS 제1011호 “건설

51)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018호 문단13).

52) 마일리지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서이 46012-11711, 2002. 9. 13.) 또한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서면3탐-3368, 2007. 12. 20).

53)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시점에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매출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며, 구매포인트를 사용한 시점에 회사가 이를 충당금에서 차감하거나 매출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54) K-GAAP 제4호 문단24.

계약”의 문단36에서는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하고 있으며, K-IFRS 제1018호 문단21에서는 K-IFRS 제1011호의 규정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수익과 관련 비용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주요 수익항목에 대한 공시

K-IFRS에서는 K-GAAP과 비교하여 주요 수익항목과 관련된 사항의 공시를 직접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K-IFRS에서는 재화의 판매금액, 용역의 제공금액,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과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⁵⁵⁾. 반면, K-GAAP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 관련 법인세법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회계상 매출액 변동

① 문제점

K-IFRS하에서는 K-GAAP을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수익 인식기준의 차이에 따라 매출액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55) K-IFRS 제1018호 문단35(2) 및 (3).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69

수익인식의 일반요건에서 K-GAAP의 경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K-IFRS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므로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수익인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수익에 대한 기준서의 적용배제 항목과 관련하여 K-GAAP의 경우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증가에 대해 적용배제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반면, K-IFRS에서는 생물자산의 최초인식 및 공정가치의 변동, 수확물의 최초인식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판매 전에도 회계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구매포인트 등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K-GAAP의 경우 매출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반면, K-IFRS에서는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동 이연된 수익만큼 매출액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K-GAAP을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변동은 귀속시기의 차이이기는 하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변화함에 따라 세무상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에 영향을 준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사용되는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⁶⁾.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변동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역시 달라져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공동사업의 손비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하여 비출자공동사업자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

56)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⁵⁷⁾. 그리고 이때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⁵⁸⁾. 따라서 K-IFRS의 적용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변동하는 경우 손금산입 대상 공동경비금액 역시 달라져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시가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⁵⁹⁾.

용역의 투입원가(직접비 및 간접비 포함) ×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

그런데 위의 산식에서 보듯이, 유사 용역제공거래 수익률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K-IFRS의 적용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변동하는 경우 건설 기타 용역에 대한 시가 역시 달라져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성실중소법인에 대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복식부기에 따라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⁰⁾. 그런데 이때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⁶¹⁾. 따라서 K-IFRS를

5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5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5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60) 법인세법 제76조의 2 제1항.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2 제2항.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71

적용하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변동하는 경우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이라 함은 업종기준,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⁶²⁾. 그리고 이때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⁶³⁾. 따라서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변동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표 Ⅱ-10>과 같은 조세지원 혜택⁶⁴⁾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납세자의 과세소득, 납부세액, 납세협력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63)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64)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준용한 중소기업 등이 있음.

〈표 II-10〉 조특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세목	조세지원제도
조특법	①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¹⁾ ② 제7조의 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²⁾ ③ 제8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²⁾ ④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²⁾ ⑤ 제12조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²⁾ ⑥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²⁾ ⑦ 제30조의 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²⁾ ⑧ 제46조의 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²⁾ ⑨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²⁾ ⑩ 제85조의 8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²⁾ ⑪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²⁾ ⑫ 제132조 : 최저한세 ²⁾
법인세법	①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¹⁾ ② 제64조 : 납부 ¹⁾ ③ 제72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¹⁾ ④ 제76조의 22 : 연결납세 적용 시 중소기업 ¹⁾ ⑤ 제113조 : 구분경리 대상 ¹⁾
소득세법	① 제35조 :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¹⁾ ② 제85조의 2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¹⁾

주: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조세특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개선방안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많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준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가의 범위를 산정한다든가, 공통손비를 배분한다든가, 손금한도금액을 설정한다든가, 각종 조세지원 혜택 대상 범위를 선정한다든가, 납세협력의무를 달리 한다든가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73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준용하는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왜냐하면,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처리를 존중한다는 기본 취지보다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형평이라는 조세정책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K-IFRS의 도입으로 변동성이 커진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과세소득 및 세수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K-IFRS의 선택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K-IFRS의 선택기업과 이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 간의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시가, 손금한도, 조세특례 혜택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소득 및 납부세액이 달라져 수평적 조세형평을 침해하게 된다.

결국,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형평 차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 및 납세협력의무에 대해 이를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하는 것을 유지하기보다는 세무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세법상 매출액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① 문제점

K-GAAP에서는 단기용역매출 및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단기용역매출은 완료기준, 장기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금융감

독위원회 등록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⁶⁵⁾.

그런데 K-IFRS에서는 K-GAAP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단기용역매출에 대해 완료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진행률을 별도로 계산하는 수고와 비교하여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과세이연에 따른 실익보다는 복잡한 회계처리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회수기일 도래기준의 적용은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결산을 확정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⁶⁶⁾. 따라서 K-IFRS에서 중소기업의 장기할부매출에 대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장기할부매출로 발생한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② 개선방안

K-GAAP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위와 같은 회계처리 특례를 둔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회계처리능력 및 자금회수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 차원일 것이다.

단기용역매출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완료기준이 원칙이고 회사가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완료기준이

65) K-GAAP 제4호 부록 3 문단15.

66)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75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별 문제가 없다. 단, 회계상 완료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경우가 문제인데 이는 K-IFRS에서 별도의 특례조항을 두어 해결해야 할 부문이다. 즉 현재 준비되고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마련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역시 K-GAAP에서의 특례조항 취지를 반영하여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K-IFRS하에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회수능력을 고려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주려는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관련 조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수정함으로써 해결하거나 또는 현재 준비되고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마련 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익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수익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Ⅱ-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11〉 수익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변동	수익인식의 일반요건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권리의 확정시점에 인식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변동으로 다음에 영향 1) 절대비세무조정 2) 공동사업손비배분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건설 기타 영역의 시기 4) 성실납세방식적용대상법인 5) 조특법시행령 §2①에 의한 중소기업범위 및 관련 조세지원혜택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변동 기준을 세무상 매출액으로 수정
	수익에 대한 기준서 적용배제 항목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 증가 등에 대해 적용배제하며, 이 제한이 이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하는 규정 없음	생물자산의 최초인식 및 공정가치의 변동 등에 대해 적용배제하며, 이는 K-IFRS 제1041호에 의해 공정가치 평가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 증가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고객충성제도	매출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	고객이 구매포인트 등을 사용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		
중소기업 특례	단기용역매출	완료기준 적용가능		완료기준, 단, 회사가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인정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증가	K-IFRS에 특례기준(일반 기업회계기준) 마련
	장기할부매출	할부금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가능	특례규정 별도로 없음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할부금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인정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회수능력이 부족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법인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함	K-IFRS에 특례기준(일반 기업회계기준) 마련 또는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사항으로 수정

나. 건설계약

건설계약에 대하여는 IFRS 기준서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및 K-GAAP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규정하고 있다. 먼저 K-IFRS와 K-GAAP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세무조정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건설계약은 활동의 성격상 계약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이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따라서 건설계약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기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핵심이 된다. 일반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지만 비교적 장기에 속하는 건설계약의 경우에는 건설이 완료되어 구매자에게 건설물이 인도되는 때까지 수익과 비용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손익을 왜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 K-IFRS와 K-GAAP의 비교는 건설계약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진행기준의 적용상의 차이, 재무상태표상 표시, 공시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건설계약에 대한 정의

K-IFRS상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specifically negotiated) 계약”이다⁶⁷⁾. K-GAAP에서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협의된”이

라는 부분을 “협의된”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용어 간의 차이에 따라 건설계약을 적용하는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계약의 적용범위에서 살펴본다.

나) 건설계약의 적용범위

건설계약의 유형으로는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정액계약과 원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원가보상계약이 있다.

건설계약의 적용범위는 어떤 거래가 건설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앞서 서술한 건설계약의 정의이다. 건설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주거용부동산을 완성 전에 판매하는 경우와 복수의 건설계약을 하는 경우 기준서 적용단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①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는 아파트 등을 완성하기 전에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것으로 예약매출 혹은 아파트 분양판매가 이에 해당한다. K-GAAP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건설형 공사계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K-IFRS 제1011호에서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공사계약을 동 기준서의 적용대상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IFRIC AGENDA Committee는 주거용부동산의 완성전 계약의 건설공사계약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위한 완성 전 계약은 건설공사계약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⁶⁸⁾. 우리나라

67) K-IFRS 제1011호 문단3.

68) 이러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안) 제1011호 건설계약 주요논점(한국회계기준원)의

의 경우 건설사와 분양권자 간의 공사율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기준이 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양권자가 돈을 지급한다면, 분양공사의 수익을 현행처럼 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인 경우에 K-GAAP에서는 건설계약으로 볼 수 있었으나, K-IFRS의 경우에는 건설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에 K-IFRS에 의할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K-IFRS 제1018호에 의한 재화판매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⁷⁰⁾⁷¹⁾.

② 복수계약의 병합 및 분할

건설계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내용상 복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거나 여러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내용상 하나의 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기준서의 적용단위가 되는 계약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K-IFRS 제1011호에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복수계약을 단일계약으로 병합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⁷²⁾. 복수계약의 병합 및 분할의 내용은 기존의 K-GAAP에 포함된 내용으로 K-IFRS의 도입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아니다.

내용을 참조.

69) 조세일보(2009. 6. 10).

70) K-IFRS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에서는 부동산 건설약정에 대하여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할 것인지 제1018호 수익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의 p. 130과 오유택(2009)의 p. 57에 언급되어 있음.

7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사와 분양권자 간의 공사율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기준이 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양권자가 대금을 지급한다면, 분양공사수익을 진행률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고, 분양권자가 여러 명이기에 공사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조세일보, 2009. 6. 10의 기사 참조).

7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은 K-IFRS 제1011호 문단7-10에 규정되어 있음.

다) 진행기준의 적용

K-IFRS에서 건설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경우 진행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K-GAAP도 진행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K-IFRS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진행률 산정과 관련된 계약원가의 범위나 누적발생원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K-IFRS에서 규정하는 수익인식기준을 건설계약의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II-12>와 같다.

<표 II-12> 건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정액계약	원가보상계약
조건	• 총계약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 •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계약완료에 필요한 계약원가와 진행률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 • 계약원가의 명확한 식별 및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 발생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가능	•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계약원가의 명확한 식별 및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
조건 충족	•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 •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손실인식	
조건 불충족	• 회수가능성이 높은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인식 •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손실인식	

수익인식기준 적용에 K-IFRS와 K-GAAP의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행기준의 적용방법

건설기간 중에 당해연도의 이익은 당해연도의 수익에서 당해연도의 원

가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당해연도 수익에 대응하여 수익에서 차감되는 원가를 K-IFRS와 K-GAAP이 달리 규정한다. 즉, K-GAAP에서 대응원가는 당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인데 비하여, K-IFRS에서 대응원가는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가이다.

원가기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IFRS와 K-GAAP에서 당기 인식하는 비용이 당기 발생한 원가가 되므로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 이외의 방법⁷³⁾을 사용할 경우에 당해기간에 인식하는 비용은 K-IFRS의 경우 계약원가에 진행률을 적용한 금액이 되고, K-GAAP의 경우 당해 기간에 발생한 원가가 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누적발생원가의 범위

앞서 원가기준법을 사용하는 경우 K-IFRS와 K-GAAP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서술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누적발생원가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당해 기간에 인식하는 수익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K-IFRS⁷⁴⁾ 및 K-GAAP⁷⁵⁾에서 누적발생원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원가를 다음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표 Ⅱ-13>에서 보듯이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73) K-IFRS의 진행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공사계약의 실질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K-IFRS 제1011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함. 제시된 진행률 산정기준은 원가기준(발생누적원가/총추정원가), 수행한 공사의 측량, 계약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등이 있음. K-GAAP의 진행률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원가기준(누적발생원가/총추정원가)으로 하도록 하고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74) K-IFRS 제1011호 문단31.

75) K-GAAP 제12호 문단35.

〈표 II-13〉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

	K-IFRS	K-GAAP
항목	• 미래의 활동과 관련되는 원가 (예를 들면 공사수행을 위하여 미리 구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 좌동
	• K-GAAP과 같이 특별히 예시하고 있지 않⁷⁶⁾	• 토지의 취득원가 • 자본화대상금융비용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이러한 차이는 원가기준법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때 분자가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K-IFRS와 K-GAAP의 진행률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에 차이가 발생한다.

라) 재무상태표상 표시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하고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K-GAAP에서는 재무상태표상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다.

K-IFRS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청구공사총액 = (누적발생원가 + 누적이익) - (누적손실 + 진행청구액)으로 (+)인 경우에는 “미청구공사”의 과목으로 자산으로 표시되고 (-)인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의 과목으로 부채로 표시된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재무상태

76) K-IFRS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항목은 아파트 등 예약매출과 관련된 항목이나, 이러한 매출이 K-IFRS의 규정에 따라 진행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음.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83

표에 표시되는 잔액을 살펴보면 공사미수금이 계상되고 이는 K-IFRS의 “미청구공사”와 기말시점 현재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K-GAAP은 총액으로 표시하고 K-IFRS는 미청구한 금액과 청구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차이만 존재할 뿐 사실상의 차이는 없다.

마) 건설공사계약에 대한 수익과 비용인식 방법의 차이(요약)

이상에서 언급된 건설공사에 대한 수익과 비용 인식방법의 차이는 〈표 II-1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II-14〉 건설계약의 수익/비용 인식방법 비교^{주)}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공사수익인식	총계약금액 × 진행률	총계약금액 × 진행률	총계약금액 × 진행률
공사원가 인식	실제발생원가	총예상원가 × 진행률	실제발생원가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표시	공사미수금은 진행률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금액임	공사미수금은 실제 청구한 금액이며, 수익인식금액과 청구금액의 차이는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함	기업회계기준상 미수금

주: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의 pp.180~181을 수정한 것임

바) 공시사항의 차이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K-GAAP의 공시사항이 K-IFRS에 비하여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⁷⁷⁾.

77) 좀 더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K-GAAP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문단50 참조 바람.

2) 법인세법의 규정

가) 적용범위 및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에서는 건설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장기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건설 등의 용역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기건설 등의 용역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⁷⁸⁾. 법인세법상 건설 등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 제조 및 기타 용역의 공급뿐만 아니라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나) 진행기준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공사수익(익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사비용(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하고 있다⁷⁹⁾.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으로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계약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78)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7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그 비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⁰⁾.

원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작업진행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작업진행률로 적용한다.

$$\text{작업진행률} = \frac{\text{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위의 식에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이다.

다)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⁸¹⁾.

라)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상 수익과 비용은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인식한다. 따라서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손금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8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규칙 제34조 제4항.

마)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채권은 법인세법에서 설정제외채권으로 특별히 규정⁸²⁾한 채권이 아니라면 대부분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공사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채권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적용범위 :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는 “건설 등”의 범위에는 건설, 제조 및 기타용역, 도급공사, 예약매출이 포함된다. 또한 기간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구분하여 장기 건설 등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기 건설 등은 회사가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K-IFRS와 K-GAAP은 기간에 따라 적용범위를 나누지 아니하고 기준서에 제시한 정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K-IFRS의 도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에 국한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는 진행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는 공사완료 후 인도시점에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법에 따라 공사기간 중으로 배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82)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가 단기인 경우에는 K-IFRS와 법인세법상의 차이는 없게 된다. 즉,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장·단기를 불문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에 대해서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법인세법에서도 단기의 건설계약으로 인도기준에 의하여 익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인 경우에는 K-IFRS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개정방향

그동안 건설계약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장·단기를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던 과거 기업회계기준이 건설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정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일치를 꾀했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계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서 공사기간을 장·단기로 구별하여 수익인식방법을 달리 규정하는 방법을 K-IFRS와 같이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적용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K-IFRS에서는 건설계약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서를 적용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장·단기 구분에 따라 수익을 다른 방법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단기라고 하여도 단서조항에 의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단기 구분에 의한 K-IFRS와의 차이는 없지만, 세법 규정을 복잡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법상 건설공사의 적용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건설기간의 장·단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주거용 부동산 완성 전 판매와 같이 K-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에 의하면 주거용 부동산 완성 전 판매는 건설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K-IFRS 제1018호의 재화판매로 인한 수익인식방법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현행 법인세법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완성 전 판매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 완성 전 판매에 대하여 수익인식 방법이 상이하므로, 법인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진행률 계산 자료들을 법인세의 계산목적상 관리해야 하며, 세무조정절차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계약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는 K-IFRS의 도입으로 세무조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법을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⁸³⁾.

나) 진행기준의 적용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진행기준의 적용방법과 누적발생원가에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에 차이가 있다. 즉, K-GAAP에서는 당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를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는 데 비하여, K-IFRS에서는 진행률로 계산한 원가(총추정원가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를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본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K-GAAP과 유사하게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을 공사수익(익금)

83) 물론 이러한 개정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나, 주거용 주택 이외에 택지개발, 기업도시개발 등에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에 상응하는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규정의 차이에 따라서 현행 K-GAAP하에는 당기 발생원가가 전액 비용으로 계상되고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K-IFRS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공사원가가 당기 발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되거나, 추가 손금으로 계상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기 인식하는 원가를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 사항은 당기에 인식할 비용(손금)금액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누계는 누적발생원가가 되고 이는 작업진행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생원가의 인식범위에 따라 K-IFRS의 진행률과 현행 법인세법에 의한 진행률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누적발생원가에 제외되는 항목(앞의 표에서 설명)에서도 현행 법인세법과 K-IFRS 간에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차이 때문에 누적발생원가가 차이가 나고 궁극적으로는 작업진행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K-IFRS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과 세무상 진행률을 기준으로 당기 인식해야 하는 익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② 개정방향

진행기준의 적용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K-IFRS의 도입으로 인식하는 원가의 범위 차이가 얼마나 세액의 변동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개정안이 세무상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인 권리의 무확정주의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정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K-IFRS의 계산방식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K-IFRS에서는 계약 원가에 진행률을 곱하여 대응원가를 산정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원가는 이

8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미 발생하여 의무가 확정된 실제 발생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세무상 비용은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미 발생하여 의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공사수익에 대응하는 대응원가의 인식과 관련된 K-IFRS의 규정을 현행 법인세법에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⁸⁵⁾.

그러나 누적발생원가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K-IFRS가 차이 나는 부분을 회사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인세법 개정이 누적발생원가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켰던 선례와 세무조정의 간소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법인세법과 K-IFRS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K-GAAP과 K-IFRS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K-IFRS의 도입으로 새롭게 변동되는 세무조정은 아니다. K-IFRS 제1011호에서는 작업진행률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로,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도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이전에 회계상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세무상으로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상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없기에, 세무상으로는

85) 이 부분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면 K-IFRS에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한 실제 발생원가에 대해서 세무상 적극적으로 강제 손금산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손금은 K-IFRS상 계상비용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임.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91

인도 이전에 추가되는 과세소득은 없다. 이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비록 기업회계기준의 규정(K-GAAP과 K-IFRS)에 따른 회계처리가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이하더라도,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세무조정에 특별하게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는 K-IFRS의 도입으로 새롭게 변동되는 세무조정은 아니다. 이미 K-GAAP에서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에 비하여 법인세법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계상한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공사손실이 확정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K-GAAP에서는 이전에 인식했던 수익까지 환입하도록 하고 K-IFRS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세무조정하는 금액은 이전에 인식했던 수익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우발채무 등을 인식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세무상으로 재무상태표의 회계연도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K-GAAP과 K-IFRS가 공사미수금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K-IFRS의 재무상태표상 청구되지 않은 채권은 미청구공사로 표시되고, 청구 후 회수되지 않은 잔액이 되는 채권은 공사미수금으로 표시된다. 이에

비하여 K-GAAP의 공사미수금은 K-IFRS의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을 합한 금액이 공사미수금으로 표시된다. 대손충당금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미수금을 포함하여 설정하였는데, K-IFRS에서는 미청구공사를 포함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경우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된다⁸⁶⁾.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이기에, 재무상태표의 공사미수금으로 명시된 채권이며, 이 이외에 미청구공사의 초과청구공사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⁸⁷⁾.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관련 공사미수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건설계약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공사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은 <표 II-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6)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87)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 191.

〈표 II-15〉 건설계약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범위	건설, 예약매출	건설(예약매출은 재화의 인도입)	건설, 예약매출, 도급, 제조 기타 용역	-장단기기준 -예약매출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대응원가 적용방법	당기발생원가	계약원가×진행률	당기발생원가	손금의 범위 차이	
누적발생원가범위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넓은	K-GAAP에 비하여 좁음	K-GAAP과 일치	진행률 차이	
재무상태표의 표시	공사미수금으로 포함하여 표시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으로 나누어 표시	기업회계기준상 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차이	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다. 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에 대해서는 IFRS 기준서 IAS 19 “Employee Benefit”과 해석서인 IFRIC 14 “The limit on Defined Benefit Asset, Minimum Funding Requirements and their Interaction”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로 제정되어 있고, 이는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3-27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K-IFRS와 K-GAAP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

가) 종업원급여의 분류

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의미한다. K-IFRS에서의 종업원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로 구분한다. 단기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종업원급여이고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로서 해고급여를 제외한 것이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로서 퇴직급여와 해고급여를 제외한 것이다. 해고급여란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려는 기업의 결정 또는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한 종업원의 결정의 결과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이다⁸⁸⁾. K-GAAP상 종업원급여는 임원급여, 급여,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종업원 급여의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되면서 K-GAAP에서의 퇴직급여가 K-IFRS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퇴직급여 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 등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⁸⁹⁾.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보수, 급여, 임금, 잡금, 각종 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 및 사용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비를 총칭한다. 따라서 K-IFRS의 구분과 관계없이 종업원급여는 모두 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내용 중 K-IFRS와 K-GAAP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이며, 다른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88) K-IFRS 제1019호 문단7.

8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창모 외(2008)의 p. 46을 참조.

이에 우선 퇴직급여에 대한 차이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나) 퇴직급여부채

① 퇴직급여제도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사내에 적립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되어 관리·운용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K-IFRS에서도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즉,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의 의무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또한 확정급여제도하에서

90) 이준규(2008)의 pp. 234~235.

는 기업의 의무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⁹¹⁾.

② 퇴직급여부채의 측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지만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⁹²⁾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K-IFRS에서는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미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을 가감하고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한다⁹³⁾. 여기에서 확정급여제도의 원가는 퇴직 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의료원가 추세 등의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에는 사외적립자산의 투자수익도 포함된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⁹⁴⁾으로 평가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K-GAAP에서의 퇴직급여채무액은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⁹⁵⁾. 퇴직

91) K-IFRS 제1019호 문단24 ~ 문단27.

92)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책임이 기업에 있으며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 후 예상되는 연금지급에 필요한 부담금의 최소한 60% 정도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93) K-IFRS 제1019호 문단54.

94)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임.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97

급여채무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K-IFRS와 K-GAAP의 가장 큰 차이점은 K-IFRS의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측정하는 데 퇴직 후의 사망률, 이직률 등의 인구통계학적 가정과 미래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의 재무적 가정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퇴직금은 해당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⁹⁶⁾. 그러나 기업회계를 받아들여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래에 지급한 퇴직급여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⁹⁷⁾.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기준과 퇴직금추계기준에 의한 두 가지 방식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총급여기준 손금한도 : 총급여의 지급대상⁹⁸⁾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
급여액 $\times$ 5%

퇴직금추계기준 손금한도 : 퇴직금추계액 $\times$ 30% + 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
손금산입 전 충당금잔액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급여의 합계액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된 자의 급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임원·사용인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급여,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손금불산입된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금추계액이란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

95) K-GAAP 제27조.

96)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97) 이준규(2008) p. 235.

9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부할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인식하지 않으므로 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함.

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⁹⁹⁾. 이 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다¹⁰⁰⁾. 퇴직금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할 국민연금부담금을 퇴직금의 중간지급 형태로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1999년 4월 1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종전까지 납부한 잔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까지 남아 있게 되므로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표시되며 퇴직금추계액기준 손금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가산하는 것이다¹⁰¹⁾.

③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K-IFRS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산출 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기¹⁰²⁾ 때문에 기업이 정관을 통해 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정관 및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며,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¹⁰³⁾. 따라서 기업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9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10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101) 이준규(2008) p. 360.

1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10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채무를 설정하도록 정한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 사외적립자산

①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K-IFRS에서 사외적립자산(plan asset)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한 자산 및 적격보험계약 금액으로 구성된다.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한 자산이란 (i)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기금 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고 (ii)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기금 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특정 경우¹⁰⁴⁾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 반환될 수 없는 것이다. 적격보험계약이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¹⁰⁵⁾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i)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ii)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특정 경우¹⁰⁶⁾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 지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외적립자산이란 외부의 실체에 오로지 종업원급여만을 위해 적립한 것이므로 K-IFRS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확정급여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

104)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또는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105) K-IFRS 제1024호에서 정의.

106)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남는 경우 또는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시장가격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만기나 예상처분일과 사외적립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하는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¹⁰⁷⁾.

현재 실무에서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치하고 있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K-IFRS의 사외적립자산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K-GAAP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측정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측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 적용의견서 05-2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측정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부담금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별도의 평가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사외에 전액 적립해야 하며,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된다.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7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여야 하며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도¹⁰⁸⁾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107) K-IFRS 제1019호 문단102.

10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한도 =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한 퇴직연금부담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②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회계처리

K-IFRS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란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그 밖의 수익에서 제도관리원가¹⁰⁹⁾와 제도 자체에 관련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¹¹⁰⁾.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퇴직연금의 구성요소로 퇴직급여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에 해당한다. K-GAAP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3-27에서 다루고 있으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량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10에서는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손금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단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및 해고급여

종업원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K-IFRS, K-GAAP 및 법인세법 규정 간에 차이는 거의 없다.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K-IFRS에서의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로¹¹¹⁾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단기유급휴가, 상여금 그리고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되지 않은 금

109)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원가 제외.

110) K-IFRS 제1019호 문단7.

111) K-IFRS 제1019호 문단7.

액으로 측정하여 부채(미지급비용)와 해당비용으로 인식하며, 동 급여가 자산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한다. K-GAAP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회계이론이나 업무관행에 근거한 기존의 회계처리는 K-IFRS와 유사하다¹¹²⁾. 다만, K-IFRS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제도에 따른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액을 당기의 부채와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¹¹³⁾. 그러나 K-GAAP하에서의 이익분배제도에 의한 이익분배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K-IFRS와 상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경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해당기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¹¹⁴⁾, K-IFRS에 의한 처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이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급여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이다. 이에 포함되는 급여로 장기유급휴가, 장기장애급여, 12개월 이후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발생한 기간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지급될 보상으로서 퇴직급여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회계처리한다. K-GAAP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퇴직급여는 일정한 기준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될 수도 있다. 즉 종업원의 동의하에 모든 종업원에게 정기적·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특별한 제약조건없이 종업원이 원하면 수령할 수 있는 등의 경우는 퇴직급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다른

112) 한영회계법인(2007) p.150, pp.158~159.

113) 이익분배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여야 함(K-IFRS 제1019호 문단17).

11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형태의 종업원급여로 보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¹¹⁵⁾. 현재 법인세법의 규정에는 이러한 종류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해고급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려는 기업의 결정이나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한 종업원의 결정으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해고급여와 관련하여 채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종업원의 근무가 아닌 해고이기에 해고급여는 다른 종업원급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즉 해고급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한 명시적인 용어정의나 인식과 측정기준이 없다. 다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의 실무지침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당 사용인에게 사전 예고없이 해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¹¹⁶⁾.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해고급여에 대한 K-IFRS의 규정과 차이가 없다.

115) 한국공인회계사회(2008) p.46.

116)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2)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퇴직급여부채의 측정

퇴직급여채무의 측정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K-IFRS는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시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K-GAAP과 법인세법은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여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이에 따라 K-IFRS에 따라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하면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K-GAAP이나 세법에 의한 퇴직급여부채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한다. 법인세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K-IFRS에 의한 비용계상액이 많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K-IFRS에 따른 비용 계상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K-IFRS와 K-GAAP 및 현행 법인세법 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하느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이 도입되는 K-IFRS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계산과정도 쉽지 않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하여는 보험전문가인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비용 및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일시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체감하는 실질 비용과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설정하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보험수리적 평가결과를 회계처리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나, 퇴직일시금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험수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자료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의 경우에도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든 퇴직일시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든 간에 회계감사과정상 전문가 활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다¹¹⁷⁾. 이에 따라 K-IFRS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법이 기존의 청산개념에 의한 퇴직급여부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업은 청산개념에 의한 퇴직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그 차이를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세법에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K-IFRS의 규정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법인세법은 당분간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급여에 대한 K-IFRS의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많은 준비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장기적으로 K-IFRS 규정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추정하는 방식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

K-IFRS을 도입하게 되면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변동액으로는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이 있다. 우선,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과거근무원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 또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K-IFRS하에서의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 손익은 일정한 기준에 따

117) 한국회계기준원(2008b) p.130.

라 이연상각한다. 즉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동안 정액법으로 비용인식하나, 단 이미 가득된 급여는 즉시 인식한다. 그리고 보험수리적 손익은 직전회계연도 말 현재 미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의 누계액이 기준금액¹¹⁸⁾을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 손익과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와 달리 발생 시 전액 즉시 인식한다.

그러나 K-GAAP과 현행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3-27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르면 과거근무원가와 같은 별도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과거근무원가가 당기에 일괄반영된다¹¹⁹⁾. 그리고 청산가치로 측정하기에 보험수리적 손익과 같은 별도의 용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K-IFRS하에서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에 따라 인식된 수익과 비용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는 방법의 개정과 같은 맥락에서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외적립자산의 평가

K-IFRS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K-GAAP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급여예치금에 대한 측정기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이 보

118) 기준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K-IFRS 제1019호 문단92 참조.

119) 과거근무원가에 대한 별도의 가득기관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K-IFRS에 따르더라도 즉시 인식되므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¹²⁰⁾.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K-IFRS에 의해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을 부인하고 세법상 한도만큼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법에서 자산·부채의 평가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업과 같은 특정 업종이나 자산이 회수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감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자산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외적립자산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하는 K-IFRS의 규정을 세법에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라)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회계처리

K-IFRS에 따르면,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의 원가에서 차감하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회계상 당기손익이나 과세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없고 총액기준으로 표시되는 손익의 금액에만 영향이 있다. 이에 따라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 시 결산상 퇴직급여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20)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3) 종업원급여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종업원급여의 내용은 <표 II-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16> 종업원급여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퇴직급여부채의 측정	청산가치 개념에 의한 일시퇴직금	예측단위방식에 의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측정	청산가치 개념에 의한 일시퇴직금	세무조정 사항발생	당분간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K-IFRS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채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인식하지 않음	인식함	퇴직금지급규정에 있는 경우는 설정가능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N/A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 손익개념 도입	규정 없음	개념을 도입하여 인식	규정없음	세무조정 사항발생	당분간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K-IFRS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측정기준 없음	공정가치로 측정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세무조정 사항 발생	현행규정 유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영업외수익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	익금에 산입	세무조정 사항 발생	현행규정 유지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규정없음	명시적 규정있음	규정없음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N/A

라.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기준은 K-IFRS 제1102호와 K-GAAP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K-IFRS 제1102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2 “Shared-based Payment”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현행 K-GAAP 제22호도 IFRS 제2호를 참고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K-IFRS 제1102호와는 큰 차이가 없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현행 K-GAAP 제22호는 IFRS를 참고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K-IFRS 제1102호와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K-IFRS 제1102호를 위주로 기술한 후, K-GAAP 제22호와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가) 주식기준보상 거래

주식기준보상 거래는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종업원 포함)에게 그 대가로 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상품 혹은 회사의 주식 및 다른 지분상품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전하는 거래이다¹²¹⁾.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보상하는 지분상품 등의 종류에 따라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②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③ 선택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결제형은 보상하는 지분상품을 주식으로 결제하는 보상거래이다. 다음으로, 현금결제형은 주가차액보상권¹²²⁾ 등과 같은 미래의 현금수령권을 부여하는 보상거래이다. 마지막으로, 선택형은 보상하는 결제수단(현

121) K-IFRS 제1102호 문단3.

122) 특정기간 기업의 주가상승액에 기초하여 미래의 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 또는 주식 등)을 기업이나 거래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보상거래이다.

나) 주식보상비용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는 가득과정과 가득일 후에 발생하는데, 결제수단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가득과정 중에 발생한 보상비용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식보상비용	=	보고기간 말 현재의 누적보상원가	-	직전결산일 현재의 누적보상원가

①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의 누적보상원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누적보상원가	=	보상의 공정가치 × 수량 × 경과된 가득기간 비율

보상의 공정가치는 결제수단과 보상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주식결제형으로 재화나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의 공정가치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계산된다. 이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계산하며, 이마저도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계산한다. 다음으로 주식결제형으로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의 공정가치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이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평가한다. 보상의 공정가치는 주식결제형의 경우 부여일(측정기준일) 평가액으로 고정되며, 이후의 주식가치가 변동하여도 이를 누적보상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수량은 주식결제형의 경우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으로,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

여 계산한다. 만약 후속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¹²³⁾.

② 현금결제형

다음으로 현금결제형의 누적보상원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ext{누적보상원가} = \text{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 \times \text{경과된 가득기간 비율}$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부여일과 부채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 및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사용한다.

다) 가득과정 중과 가득일의 회계처리

가득과정 중에 결산일이 도래할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의 누적보상원가와 결산일 현재의 누적보상원가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과 자본조정상의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이나 주식보상비용과 장기미지급비용(현금결제형)으로 인식한다. 선택형의 경우,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으로 처리하고,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으로 처리한다.

가득일이 경과한 후의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주식결제형의 경우, 증가된 자본은 가득일이 지난 뒤에도 수정하지 아니한다. 즉, 주식의 발행으로 인해 인식한 금액을 다시 환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여 전달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에 가산

123) K-IFRS 제1102호 문단15.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기주식을 전달할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 가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금결제형의 경우, 발생한 장기미지급비용은 보상을 받을 자에게 지급된다.

라) K-IFRS와 K-GAAP 제22호와 비교

K-GAAP 제22호는 K-IFRS 제1102호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K-IFRS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은 물론이고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한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K-IFRS에서는 공정가치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K-GAAP에서는 공정가치가 원칙이지만 비상장기업은 내재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

③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희석화방지조항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감자 등으로 인한 단위당 주가의 변동이 이미 부여한 권리의 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사가격이나 부여수량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희석화방지조항이라 한

다¹²⁴⁾. K-IFRS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K-GAAP에 따르면 회식화방지조항에 따른 조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계처리목적상 조건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④ 재부여주식선택권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부여되는 주식선택권을 재부여주식선택권이라 한다. K-IFRS에서는 이를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본문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K-GAAP에서는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다만 결론도출 근거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⑤ 공시사항

K-IFRS에서는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 주식선택권과 같은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K-GAAP에서는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선택권과 동일한 공시사항을 요구한다.

이상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Ⅱ-17>과 같다.

124) K-GAAP 제22호 B47.

〈표 II-17〉 K-IFRS 제1102호와 K-GAAP 제22호의 비교

구분		K-IFRS 제1102호	K-GAAP 제22호
비상장기업 측정기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 상거래	유사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에 대한 규정이 있음. 하지만,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음	유사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의 사용가능에 관한 명문규정 있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 상거래	공정가치만 인정	공정가치가 원칙이나 비상장기업은 내재가치를 선택할 수 있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희석화방지조항		명문규정이 없음	희석화방지조항에 따른 조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변경으로 보지 않음
재부여주식선택권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	명문규정이 없음
공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 주식선택권과 같은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도 주식선택권과 같은 공시를 요구함

2) 관련 법인세법 규정¹²⁵⁾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¹²⁶⁾.

125)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세법규정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업의 부당행위부인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8.12.26. 폐지)이며, 부여받은 종업원에 대한 처리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와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에 규정되어 있음.

1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2009. 2. 4. 개정). 또한 이러한 비용을 자회사나 모회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시

이러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의 가득과정 중에 기업 회계상 인식한 비용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가득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이에 대한 과세소득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즉, 세법에 따르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실제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식결제형의 경우 발생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형의 경우 발생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가득과정이 완료된 이후, 주식선택권 행사 시 신주발행인 경우 행사 시점에는 자본거래 관점에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으며¹²⁷⁾, 자기주식발행교부의 경우 실제 자기주식의 지급 시점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산입(기타) 또는 손금산입(기타)하고, 자기주식과 상계한 주식매입선택권은 손금산입(기타)한다¹²⁸⁾. 현금결제형의 경우 실제 행사 시점에서는 가득과정 중에 손금불산입하였던 항목을 추인하기 위하여 손금산입(유보) 한다.

또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주식과 현금 등이 부당행위계산요건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요건¹²⁹⁾에 해당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¹³⁰⁾.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후, 이를 다시 자본전입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의

행령 제19조).

127) 서면2탐-2484, 2004. 11. 19.

128) 서면2탐-157, 2005. 1. 25.

129)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2009. 2. 4.의 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로 이관이 되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8호의2에 규정되어 있음.

130)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2009. 2. 4.의 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로 이관되었음.

제배당으로 과세된다¹³¹⁾.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¹³²⁾,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¹³³⁾.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 제1102호는 K-GAAP 제22호와 거의 유사하므로, K-IFRS가 시행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처리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식보상과 관련된 K-IFRS의 도입으로 부각되는 세법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세법의 영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가) 가득기간의 비용인식

K-IFRS에 의하면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¹³⁴⁾.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가득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이에 대한 과세소득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인식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주식결제형의 경우 발생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형의 경우 발생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

13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3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133) 소득세법 제21조

134) K-IFRS 제1102호 문단11, 15 및 30.

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법과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K-IFRS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평가방법을 세법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법인세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옵션에 관한 명확한 평가규정의 신설

K-IFRS에서는 주식매입선택권으로 부착된 옵션의 가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세법에서는 옵션가치를 평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옵션의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옵션 행사로 인식할 근로소득 금액을 옵션 행사 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를 순수한 옵션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가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주가의 변동 등이 포함된 가액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옵션의 가치가 포함된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이 일관적이지 않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평가방법은 상증 세법시행령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도 옵션가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 앞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평가방법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을 계기로 옵션가치에 대한 세법상 평가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 근로소득에 포함된 자본이득의 분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행사 시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을 모두 근로소득¹³⁵⁾ 또는 퇴직소득¹³⁶⁾으로 과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인식되는 비용은 가득일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이후에 가치

가 변동한 부분은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에 세법에서는 가득일 이후에 행사하더라도 행사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치변동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본이득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득기간 중에 비용을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행사 시점에 일시에 근로소득에 포함하므로 결집효과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자본이득 해당분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하며, 행사 시점에 일시에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결집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18>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가득기간의 비용	비용으로 인식	비용으로 인식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음	규정 간의 차이로 세무조정	현재 규정 유지
옵션에 관한 평가규정 도입	옵션가격결정 모형 등을 상세히 제시	옵션가격결정 모형 등을 상세히 제시	옵션평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	정확한 옵션가치의 분리가 어려움. 옵션이 부착된 개별 금융상품별로 각기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됨	세법상 옵션에 대한 통일적인 평가 원칙의 제시가 필요함
근로소득에 포함된 자본이득	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에 발생함	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에 발생함	근로소득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	근로소득에 자본이득이 포함되므로 소득의 분류에 차이가 발생함	근로소득에서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보완

135)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136) 소득세법 제21조.

마. 환율변동효과

환율변동효과에 대하여는 IFRS 기준서 IAS 21 “The Effect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K-GAAP 제 68조~제69조의 2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등에서 업종별로 외화환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에 K-GAAP의 제69조의 2를 개정하여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여, K-IFRS의 도입에 대비하였다.

이에 먼저 K-IFRS와 K-GAAP을 비교하여 회계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세무조정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환율변동효과는 거래에 대하여 환산을 하는 경우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환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율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통화¹³⁷⁾ 및 표시통화¹³⁸⁾를 결정한다. 이후 환율변동효과는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므로 이 순서대로 정리한다.

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환산

외화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K-GAAP와 K-IFRS 간에 적용상의 차이가 없다. 즉 K-GAAP와 K-IFRS 모두 외화자산·부채를 화폐성과 비화폐성으로

137)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K-IFRS 제1-21호 문단8).

138)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K-IFRS 제1-21호 문단8).

나누고, 화폐성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발생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에 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① 화폐성자산·부채의 범위

화폐성자산·부채의 범위는 K-IFRS와 K-GAAP 간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K-IFRS는 화폐성 자산·부채라고 하더라도 해외사업장에 대한 화폐성 채권·채무(매출채권·매입채무제외) 중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로 간주한다¹³⁹⁾. 별도재무제표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¹⁴⁰⁾. 이는 K-GAAP이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하여 발생한 외환차이에 대하여 예외없이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② 환산방법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방법은 보고기간 말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 K-IFRS와 K-GAAP 간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방법은 차이가 있다. 비화폐성 자산·부채의 결산일 보고에 대하여 K-GAAP에서는 자산부채의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¹⁴¹⁾. 이에 비하여 K-IFRS에서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139) K-IFRS 제1021호 문단15.

140) K-IFRS 제1021호 문단32.

141) K-GAAP 제68조 제2항.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해야 하므로 K-GAAP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평가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되므로 외화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③ 은행업처리준칙에 따른 차이

K-GAAP에 해당하는 현행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할 때 화폐성·비화폐성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의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며, 발생한 손익은 전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¹⁴²⁾. 이에 비하여 K-IFRS에서는 이러한 예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

기업이 기능통화를 도입하더라도,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¹⁴³⁾.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표시통화에 대한 제한은 없다. 표시통화로 환산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 재무제표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¹⁴⁴⁾. K-IFRS에서는 표시통화로 환산에서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¹⁴⁵⁾하의 통화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구별이 없고, K-IFRS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하의 통화가 아닌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K-IFRS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⁴⁶⁾.

142)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30.

143) K-IFRS 제1021호 문단38.

144) 일반적으로 “표시통화환산손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함.

145) 초인플레이션의 판단기준은 K-IFRS의 문단3을 참조.

146) K-IFRS 제1021호 문단42 및 문단43.

첫째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하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제표를 표시 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를 포함)의 자산과 부채에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의 수익과 비용에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단 손익과 관련해서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하의 통화인 경우로 표시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모든 금액(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을 포함)을 재무상태표의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하의 통화인 경우이며 표시통화가 초인플레이션하의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금액으로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하의 통화인 경우에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여 환산하기에 앞서 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이용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환산해야 한다.

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은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과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외화환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⁴⁷⁾.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해외사업장은 보고기업과는 다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므로 보고기업과는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사업

147) 해외사업장 취득 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이에 대한 환산은 앞에 언급한 표시통화로의 환산과 동일하기에 그 내용을 생략함.

장의 외화환산은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K-IFRS에서는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에 대하여 앞의 나)에서 설명한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가)의 보고기간 말 환산규정과 동일하게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할 수 있다¹⁴⁸⁾. 그리고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자산·부채, 손익항목 등에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한다¹⁴⁹⁾.

또 다른 차이로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결산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나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차이가 있다. K-IFRS와 K-GAAP의 차이는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의 재무상태표의 보고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환산에 대한 처리이다. 먼저 K-GAAP에 의하면 보고기업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두 기간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적절히 반영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는 보고기업 결산일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그 차이가 중요

148) K-GAAP 제69조.

149)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31조.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결산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K-IFRS도 동일하게 규정하되 적용환율은 보고기업 결산일의 환율이 아닌 해외사업장의 결산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외화환산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란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금액”이다¹⁵⁰⁾. K-IFRS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K-GAAP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K-IFRS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 재무제표에는 투자주식 등의 항목으로 표시되며, 이러한 투자주식은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에 외환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사업장에 대한 화폐성 채권·채무(매출채권·매입채무 제외) 중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로 간주한다¹⁵¹⁾. 이러한 항목은 앞에 언급한 화폐성 항목의 외화환산방법을 적용하므로 환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¹⁵²⁾.

K-IFRS와 K-GAAP과의 또 다른 차이는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상했던 외환차이(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을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해외사업장의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 K-IFRS가 명시적으로 외환차이(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 중 처분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K-GAAP에서는 별도로 언급한 바가 없다.

150) K-IFRS 제1021호 문단8.

151) K-IFRS 제1021호 문단15.

152) K-IFRS 제1021호 문단32.

2)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의 개념이 없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원화재무제표를 전제로 한다. 즉,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원화”로서 동일하다는 전제를 두고, 외화로 거래된 경우에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외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법인세법은 일반법인(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산 평가손익은 손금불산입이나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다. 이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인정¹⁵³⁾하고, 화폐성·비화폐성의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¹⁵⁴⁾.

나)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국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의 환산은 <표 Ⅱ-19>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한다¹⁵⁵⁾. 법인은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방법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53)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154)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155)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 ... 4.

〈표 II-19〉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1호의 방법	2호의 방법	3호의 방법
화폐성 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행환율	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행환율	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행환율
기타 자산·부채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역사적 환율		
손익계정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역사적 환율	평균환율*	
처리방법	환산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환산차손익을 해외사업환산차(또는 대)로서 국외지점별로 이연처리하고 이후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차(또는 대)와 상계 후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2호의 방법과 동일

* 외국환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이상의 방법 중 제2호의 방법이 K-IFRS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기능통화의 도입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법에는 기능통화의 개념이 없고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원화”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통화로 계산된 재무제표는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표시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외화환산과 관련해서는 기능통화의 도입 여부에 따라서 원화로 계상되는 외화환산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의 외화환산손익이 외화와 기능통화의 환율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환율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차이 때문에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 세무상 계산한 환산손익과 회계상 계산한 환산손익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간단하지만, 은행업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기능통화가 달러(\$)이고 표시통화가 원화(₩)인데, 외화인 엔(¥) 거래를 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은행이 일본에서 1,000엔(¥)을 차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거래일별 환율은 다음과 같다(원화/달러의 평균환율은 1,320원/1달러임).

	거래일	결산일
원화/엔화	1,300원/100엔	1,200원/100엔
달러/엔화	1달러/100엔	1.1달러/100엔
원화/달러	1,350원/1달러	1,300원/1달러

위의 상황에서 K-IFRS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화환산손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K-IFRS상 외화환산손실

$$\begin{aligned} \text{외화환산손실} &= (1,000\text{¥} \times (1.1\$/100\text{¥})) - (1,000\text{¥} \times (1\$/100\text{¥})) \\ \text{(기능통화)} &= (11\$ - 10\$) = 1\$ \end{aligned}$$

(거래환율을 기능통화의 환율로 환산하여 기능통화로 표시된 F/S에 나타난 외화환산손실임)

$$\begin{aligned} \text{외화환산손실} &= 1\$ \times 1,300\text{₩} = 1,300\text{원} \\ \text{(표시통화)} & \end{aligned}$$

(기능통화로 표시된 F/S를 표시통화인 원화 F/S로 환산한 외화환산손실임)

•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손실

$$\begin{aligned} \text{외화환산손실} &= (1,000\text{¥} \times (1,300\text{₩}/100\text{¥})) - (1,000\text{¥} \times (1,200\text{₩}/100\text{¥})) \\ &= 13,000\text{원} - 12,000\text{원} = 1,000\text{원} \end{aligned}$$

② 개정방향

K-IFRS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법인세법에도 회계기준과 같이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법은 일반법인의 외화환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능통화의 도입 여부는 금융업의 외화환산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K-IFRS의 도입으로 외화환산체계가 바뀌는 부분은 외화환산에 따른 문제가 금융업에 국한된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위한 외화환산체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K-IFRS에 맞추어 법인세법에 기능통화를 도입하거나 금융업에 한해서는 K-IFRS의 환산손익을 준용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금융업 이외의 업종이라도 외화거래가 많은 일반법인의 경우 K-IFRS 도입 이후에는 기업회계상 기능통화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의 도입이 금융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법에 기능통화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기능통화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조정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한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해당 기업의 세무조정의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한 기업에 한하여 K-IFRS에 의한 외화환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¹⁵⁶⁾.

나) 기능통화 도입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산정 방법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K-IFRS에 의하여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

156) 만일 기업이 원화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한다면 외화와 기능통화 간의 환율차이로 인한 손익이 재무제표에 자동반영이 되는데, 법인세법에서 기능통화를 인정할 경우 이 금액도 인정하여야 함.

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표시통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에서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어느 재무제표를 이용하느냐에 대한 규정을 법인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K-IFRS에 의하면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¹⁵⁷⁾,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간편할 것이다. 즉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외화환산손실을 계상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K-IFRS와 K-GAAP은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발생일의 기능통화 금액과 결산일의 기능통화의 금액으로 외화환산손익(손익계정)을 계상하고 이렇게 결정된 전체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외화환산손익(자본계정)을 계상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의 개념이 없으므로 외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따른 손익이 외화환산손익이 되고, 국외지점 등이 외화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기말 시점에 개별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¹⁵⁸⁾.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은 이를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K-GAAP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K-IFRS의 도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은

157) K-IFRS 제1021호 문단38.

158)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 ... 4 제4항.

아니다. K-IFRS의 도입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화폐성 자산·부채의 범위, 환산방법, 은행업처리준칙에 따른 차이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성 자산·부채의 범위가 차이 나는 부분은 해외사업장의 화폐성 채권·채무(매출채권·매입채무 제외) 중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대한 외화환산이다. 이 경우, K-GAAP하에서는 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했던 반면, K-IFRS에서는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둘째, 환산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비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산과 관련하여 K-GAAP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환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K-IFRS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기에, K-IFRS에 의하여 처리된 공정가치평가를 부인하고 역사적 원가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차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화환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은행업과 일반법인을 별도로 취급한다. 즉, 일반법인의 외화환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은행업의 경우에는 화폐성·비화폐성의 구분없이 사업기간 종료일의 적절한 환율로 외화환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K-IFRS는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은행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화환산을 하여야 한다. 즉 현행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는 달리 K-IFRS는 화폐성·비화폐성을 구분한 뒤, 화폐성 항목은 외화환산하고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항목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인세법과 차이가 생겨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즉 K-IFRS에서는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은행업에서 발생한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화환

산손익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¹⁵⁹⁾.

② 개정방향 : 은행업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

앞에서 언급한,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우선 일반업종과 달리 은행업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의 인정 여부와, 이를 인정할 경우 K-IFRS와 법인세법에서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법인세법은 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반업종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은 K-IFRS 도입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업종의 기업 가운데에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국제화/세계화됨에 따라 외화가 주거래 통화인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능통화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법에서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애로가 클 것이다. 이에 일반업종의 기업 중에서 기능통화로 장부를 기록하는 기업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K-IFRS에 의하여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외화환산방법을 법인세법에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인정하는 금융업에 대한 외화환산을 K-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인세법에서는 은행업무에 속하는 외화의 취급을 과세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일반업종과 달리 금융업에 대한 외화평가를 인정하여 왔다. 이에 외화를 다루어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159) 금융기관의 평가조정은 강제조정사항으로 은행이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해야 함.

반영하여 K-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상 금융업에 대한 외화환산 손익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법인세법과 K-IFRS에서 규정한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방향이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화폐성·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기에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화폐성·비화폐성의 구분 없이 외화환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은행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에, K-IFRS의 도입이 후에도 현재의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을 별도로 하는 등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화환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법과 K-IFRS의 규정에 보면 구체적인 화폐성·비화폐성 항목에 속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K-IFRS에서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화폐성 채권·채무 중 미래 결제계획이 없는 부분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로 간주하면 이 부분은 화폐성 항목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화폐성·비화폐성 항목의 구분에 대한 것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화폐성·비화폐성 항목의 구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환산방법의 불일치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의 환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세 가지 방법을 정하고¹⁶⁰⁾, 이 방법 중에 기업이 선택 적용하도록 하여 K-GAAP과의 차이

160)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따른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결산일의 환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은행업도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의 환산 시에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K-IFRS의 손익인식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에서 정한 2호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그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던 기업이 이 방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회계상 환산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세무상 환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은 이러한 변경을 임의변경으로 보고 있다¹⁶¹⁾. 또한 환산방법을 임의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6항에서 3호의 방법을 강제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세무상 임의변경으로 볼 경우, K-IFRS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의 환산과 법인세법상 재무제표의 환산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② 개정방향

법인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K-IFRS의 도입에 따라 금융업에 도입되는 외화환산시스템은 K-IFRS와 법인세법을 위해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법인세법의 규정을 K-IFRS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K-IFRS의 도입으로 금융업의 외화환산시스템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1) 법인1264.21-2394, 1984.07.21.

4)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변동효과의 내용은 <표 II-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20>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기능통화의 개념		있음	있음	없음	- 외화환산 인식범위 차이	K-IFRS와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보고 기간 말 환산 (외화→ 기능통 화)	일반 업종	- 화폐성 항목 : 마 감환율 -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	- 화폐성 항목 : 마감환율 - 비화폐성 항목 ① 역사적 원가로 측정 된 항목 : 거래일 환율 ② 공정가치로 측정된 항목 : 공정가치 결정 날의 환율	- 일반업종 : 환산을 인정 안함	미실현 손 익의 과세	현행 유지, 단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 로 K-IFRS와 일치하는 방 향으로 개정
	은행 업	- 모든 외화자산/ 부채를 보고기간 말의 환율	- 은행업도 화폐성·비화 폐성으로 구분하여 일반 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업종별 예외없음)	- 모든 외화 자산, 부채 및 통화선 도/통화스 왓은 환산	- 복잡한 세무조정 - 별도 장부 의 유지	- K-IFRS와 장기적으로 는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표시통화로의 환산 (기능통화→ 표시통화)		- 자산/부채 : 기말 환율 - 손익항목 : 해당 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 우 ① 자산/부채 : 기말환율 ② 손익항목 : 해당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 모든 금액을 보고기간 말 일의 환율	- 기능통화 개념이 없 기에 이와 관련된 규 정이 없음	- 세무조 정등의 혼선이 예상	- K-IFRS와 장 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방 향으로 규정 을 마련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 산을 위한 재무제표로 인정

〈표 II-20〉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환산	-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 단, 독립적인 해외지점 등에 대해서는 자산·부채는 결산일환율, 자본은 발생 당시 환율, 손익은 거래당시 환율이나 평균환율 가능 - 환산손익은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 해외지점 등이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표시통화로의 환산과 동일) -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우 ① 자산/부채: 기말환율 ② 손익항목: 해당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모든 금액을 보고기간 말일의 환율 - 환산손익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	- 3가지 방법 중 선택적 용하고, 은행업의 경우에는 전 체 재무제표 항목을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 가능 - 방법변경 시 임의변경으로 3호의 방법을 적용	- 환산 방법이 선택적임 - 임의변경 시의 문제	- K-IFRS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현행 2호의 방법) - 임의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할 필요성
화폐성·비화폐성 구분범위	예외없음	해외사업장의 화폐성 채권·채무 중 화폐성으로 보지 않는 부분 있음	예외없음	-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필요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비화폐성자산·부채의 공정가치환산	없음	있음	없음	- 공정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현행규정 유지

바. 법인세

법인세에 관한 회계기준은 K-IFRS 제1012호 “법인세(Income Tax)”와 K-GAAP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K-IFRS 제1012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12 “Income Tax”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우선, 법인세에 대한 K-IFRS 제1012호를 위주로 기술한 후, K-GAAP 제16호와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가) K-IFRS 제1012호의 주요 내용

①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총액을 의미한다¹⁶²⁾.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이고, 이연법인세와 관련한 손익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순증감액 중 자본에 가감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제외¹⁶³⁾한 금액이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및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다.

162) K-IFRS 제1012호 문단5.

163) 자본에 가감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자본에 직접 반영하므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음.

②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말한다. K-IFRS에서는 세무기준액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K-IFRS 제1012호 문단7과 8에 의하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고,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일시적 차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구분된다. 첫째,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 결정 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이다. 둘째,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 결정 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이다.

③ 당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당기 및 전기 이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당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¹⁶⁴⁾. 따라서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¹⁶⁵⁾.

④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① 영업권¹⁶⁶⁾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②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

164) K-IFRS 제1012호 문단12.

165) K-IFRS 제1012호 문단13.

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¹⁶⁷⁾가 아니며,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¹⁶⁸⁾.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는, ①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 차이를 통제할 수 있고, ②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¹⁶⁹⁾.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①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②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¹⁷⁰⁾. 매 보고기간 말에는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¹⁷¹⁾.

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당기 이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

166) 영업권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되지 않음. 왜냐하면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임(K-IFRS 제1012호 문단21).

167) 사업결합원가는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배분됨. 사업결합이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세무기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침(K-IFRS 제1012호 문단19).

168) K-IFRS 제1012호 문단15.

169) K-IFRS 제1012호 문단39.

170) K-IFRS 제1012호 문단24.

171) K-IFRS 제1012호 문단37.

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¹⁷²⁾.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¹⁷³⁾.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¹⁷⁴⁾.

⑥ 재무제표상 표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최소한으로 표시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¹⁷⁵⁾.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으로 표시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¹⁷⁶⁾. 다만, 기타포괄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¹⁷⁷⁾. 결국, 기타포괄손익에 관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단된 영업과 관련된 영업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¹⁷⁸⁾. 이 경우에는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에 관한 사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¹⁷⁹⁾.

172) K-IFRS 제1012호 문단46.

173) K-IFRS 제1012호 문단47.

174) K-IFRS 제1012호 문단51.

175) K-IFRS 제1012호, 문단13.

176) K-IFRS 제1012호, 문단13.

177) K-IFRS 제1012호, 문단18.

178) K-IFRS 제1015호, 문단33(1).

179) K-IFRS 제1015호, 문단33(2).

나) K-IFRS와 K-GAAP의 비교

K-IFRS 제1012호와 K-GAAP 제12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가액의 정의 도입

K-IFRS에서는 세무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무가액에 대한 정의는 K-GAAP에서도 이미 간략하게 제시한 바가 있으므로, K-IFRS에서의 정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GAAP에서 자산·부채의 세무가액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가액을 말하며, 이는 세무상 자산·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K-IFRS에서의 자산·부채 세무가액은 세무목적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이다. 즉, 자산의 세무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의 경제적 효익에서 차감될 금액이며 부채의 세무가액은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목적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¹⁸⁰⁾.

②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완화

K-GAAP 제16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되었으나, K-IFRS 제1012호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¹⁸¹⁾. 따라서 K-IFRS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180) K-IFRS 제1012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단1.

181) K-IFRS 제1012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단3.

③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인식조건 변경

K-GAAP 제16호에서는 ① 소멸시점의 통제가 가능하고, ②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에 K-IFRS 제1012호에서는 ① 소멸시점의 통제가 가능하고, ②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¹⁸²⁾.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는 K-GAAP보다 K-IFRS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연법인세자산은 K-GAAP보다 K-IFRS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K-GAAP 제16호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 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지만, K-IFRS 제1012호에서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¹⁸³⁾.

⑤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K-GAAP 제16호에서는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 가능하게 된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지만, K-IFRS 제1012호에서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로 보지 않는다¹⁸⁴⁾.

182) K-IFRS 제1012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단4.

183) K-IFRS 제1012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단5.

184) K-IFRS 제1012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단6.

2) 관련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하므로, 기업회계에서의 법인세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¹⁸⁵⁾, 당기법인세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분된다.

이연법인세와 관련한 손익도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에 포함(혹은 상계)되기 때문에,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여 자본계정을 세효과 반영 후의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효과를 반영한 후의 순액으로 표시하게 되면 관련 계정의 금액과 해당 법인세비용이 상계되기에, 해당 관련 계정이나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의 경우¹⁸⁶⁾, 자본에 가산(차감)되는 항목의 금액에서 법인세비용과 상계된 부분은 손(익)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상계된 법인세비용을 익(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 한다. 또한, 자본에 직접 차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경우¹⁸⁷⁾,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된 부분을 관련 자산으로 손금산입(유보)에 포함하여야 하고¹⁸⁸⁾, 동시에 이연법인세금액만큼 자본에서 차감된 부분을 차감된 계정과목의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분한다¹⁸⁹⁾.

185) 법인세법 제21조 1호.

186) 자본에 직접 가산(차감)되는 항목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이 있음.

187) 기업회계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나,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임. 즉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그리고 인수합병 등 사업결합 시 피취득회사의 자산·부채를 기업회계에서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세법에서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회사가 기업회계상 인식하는 영업권을 예로 들 수 있음.

188) 실제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이 금액은 이미 해당과목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임, 즉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평가 시 공정가치와 평가전 금액과의 차이 전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¹⁹⁰⁾으로 보지 아니한다¹⁹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¹⁹²⁾.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법인세비용에 관하여는 모두 취소하여 세전이익 단계부터 과세소득이 계산되므로, K-IFRS 제1012호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세와 관련된 K-IFRS의 도입으로 부각되는 세법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세법의 영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가) 법인세비용 구분이 어려움

K-IFRS의 경우 당기순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단영업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되므로 법인세비용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¹⁹³⁾.

189)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경우, 이연법인세와 상계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평가이익, 기타)과 손금산입(해당자산, △유보)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나, 앞의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해당자산의 평가차익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해당자산, △유보)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조정이 생략 가능함.

190)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191) 서이 46012-10248, 2002. 2. 14.

192) 재산상속 46014-587, 2000. 5. 15.

193) 물론 K-IFRS에 의하면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이나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관

K-IFRS의 도입으로 변경된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의 구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인세비용을 구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과정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과정에서 상계된 법인세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인세비용이 세무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양식을 수정하는 등 세법상 관련 법인세비용의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법인세비용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세법은 법인세비용을 완전히 제거하여 세전기준으로 당기순손익을 계산한 후,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을 구성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분에 따르는 세법상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변화된 회계규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이연법인세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의 세무조정상 이해 가능성을 위하여 통칙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법인세비용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련된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K-IFRS 제1012호 문단81).

〈표 II-21〉 법인세비용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법인세비용 구분의 어려움	세후 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음	세후 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음	모든 법인세비용을 부인하여야 함	상계된 법인세비용이 세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음	부인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을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관련 규정 정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한 법인회계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한 법인회계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당기법인세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 규정함	회계규정에 대응한 세무처리 규정이 미비	통칙 등을 통해 명확한 방법을 제시

사. 중단영업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중단영업”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분류기준

K-IFRS에서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역시 중단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나, K-GAAP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단영업에 대한

K-IFRS와 K-GAAP의 정의는 <표 II-22>와 같다.

<표 II-22> 중단영업의 정의

K-IFRS 제1105호 문단32	K-GAAP 제11호 문단3
○ 중단영업 :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 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이다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이다	○ 중단사업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키는 기업의 일부 (1)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 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 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 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 (2)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 분할 수 있다 (3)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나) 사업중단직접비용

K-GAAP에서는 사업중단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
업중단비용¹⁹⁴⁾을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고 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¹⁹⁵⁾.

반면 K-IFRS에는 사업중단직접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충당부채에 관한 기준서가 적용될 경우, K-GAAP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194) 사업중단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추가적인 퇴직급여, 장기임대자산의 해약으로 인한 해약가산금 등 사업의 중단
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 ② 다른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

195) K-GAAP 제11호 문단16.

다) 중단사업감액손실

K-GAAP에서는 사업중단계획의 발표 시점에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거나 감액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거에 인식한 감액손실을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⁶⁾.

반면 K-IFRS에는 영업중단으로 인한 자산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매각예정자산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K-GAAP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K-GAAP에서는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표시와 공시

K-IFRS에서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 중단영업손익으로 하여 단일금액으로 별도로 표시된다¹⁹⁷⁾. 한편 K-GAAP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주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⁸⁾.

2) 법인세법의 규정

가) 중단사업손익과 관련된 세법규정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는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 매출액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된

196) K-GAAP 제11호 문단18.

197) K-IFRS 제1105호 문단33.

198) K-GAAP 제11호 문단23.

중단사업의 매출액이 모두 포함된다¹⁹⁹⁾.

나) 사업중단직접비용

K-GAAP에서는 사업중단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비용을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고 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가 결정되는바, 사업중단직접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에서는 중단영업의 성과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집계를 위해서는 단일금액으로 표시된 중단영업의 성과를 세부 계정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K-IFRS에 따라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된 경우, 세후 단일금액으로 표시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다²⁰⁰⁾. 이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중단영업의 총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계속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자의적인 분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단사업의 매출액을 해당기업의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 등을 위하여

199) 서면2탐-1304, 2008.06.25.

200) 신현걸 외(2009) p. 1020.

법인세법상 매출액(수입금액)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를 세법에 할 필요가 있다.

4) 중단영업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중단영업”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23> 중단영업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중단영업의 개념	사업중단계획의 발표시점에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회수가 가능 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 하거나 감액전액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거에 인식한 감액손실을 환입함	영업중단으로 인한 자산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각예정자산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K-GAAP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중단영업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없음	기업이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분류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의 자의적인 매출액 분류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매출액의 개념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재무제표의 표시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함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별도로 표시함	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는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 매출액과 중단사업손익에 포함된 중단사업의 매출액이 모두 포함됨	세법상 사용되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집계를 위해서는 단일금액으로 표시된 중단영업의 성과를 세부 계정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함	상계된 법인세금액도 세무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아. 보고기간후사건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10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규정되어 있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보고기간후사건의 정의

K-GAAP에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보고기간 말(즉, 결산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¹⁾. 여기에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²⁰²⁾.

반면 K-IFRS에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보고기간 말(즉,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³⁾. 여기에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²⁰⁴⁾. 만일,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 K-GAAP에서는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201) K-GAAP 제6호 문단3(가).

202) K-GAAP 제6호 문단3(나).

203) K-IFRS 제1010호 문단3.

204) K-IFRS 제1010호 문단5.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 K-GAAP에서는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나, K-IFRS에서는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된다. 한편 경영진이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만으로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²⁰⁵⁾.

나) 보고기간후사건의 인식·측정·공시

보고기간후사건의 인식·측정·공시에 K-IFRS와 K-GAAP 간의 중요한 차이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K-IFRS 제1010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기간후사건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공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K-IFRS에서 보고기간후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구분된다²⁰⁶⁾.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²⁰⁷⁾,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²⁰⁸⁾. 즉,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한다. 이때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란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한 금액뿐만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한 금액도 포함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²⁰⁹⁾.

205) K-IFRS 제1010호 문단6.

206) K-IFRS 제1010호 문단3.

207) K-IFRS 제1010호 문단3.

208) K-IFRS 제1010호 문단8.

209) K-IFRS 제1010호 문단9.

- (1)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2)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
- (3)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4)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②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다²¹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²¹¹⁾.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210) K-IFRS 제1010호 문단3.

211) K-IFRS 제1010호 문단11.

시장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

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²¹²⁾. 다만,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해야 한다²¹³⁾.

- (1) 사건의 성격
- (2)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²¹⁴⁾.

- (1)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²¹⁵⁾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 (2)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 (3) 자산의 주요 구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 (4)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 (5) 주요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
- (6)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 거래와 잠재적 보통주 거래²¹⁶⁾
- (7)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 (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는 변경

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임.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함.

212) K-IFRS 제1010호 문단10.

213) K-IFRS 제1010호 문단21.

214) K-IFRS 제1010호 문단22.

215)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16)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관련 거래는 제외하고 있음.

예고

- (9) 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 (10)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2) 법인세법의 규정

기업회계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²¹⁷⁾. 따라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간 후사건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고 세법규정에 맞게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K-IFRS에서 분류한 사건별로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야 할 세무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실무상 법인세 세무조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법인세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에는 보고기간후사건 중 일부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바²¹⁸⁾, 이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K-IFRS 제1010호 문단9에서 규정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217)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218)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 발생한 경우.

같다.

우선,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법원의 판결로 부채가 확정되는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²¹⁹⁾.

다음으로 결산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확정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²²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인이 전년도 재무제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확정 시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당해연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정산차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로 본다²²¹⁾.

219)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220) ① 사실상 사업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 계약상 조건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서면2탐-1289, 2008. 06. 24).

② 법인이 부동산매매 계약 합의에서 조건부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탐-997, 2006.05.30).

③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 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1563, 2003.09.01).

221) 서면2탐-523, 2006.03.21.

한편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손금산입시기가 달라진다.

- (1)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의 결정시기
- (2) 상여금 산정 시 비계량적 요소의 반영 여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본다²²²⁾. 반면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결정되었으나, 상여금지급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손금산입시기가 달라진다. 즉, 비계량적 요소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²²³⁾, 계량화되는 수치만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²²⁴⁾. 즉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규정은 <표 Ⅱ-24>와 같다.

222) 서면2탐-551, 2006.03.30.

223) 서면1탐-133, 2007.01.23.

224) 서면2탐-1261, 2007.07.10; 법규-1313, 2005.11.29.

사용인 성과상여금을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후 지급한 경우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이러한 처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처리(처분대상 사업연도)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도 일치함.

〈표 II-24〉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결산일 이후에 결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성과배분상여금이 결정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함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결산일 이전에 결정한 경우	지급기준에 비계량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지급기준에 비계량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 처리 잉여금 처분으로 처리(사용인에 한함)	성과배분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견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당해 오류항목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바, 법인세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보고기간후사건과 관련하여 K-GAAP과 K-IFRS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

점이라고 하면 보고기간후사건의 기준일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에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는 달리 세무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일의 변경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결산일 이전에 결정한 경우로서 계량화되는 수치만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가 되기 때문에 K-IFRS 채택 시에도 K-GAAP에 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성과배분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 K-IFRS에서는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해 상여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성과배분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결정된 기준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결산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²²⁵⁾. 이에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현행 법인세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보고기간후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표 II-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5) 법규-1313, 2005.11.29.

〈표 II-25〉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용어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	N/A	N/A	N/A
보고기간후사건의 기준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정기주주총회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용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한 날)	N/A	성과배분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현행 규정 유지
인식·측정·공시	①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함 ②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음	좌동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간후사건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N/A	N/A

3. 자산과 부채

이하에서는 K-IFRS 중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재고자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2 “Inventories”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K-IFRS상 재고자산의 측정 관련 주요 내용을 K-GAAP 및 법인세법상 규정과 비교하고, K-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K-IFRS 제1002호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까지 이를 적절히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준서이다. 이하에서는 K-IFRS 제1002호의 적용범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및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K-GAAP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가) 적용범위

K-IFRS 제1002호의 적용범위는 이에 대응하는 K-GAAP 제10호의 적용범위와 비교하여 적용배제 항목에 대해 적용할 별도의 기준서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와 일부 문단의 적용제외 항목의 규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K-IFRS에서 적용배제 항목으로 열거한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이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서를 두

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재고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를 평가할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실무상 K-GAAP 제10호를 준용하여 왔다²²⁶⁾. 반면, K-IFRS의 경우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에 대해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해당 항목은 실질적으로 K-IFRS 제1002호의 배제항목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K-IFRS의 경우 K-GAAP과는 달리 제1002호 전체 문단에 대한 적용 배제 항목 외에 재고자산의 측정부분만을 적용 배제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고자산에 속하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 즉, 농림어업과 삼림 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K-GAAP하에서는 동 항목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한 평가감만이 가능했던 반면, K-IFRS의 도입으로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적용제외 항목에 대한 K-IFRS와 K-GAAP의 규정내용은 <표 Ⅱ-26>과 같다.

226) 한국회계기준원(2008b) pp. 70~71.

〈표 II-26〉 K-IFRS 제1002호 적용제외 항목

구분	K-GAAP	K-IFRS
(1)재고자산 기준서의 적용제외 항목	•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 하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K-GAAP 제12호 적용) • 금융상품(→K-GAAP 제8호, 제9호 적용) •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 의 재고자산(별도기준없음)	•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K-IFRS 제1011호 적용) • 금융상품(→K-IFRS 제1039호 적용)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K-IFRS 제1041호 적용)
(2)재고자산 기준서의 측정부분 적용제외 항목	없음	•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 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 •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 개기업의 재고자산

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K-IFRS 및 K-GAAP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관련 규정을 보면, 범위에 서 큰 차이가 없다. K-IFRS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 함은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 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²²⁷⁾. 한편, K-GAAP의 경우 매 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⁸⁾.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K-IFRS의 경우 K-GAAP과는 달리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 시점에도 순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재 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동 순공정가치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227) K-IFRS 제1002호 문단10.

228) K-GAAP 제10호 문단6.

K-GAAP의 경우 재고자산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이 선택사항이었던 반면, K-IFRS에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K-GAAP의 경우 취득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으면 K-GAAP의 경우 상대적 판매가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생산량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방법을 적용하여 각 제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K-IFRS에서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분하도록 하면서, 그 예로 상대적 판매가치 기준을 들으로써 보다 유연성 있는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다)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① 원가측정방법 : 표준원가법 허용

K-GAAP하에서는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출가격환원법²²⁹⁾은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⁰⁾. 반면,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재무

229)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230) K-GAAP 제10호 문단20.

보고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²³¹⁾. 따라서 원가관리회계 목적으로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재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원가차이의 회계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원가가 실제원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므로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해야 하는 현재의 회계실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²³²⁾.

② 단위원가 결정방법 : 후입선출법 불인정

K-GAAP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인정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이 중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후입선출법의 경우 흔히 절세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원가의 흐름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을 오래전에 취득한 단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영업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3년 IAS 제2호를 개정하며 후입선출법의 이와 같은 단점을 반영하여 이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의하면 재고자산을 K-IFRS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K-GAAP하에서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해 온 기업의 경우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등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K-GAAP 제10호 문단32에 의하면 후입선

231) K-IFRS 제1002호 문단21.

232) 한국회계기준원(2008b) p. 73.

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제표 작성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저가법

K-IFRS와 K-GAAP에서는 모두 재고자산의 측정과 관련하여 저가법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IFRS에서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²³³⁾. 이때 순실현가능가치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²³⁴⁾. 또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대체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보고 있다. 한편, K-GAAP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다²³⁵⁾. 그리고 시가를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으로, 생산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의 경우 현행 대체원가로 규정하고 있다²³⁶⁾. 따라서 K-IFRS에서 저가법 적용으로 인한 평가액은 K-GAAP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여,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는 처리 역시 K-IFRS와 K-GAAP이 동일하다.

233) K-IFRS 제1002호 문단9.

234) K-IFRS 제1002호 문단6.

235) K-GAAP 제10호 문단5.

236) K-GAAP 제10호 문단24.

라) 재무제표 표시

K-GAAP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의 경우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K-IFRS의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고 있지만 손익계산서상 상세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K-IFRS 제1001호에서 손익계산서 양식을 성격별 표시방법과 기능별 표시방법²³⁷⁾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일관된 조치이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 비정상 감모손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K-IFRS 제1000B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80에 의하면 비정상 감모손실의 경우 손실의 성격상 매출원가보다는 기타비용으로 구분표시하는 것이 의사결정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서 적합한 처리이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에서의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다²³⁸⁾.

또한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와는 별도로 원가법과 저가법

237) K-IFRS 제1001호 문단102 & 문단103(비용의 분류)에서 제시한 비용의 분류방법임.

238)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²³⁹⁾. 그리고 원가법의 평가방법으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등 6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및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신고하지 않고 변경된 방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세무상 재고자산가액으로 하고 있다(〈표 II-27〉을 참조)²⁴⁰⁾.

〈표 II-27〉 무신고 등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구분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무신고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임의변경·기한 후 변경신고	Max[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변경 전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를 적용할 때 재고자산의 측정 관련 세법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기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인정 여부

K-IFRS의 도입으로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239)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240)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K-GAAP하에서는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으로 보았던 반면, K-IFRS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이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이 아닌 한 자본화대상 적격자산으로 보고 있다. 즉, 장기 재고자산의 범위에 대한 기업의 판단 폭이 넓어졌으며, 장기 재고자산으로 판단되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차입원가에 대한 자본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본화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 재고자산의 경우 본 보고서의 “차입원가”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다른 유형 고정자산과 차별하여 자본화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역시 차입원가의 자본화 취지를 살리고 또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줄여 기업의 복잡한 세무조정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장기 재고자산에 대해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후입선출법 인정 여부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인 원가법의 한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한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회사는 회계상 더 이상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평가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기존에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한 회사의 경우, K-IFRS의 도입 시에는 이를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변경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이는 평가방법의 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방법인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세무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한다²⁴¹⁾.

따라서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였던 법인이 K-IFRS의 적용에 따라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의변경에 해당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을 세무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낮은 재고자산 가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LIFO 청산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보유이익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²⁴²⁾. 따라서 이와 같이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급격히 증가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세제를 친기업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이연하거나 분할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현재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만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왔던 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러한 금액을 일정 기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²⁴³⁾.

다) 표준원가법의 인정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표준원가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24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242) 박재환·정도진(2008)에 의하면,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정유업계의 경우 두 개 회사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243) 영국의 경우 회계규정이 변경되어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세무상 효과를 3년에서 6년에 걸쳐 인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둔 바 있음(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 225).

K-IFRS에서는 실제원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표준원가를 인정한다. 그런데 K-IFR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해야 하는 현 회계실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역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⁴⁴⁾. 또는 K-IFRS에서는 “실제원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표준원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표준원가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공정가치 평가항목의 도입

K-IFRS에서는 제1002호의 측정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순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순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은과 같은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이와 같이 별도로 취급하는 이유는 동 재고자산의 경우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존 K-GAAP하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감만이 가능했던 반면, K-IFRS의 도입으로 순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반상품 중개기업으로서 관련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 신고목적상 이를 취소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44) 이 이외에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K-IFRS와 K-GAAP에서는 표준생산량에 의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심판례(국심2004전2029, 2005.7.5.)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경우 기업이 향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가치 평가개념에 의한 평가를 세법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공정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기업의 투기성 무역거래를 방지하고 자의적인 과세이연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와 같이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재고자산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재고자산 관련 규정의 내용은 <표 II-28>과 같이 정리된다.

<표 II-28> 재고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 범위	(1) 적용배제 항목인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 관련 별도의 기준서 없음 (2) 측정부분만을 적용배제하는 항목 별도로 없음	(1) 생물자산과 농림어업 수확물에 대해 제 1041호 적용하여 순공정가치 평가 (2) 측정부분만을 적용배제하는 항목 별도 규정 : 일반상품 중개기업 재고자산 순공정가치 평가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중 인정하는 예외규정 없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현행규정을 유지하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항목 도입 검토

〈표 II-28〉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취득원가	취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차입원가의 자본화 선택가능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강제됨	재고자산의 경우 건설자금이 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를 장기적으로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재고자산의 평가	후입선출법 인정	후입선출법 불인정	후입선출법 인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1) 보유이익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부분 과세이연 또는 분할 납부 (2) 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에만 후입선출법 적용
	표준원가법 불인정	실제원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표준원가법 인정	표준원가법 불인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현행 규정 유지하거나 실제원가와 차이가 적은 경우에 표준원가 인정 검토
재무제표의 표시	손익계산서상 상세 분류표시 규정	손익계산서상 상세 분류표시 규정하지 않음	N/A	N/A	N/A

나.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은 IFRS 기준서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K-GAAP 제5호 “유형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상의 논의점은 인식, 감가상각, 기말의 평가(재평가와 손상차손) 그리고 공시이다. 손상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다루고, 공시는 세무상 중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 논의는 생략한다.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173

인식, 감가상각 그리고 재평가 순으로 K-IFRS와 K-GAAP을 비교하여 회계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세무조정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 K-IFRS과 K-GAAP의 비교

유형자산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의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정의에 해당 하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 농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탐사평가관련 자산, 석유·천연가스 및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은 별도로 분류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²⁴⁵⁾.

가) 인식

① 인식조건의 차이

K-IFRS는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K-GAAP도 K-IFRS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의 수준을 “매우 높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② 후속적 지출 중 별도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의 대체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최초로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발생하

245)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은 K-IFRS 제1105호, 농업활동과 관련된 생물 자산은 K-IFRS 제1041호, 탐사평가관련 자산은 K-IFRS 제1106호를 참조.

는 최초원가뿐 아니라 증설, 대체, 수선,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후속적 지출도 포함될 수 있다. 후속적 지출이 발생하고 해당 후속적 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유형자산의 원가가 증가한다.

이러한 후속적 지출이 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래 유형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는 K-IFRS와 K-GAAP에 차이가 있다. 먼저 K-IFRS는 원래 유형자산의 원가를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체 시 해당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K-GAAP의 경우에는 원래 유형자산의 원가를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할 때 해당 부분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③ 취득원가의 결정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된다. 원가는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지급하는 대가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화폐성자산 등인 경우에는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단, 비화폐성자산을 교환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화폐성자산의 장부가액이 원가가 된다²⁴⁶⁾.

이 외에 취득원가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및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원가가 있다.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취득원가에서 차감

246) 교환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의 경우, 투자부동산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투자부동산의 내용을 참조 바람.

한다. 또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²⁴⁷⁾.

취득원가의 결정에 대한 K-IFRS와 K-GAAP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취득원가 결정 시 고려되는 복구원가의 범위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II-29>와 같다.

<표 II-29> 취득원가의 구성요소 중 복구원가¹⁾

	K-IFRS	K-GAAP
복구추정 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취득원가에 포함	좌동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취득원가에 포함 단,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제조원가로 처리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

주: 1) K-IFRS 제1016호 문단16 및 18, K-GAAP 제5호 문단13.

K-GAAP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복구원가만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그 사용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복구원가는 물론 사용 결과로 발생한 복구의무에 대하여도 모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하고, 이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수익과 비용의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 당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

247) K-IFRS 제1016호 문단16.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대상,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IFRS와 K-GAAP의 차이를 중심으로 감가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 구성요소에 대한 재검토

K-IFRS에서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재검토 결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 적용)으로 처리한다²⁴⁸⁾.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정이 없고,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러한 변경을 회계방법의 변경(소급법 적용)으로 처리한다²⁴⁹⁾.

② 감가상각대상의 구분: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의 구분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을 어떤 수준에서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다. 즉, 유형자산을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K-IFRS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부분의 원가가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⁰⁾. 이에 따라 취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개별자산이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가 해당 전체자산과 상이하다면 전체 해당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²⁵¹⁾. 이에 비하여 K-GAAP은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

248) K-IFRS 제1016호 문단51, 문단61.

249) K-GAAP 제5호 문단10.

250) K-IFRS 제1016호 문단43.

251) 항공기나 선박과 같은 경우, 취득원가 비중이 중요한 개별 구성요소(예를 들어, 엔진 등)를 항공기나 선박 전체와는 다른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로 상각할 수 있음.

는 개별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 형태가 다른 경우에 상각률과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²⁾. 요약하면 유형자산을 별도로 감가상각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K-IFRS는 중요성을 제시했고, K-GAAP은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 형태의 차이를 제시한다.

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재평가)

재평가는 K-IFRS의 도입에 따라 유형자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다. 즉, 기존에 역사적원가로만 유형자산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공정가치와 역사적원가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K-GAAP 제5호에 의하면 역사적원가에 의한 원가모형만이 인정되었으나, 2009년 1월 14일에 이를 개정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K-GAAP과 K-IFRS에 차이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으며,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30>과 같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하여 K-IFRS와 K-GAAP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52) K-GAAP 제5호 문단10.

〈표 II-30〉 재평가 관련 내용정리

항목별	공정가치
재평가모형의 적용단위	• 유형자산을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기준으로 몇 개의 분류로 나누어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가능함 • 자산분류별로 재평가모형의 적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음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간의 변경	회계변경에 해당. 단,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임(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 곤란)
재평가주기	강제된 주기는 없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의 중요성에 따라 재평가 빈도를 결정
재평가회계처리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재평가차익으로 계상 •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증가: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감소: 당기손익 • 기 인식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관련 자산의 제거 시 당기손익에 반영
재평가 회계처리단위	개별자산단위

①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정의된다. K-IFRS와 K-GAAP이 모두 공정가치에 대하여 자산의 형태별로 규정하되 K-GAAP은 공정가치에 대한 시장증거가 없고 거의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표 II-31〉을 참조).

〈표 II-31〉 유형자산의 유형별 공정가치

유형	공정가치
토지와 건물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하고 시장에 근거한 증거로 결정
설비장치와 기계장치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
공정가치에 대한 시장증거가 없고 거의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이익접근법 : 당해 자산으로부터 미래 창출될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측정 • 상각후대체원가법 : 현재 상태(경과연수, 상태, 진부화 정도 등)를 고려한 자산의 대체원가(재취득원가)로 공정가치를 측정

② 재평가 시 장부가액조정방법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이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K-IFRS에 의하면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누계액을 정하는 방법이다. K-GAAP에서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고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인세법의 규정

이 부분은 유형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전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 검토한 K-IFRS와 K-GAAP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유형자산에 대한 K-IFRS의 도입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가) 인식

인식부분에서 K-IFRS와 K-GAAP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인식조건
의 차이, 후속적 지출 중 별도 인식하지 않은 자산의 대체, 복구원가이
다. 이 중 회계상 인식조건은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해당하는 부분
이며, 구체적인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생략한다. 인식조건의 차이 외에
K-IFRS와 K-GAAP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
본다.

① 후속적 지출 중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자산의 대체

K-IFRS에서는 후속적 지출이 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되
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²⁵³⁾ 관련 규
정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상각의제규정이다.

K-GAAP과 K-IFRS의 차이가 발생했던 대체자산의 별도인식 여부에 따
라 법인세법상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즉시상각의
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대체자산의 별도인식 여부가 아니라 회계상의 자산
의 대체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
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²⁵⁴⁾. 또한 폐기와 관련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서는 대체되는 부분이 일부폐기인지 일부부품의 교체인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5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254) 예규 서면2탐-630, 2007.04.10.

② 복구원가의 처리

우선 취득원가의 결정에 법인세법과 K-IFRS 간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대한 복구원가에서는 법인세법과 K-IFRS 간에는 차이가 있다. 회계상 복구원가는 복구원가의 발생이 예정된 시점에 발생 가능한 복구원가를 추정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으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복구추정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및 복구시점에 복구에 대한 회계처리도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취득 당시에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복구추정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결과 K-IFRS와 비교하여 취득원가가 적게 계상되고, 복구원가부분을 감가상각하는 등의 절차는 발생하지 아니한다²⁵⁵⁾.

나) 감가상각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대상,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K-IFRS에 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는 법인의 자의적인 이익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상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이고, 정률법을 적용할 때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잔존가액의 비율은 5%로 규정하고 있다²⁵⁶⁾. 내용연수도 기업의 임의적 선택을 가급적 배제하여 자산별·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⁵⁷⁾. 감가상각방법은 고정자산의 종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유무에 따라 <표 Ⅱ-32>와 같이 달라진다.

255)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256)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25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표 II-3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구분		상각방법신고	상각방법 무신고
유형 고정 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무형 고정 자산	광업권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사용수익기부 자산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사용수익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	
	주파수이용권과 공항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기타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IFRS와 K-GAAP이 차이를 보이는 감가상각 구성요소에 대한 재검토 부분과 감가상각대상의 구분기준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구성요소에 대한 재검토는 의무적이지 않다. 오히려 내용연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내용연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²⁵⁸⁾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258)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얻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의 재변경도 금지한다²⁵⁹⁾. 또한 변경내용연수를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²⁶⁰⁾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누계액의 계산은 개별자산별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²⁶¹⁾, 개별자산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다) 재평가

법인세법상은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감액손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감액손실에 대해서는 K-IFRS의 손상차손 등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²⁶²⁾.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259) 변경내용연수를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60)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다음과 같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절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61)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262)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대한 논의를 참조.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자산의 대체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는 자산의 대체 시 대체에 대응되는 기존 자산의 원가를 즉시 비용화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대체가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제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K-IFRS에 의하여 자산처리손실(자산폐기손실)로 계상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② 개정방향

대체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면서 K-IFRS에 의하여 계상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즉시상각의제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회계상의 “자산의 대체”를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둔 취지는 감가상각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과정이지만, 자산의 폐기 등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 중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기에 상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익에 대응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IFRS 제1016호의 규정에서 정한 자산의 대체 시 대체되는 부분에 대응되는 자산의 원가는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현행 법인세법의 즉시상각의제의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조건없이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자산의 대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법인세법상 현행 기준에 보충적인 기준(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하의 자산대체)을 추

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 복구원가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법상 복구원가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는 세법의 취지에 따라 취득원가에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K-IFRS에 비하여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복구원가만큼 적게 계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33>과 같다.

<표 II-33> 복구원가 관련 세무조정

	K-IFRS	법인세법	세무조정
복구원가의 추정	취득원가+ 복구추정원가	취득원가	없음
복구추정원가의 상각	감가상각비	-	상각액부인
복구추정부채의 이자	이자비용	-	이자부인
복구비 발생	복구추정부채차감	-	상각부인액·이자부인액 추인

② 개정방향

복구원가의 추정은 기업의 자의적인 추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법인세법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감가상각 구성요소의 재검토

K-IFRS에서 규정한 감가상각 구성요소의 재검토에 대한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는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재검토를 강제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빈번하게 검토하게 되면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K-IFRS에 따르면 감가상각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되며 전진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결정한 감가상각 구성요소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에 따라 K-IFRS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 구성요소가 변경되고, 세무상 감가상각 구성요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상 감가상각 구성요소가 변경되어 감가상각비가 달리 계상되더라도 세무상 감가상각은 기존대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시부인하면 된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세무상 감가상각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K-IFRS는 감가상각 구성요소의 변경에 따른 효과도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변경시점에서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② 개정방향

감가상각 구성요소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회계상 재검토를 위한 업무는 과중될 수 있지만 세무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가상각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회계와 세무가 다른 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기준을 달리 둔 이유가 기업의 자의적인 감가상각비 계산을 방지하려는 취지였으므로 이 취지에 반하여 회계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감가상각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감가상각대상의 구분: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유형자산을 별도로 감가상각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K-IFRS는 중요성을 제시했고, K-GAAP은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형태의 차이를 제시한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별도로 감가상각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은 없고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세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에서는 K-IFRS에 따라 판단한 감가상각대상을 개별자산으로 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특정 구성요소의 취득원가가 중요하여 K-IFRS의 규정에 따라 전체 해당자산과 다른 내용연수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²⁶³⁾, 이를 법인세법상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 체계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가능한 한 자산의 유형별로 단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갖는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K-IFRS에서와 같이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의 세법상 인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 재평가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법은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기업이 재평가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법을 기준으로 관련된 손익을 모두 부인한다. 참고적으로 재평가법을 선택한 기업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에 세무조정을

263)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 특정 구성요소를 항공기나 선박과는 다른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임.

살펴보면 <표 II-34> 및 <표 II-35>와 같다.

<표 II-34> 재평가로 인해 공정가치 증가 시 세무조정

	K-IFRS	법인세법	세무조정
재평가 시	공정가액 증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상	—	기타포괄손익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
감가상각 시	공정가액 증가부분만큼 감가상각과대계상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리
매각 시	공정가액 증가부분만큼 매각손실(이익)이 과대(과소)	매각손실 인식	매각손실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리

<표 II-35> 재평가로 인해 공정가치 감소 시 세무조정

	K-IFRS	법인세법	세무조정
재평가 시	공정가액감소는 당기 손실로 계상	임의평가감	고정자산평가손실을 임의평가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
감가상각 시	공정가액 감소부분만큼 감가상각과소계상	—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만 결산 조정된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없음
매각 시	공정가액 감소부분만큼 매각손실(이익)이 과소(과대)	매각손실 인식	매각손실의 일부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를 추인

특히 자산의 공정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세무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련 예규 중에는 기업회계상 기준을 충족했던 감액손실을 세무상 일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다²⁶⁴⁾. 그러나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재평가손실에 비하여 감액 전

264) 예규 서이46012-10463, 2003.03.10.

원가로의 회복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상대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있는 재평가손실과 동일하게 판단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²⁶⁵⁾. 이에 따라 자산의 공정가치감소분을 법인세법상 임의평가감으로 볼 경우 앞의 표와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앞서 설명한 세무조정 사항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²⁶⁶⁾

A회사는 2009년에 건물을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건물은 회계와 세무상 모두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으로 상각한다. 2009년 말에 이 건물을 950,000원으로, 2010년말에는 780,000원으로 각각 재평가하였다. 재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조정방법은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누계액을 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2011년 말에는 해당 자산을 75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265)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에서는 공정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액손실과 동일하다는 견해를 표하고 있음(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p.73).

2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의 pp.75~76의 사례를 수정한 것임.

2009년					
분개	건물취득	차) 건물	1,000,000	대) 현금	1,000,000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재평가(95만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0	대) 포괄손익	50,000
관련 계정금액	〈회계상〉		〈세무상〉		
	건물	1,000,000	건물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u>50,000</u>	감가상각누계액	<u>100,000</u>	
	순장부가액	950,000	순장부가액	900,000	
	감가상각비	100,000	감가상각비	100,000	
	기타포괄손익	50,000	기타포괄손익	N/A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기타포괄손익 50,000(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50,000(△유보)				
2010년					
분개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10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5,000
	재평가(78만원)	차) 기타포괄손익	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5,000
		평가손실	15,000		
관련 계정금액	〈회계상〉		〈세무상〉		
	건물	1,000,000	건물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u>220,000</u>	감가상각누계액	<u>200,000</u>	
	순장부가액	780,000	순장부가액	800,000	
	감가상각비	105,000	감가상각비	100,000	
	평가손실	15,000	포괄손익	-	
세무조정			평가손실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20,000(유보)				
	감가상각비 5,000(유보)				
	평가손실 15,000(유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기타포괄손익 50,000(기타)					
2011년					
분개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97,500	대) 감가상각누계액	97,500
	매각(75만원)	차) 현금	750,000	대) 건물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17,500	유형자산처분이익	67,500
관련 계정금액	〈회계상〉		〈세무상〉		
	감가상각비	97,500	감가상각비	1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67,5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30,000(유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500(△유보)				
	유형자산처분이익 17,500(△유보) ²⁶⁷⁾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191

2010년의 순수한 과세효과는 10,000원의 추가적인 손금산입이고, 2011년의 순수한 과세효과는 10,000원의 추가적인 손금불산입이다. 유형자산으로 인한 과세효과는 기간손익을 달라지게 하고, 매각 등의 유형자산소멸까지를 고려하면 과세효과는 상계된다.

② 개정방향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상 재평가는 현재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정가치평가손실 등에 대한 세무상 취급과 같이 K-IFRS의 도입으로 세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4) 유형자산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유형자산의 내용은 <표 Ⅱ-3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67) 이 금액은 2010년에 발생한 평가손실 15,000원과 감가상각비 유보잔액분 2,500원 (5,000원-2,500원)과 상계처리됨.

〈표 II-36〉 유형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인식 조건의 차이	-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이 높음 -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세법상 익금인식기준이 있음	기업 간 과세형평의 문제	현행 규정 유지
자산대체 시 대응되는 원가	별도 인식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음	최초별도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만 즉시상각의제에 손금인정	즉시상각의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포함이 타당	즉시상각의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개정이 필요하며, 금액기준 등 보충기준을 추가
복구(추정)원가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 무:당기비용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 무:취득원가포함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 간 과세형평의 문제	현행규정 유지
감가상각 구성요소 재검토	재검토에 대한 규정 없음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재검토	검토규정 없음	기업 간 과세형평의 문제	현행규정 유지
구성 요소별 감가상각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 형태의 차이 여부	취득가액의 중요성	개별자산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이 합리적이거나 세법상 인정 안 됨	장기적으로 인정 검토
재평가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적용 -공정가치감소분은 당기손익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적용 -공정가치감소분은 당기손익	-원가법 -공정가치감소분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공정가치평가손익의 세법상 인정 여부	현행 규정 유지. 회계상 반영된 공정가치감소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다. 차입원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23 “Borrowing Costs”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에 규정되어 있다. 차입원가에 대한 K-IFRS, K-GAAP과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IFRS, K-GAAP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K-IFRS 제1023호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자본화한다면 자본화대상자산, 차입금, 금융비용 및 자본화기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정하는 기준서이다. K-IFRS, K-GAAP 및 법인세법에서는 모두 금융비용의 자본화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K-IFRS상 차입원가 관련 주요 내용을 K-GAAP 및 법인세법상 규정과 비교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가) 용어의 차이

K-IFRS에서 차입원가 규정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K-GAAP 및 법인세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K-GAAP의 금융비용 및 자본화대상자산은 K-IFRS에서 차입원가(borrowing cost) 및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사업용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나) 차입원가의 자본화 강제 여부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K-GAAP과 K-IFRS는 그 강제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GAAP에서는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적인 회계처리(alternative treatment)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K-IFRS에서는 K-GAAP의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인 차입원가의 즉시 비용화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인 자본화(capitalization)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²⁶⁸⁾, 이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K-IFRS에서와 같이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각각의 규정은 <표 II-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37> 차입원가의 자본화 여부

규정	내 용
K-IFRS 제1023호 문단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K-GAAP 제7호 문단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6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다) 적격자산

K-IFRS에서 적격자산이라 함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격자산의 사례로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K-GAAP에서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매입·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적격자산 관련 K-IFRS와 K-GAAP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K-IFRS에서 적격자산 요건인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재고자산의 경우 1년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K-IFRS에서는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차입원가 관련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K-IFRS에서는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예: 생물자산), ②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으로 특정하고 있다²⁶⁹⁾.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의 경우 자본화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69) K-IFRS 제1023호 문단4.

이러한 자본화대상 자산(적격자산)에 대한 규정은 〈표 II-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38〉 자본화대상 자산

규정	내용
K-IFRS 제1023호 문단5 및 문단7	5.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7.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1) 재고자산 (2) 제조설비자산 (3) 전력생산설비 (4) 무형자산 (5) 투자부동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K-GAAP 제7호 문단3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건설자금에 상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다.

라) 자본화대상차입금

K-IFRS와 K-GAAP은 모두 자본화대상차입금의 범위에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²⁷⁰⁾. 그러나 특정 항목과 관련하여 K-IFRS 및 K-GAAP상 자본화대상차입금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K-IFRS에서는 K-GAAP과는 달리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와 관련하여 자본화대상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⁷¹⁾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 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의하면,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재작성하면서 동시에 차입원가 중 동일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자본화하게 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차입금의 명목에 상관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²⁷²⁾. 즉, 기업회계에서 자본화한 일반차입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70) K-IFRS 제1023호 문단12 및 문단14, K-GAAP 제7호 문단8.

271) K-IFRS 제1023호 문단3.

272)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마) 자본화대상금융비용

K-IFRS와 K-GAAP에서는 모두 차입원가 또는 금융비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K-GAAP에서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을 예시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²⁷³⁾, K-IFRS에서는 이를 예시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법인세법에서 자본화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정의된다. 법인세법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이자를 자본화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²⁷⁴⁾,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²⁷⁵⁾,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및 외환차손²⁷⁶⁾ 등에 대해서는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대한 규정의 차이는 <표 II -39>와 같다.

273) K-GAAP 제7호 문단4.

27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275)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276) 제법인 46012-180, 1999. 11. 11. 외환차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상술함.

〈표 II-39〉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규정	내 용
K-IFRS 제1023호 문단5 및 문단6	5.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K-GAAP 제7호 문단3 및 문단4	3.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4.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나)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다)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 가치할인차금상각액 (라)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마)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이자비용 (바)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사)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바)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K-IFRS와 K-GAAP은 차입원가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인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에 대한 규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선, K-IFRS에서는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차입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⁷⁷⁾, 해당 외환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자본화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자본화할 수 있는 환율변동손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환율변동손익을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의 합계금액으로 규정하고, 외화차입금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 외화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외환차익(손)과 외화환산이익(손실)의 합계금액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도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²⁷⁸⁾, 환율변동손익의 과도한 자본화를 방지하고 있다²⁷⁹⁾.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환율변동손익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277) K-IFRS 제1023호 문단6.

278) K-GAAP 제7호 문단4 및 5.

279) 한영회계법인(2007) p. 79.

사) 자본화기간

자본화 개시시점, 종료시점 및 중단기간과 관련하여 K-IFRS와 K-GAAP의 규정은 차이가 없다. 우선, 자본화 개시일과 관련하여 양 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로 보고 있다²⁸⁰⁾.

- (1)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본화 종료시점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이다²⁸¹⁾. 그리고 자본화 종료시점 이전이라 하더라도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²⁸²⁾. 단,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는 기간이라든가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을 개시한 날이다. 단, 금융비용이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발생일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자본화 중단 관련 기업회계와는 달리 건설 중단기간에도 자본화를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다²⁸³⁾.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²⁸⁴⁾ 해당 기간동안 자본화를 중단하고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만을 적용한다²⁸⁵⁾.

280) K-IFRS 제1023호 문단17 및 K-GAAP 제7호 문단17.

281) K-IFRS 제1023호 문단22 및 K-GAAP 제7호 문단19.

282) K-IFRS 제1023호 문단20 및 K-GAAP 제7호 문단21.

283) 법인 1264, 21-207, 1984.1.18.

28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호 제3항 제1호.

아) 자본화이자의 계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GAAP과 K-IFRS에서는 모두 자본화이자의 계산 시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경우 회계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반면,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capitalisation rate)을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자본화이자율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의 가중평균금융비용으로 산정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발생한 실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자본화이자의 계산에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인 당 회계기간의 자본화대상자산 평균지출액과 관련하여 K-GAAP과 K-IFRS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K-GAAP의 경우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금융비용을 당기자본화대상자산의 평균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²⁸⁵⁾. 반면, K-IFRS에서는 이미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회계기간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에 포함²⁸⁷⁾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 증가하여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만을 건설자금 이자계산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만큼을 줄여 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본화대상 차입원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세무조정 금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85) 재법인 22631-71, 1992. 3. 30.

286) K-GAAP 제7호 문단36.

287) K-IFRS 제1023호 문단18.

자) 공시사항

차입원가 관련 K-GAAP 및 K-IFRS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사항은 <표 Ⅱ-40>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Ⅱ-40>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사항

K-GAAP	K-IFRS
• 기업의 회계정책 •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금융비용의 금액과 내용 • 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간주한 환율변동손익의 금액과 내용 •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에는 이를 기간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에 미치는 영향	•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2)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K-GAAP과 법인세법 간에는 자본화대상 자산, 자본화대상 차입금,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왔으며, K-IFRS를 도입하더라도 이와 같은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IFRS에서는 K-GAAP에서와 같이 여전히 재고자산을 자본화 대상 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차입금에 대해서도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 하고 있으며,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본화할 항목을 선택할 때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K-IFRS를 도입하더라도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차입원가 관련 규정의 차이로 인해 기업회계상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법인세 신고 목적상 세무상 금액으로 조정하고 추후 감가상각에서 이를 다시 반영해야 하는

등 관련 복잡한 세무조정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을 좀 더 회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관련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화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K-IFRS와는 달리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을 자본화대상자산에서 제외한 것은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대개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자본화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건설 재고자산을 다른 유형자산과 차별하여 자본화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K-IFRS에서는 자본화대상의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²⁸⁸⁾, 장기건설 재고자산을 법인세법상 자본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K-IFRS의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기간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납세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장기건설 재고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본화대상 차입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차입금만을 포함하고 일반차입금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 또한 일반차입금이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도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도 자본화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88) K-IFRS에서 역시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취득 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적격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차입원가에 대한 기준서의 적용대상에서 애초에 배제되고 있음.

셋째,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포함 항목 및 제외 항목은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이자를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는 반면, 현재가치할인자금의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및 외환차손 등에 대해서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서 제외하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 법인세법상 별도의 취급을 두어야 하는 이유 및 그 실익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상 규정이 자본화를 강제한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기존의 K-GAAP하에서와 같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 인해 기업의 복잡한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차입원가로 인해 기업회계상 자산가액과 세무상 자산가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일정기간(감가상각기간이나 자산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차입원가 관련 자본화대상 자산, 자본화대상 차입금 및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을 일부 기업회계와 일치시킬 수 있을 만한 논리적 근거도 충분하다. 따라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K-IFRS에 의하여 차입비용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차입원가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논의한 차입원가에 대한 내용은 〈표 Ⅱ-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41〉 차입원가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용어의 차이		금융비용, 자본화대상자산	차입원가, 적격자산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 사업용자산	사용용어상 차이 발생	장 기 적 으 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 복잡한 세무 조정,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차이가 조정됨
자본화 강제 여부		선택 적용	강제 적용	강제 적용		
자본화 대상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취득기간 1년 이상)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금융자산, 단기간 내 제조되는 등의 재고자산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및 투자자산 제외)		
자본화 대상차입금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 제외)	1. 해당 자산 금액의 차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일반 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등 포함	명시적 규정 없음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등은 제외	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 조정의 복잡성	
	외환 차이	포함하며, 세부 규정 있음	이자원가의 조정 부분은 포함(세부 규정은 없음)	자본화 대상이 아님		
자본화 이자의 계산		자본화대상자산 평균지출액 계산 시 전기이전에 자본화한 금융비용을 제외	이미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당해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에 포함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음		

라. 투자부동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40 “Investment Property”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및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그리고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 (금융업)”에 규정되어 있다.

1) K-IFRS와 K-GAAP, 법인세법의 비교

가) 투자부동산의 범위

K-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두 가지 모두)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⁸⁹⁾. 반면 K-GAAP에서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²⁹⁰⁾,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²⁹¹⁾. 즉, K-GAAP에서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나, K-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뒤에 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K-GAAP에서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계정분류는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89) K-IFRS 제1040호 문단5.

290) K-GAAP 제5호 [부록 2] 실무지침 문단5 (가).

타인에 대한 임대 사용 목적을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은 유형자산에 해당함

291) K-GAAP 제21호 문단A75, A76.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등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되, 투자자산 내에 투자부동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함.

법인세법에는 투자부동산의 분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업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다양한 중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투자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²⁹²⁾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표 II-42>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표 II-4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규정

구분	중과내용
(1)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法法 §27)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예를 들면 재산세·공동시설세 등의 조세공과금과 감가상각비, 관리인의 인건비 등),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지급이자에의 손금불산입(法法 §28)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法法 §55의 2)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법인세 이외에 토지의 양도소득에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92)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무미사용 부동산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설사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제외)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투자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K-IFRS와 K-GAAP, 법인세법의 내용은 〈표 Ⅱ-43〉과 같다.

〈표 Ⅱ-43〉 투자부동산의 범위

보유목적	계정분류		
	K-GAAP	K-IFRS	법인세법
임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별도의 규정 없음 (단,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임대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업무 무관부동산 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면 중과규정 적용)
시세차익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나) 투자부동산의 인식

K-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³⁾. K-GAAP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²⁹⁴⁾. 한편 법인세법은 투자부동산의 인식요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인 자산인식요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⁹⁵⁾.

293) K-IFRS 제1040호 문단16.

294) K-GAAP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140, K-GAAP 제5호 문단6.

295) 법인세법 제43조.

다)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K-IFRS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²⁹⁶⁾. 이때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²⁹⁷⁾. 한편 교환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경우를²⁹⁸⁾ 제외하고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²⁹⁹⁾.

K-GAAP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³⁰⁰⁾. 한편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으로 “임대 목적의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동종자산과의 교환(단,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 제외)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종자산과의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³⁰¹⁾. 이에 반해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이종자산 또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³⁰²⁾.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목적상 기업회계

296) K-IFRS 제1040호 문단20.

297) K-IFRS 제1040호 문단5.

298)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중 어느 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한편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299) K-IFRS 제1040호 문단27, 29.

300) K-GAAP 제5호 문단12, 기업회계기준 제55조.

301) K-GAAP 제5호 문단19.

302)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와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의 교환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보유목적이나 이종자산 또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자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세무상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본다³⁰³⁾.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K-IFRS와 K-GAAP, 법인세법의 내용은 〈표 II-44〉와 같다.

〈표 II-44〉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구분	K-GAAP		K-IFRS (투자부동산)	법인세법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	시세차익 목적 보유 (투자부동산)		
(1) 외부매입/ 자가건설	취득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 선택 가능)	취득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 선택 가능)	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 강제)	취득원가 (건설자금이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2) 현물출자	공정가액	공정가액	발행·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3) 무상취득	공정가액	공정가액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시가
(4) 자산교환	① 동종자산 교환 ¹⁾ : 제공한 자산 의 장부가액 ② 이종자산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시가

주: 1) 단,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지 않음

303)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손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서면2팀-264, 2006.02.02.)

라) 투자부동산의 평가

K-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³⁰⁴⁾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⁵⁾. 회사가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을 적용한다³⁰⁶⁾. 따라서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단,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투자부동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³⁰⁷⁾. 반면 회사가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³⁰⁸⁾, 투자부동산의

304) (가) 다음 두 범주의 투자부동산은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① 투자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군의 공정가치와 연동하는 수익 또는 그 자산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 ② 위 ①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상관없이 그 밖의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나)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공정가치모형만 적용한다.

305) K-IFRS 제1040호 문단30.

306) K-IFRS 제1040호 문단56.

단, 투자부동산이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부동산은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한다.

307) K-IFRS 제1040호 문단56.

단, 투자부동산이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부동산은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한다.

308) K-IFRS 제1040호 문단33~5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단,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낮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의 대체적 추정방법(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아 특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투자부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며³⁰⁹⁾, 당해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³¹⁰⁾. 평가모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속하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³¹¹⁾.

이에 반해 K-GAAP에서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 중 하나로³¹²⁾,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³¹³⁾.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평가에는 K-IFRS와 K-GAAP 간에 차이가 존재하나, 임대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먼저 K-IFRS에서는 회사가 선택한 평가모형을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K-GAAP에서는 “투자부동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을 K-IFRS에서는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반면, K-GAAP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⁴⁾.

동산은 예외적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309)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310) 신현걸 외(2009) p. 317.

311) K-IFRS 제1040호 문단31.

312) K-GAAP 제5호 문단25의 2.

313) 기업회계기준 제55조.

314)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투자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함.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가모형만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과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 등의 사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인정한다³¹⁵⁾. 또한 법인세 법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³¹⁶⁾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1)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 (2)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에 관한 K-IFRS와 K-GAAP, 법인세법의 내용은 <표 II-45>와 같다.

<표 II-45> 투자부동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구분		K-GAAP	K-IFRS	법인세법
임대목적 보유	평가	•상각 후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또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	•상각 후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전액 당기손익 처리	법인의 업무(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상각 후 원가로, 그 외의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감가상각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인식 가능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인식 가능	법인의 업무(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가능
시세차익 목적보유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임대부동산과 동일	취득원가로 평가
	감가상각	감가상각 불가		감가상각 불가

315)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316)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마)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K-IFRS에서는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인해 계정대체가 가능한 경우와 계정대체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시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는 <표 II-46>과 같다.

<표 II-46>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회계처리¹⁾

사용목적의 변경	계정대체	회계처리
(1) 자가사용의 개시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	①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 승계 ②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의 간주원가가 됨
(2) 판매목적으로 개발 개시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	
(3) 자가사용의 종료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①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건설 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 승계 ②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함.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재평가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4) 제3자에게 운용 리스 제공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5) 건설이나 개발의 완료	유형자산(건설 중인 자산) → 투자부동산	③ 재고자산 또는 건설 중인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주: 1) K-IFRS 제1040호 문단57, 59~65

반면 K-GAAP과 법인세법에는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시 간주원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³¹⁷⁾

K-GAAP에 따르면 운용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하여 지급한 선급리스료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³¹⁸⁾.

이에 반해 K-IFRS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리스이용자도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³¹⁹⁾.

- (1) 당해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투자부동산의 정의(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를 충족한다.
- (2) 당해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보유하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해 투자부동산의 최초원가는 동 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되며,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만 허용된다(즉,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³²⁰⁾.

법인세법 역시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K-GAAP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²¹⁾.

317) 일부 국가에서 토지는 국가소유이나, 운영리스 형태로 리스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임.

318) K-GAAP 제19호 문단41.

319) K-IFRS 제1040호 문단6.

320) K-IFRS 제1040호 문단25, 34.

32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교환에 의한 취득의 경우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건설자금이자가 있거나 외부매입이나 자가건설·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중 건설자금이자는 이미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외부매입이나 자가건설·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부매입이나 자가건설·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상 취득원가와 세무상 취득원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K-IFRS에서 규정하는 취득원가의 정의가 법인세법상 취득원가의 정의와 다르다는 데 있다. 즉, K-IFRS에서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보고 있는 반면³²²⁾, 법인세법에서는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본다³²³⁾. 예를 들어 투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K-IFRS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0”으로 보는 반면³²⁴⁾, 법인세법에서는 취득자산의 시가를 당해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

322) K-IFRS 제1040호 문단27.

32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324) 이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할 수 있다.

증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역시 K-IFRS에서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가 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따라서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회계상 취득원가를 세무상 취득원가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② 개선방향

회계상 취득원가와 세무상 취득원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세무조정과 유보잔액의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K-IFRS에서 사용하는 취득원가의 정의를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B에게 투자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표 II-47>과 같다.

<표 II-47> 투자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 시 과세문제

양도자(손실을 입은 자)	양수자(이익을 얻은 자)
(1)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 과세문제 없음	(1)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인 경우 ☞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양도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2)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따라서 양도한 자산의 시가와 양도대가와 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2)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위의 사례에서 기업의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즉, 양수자가 제공한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 양수자가 개인이면 자산의 이전시점에서 즉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양수자가 법인이면 추후에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시점까지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법인설립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자산의 교환거래에 의하여 투자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K-IFRS에 의하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양자가 공모하여(예를 들어 저가인 자산과의 교환이나 무상교환)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자산양수도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투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투자부동산의 평가

K-IFRS에서는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K-IFRS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와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업무(임대업)에 직접 사

용되는 임대부동산에 한해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1)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 (2)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보유목적 및 평가방법,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표 II-48>과 같다.

<표 II-48>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¹⁾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의 인식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보유목적	평가방법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K-IFRS	법인세법	
매각예정	공정가치모형	미사용	불가	불가	필요 없음
임대	원가모형	사용	가능	가능	필요 없음
		미사용	가능	불가	전액 손금불산입 ¹⁾
	공정가치모형	사용	불가	불가	필요 없음
		미사용	불가	불가	필요 없음
시세차익	원가모형	사용	가능	불가	전액 손금불산입 ¹⁾
		미사용	가능	불가	전액 손금불산입 ¹⁾
	공정가치모형	사용	불가	불가	필요 없음
		미사용	불가	불가	필요 없음

주: 1) K-GAAP과 달리 K-IFRS에서는 임대부동산을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중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구분해 낸 후, 나머지 잔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개선방향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K-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의 보유목적(매각예정·임대·시세차익) 및 평가방법(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비용계상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보유목적의 판단이나 평가방법의 선택에는 기업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업회계의 관행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임의적인 과세소득 조작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가모형만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과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 등의 사유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회계상 평가증 금액을 익금불산입(Δ 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시점에 추인된다. 반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회계상 평가감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자산의 평가감으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시점에 추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이 복잡해지거나 기업이 유보잔액의 사후관리에 어려

움을 겪을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투자부동산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에도 사실상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 개선방향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달라짐으로써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의 경우 기업이 선택한 평가모형에 따라 손금인식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 경우에는 해당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현재의 결산조정사항에서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K-IFRS에서는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변경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 평가증이나 평가감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라)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금융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공정가치모형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³²⁵⁾.

현행 법인세법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기의 개정내용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부동산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세무상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리스료지급 시점마다 리스료지급액과 회사가 계상한 이자비용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공정가치 평가만 가능하며, 회계상 감가상각비의 인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신 회계상 평가증 또는 평가감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나타나게 된다.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와 그에 따른 세무조정은 <표 II-49>와 같다.

325)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8항 제2호.

〈표 II-49〉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시점	회계처리				세무조정
① 자산인식	금융리스자산	×	금융리스부채	×	[손금산입] 금융리스자산(△유보) [손금불산입] 금융리스부채(유보)
② 리스료 지급	이자비용	×	현금	×	[손금산입] 금융리스부채(△유보)
	금융리스부채	×			
③ 평가시점					
-평가증	금융리스자산	×	평가차익	×	[손금산입] 금융리스자산(△유보)
-평가감	평가차손	×	금융리스자산	×	[손금불산입] 금융리스자산(유보)

② 개선방향

K-IFRS에서는 운용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의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운용리스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획득 목적 보유)를 충족할 것과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보유목적이나 회사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과세형평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세법의 분류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5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50〉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투자부동산의 범위	- 임대목적보유 : 유형자산 - 시세차익목적 보유 : 투자부동산	임대부동산의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구체적인 규정 없음. 단,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업무무관 부동산 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면 중과규정 적용	계정분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달라짐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 외부매입/자가건설 : 취득원가 (이자의 자본화 선택 가능) - 현물출자, 무상취득 : 공정가액 - 자산교환 : - 임대목적 보유 : 동종자산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시세차익 보유 목적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외부매입/자가건설 : 취득원가 (이자의 자본화 강제) - 현물출자, 무상취득, 자산교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 외부매입/자가건설 : 취득원가 (이자의 자본화 불가) - 현물출자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 무상취득, 자산교환 :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원가의 정의가 법인세법상 취득원가의 정의와 다름. 따라서 외부매입이나 자가건설·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계상 취득원가를 세무상 취득원가로 조정하여 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투자부동산의 평가	- 임대목적보유 : 상각 후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 - 시세차익목적 보유 : 취득가액	상각 후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	법인의 업무(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상각 후 원가로, 그 외의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증 또는 평가감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표 II-50〉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	임대목적 보유이면 감가상각 가능하나, 시세차익 목적 보유이면 감가상각 불가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인식 가능	법인의 업무(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에 한해 감가상각비 인정	•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임대목적 보유·원가모형 사용·법인 업무에 미사용 - 시세차익 목적 보유·원가모형 사용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의 경우 기업이 선택한 평가모형에 따라 손금인식시기가 달라짐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간주원가에 관한 규정 없음	간주원가에 관한 별도규정 존재	간주원가에 관한 규정 없음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증 또는 평가감을 세무상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불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가능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불가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운용리스 회계처리로 바꾸는 세무조정 필요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마.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IFRS 기준서 IAS 38 “Intangible Assets”으로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으로 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K-GAAP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서 다루고 있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적용범위

적용범위에서 K-IFRS와 K-GAAP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광업권이 무형자산 회계처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아 K-GAAP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시켰으나 K-IFRS에서는 별도의 기준서인 제1106호 ‘광물자산의 탐사와 평가’에서 다루고 있다³²⁶⁾.

나) 용어의 정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조건에 대한 K-IFRS와 K-GAAP의 규정내용은 <표 II-51>과 같다.

326) K-IFRS 제1038호 문단2, K-GAAP 제3호 문단75.

〈표 II-51〉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의 조건

	K-IFRS	K-GAAP
무형자산의 정의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①식별 가능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별가능 ① 자산이 분리가능함 ②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함	- 식별가능성은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따라 판단 가능
②자원에 대한 통제	- 원칙 :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 확보,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 제한	- 좌동
	- 비계약적 고객관계 :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이고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이므로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함	- 비계약적 고객관계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하지 못함

(1) 무형자산의 정의

K-GAAP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유목적은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³²⁷⁾. 그리고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였다³²⁸⁾. 이와 같이 K-IFRS에서는 K-GAAP에서 규정한 사업목적보유요건을 삭제하였다.

327) K-GAAP 제3호 문단5.

328) K-IFRS 제1038호 문단8.

K-IFRS와 K-GAAP에서 모두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산에 대한 통제, ③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K-IFRS에서는 K-GAAP보다 이러한 요건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 조건에 대한 두 규정 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2) 식별가능성

K-IFRS에서는 K-GAAP보다 식별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K-IFRS의 경우 ① 자산의 분리가능성³²⁹⁾, ②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 부터 발생³³⁰⁾한다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식별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³³¹⁾.

반면, K-GAAP에서는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 하나로 식별가능성을 판단한다.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³³²⁾.

(3) 자원에 대한 통제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때 기업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K-IFRS와 K-GAAP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³³³⁾.

329)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관련된 계약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함.

330) 이 경우 그러한 권리의 이전가능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의 분리가 능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331) K-IFRS 제1038호 문단12.

332)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음.

①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의 특허권
②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즉 K-GAAP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³³⁴⁾의 식별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거래는 그것이 분리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K-IFRS에서는 K-GAAP과 달리 무형자산의 사업목적 보유요건을 삭제하였고, 식별가능성 등 그 인식기준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K-GAAP에서는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항목이 K-IFRS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인식되는 무형자산의 종류, 항목과 그 금액의 증가가 예상된다³³⁵⁾.

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어떠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은 K-IFRS와 K-GAAP 모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³⁶⁾.

-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33) K-GAAP 제3호 문단11, K-IFRS 제1038호 문단13.

334) 기업의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기업은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를 “비계약적 고객관계”라 함(K-IFRS 제1038호 문단16).

335) 오윤택(2009) p. 88.

336) K-IFRS 제1038호 문단21, K-GAAP 제3호 문단16.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이때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기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³³⁷⁾.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과 인식기준의 충족 여부는 자산의 취득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취득형태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및 인식기준에 대한 K-IFRS와 K-GAAP의 내용은 <표 II-52>와 같다.

<표 II-52> 취득형태별 취득원가 및 인식기준

	K-IFRS	K-GAAP
개별취득	- 취득원가: ①+② ① 구입가격+수입관세 및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매입할인 및 리베이트 ②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 원가 - 인식기준: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취득원가: 좌동 - 인식기준: 취득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충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규정 없음
사업결합으로 취득	- 취득원가: 공정가치 - 인식기준: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취득원가: 좌동 - 인식기준: 관련 규정 없음
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공정가치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금액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취득원가 ① 이종자산의 교환: 제공자산의 공정가치 ② 동종자산의 교환: 제공자산의 장부금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좌동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자산인식 여부: 연구단계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개발단계지출은 6가지 인식조건 충족 시 자산, 그 외는 비용 - 취득원가: 개발단계 인식기준을 충족시킨 이후 발생한 지출금액	좌동

337) K-IFRS 제1038호 문단8, K-GAAP 제3호 문단5.

(1) 개별 취득

K-IFRS에서는 개별취득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기준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개별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첫 번째 인식요건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항상 충족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개별취득 시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화폐성 자산으로 구매대가를 지급한 경우 두 번째 인식요건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³³⁸⁾.

개별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수입관세 및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금액(구입가격+수입관세 및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매입할인 및 리베이트)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³³⁹⁾³⁴⁰⁾.

K-GAAP에서는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취득원가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원가는 K-IFRS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³⁴¹⁾.

338) K-IFRS 제1038호 문단25, 문단26.

339) K-IFRS 제1038호 문단27, 문단28, 문단29.

340) 원가 포함항목 : ①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및 전문가 수수료, ②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원가 제외항목 : ①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②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 포함), ③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341) K-GAAP 제3호 문단20, 문단21.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K-IFRS와 K-GAAP 모두 취득일의 공정가치³⁴²⁾로 한다.

K-IFRS에서는 인식조건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반영될 것이므로 첫 번째 인식조건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항상 충족한다고 간주한다. 또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 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두 번째 조건인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³⁴³⁾.

K-GAAP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K-IFRS에서는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⁴⁴⁾.

K-GAAP에서도 기업결합 시 피합병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았던 무형자산의 식별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이

342)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임. 적절한 시장가격은 현행 매입호가이고, 현행 매입호가 없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근거로 공정가치를 추정함(K-IFRS 제1038호 문단39).

343) K-IFRS 제1038호 문단33.

344) K-IFRS 제1038호 문단34.

능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반면, K-IFRS에서는 식별 가능성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K-GAAP에서는 영업권에 포함되었던 무형자산이 K-IFRS에서는 별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취득원가에서 영업권에 배분되는 금액이 줄고 별도의 무형자산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서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3) 자산의 교환

K-IFRS에서는 동종자산의 교환 또는 이종자산의 교환을 구분하지 않고 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³⁴⁵⁾.

-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³⁴⁶⁾
-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K-GAAP에서는 이종자산의 교환 시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종자산 교환 시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³⁴⁷⁾.

345) K-IFRS 제1038호 문단45.

346)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③을 충족하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본다 (K-IFRS 제1038호 문단46).

- ①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 ②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한다.
- ③ 위의 ①이나 ②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347) K-GAAP 제3호 문단32, 문단33.

(4)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K-IFRS와 K-GAAP에서 모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³⁴⁸⁾.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및 원가에 관한 규정은 K-IFRS와 K-GAAP 간에 차이가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식별 가능한 자산 여부 및 시점 파악이 어렵고 취득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는데,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³⁴⁹⁾.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³⁵⁰⁾. 개발단계의 지출은 인식조건³⁵¹⁾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³⁵²⁾.

348) K-IFRS 제1038호 문단48, 문단49, K-GAAP 제3호 문단34.

349) K-IFRS 제1038호 문단51, 문단52.

350) K-IFRS 제1038호 문단54, 문단55.

351) ①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개발단계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³⁵³⁾.

다) 인식 후의 측정

(1)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K-IFRS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활성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만) 중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같은 분류의 모든 자산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³⁵⁴⁾.

측정방법은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³⁵⁵⁾.

K-GAAP에서는 원가모형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가액이 증가하더라도 평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재평가모형의 적용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최초로 인식한 후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
 - ②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
- 그러나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

352) K-IFRS 제1038호 문단57.

353) K-IFRS 제1038호 문단65, 문단71.

354) K-IFRS 제1038호 문단72.

355) K-IFRS 제1038호 문단74, 문단75.

산 원가의 일부만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³⁵⁶⁾.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³⁵⁷⁾.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하는 방법과 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후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한다³⁵⁸⁾.

(3) 재평가 시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증가액 중 그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감소액 중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줄인다³⁵⁹⁾.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 누계액은 무형자산의 폐기나 처분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³⁶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356) K-IFRS 제1038호 문단76, 문단77.

357) K-IFRS 제1038호 문단79.

358) K-IFRS 제1038호 문단80.

359) K-IFRS 제1038호 문단85 문단86.

360) K-IFRS 제1038호 문단87.

〈표 II-53〉과 같다.

〈표 II-53〉 재평가모형에 의한 무형자산의 재평가

구분		재평가모형에 의한 평가
측정		-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¹⁾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적용 제외		-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 -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
재평가 빈도		-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
재평가 시 상각누계액 처리방법		- 비례수정방법 :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
		- 총제거방법 :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후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
재평가 시 회계처리	평가증	- 재평가잉여금 인식 - 증가액 중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 인식
	평가감	- 당기손익 인식 - 감소액 중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로 기타포괄손익 인식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 무형자산의 폐기나 처분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주: 1) 공정가치는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결정

라) 감가상각

(1) 내용연수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비한정’이라는 용어가 ‘무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지 미래 경제적 효

익이 무한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³⁶¹⁾.

K-GAAP에서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무형자산이 유한내용연수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³⁶²⁾. 예외적으로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³⁶³⁾.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K-IFRS에서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결과 예상 내용연수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면, 이에 따라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K-GAAP에서 회계변경은 정당성을 갖춘 사유가 존재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각방법의 변경은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이었으나 K-IFRS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그 외의 유한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K-IFRS와 K-GAAP 간에 큰 차이는 없다.

(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매년 그리고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³⁶⁴⁾. 또한 회계기간마다 내용연수

361) K-IFRS 제1038호 문단88, 문단89, 문단91.

362) K-GAAP 제3호 문단54.

363) K-GAAP 제3호 문단57.

364) 무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부분에서 다룬다.

가 비한정이라는 것이 정당한지 평가를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내용연수를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³⁶⁵⁾.

그러나 K-GAAP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K-IFRS와 K-GAAP의 규정 내용은 <표 II-54>와 같다.

<표 II-54>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구분		K-IFRS	K-GAAP
내용연수		한정, 비한정인지 평가	20년 이내의 유한내용연수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정액법
비한정인 무형자산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	규정 없음
상각방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
손상차손		매년도 말 손상차손을 검토	규정 없음

2) 법인세법의 규정

무형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무형자산의 범위를 <표 II-55>와 같이

365) K-IFRS 제1038호 문단107, 문단108, 문단109.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³⁶⁶⁾. 세법상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각 무형자산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개발비의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내용연수의 선택이 가능하다³⁶⁷⁾.

〈표 II-55〉 세법상 무형자산 감가상각 규정

무형자산	내용연수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 시 상각방법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년	정액법	정액법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 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0년	정액법	정액법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20년	정액법	정액법
댐사용권	50년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20년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	20년 이내의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5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매 사업연도의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¹⁾	—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상각 ²⁾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주: 1)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 상각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36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36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 중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이다. 따라서 개발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³⁶⁸⁾.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재평가

법인세법상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³⁶⁹⁾. 무형자산은 재평가를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영업권

영업권의 경우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의 기준을 반영하여 자가 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입·합병·분할 시 발생한 영업권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

세법상 영업권에 포함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³⁷⁰⁾.

-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

368) 법인세법 통칙 23-26-9.

369)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37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무형자산의 범위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상각대상 무형자산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계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K-IFRS에서는 ‘비계약적인 고객관계’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열거된 무형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결합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데에 K-IFRS에서는 사업결합 시 기존 결합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식별 가능하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연구나 상표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로열티계약, 고객리스트 등을 무형자산으로 새로이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K-GAAP에서는 영업권에 포함되었던 무형자산이 K-IFRS에서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법에서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K-IFRS와 동일한 수준으로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재의 무형자산 범위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는 물론 비한정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K-IFRS에 의하여 인식된 무형자산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무형자산의 재평가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한다.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증 또는 평가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평가로 자산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법 제42조 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만일 K-IFRS에 따라 무형자산을 재평가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증가할 것이고 유보액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세법에서 재평가를 허용하면 복잡한 세무조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재평가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액처리 하는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재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K-IFRS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손상 징후 발생 시 손상검사에 의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에서 50년까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한정 내용연수인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상각대상 무형

자산에 해당되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무상 영향은 없을 것이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³⁷¹⁾.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 무형자산에 해당된다면, 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가상각과 달리 손상차손은 인식시기 및 손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고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시점 이전에 손금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³⁷²⁾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 손상을 인식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을 세법상 무형자산에 포함, 현행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와 K-IFRS하에서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하는 손상의 발생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에서 인식한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의도적인 손상시기의 조절 등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

K-IFRS에서는 피취득자가 진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371) 서면2탐-2184, 2008. 12. 28. 그러나 이것이 임의평가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p. 73).

372)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 97.

정의를 충족하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은 내부창출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법에서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부터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세법상 연구비, 개발비, 영업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비로서 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손금처리해야 하는 등 세무조정 사항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될 무형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무처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의 검토

K-IFRS에서는 매 회계연도 말에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용 추정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업 자산의 실질을 보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경영자의 회계선택에서의 자의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이익조정 및 과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경우 일반 사업용자산과 달리 고정된 기준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변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³⁷³⁾.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247

실무상으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익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을 세법에서 허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무형자산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무형자산의 내용은 <표 Ⅱ-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73) 내용연수 변경 사유

-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표 II -56〉 무형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범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무형자산의 정의	사업목적으로 보유,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세법상 무형자산 열거	회계상 무형자산의 유형 다양화. 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가 제한적임	무형자산의 범위 확대 고려
식별가능성의 개념	분리가능성으로 판단	분리가능성과 계약상 권리로 발생하는 경우 중 한 가지 충족	세법상 무형자산 열거		
비계약적 고객관계	무형자산에 해당 안 됨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무형자산 범위에 해당 안 됨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하는 무형자산	관련 규정 없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 구·개발 프로젝트가 연 구비, 개발비, 영업권으로 인식 가능	구분기준 모호함	세무상 처리규정 명확화
재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중 선택	원가모형만 인정	추가적인 세무조정발 생, 세무상의 이유로 회 계기준을 선택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감가상각	유한내용연수(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걸쳐 상 각	유한/비한정으로 구분 - 유한 : 감가상각 - 비한정인 경우 상각하지 않 고 손상 평가함	법정내용연수 적용하여 상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손금 산입 여부 불확실, 손상 치손에 의한 과세회피 가능성	-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을 세법상 무형자산에 포함,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으로 개정 - 손상치손에 대한 규정 명확화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의 검토	규정없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	규정없음	기업 간 형태의 문제 발생	현행 규정유지

바. 자산손상

자산손상에 관한 K-IFRS 제1036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36 “Impairment of Asse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K-IFRS에서는 K-IFRS 제1036호에서 자산손상에 관한 종합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는 데 반하여, K-GAAP에서는 자산손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기준서로 종합하지 않고 관련 자산을 규정하는 기준서 내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자산손상에 대한 K-IFRS와 K-GAAP 두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K-IFRS 제1036호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따라서 K-IFRS 제1036호 문단2에서 제시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자산은 자산손상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표 Ⅱ-57>의 자산은 K-IFRS 제1036호 규정을 적용할 자산이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에 따르면, 관계기업의 손실은 지분법을 적용 후 먼저 지분법을 통한 손익을 인식한 이후, 관계기업 순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해야 하는데³⁷⁴⁾, 손상될 수 있는 징후의 판단은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하는 반면,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가액과 비교할 회수가능액의 추정은 K-IFRS 제1036호에 따라 수행한다³⁷⁵⁾.

374) K-IFRS 제1028호 문단31.

375) K-IFRS 제1028호 문단33.

〈표 II-57〉 자산손상 적용 자산

자산손상 적용	자산손상 배제 ³⁷⁶⁾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017호 '리스자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 기업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에서 정의한 관계기업 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 지분'에서 정의한 조인트벤처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한 영업권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한 이연법인세자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과 이연신계약비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에 따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

나) 손상검사

K-IFRS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³⁷⁷⁾.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한다³⁷⁸⁾.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도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³⁷⁹⁾.

376) K-IFRS 제1036호 문단2.

377) K-IFRS 제1036호 문단8.

378) K-IFRS 제1036호 문단9.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251

K-GAAP의 경우, 자산손상에 관하여는 개별자산별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한다. 유형자산의 경우,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검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⁸⁰⁾, 기업회계기준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K-IFRS와 동일하게 보고기간별로 감액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³⁸¹⁾. 무형자산의 경우,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회수가능가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회계연도 중 회계연도 말을 포함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감액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지분법적용투자회사 및 조인트 벤처도 매 회계연도 말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다) 손상추정

K-IFRS의 경우,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³⁸²⁾. 회수가능액은 개별자산단위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로도 추정할 수 있다.

순공정가치의 가장 객관적인 예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이다³⁸³⁾.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다³⁸⁴⁾. 자산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매

379) K-IFRS 제1036호 문단10.

380) K-GAAP 제5호 문단35.

381) 리스자산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유형자산이므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손상검사를 수행함.

382) K-IFRS 제1036호 문단18.

383) K-IFRS 제1036호 문단25.

매계약이나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순공정가치를 결정한다³⁸⁵⁾.

자산의 사용가치는 계산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계산에 반영될 요소로는 ①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②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③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④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⑤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이 있다³⁸⁶⁾.

K-GAAP의 경우, 유형자산은 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하고, 이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³⁸⁷⁾. 무형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³⁸⁸⁾. 지분법적용투자회사 및 조인트 벤처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여 손상차손 발생 시 이를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를 제외하면, 회수가능가액 추정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384) K-IFRS 제1036호 문단26.

385) K-IFRS 제1036호 문단27.

386) K-IFRS 제1036호 문단30.

387) K-GAAP 제5호 문단35.

388) K-GAAP 제3호 문단67.

라) 손상차손 회계처리

K-IFRS의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며³⁸⁹⁾,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K-IFRS의 규정(예를 들어,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규정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³⁹⁰⁾.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³⁹¹⁾.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클 때 다른 K-IFRS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한다³⁹²⁾.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비를 조정한다³⁹³⁾.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환입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입을 위해서는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야 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킨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

389) K-IFRS 제1036호 문단59.

390) K-IFRS 제1036호 문단60.

391) K-IFRS 제1036호 문단61.

392) K-IFRS 제1036호 문단63.

393) K-IFRS 제1036호 문단64.

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³⁹⁴⁾.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³⁹⁵⁾.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³⁹⁶⁾.

K-GAAP의 경우,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며,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³⁹⁷⁾.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감액손실로 인식하지만³⁹⁸⁾, 감액손실은 환입되지 않는다. 지분법적용투자회사 및 조인트 벤처의 경우 손상차손은 감액손실로 처리되며, 이후 환입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마) 영업권의 손상차손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그 사업결합으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부터 배분된다. 영업권은 매년 상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매년 또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창출단위와 배분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

394) K-IFRS 제1036호 문단117.

395) K-IFRS 제1036호 문단119.

396) K-IFRS 제1036호 문단120.

397) K-GAAP 제5호 문단36.

398) K-GAAP 제3호 문단73.

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³⁹⁹⁾.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⁴⁰⁰⁾.

이에 비해, K-GAAP의 경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⁴⁰¹⁾.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⁴⁰²⁾.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⁴⁰³⁾.

2) 관련 법인세법 규정⁴⁰⁴⁾

법인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평가증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증감을 인정하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은 인정된다.

둘째,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⁴⁰⁵⁾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은 평가감이 인정된다⁴⁰⁶⁾. 이 경우, 고정자산 평가액은 사

399) K-IFRS 제1036호 문단90.

400) K-IFRS 제1036호 문단124.

401)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1. 나.

40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1. 다.

40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1. 라.

404)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405)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406)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다⁴⁰⁷⁾. 그리고 폐광된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 그 평가차손의 손금 계상이 가능하다⁴⁰⁸⁾. 또한, 운영하던 일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⁴⁰⁹⁾. 이와 달리, 평가감이 인정되지 않는 유·무형자산의 평가감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한다⁴¹⁰⁾.

셋째, 특정주식⁴¹¹⁾의 발행법인이 파산하였거나, 부도발생 후 부실징후기업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평가감액은 인정된다⁴¹²⁾. 특정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하여 감액할 경우, 특정주식의 평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⁴¹³⁾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⁴¹⁴⁾, 특정주식의 발행법인이 부실징후기업이 되는 경우, 특정주식의 평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⁴¹⁵⁾로 평가한 가액이다⁴¹⁶⁾. 그러나 발행법인이 폐업하는 경우는 파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액손실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⁴¹⁷⁾. 이는 출자회사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

408) 서이46012-10393, 2001.10.19.

409) 서면2탐-2341, 2004.11.15.

410) 서면2탐-2184, 2005.12.28.

411)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41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제4호.

413) 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

414)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3호.

415)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

416)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

가 부도 및 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⁴¹⁸⁾. 그러나 법인이 보유한 정리회사의 주식 및 채권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가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발행가액으로 한다⁴¹⁹⁾.

감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고⁴²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와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⁴²¹⁾.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⁴²²⁾, 복성식평가법⁴²³⁾, 수익환원법⁴²⁴⁾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은 복성식평가법을 주로 사용하고,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로 사용한다.

상증법에 의한 기계장비 등의 평가액은 해당자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⁴²⁵⁾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417) 서이46012-10586, 2003.03.21.

418) 심사법인2000-113, 2000.12.22.

419) 서이46012-10647, 2002.03.27.

420)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4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422)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423) 복성식평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424)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425)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순차로 적용한 가액이다⁴²⁶⁾. 상증법에 의한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은 개별 자산별로 다른데, 대체적으로,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⁴²⁷⁾. 예를 들어, 영업권은 초과이익금액⁴²⁸⁾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계산한다⁴²⁹⁾.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아래에서는 K-IFRS의 제1036호 “자산손상”의 도입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가) 손상차손 인식

K-IFRS에 따르면, 손상차손이 추정되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한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상차손에 따른 세무조정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손상차손으로 인한 세무조정의 증가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자산손상손실은 즉시상각의 제로 본다면 감가상각 시부인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관련 유보액의 관리에 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손상손실이

426)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427) 상증세법 제64조.

428)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0%)].

429)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지, 자산에 대한 임의평가감인지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 규정으로는 분명하지 않다⁴³⁰⁾.

그러나 손상차손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상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손상차손은 미확정된 채권·채무로 인해 발생한 미 실현손익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K-IFRS상 손상차손은 추정으로 계산된 것으로 경영자의 재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자의 결정에 따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손상차손을 세법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⁴³¹⁾.

그러나 이렇게 손상차손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K-IFRS에 의한 손상차손 중 세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손상차손의 범위를 자산손상이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손상차손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여 유형별 세법상 처리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⁴³²⁾.

나) 법인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손상차손의 범위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높은 이익의 질을 위하여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를 회계관습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세법에서는 과세권확보차원에

430) 일부 예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분명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유형자산 부분을 참조.

431) 다만,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액을 인정하는 대신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자본충당금(capital allowance)을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음.

432) 이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에 대한 처리방법(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의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서 임의적인 평가에 의한 손금산입을 막고 있다. 특히, 고정자산의 경우 천재·지변·화재를 제외하면 감액이 사실상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는 자산손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금용인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법의 일반원칙에 맞도록, 손상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손상이 세법에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즉, 회복이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회계에서의 자산손상은 환입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세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감액손실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납세자에 의한 평가감에 대해 상당히 경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경제적·실질적으로 자산손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부 예외⁴³³⁾를 제외하면 세법상 감액손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IFRS에 의해 인식된 손상차손 중 회복 불가능이 확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손상차손의 범위를 자산손상이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산손상이 확정적이라는 납세자의 입증이 필요하고, 그 입증절차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수가능가액

K-IFRS상 손상차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인정되더라도, 회수가능금액과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의 차이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

433) 폐광의 광업용 고정자산이나 가동중단 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목적으로 기타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보유중인 유형자산.

로, 순공정가치가 사용가치보다 더 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개념상 순공정가치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세무조정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에 따라서 결정되고,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할 수 없어 감정가액이나 상증법상 평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금액 차이가 클 수도 있다.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가치는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되는 데 비해, 감정가액은 복성식평가법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은 처분 후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형자산의 경우, 사용가치는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되는 데 비해, 감정가액은 수익환원법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은 초과이익환원법(영업권)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사용가치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사용할 경우, 회계와 세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평가의 기준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세무와 회계에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세법상 시가평가 규정은 납세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산의 평가를 목적으로 고려하면, K-IFRS와 같이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평가를 세법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⁴³⁴⁾.

434)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평가의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 시스템이 감정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에 의해서 설계되고, 설치되며,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이 검증하는 경우, K-IFRS를 위해 도입한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K-IFRS에 의한 회수가능가액의 평가가 외부기관에 의해서 엄격하게 검증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평가와 크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4) 자산손상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자산손상과 관련된 규정은 <표 II-5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58> 자산손상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손상검사 손상추정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을 회수가가능가액으로 추정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가능가액으로 추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감액가능 사유를 경직적으로 적용함	실질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자산손상에 대한 감액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손상차손 인식	당기손익	당기손익 (재평가되는 자산: 기타포괄손익)	극히 예외적인 경우 손금인정, 그 이외의 경우 규정이 불분명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 처리가 애매함(즉 시장각의제 vs. 임의평가감)	손상차손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사. 매각예정비유동자산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이 내용 중 이 부분에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규정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적용범위

K-IFRS 제1105호는 다음의 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비유동자산과 처분집단자산에 적용된다⁴³⁵⁾.

- (1) 이연법인세자산(K-IFRS 제1012호 ‘법인세’)
- (2)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3)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 (4)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 (5)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 (6)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되는 보험계약의 계약상 권리

K-IFRS와 달리 K-GAAP에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개별 기업회계기준서⁴³⁶⁾에서 처분예정이거나 사용을 중단한 자산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다.

나) 분류기준

K-IFRS에서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⁴³⁷⁾)의 장부금액이 계속사

435) K-IFRS 제1105호 문단2와 문단5.

436) K-GAAP 제3호 무형자산, 제5호 유형자산, 제8호 유가증권, 제15호 지분법,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등.

437)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80~87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함.

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⁴³⁸⁾. 즉, K-IFRS에서는 사용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나, K-GAAP에서는 자산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만 매각예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적용한다⁴³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K-IFRS와 K-GAAP의 내용은 <표 II-59>와 같다.

<표 II-5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1) K-IFRS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어야 함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
(2) K-GAAP	유형자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유형자산(문단41)
	무형자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문단73)

다) 측정

K-IFRS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⁴⁴⁰⁾. 이때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⁴⁴¹⁾에서 매각부대원가⁴⁴²⁾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편 비유동

438) K-IFRS 제1105호 문단6, 문단7.

439) K-GAAP 제3호 문단73, 제5호 문단41.

440) K-IFRS 제1105호 문단15.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⁴⁴³⁾.

반면 K-GAAP에서는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무형자산을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감액손실 발생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회수가능가액으로 자산을 재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⁴⁴⁴⁾. 이때 “회수가능가액”이란 순매각가액⁴⁴⁵⁾과 사용가치⁴⁴⁶⁾ 중 큰 금액을 말한다⁴⁴⁷⁾.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에 대한 K-IFRS와 K-GAAP의 내용은 <표 II -60>과 같다.

44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442)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함.

443) K-IFRS 제1105호 문단25.

444) K-GAAP 제3호 문단73, 제5호 문단41.

445)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제삼자와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매매되는 경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446)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447) K-GAAP 제5호 문단5 (차).

〈표 II-6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구분		측 정
(1) K-IFRS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 (=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않음
(2) K-GAAP	유형 자산	•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함 •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감액손실 발생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함 ☞ 즉, 회수가능가액(=Max(순매각가액, 사용가치))으로 자산을 재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 단,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함
	무형 자산	•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유지함 •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함 ☞ 즉, 회수가능가액(=Max(순매각가액, 사용가치))으로 자산을 재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K-IFRS에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단, 다른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순공정가치 감소금액 제외)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⁴⁴⁸⁾. 이후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순공정가치의 증가금액(단, 다른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순공정가치 증가금액 제외)을 이익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은 K-IFRS 제1105호 또는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K-IFRS 제1105호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누계액

448) K-IFRS 제1105호 문단20.

에 한함)을 초과할 수 없다⁴⁴⁹⁾. 이 경우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K-IFRS 제1105호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에 한함)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환입하며,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⁴⁵⁰⁾.

- (1) 우선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2) 그 다음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 중 K-IFRS 제1105호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반면 K-GAAP에서는 매각예정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감액손실 인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⁴⁵¹⁾.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⁴⁵²⁾.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과 관련된 K-IFRS와 K-GAAP의 내용은 <표 Ⅱ-61>과 같다.

449) K-IFRS 제1105호 문단21, 문단22.

450) K-IFRS 제1105호 문단23.

451) K-GAAP 제3호 문단67, 제5호 문단36.

452) K-GAAP 제3호 문단67, 제5호 문단36.

〈표 II-6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구분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1) K-IFRS	•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순공정가치의 하락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 이후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하되, 그 금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산 : K-IFRS 제1105호 또는 K-IFRS 제1036호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 – 처분자산집단 : Min(㉠, ㉡) ㉠ 다른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순공정가치의 증가금액 ㉡ K-IFRS 제1105호의 측정 규정을 적용받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K-IFRS 제1105호 또는 K-IFRS 제1036호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
(2) K-GAAP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함 •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함

마) 매각계획의 변경

K-IFRS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을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³⁾.

- (1)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 (2)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⁴⁵⁴⁾

453) K-IFRS 제1105호 문단26~28.

454)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반면 K-GAAP에는 매각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표시와 공시

K-IFRS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 역시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⁴⁵⁵⁾.

K-GAAP에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⁶⁾.

2) 법인세법의 규정

가) 매각예정인 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법규정

법인세법에는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은 없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나,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유허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⁴⁵⁷⁾.

- (1)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

예를 들어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⁴⁵⁸⁾.

455) K-IFRS 제1105호 문단38.

456) K-GAAP 제5호 문단41.

457)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458) 서면2팀-1107, 2006.06.15.; 서이 46012-11751, 2002.09.19.; 법인 46012-759, 1996.03.09.

그러나 사업에 제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 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⁴⁵⁹⁾.

나) 자산의 손상차손과 관련된 세법규정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자산의 감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표 II-62>의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결산시 손실로 계상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⁴⁶⁰⁾.

<표 II-62>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액손실

구분	평가액
①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②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의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③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
④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

459) 서이 46012-11108, 2003.06.05.

460)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271

표에서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액손실의 사례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지만, 지분상품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K-IFRS 제1105호에 의한 손상차손 중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 (1)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감액
- (2)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등의 사유로 파멸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감액

한편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⁴⁶¹⁾. 예를 들어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⁴⁶²⁾.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매각예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에서는 사용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그러나 K-GAAP에서는 감가상각 중단의 요건으로서 사용의 중단을 요구한다. 법인세법 역

461)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462) 서면2탐-2341, 2004.11.15.

시 기본적으로는 K-GAAP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경우 자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감가상각시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사용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었으나,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폐기 예정인 자산에 대하여 K-IFRS에서는 자산의 폐기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⁴⁶³⁾, 법인세법에서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감가상각을 중단하기 때문에 양자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K-IFRS의 규정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표 II-6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K-IFRS와 법인세법의 규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표 II-63>의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임).

〈표 II-6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기준 변경이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산의 사용중단	자산의 계속 사용
매각예정분류 기준 충족	K-IFRS	감가상각 중단	감가상각 중단
	법인세법	감가상각 중단	감가상각 중단하지 않음
	고려사항	N/A	시인부족액 발생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
매각예정분류 기준 미충족	K-IFRS	폐기·처분 시점까지 계속하여 감가상각	감가상각 중단하지 않음
	법인세법	감가상각 중단	감가상각 중단하지 않음
	고려사항	상각부인액 발생 →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필요	N/A

463) 폐기될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에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

② 개선방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분류기준 차이는 기업의 감가상각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의 보유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아닐뿐더러 K-IFRS에서 사용하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의적인 분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산의 손상차손과 관련된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K-IFRS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산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이후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순공정가치의 증가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부합되는 손상차손만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손상차손 계상액은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하며, 이로 인해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⁴⁶⁴⁾.

현행 법인세법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표 Ⅱ-64>와 같다.

464) 국심2007부797, 2008.01.21., 서면2탐-1884, 2004.09.09. 외 다수.

〈표 II-6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최초로 매각 예정비유동 자산으로 분 류하는 경우	〈회계처리〉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대) 비유동자산 × 손상차손 ×
	〈세무조정〉 [1]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상차손이면 → 추가적인 세무조정 없음 [2]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손상차손이면 → 자산의 종류 및 사용 중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이 달라짐 [2-1]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 K-IFRS에 의한 손상차손 계상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손금부 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한 때 추인됨 [2-2]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사용중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이 달라짐 [2-2-1] 자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 K-IFRS에 의한 손상차손 계상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손 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 차손환입이 발생한 때 추인됨 [2-2-2]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K-IFRS에 의한 손상차손 계상액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일시조기인식금액 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함. 즉, 감가상각비 한도초 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상각부 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한 때 또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 추인됨
(2) 이후에 순공정가치 가 감소하는 경우	〈회계처리〉 (차) 손상차손 × (대)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세무조정〉 (1)과 동일함
(3) 이후에 순공정가치 가 증가하는 경우	〈회계처리〉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대) 손상차손환입 ×
	〈세무조정〉 K-IFRS에 의한 손상차손환입 계상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로 소득처분함

② 개선방안

당해 자산이 사업에 사용 중인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면 단순히 기업회계상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액) 계상액을 전액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당해 자산이 사업에 사용 중인 감가상각자산이라면(위의 표의 [2-2-2]의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IFRS 채택 이후 기업의 세무조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무상 문제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의 배분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이다. K-IFRS에서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우선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 장부가액과 상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K-IFRS 제1105호의 적용을 받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각 자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자산은 감액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다른 자산의 감액손실을 분배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⁴⁶⁵⁾을 살펴보면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K-IFRS 제1105호 문단23에 따라 다른 자산의 감액손실을 배분받은 경우에도 이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이 법인세법상 감액이 인정되는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의 평가감⁴⁶⁶⁾으로 구성되는 경우,

465) 국심2007부797, 2008.01.21., 서면2탐-1884, 2004.09.09. 외 다수.

466) ①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②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이를 K-IFRS 제1105호 문단23에 따라 다른 자산에 배분한 경우에도 세무상 전액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요약

이상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한 내용은 <표 II-6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65>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분류기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개별 기준서에서 언급) - 사용중단을 전제로 함	사용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함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없음 -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류자산 제외)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함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분류기준 차이(사용중단 여부)로 인해 기업의 감가상각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K-IFRS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의적인 분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 유지
측정·감가상각	-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무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함 - 매 회계연도 말에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 측정 : min[순공정가치, 장부금액] -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 이후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손상차손환입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자산의 감액이 인정되지 않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정하고 있음	- 사업에 사용 중인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감가상각 시부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음 -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의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의 배분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 신설

〈표 II-65〉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측정· 감가상각	검토해야 함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심각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함 - 이후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면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함(한도: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처리함(한도: K-IFRS 제1105호 또는 제1036호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 차 손 누 계액)		배분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	

아. 리스

리스에 관한 K-IFRS 제1107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17 “Leas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K-IFRS 제1107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IAS) 제17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K-GAAP에서는 제 19호 “리스”에서 규정하고 있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은 K-IFRS 제1017호와 K-GAAP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규정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K-IFRS 제1017호는 천연자원과 영화필름 등과 같은 일부 예외⁴⁶⁷⁾를 제외한 모든 리스거래에 대해서 적용된다⁴⁶⁸⁾. 그러나 K-IFRS 제1017호는 투자부동산⁴⁶⁹⁾과 생물자산⁴⁷⁰⁾에 대한 측정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⁴⁷¹⁾. 이에 비해, K-GAAP 제19호는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측정기준으로의 사용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K-GAAP 제19호 제정 당시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K-IFRS와 K-GAAP은 동일하게 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리스회계를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게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⁴⁷²⁾.

나) 리스의 분류

리스회계는 리스자산의 분류에 따라 그 처리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리

467)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468) K-IFRS 제1017호 문단2.

469)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두 가지 모두)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투자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 리스이용자 보유 투자부동산
-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투자부동산

470) 이에 해당되는 생물자산은 다음과 같다.

-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
-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

471) K-IFRS 제1017호 문단2.

472) K-IFRS 제1017호 문단3.

스자산의 분류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⁴⁷³⁾.

K-IFRS는 리스분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즉, K-IFRS에 따르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가 이전된다고 보아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반면에,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한다⁴⁷⁴⁾. 이에 비해, K-GAAP은 금융리스의 용어정의에 의해서 금융리스를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로 정의하였다. 이는 K-IFRS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원칙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에 대한 판단은 리스자산의 분류에 중요하다⁴⁷⁵⁾. 이로 인해,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⁴⁷⁶⁾. 거래의 실질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K-IFRS와 K-GAAP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표 II -66>의 예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473) K-IFRS 제1017호 문단7.

474) K-IFRS 제1017호 문단7.

475) K-IFRS 제1017호 문단10.

476) K-IFRS 제1017호 문단9.

〈표 II-66〉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거래

K-IFRS	K-GAAP
(1)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1)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얼마든지 매수선택권이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u>경제적 내용연수</u> ⁴⁷⁷⁾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u>내용연수</u> ⁴⁷⁸⁾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u>리스약정일</u>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4) <u>리스실행일</u>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u>설계</u> 의 리스자산인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u>용도</u> 의 리스자산인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는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의 분류 시점은 K-IFRS의 경우 리스약정일⁴⁷⁹⁾이고, K-GAAP의 경우 리스실행일⁴⁸⁰⁾이다. K-GAAP의 리스실행일은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이 실

477) 경제적 내용연수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량이나 유사단위의 수량

478) 내용연수 :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

479) 리스약정일 :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

480) 리스실행일 :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

무상 차이가 없다⁴⁸¹⁾는 점을 고려한 분류시점이다.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된다. 다만, 토지의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K-IFRS)나 내용연수(K-GAAP)의 규정은 적용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금융리스로 보기 어렵다⁴⁸²⁾.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리스는 개별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⁴⁸³⁾.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K-IFRS에 따르면,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하지만,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⁴⁸⁴⁾. K-GAAP의 경우에도, 최소리스료의 배분 가능성과 운용리스라는 사실의 명백성에 따라 K-IFRS과 동일하게 분류하지만, 최소리스료는 리스 실행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효익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⁴⁸⁵⁾.

481)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을 취득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가계약 체결, 리스자산 취득, 정식계약 체결이라는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를 수행한다. 여기서 정식계약은 가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체결되며,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개시일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리스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리스이용자가 나중에 결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실무상 전형적인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가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또는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이 일치하게 되어 구분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개시일(또는 리스약정일)에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리스개시일(또는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준칙상의 리스실행일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였음.

482) K-IFRS 제1017호 문단14.

483) K-IFRS 제1017호 문단15, K-GAAP 제19호 문단13.

484) K-IFRS 제1017호 문단16.

K-IFRS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K-IFRS 제 1040호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⁴⁸⁶⁾.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금융리스인 경우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인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⁴⁸⁷⁾. 이에 비해 K-GAAP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다) 리스이용자

(1) 금융리스

리스이용자는, K-IFRS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K-GAAP의 경우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⁴⁸⁸⁾. 이때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⁴⁸⁹⁾이나, K-GAAP의 경우 이 내재이자율을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특정하고 있다⁴⁹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⁴⁹¹⁾.

K-IFRS의 경우,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구분된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485) K-GAAP 제19호 문단14.

486) K-IFRS 제1017호 문단19.

487) K-IFRS 제1017호 문단19.

488) K-IFRS 제1017호 문단20, K-GAAP 제19호 문단16.

489) K-IFRS 제1017호 문단4.

내재이자율 : 리스약정일 현재 (1) 최소리스료와 (2)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나)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 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490) K-IFRS 제1017호 문단20, K-GAAP 제19호 문단16.

491) K-IFRS 제1017호 문단20, K-GAAP 제19호 문단16.

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한다⁴⁹²⁾. 즉, 기간별 금융리스의 금융원가를 계산할 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의 개산방식(approxim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K-GAAP의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³⁾. 따라서 K-IFRS는 유효이자율 이외의 다른 방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 말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같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정책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된다면, K-IFRS의 경우 기대사용기간으로, K-GAAP의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로 한다. 다만,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 운용리스

K-IFRS의 경우,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⁴⁹⁴⁾. K-GAAP의 경우,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료로 인식할 비용을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⁹⁵⁾.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되며,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

492) K-IFRS 제1017호 문단25.

493) K-GAAP 제19호 문단21.

494) K-IFRS 제1017호 문단33.

495) K-GAAP 제19호 문단27.

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기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⁴⁹⁶⁾.

라) 리스제공자

(1)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⁴⁹⁷⁾. 리스제공자가 회수하는 리스료에는 금융리스채권의 원금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된다.

이자수익은, K-IFRS의 경우,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하고⁴⁹⁸⁾, K-GAAP의 경우,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⁴⁹⁹⁾. 따라서 K-IFRS와 K-GAAP의 경우, 이자수익의 인식방법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고,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수익도 인식한다.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한다⁵⁰⁰⁾. 이때의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이고,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⁵⁰¹⁾.

496) K-IFRS 제1017호 문단34.

497) K-IFRS 제1017호 문단36, K-GAAP 제19호 문단29.

498) K-IFRS 제1017호 문단39.

499) K-GAAP 제19호 문단32.

500) K-IFRS 제1017호 문단42, K-GAAP 제19호 문단35.

501) K-IFRS 제1017호 문단44, K-GAAP 제19호 문단37.

(2) 운용리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K-IFRS의 경우,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⁵⁰²⁾. 다만, K-GAAP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중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K-IFRS의 경우,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⁵⁰³⁾. 따라서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⁵⁰⁴⁾. K-GAAP의 경우,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리스료수익으로 인식한다. 리스료수익에는 보험료나 수선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액은 제외된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⁵⁰⁵⁾.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⁵⁰⁶⁾.

마) 판매후리스거래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아니하고, K-IFRS의 경우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이연하여 환입하는 반면에⁵⁰⁷⁾, K-GAAP의 경우 리스자

502) K-IFRS 제1017호 문단49.

503) K-IFRS 제1017호 문단50.

504) K-IFRS 제1017호 문단51.

505) K-IFRS 제1017호 문단52.

506) K-GAAP 제19호 문단53.

507) K-IFRS 제1017호 문단59.

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환입한다⁵⁰⁸⁾.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⁵⁰⁹⁾.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K-IFRS의 경우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하며⁵¹⁰⁾, K-GAAP의 경우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⁵¹¹⁾.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K-IFRS의 경우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K-GAAP의 경우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⁵¹²⁾.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발생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⁵¹³⁾.

2) 관련 세법 규정⁵¹⁴⁾

가) 적용범위

세법에서 인정되는 리스거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등’)이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508) K-GAAP 제19호 문단51.

509) K-IFRS 제1017호 문단61.

510) K-IFRS 제1017호 문단61.

511) K-GAAP 제19호 문단53.

512) K-IFRS 제1017호 문단61, K-GAAP 제19호 문단53.

513) K-IFRS 제1017호 문단63, K-GAAP 제19호 문단55.

514)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⁵¹⁵⁾. 이에 반해, K-IFRS, K-GAAP의 경우에는, 여신금융 전문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경우에도 리스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상 리스거래로 분류되나 세무상 리스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리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⁵¹⁶⁾. 또한 BTL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시 당해 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였어도, 세법에 따르면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⁵¹⁷⁾.

또한 국제리스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니므로, 리스회계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이를 직접 규정하는 세법상 규정이 없다. 다만, 유권해석⁵¹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를 임대차거래로 보아 세무처리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리스로 중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나) 리스의 분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는 별도로 리스를 분류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특정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는 요건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법인세법에서 제시한 금융리스 분류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법인

515) 서이46012-11217, 2003.06.26.

516) 서면2탐-309, 2007.02.15.

517) 법인-713, 2009.02.20.

518) 외인22601-2281, 1985.07.23.

세법상 금융리스로 본다. 반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금융리스로 보는 요건⁵¹⁹⁾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리스기간⁵²⁰⁾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 ②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③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⁵²¹⁾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⑤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금융리스에 대한 분류와 K-IFRS, K-GAAP에서 규정한 분류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나 K-GAAP에서 제시한 요건은 일종의 예시규정이나, 세법상 분류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둘째,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K-IFRS나

5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520)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함.

521)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

K-GAAP의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⁵²²⁾. 이는 회계의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법의 경우, 열가구매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K-IFRS나 K-GAAP의 경우에는 행사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확실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K-IFRS나 K-GAAP상 리스분류가 세법상 리스분류와 달라질 수 있다.

다) 리스이용자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본다. 즉, 리스이용자는 차입한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세무처리를 한다.

리스이용자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로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⁵²³⁾.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기본리스료⁵²⁴⁾ 중 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조정리스료⁵²⁵⁾로 한다.

또한,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므로⁵²⁶⁾, 리스이용자는 그가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자산을 감가상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

522) K-GAAP의 실무지침에서는 특정한 수치기준을 제시하기도 함.

523)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524)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

525)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

5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가액은 제외된다⁵²⁷⁾.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인 임대차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 리스제공자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회사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기본리스료 중 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조정리스료로 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⁵²⁸⁾.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금융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 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회수가능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⁵²⁹⁾.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회수·보유중인 리스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⁵³⁰⁾.

5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528)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529) 법인46012-2173, 2000.10.26.

530) 법인46012-2173, 2000.10.26.

마) 판매후리스

판매후리스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내용과 실질을 파악하여 거래의 형태를 분류한다. 즉,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임대차, 판매거래, 금전소비대차 및 리스거래로 볼 수 있다.

리스거래로 분류되는 판매후리스계약의 경우,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리스거래 이외의 거래로 분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선박대여업자가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 후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용선기간에 받은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급받고 다시 해운사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로 본다⁵³¹⁾.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아래에서 K-IFRS의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세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가) 적용범위

세법상 인정되는 리스거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531) 서면2팀-1904, 2005.11.24.

중소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⁵³²⁾이 제공하는 리스거래에만 해당된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세법상 리스거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⁵³²⁾. 따라서 K-IFRS나 K-GAAP에 의해서 리스거래로 인정된 거래도 세법에서는 리스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등인 리스제공자의 세무처리가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리스제공자의 세무처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의 리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각각 달리 세무처리가 되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세법상 리스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무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무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은 개별 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있으나, 건별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리스거래에 관하여 회계와 세법상 분류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이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빈번할수록 세무조정 빈도가 커지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리스거래로 보는 적용범위에 대한 K-IFRS의 규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K-IFRS나 K-GAAP상 리스의 적용범위를 수용할 경우, 기존의 규정이나 유권해석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져, 실제적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세법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점진적으로 적용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세법상 리스거래로 보는 범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등에 의한 리스거래에 추가하여 거래의 실질이 리스인 거래를 그 적용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실질이 리스거래인 경우,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리스제공자에게도 시설대여업

532) 서이46012-11217, 2003.06.26.

자인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조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리스거래로 보는 적용범위에 대한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리스분류

금융리스로 보는 요건의 차이로 인해, 세법상 분류가 K-IFRS나 K-GAAP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상 리스분류 규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만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다음으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K-IFRS의 경우, 리스분류의 재량성이 증대되면서 세법상 리스분류와의 차이가 발생할 빈도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앞에서 설명한 세무조정의 빈도와 납세자의 협력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법은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기준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경제적 실질상 운용리스인 거래도 세법의 형식적인 요건에 충족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법에 따라 리스거래를 분류할 때, K-IFRS처럼 리스분류에서 납세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할 경우, 리스거래의 당사자는 재량권을 사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래의 실질상 운용리스인 거래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하므로 납세자는 이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모호하여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K-IFRS처럼 납세자에게 리스분류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리스분류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리스회사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금융원가 계산

K-GAAP에 따르면, 기간별 금융리스의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과 달리, K-IFRS에 따르면 기간별 금융리스의 금융원가를 계산할 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한 개산방식(approximation)에 의한 금융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법의 경우 이자율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금융원가로 계산한다. 이는 세법이 K-GAAP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K-GAAP의 계산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개산방식에 의한 금융원가를 인식할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K-IFRS에 따른 개산방식에 의한 금융원가도 세법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 감가상각비

K-IFRS의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은 그 자산의 기대사용기간인 반면, 세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하는 내용연수의 차이에 따라 세무조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감가상각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이 수행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할 경우 유보사항의 관리 등에 납세자의 노력이 투입된다. 따라서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K-IFRS에서 정한 기대사용기간을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판매후리스거래

판매후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될 때 K-GAAP의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에 이연하여 환입하는 반면에, 세법에서는 리스기간 동안에 이연하여 환입하므로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K-IFRS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이연하여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 동안에 이연하여 환입하므로

세법상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 상 금융리스는 자본거래로 보는 견해를 고려할 때, 판매 관련 손익은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손익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K-IFRS의 규정을 수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후리스가 운용리스에 해당될 때 K-IFRS와 K-GAAP의 경우,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장부금액, 공정가치 및 판매가치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된다. 즉 판매로 인한 손익을 즉시 인식하기도 하고 손익을 이연하기도 한다. 먼저, 판매이익을 이연하는 경우에는 첫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할 때에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과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하나 이러한 손실이 미래의 낮은 리스로 보상되는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이연한다. 둘째,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클 때에,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공정가치와 판매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이연하여 환입한다. 다음으로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경우로는 손익을 이연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즉시 인식한다. 반면에 법인세법 기본통칙⁵³³⁾에서 규정한 판매에 따른 손익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판매후리스의 분류에 따른 구분이 없다. 즉 앞서 판매후리스가 금융리스로 처리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판매후리스가 운용리스에 해당되더라도, 판매와 관련된 손익은 리스기간에 이연되어 환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후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판매금액과 리스료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매후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K-IFRS과 K-GAAP와 동일하게 판매 관련 손익을 즉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33)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4) 리스에 대한 요약

이상의 리스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6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67> 리스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범위	리스료를 받고 특정자산을 대여하는자와 사용하는자의 모든 리스거래에 적용(단, 일부 제외)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를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인 리스거래에 적용(다만, 일부 제외)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공하는 리스거래만 해당됨	거래의 실질이 리스임에도 리스제공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짐. 세무처리의 실질에 대한 파악이 건별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상 비효율 초래	리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리스제공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리스분류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로 분류 가능한 계약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로 분류 가능한 계약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	금융리스로 보는 5가지의 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함	회계에서, 리스분류에 대한 재량적인 판단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세법상 분류에 따르지 않고 회계상 분류에 따라 리스를 분류할 가능성이 증대함. 이로 인한 세무조정 증대 가능성	리스분류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사항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원가 계산	기간별 금융리스의 금융원가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함.	기간별 금융리스의 금융원가에 대하여, 개산방식에 의한 계산 가능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계산을 손금과 익금에 반영	개산방식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	개산방식에 의한 계산방식 수용할 필요 있음
감가상각비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리스자산의 기대사용기간 감가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기대사용기간에 대한 추정에 따라 세무상 내용연수와 차이가 발생할	내용연수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으로 인해, 현행세제를 유지하

〈표 II-67〉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임대업의 기준내 용연수 및 내용연 수범위를 적용	가능성이 있음.	는 것이 타당함
판매후리스	판매후리스가 운 용리스에 해당될 때, 리스료와 판매 가격이 공정가치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손익 이 즉시 인식함	(좌동)	판매와 관련된 손 익은 리스기간 균 등하게 배분되어 상각 또는 환입 됨.	세법에서는 판매 후리스가 운용리 스로 분류되는 경 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 에 관한 세무조정 이 발생	판매후리스가 운 용리스로 분류될 경우, 판매손익에 관한 규정이 필요

자.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대해서는 IFRS 기준서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로 제정되어 있다. K-GAAP에서는 별도의 기준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조보조금 등의 처리”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고보조 등에 의해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용어의 정의 및 분류

K-IFRS와 K-GAAP에서의 정부보조금의 정의와 분류기준은 〈표 II-68〉과 같다.

〈표 II-68〉 정부보조금의 정의와 분류기준

구분	K-IFRS	K-GAAP
용어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정의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분류	- 자산관련보조금 - 수익관련보조금	- 상환의무 있는 국고보조금 -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 기타의 국고보조금

(1) 정부보조금의 정의

K-IFRS에서는 정부보조금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보조금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부지원’이란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정부보조금에서 제외된다⁵³⁴⁾.

534) K-IFRS 해석서 제2010호(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K-GAAP에서의 국고보조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포함한다⁵³⁵⁾. K-IFRS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이 반드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 그러나 K-IFRS 제2010호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보조금의 범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⁵³⁶⁾.

(2) 정부보조금의 분류

K-IFRS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관련보조금’,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이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K-IFRS에서 정부보조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과 달리 K-GAAP에서는 상환의무에 따라, 우선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과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다시 자산취득조건인 국고보조금과 기타 운영자금인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다⁵³⁷⁾. K-IFRS에서 정의하는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은 K-GAAP에서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중 자산취득조건 국고보조금과 기타 운영자금인 국고보조금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않을 수도 있다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535)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111, 2001.8.1.

536) K-IFRS 제2010호 “정부지원 :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53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나) 정부보조금의 인식조건

K-IFRS에서는 정부보조금의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② 보조금의 수취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⁵³⁸⁾. 이는 보조금을 수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을 수취했다고 무조건 인식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정부보조금은 현금 등의 자산을 수취하는 방법 외에 정부에 대한 부채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⁵³⁹⁾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K-GAAP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인식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취득 시점에 인식하고 있다.

다)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

K-IFRS에서는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의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접근법은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수익접근법은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⁵⁴⁰⁾. 각각의 방식을 주장하는 논거는 <표 Ⅱ-69>와 같다.

538) K-IFRS 제1020호 문단7.

539)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

540) K-IFRS 제1020호 문단12.

〈표 II-69〉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구분	논거
자본접근법	① 정부보조금은 상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② 정부보조금은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원가 없이 정부에서 받은 장려금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익접근법	① 주주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고 적절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건을 준수하고 부여된 의무를 충족함으로써 얻는다. ③ 법인세와 그 밖의 세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일환인 정부보조금도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K-IFRS는 정부보조금의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 중 수익접근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인식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GAAP에서도 수익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 취득에 사용할 국고보조금을 자본조정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⁵⁴¹⁾

(2)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방법

K-IFRS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

54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인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만일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해당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정부보조금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K-IFRS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과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⁵⁴²⁾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두 방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경우, 보조금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연수익방법은 수익과 관련 비용이 각각 인식되는 방법이고 관련자산 차감방법은 관련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형태이다. 두 방법 모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나 이연수익 방식이 부채가 더 많이 계상된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의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다⁵⁴³⁾.

54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

K-GAAP에서의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과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과 기타의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중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의 경우를 보면,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⁵⁴⁴⁾.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정부보조금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 시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상환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⁵⁴⁵⁾.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⁵⁴⁶⁾.

K-IFRS의 자산관련 정부보조금과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을 K-GAAP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중 자산취득에 사용할 국고보조금과 기타의 국

543) K-IFRS 제1020호 문단29.

544)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545)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4-053, 2004.10.14.

546)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고보조금에 대응하여 각각의 표시방법을 비교하면 <표 Ⅱ-70>과 같다.

<표 Ⅱ-70> 정부보조금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구분	K-IFRS	K-GAAP ¹⁾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①, ② 중 선택적용 ① 이연수익으로 표시 ②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	-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수익관련 정부보조금	①, ② 중 선택적용 ① 별도계정 또는 '기타수익'으로 표시 ②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	①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면 영업수익, 관련이 없으면 영업외수익 ②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 특정비용과 상계 ③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경우: 선수수익

주: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4)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평가

토지 등의 비화폐성 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태의 정부보조금의 경우 K-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⁵⁴⁷⁾.

K-GAAP에서는 국고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 혹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서 취득일의 공정가액만을 인정한다⁵⁴⁸⁾.

547) K-IFRS 제1020호 문단23.

548)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31, 제5호 유형자산 문단18, 무형자산의 경우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함.

(5) 정부보조금의 상환

K-IFRS에서는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⁵⁴⁹⁾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⁵⁵⁰⁾.

K-GAAP에서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규정상⁵⁵¹⁾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무적으로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실무상 K-IFRS와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⁵⁵²⁾.

정부보조금의 상환의무 발생에 대한 회계처리는 <표 II-71>과 같다.

<표 II-71> 정부보조금 상환의무 발생에 대한 회계처리

구분	상환의무 발생 시 회계처리
자산관련보조금	-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 또는 이연수익에서 차감 -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수익관련보조금	-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을 먼저 감소 - 상환금액이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549)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함.

550) K-IFRS 제1020호 문단32.

551)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함.

552) 한국회계기준원(2008b) p. 131

라) 공시사항

K-IFRS에서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및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 내용,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K-GAAP에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된 국고보조금의 내용,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⁵⁵³⁾. 따라서 공시내용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K-IFRS의 공시사항 중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이라는 표현에서 ‘정부지원금’이라는 용어 대신 ‘정부지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이행 조건과 우발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⁵⁵⁴⁾.

정부보조금에 대한 공시사항은 <표 II-72>와 같다.

<표 II-72> 정부보조금에 대한 공시사항

구분	K-IFRS	K-GAAP
공시 사항	- 채택한 회계정책 -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및 직접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 내용 -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	- 회계정책 - 재무제표에 인식된 국고보조금의 내용 -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

55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554) 정부지원이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로 정의.

2) 법인세법의 규정

가)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수취는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⁵⁵⁾.

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1) 국고보조금의 범위

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으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⁵⁵⁶⁾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이 있다⁵⁵⁷⁾.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 지급받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

555)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귀속시기 : 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지급받기 전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 개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서아-1497, 2005.9.20).

556)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557)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36조 제4항).

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정보화촉진법’ 제34조 제2항(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중 특정 설비⁵⁵⁸⁾에 투자하는 출연금이다⁵⁵⁹⁾.

(2) 고정자산 취득자금의 손금산입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수취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중에 반드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 또는 개량이 이루어지면 된다⁵⁶⁰⁾. 다만,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해당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사용기한으로 본다. 이 기한 내에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미사용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금액은 사업용 자산⁵⁶¹⁾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⁵⁶²⁾.

손금산입하는 방법은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토지 등과 같은 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558)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기타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비.

55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560)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561)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함.

562)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

은 법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조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즉,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⁵⁶³⁾.

(3)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다. 이때 상계할 감가상각비 금액은 취득가액 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4) 고정자산의 처분

만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의 미상계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자산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5)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환입

국고보조금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환입을 하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563)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311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등을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 기타 국고보조금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법률에 의거한 국고보조금 외에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것도 국고보조금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약정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환의무가 확정된다. 당해 기술개발이 실패하면 출연금의 반환의무가 없으나 성공하면 출연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 출연 당시에는 상환의무가 미확정상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의 익금으로 보도록 하였다⁵⁶⁴⁾. 그러나 2005년 9월 20일 이후 사업연도에 지원받은 출연금부터는 출연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반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⁵⁶⁵⁾.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비화폐성 보조금의 측정

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수령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매입, 자가생산, 합병·분할, 현물출자 등의 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

564) 서아-2677, 2004.12.20.

565) 서아-1497, 2005.9.20.

도록 하고 있다⁵⁶⁶⁾. 또한 K-GAAP에서도 비화폐성 국고보조금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이는 시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비화폐성 보조금의 평가액은 K-GAAP과 세법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공정가치 뿐만 아니라 명목금액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계상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평가금액과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규정을 개정하여 취득가액을 시가 또는 명목가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고보조금의 수취가 모든 기업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법을 K-IFRS에 맞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나) 자산관련보조금

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수령하고 K-GAAP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보조금 수령 시,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유보)한다. 그리고 자산 취득 시,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유보)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K-IFRS에서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 또는 이연수익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K-IFRS

56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연수익처리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익관련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자산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받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K-GAAP에서는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을 ‘기타수익’ 또는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K-GAAP보다 세법에 일치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수익관련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오히려 더 간단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상환의무의 발생

세법에서는 상환의무가 미확정인 출연금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향후 개발성과의 확정에 따라 반환하게 되는 경우 반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K-GAAP에서는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K-IFRS에서는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K-IFRS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상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인식조건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교부통지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K-GAAP에서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인식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자산을 수취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K-IFRS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인식조건으로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의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을 수취했다고 무조건 인식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K-IFRS에서의 인식기준과 세법의 인식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에서 제시하는 인식기준을 세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세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부보조금에 대한 요약

이상의 “정부보조금” 관련 내용은 <표 II-7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73〉 정부보조금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인식조건	명시적인 인식조건 없으나 실무상 수취시점에 인식	-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② 보조금의 수취	지급받은 날 또는 교부통지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교부통지 받은 날과 수취일 간에 시차가 있을 수 있음	K-IFRS의 인식조건을 세법상 추가
비화폐성보조금의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또는 명목금액	공정가치	세무조정사항 발생할 수 있음	현행 유지
자산관련보조금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이연수익(부채) 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세법상 인정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익금산입 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수령 시 익금산입, 자산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현행 유지
수익관련보조금	①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 ② 특정비용 보전 목적 : 특정비용과 상계 ③ 조건 충족 전에 수취 : 선수수익	〈①, ② 중 선택적용〉 ① 별도계정 또는 '기타 수익'으로 표시 ② 관련 비용에서 차감	익금산입	K-GAAP에서 선수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필요했으나, K-IFRS는 세법과 일치하는 세무조정 불필요해짐	-
상환의무의 발생	명시적 규정 없음	회계추정의 변경	출연금 교부통지일에 익금산입, 반환통지일에 익금에서 차감 또는 손금산입	실질적으로 동일	-

차.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K-IFR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응되는 K-GAAP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다보니 그동안 추출산업의 탐사·개발 등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지 않고, 광업권을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어 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광업권을 무

형자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는 K-IFRS 역시 추출산업의 탐사원가에 대하여 무형자산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서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⁵⁶⁷⁾.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독립된 기준서의 존재 여부

K-GAAP에서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과 관련하여 독립된 기준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K-GAAP 제3호 “무형자산”과 제5호 “유형자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K-GAAP에 따르면 광업권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며⁵⁶⁸⁾, 천연자원의 개발·탐사 및 채굴 활동에 사용되는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은 유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⁵⁶⁹⁾.

K-IFRS의 경우 탐사와 평가활동 단계의 지출에 대해서는 K-IFRS 제1106호가 적용되며, 광물자원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개념체계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이 적용된다⁵⁷⁰⁾.

나) 탐사원가와 관련된 K-IFRS 제1106호의 내용 요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GAAP에서는 탐사원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K-IFRS 제1106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탐사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567) K-IFRS 제1038호의 문단7에서는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추출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활동이나 거래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르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음.

568) K-GAAP 제3호 부록 1 결론도출근거 A6.

569) K-GAAP 제5호 문단3.

570) K-IFRS 제1106호 문단10.

① 적용범위

추출산업의 원가는 탐사원가, 개발비, 생산비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탐사원가는 탐사권리의 취득 및 조사대상 지역의 발굴을 위한 지형학적·지질학적·지구과학적·지구물리학적 연구,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발비는 탐광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탐광을 결정한 경우에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접어들기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하에 매장이 확인된 광물자원의 추출·처리·집하·저장 등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생산비는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광물자원을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이러한 추출원가의 분류는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추출원가의 분류

탐사와 평가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개발비	생산비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의 취득시점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시점	본격적인 생산시점

K-IFRS 제1106호는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활동 이외의 다른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즉,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⁵⁷¹⁾.

- (1) 탐사와 평가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
- (2)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571) K-IFRS 제1106호 문단5.

②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10⁵⁷²⁾을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⁵⁷³⁾. 그러나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K-IFRS 제1106호의 문단9와 10⁵⁷⁴⁾을 적용한 경우에는 K-IFRS 제1008호의 문단11과 12의 적용이 면제되는바⁵⁷⁵⁾, 실무상 기존에 기업에서 수행하던 회계실무를⁵⁷⁶⁾ 계속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⁵⁷⁷⁾.

572)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이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73) K-IFRS 제1106호 문단6.

574) ① 문단9 :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 계속 적용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로는 탐사권리의 취득,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추출,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등이 있다.

② 문단10 :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75) K-IFRS 제1106호 문단7. K-IFRS 제1108호의 문단11과 12는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부재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경영진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576) 회계이론상 탐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탐사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성공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처리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탐사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K-GAAP과 K-IFRS 모두 기업

③ 탐사평가자산의 측정과 표시

인식시점에서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⁵⁷⁸⁾.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⁵⁷⁹⁾.

- (1) 탐사권리의 취득
- (2)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과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 (3) 탐사를 위한 시추
- (4) 굴착
- (5) 표본추출
- (4)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⁵⁸⁰⁾. 예를 들면 시추권은 무형자산으로, 시추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⁵⁸¹⁾.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탐사평가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탐사평가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⁵⁸²⁾.

이 이 세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부원가법을 주장하는 입장은 실패한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데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한 프로젝트의 탐사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송인만 외(2009) p. 452).

577) 한국회계기준원(2008b) p. 40.

578) K-IFRS 제1106호 문단8.

579) K-IFRS 제1106호 문단9.

580) K-IFRS 제1106호 문단15.

581) K-IFRS 제1106호 문단16.

582) K-IFRS 제1106호 문단12.

④ 손상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⁵⁸³⁾.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⁵⁸⁴⁾.

- (1)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 (3)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 (4)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위 (1)~(4)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⁵⁸⁵⁾.

2)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는 법인의 손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⁵⁸⁶⁾. 다

583) K-IFRS 제1106호 문단18.

584) K-IFRS 제1106호 문단20.

585) K-IFRS 제1106호 문단20.

58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2호.

만, 국세청 유권해석⁵⁸⁷⁾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현지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탐사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구분은 기업회계기준과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추출산업의 원가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정비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인지 법인세법 역시 K-GAAP과 마찬가지로 추출산업의 원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기준을 법령이나 통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탐사원가 및 개발비의 즉시 손금처리

① 법인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와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무형고정자산의 종류를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⁵⁸⁸⁾.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무형고정자산 중 광물자

587) 서면2탐-386, 2006.02.21.

원의 탐사 및 개발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자산은 사실상 광업권과 채취권 정도에 불과하다. 국세청 유권해석⁵⁸⁹⁾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지출 내용에 따라 광업권과 기타 탐사원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의 어디에도 광업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광업권’이 단순히 탐사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지출을 말하는 협의의 개념인지, 광물자원의 탐사원가 및 개발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 그러나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는 법인의 손비로 본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 제12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해석해 봤을 때,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상 광업권을 광업법 제3조⁵⁹⁰⁾에 의한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 광업권과 탐광용 자산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기타의 탐사원가 및 개발비는 지출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탐사원가 및 개발비 중 일부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세무상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손금산입·△유보)이 필요하다.

② 개선방향

광물자원의 경우 초기에 막대한 탐사원가 및 개발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세법에서는 대부분의 탐사원가 및 개발비를 지출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탐사원가(개발비 포함)의 초기비용 인식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업이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만약 기업이 자원개발 이외에 다른 사업을 통해 충분

588)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음.

589) 서면2탐-386, 2006.02.21.

590)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한 과세소득을 갖고 있다면 탐사원가(개발비 포함)의 초기비용 인식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단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10년 내에 과세소득과 상계되지 못한 채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상 유·불리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물자원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 중 자산성을 가진 것은 세무상으로도 자본화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탐광을 위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한 개발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본화가 가능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상 개발비의 인식 여부 및 과세소득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고⁵⁹¹⁾,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비용을 예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광물자원의 개발활동에 따른 비용 중 자산성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세법상으로도 자본화하는 것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규정방법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차손

① 법인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탐사원가(개발비 포함)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

591)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개발비는 법인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따라서 법인이 개발비 상당액을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손상차손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가모형만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과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 등의 사유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탐사평가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회계상 평가증 또는 평가감 금액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② 개선방향

탐사평가자산은 상각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원칙(즉,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실현손익만을 과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달라짐으로써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요약

이상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규정은 <표 Ⅱ-7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7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독립된 규정의 존재 여부	- 별도의 기준서 없음 - 광업권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됨 - 천연자원의 개발·탐사 및 채굴 활동에 사용되는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은 유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됨	- 탐사와 평가 활동 단계의 지출: K-IFRS 제1106호 적용 - 광물자원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 개념체계 및 K-IFRS 제1038호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부 내용 다름	구체적인 세무처리 규정 부재	법령이나 통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자산의 인식	해당 규정이 없음	- 실무상 기준에 기업에서 수행하던 회계실무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탐사평가자산은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광업권 및 탐광용 자산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기타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는 지출연도에 법인의 손비로 봄	투자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초기 인식되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기업이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광물자원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 중 자산성 있는 것은 자본화 인정
자산의 평가	해당 규정이 없음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원칙적으로 원가모형만을 인정함	공정가치 평가 또는 손상차손 인식으로 인한 평가차손 인정 문제	현행 규정 유지

카.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

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사건”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K-IFRS상 충당부채 등의 인식, 측정, 변제, 변동 및 사용 등 관련 주요 내용을 K-GAAP 및 K-IFRS상 규정과 비교하고, K-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상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적용범위

K-IFRS 제1037호와 K-GAAP 제17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그러나 ① 미이행계약과 ② 다른 기준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 회계기준에서 모두 적용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⁹²⁾. 이때 미이행계약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정도로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한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미이행계약이라 할지라도 손실부담계약⁵⁹³⁾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기준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양 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 건설계약, 법인세, 리스, 종업원급여, 보험계약을 예시하고 있다.

적용범위와 관련한 양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K-IFRS의 경우 제1037호의 적용대상 사례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 K-GAAP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 관련 부채

②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592) K-IFRS 제1037호 문단1과 K-GAAP 제17호 문단3.

593)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K-IFRS 제1037호 문단10).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 ③ 손실부담계약
- ④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 ⑤ 계류 중인 소송사건
- ⑥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 ⑦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 관련 부채

특히, 항목 ②의 경우 K-IFRS에서는 제1037호 충당부채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적립·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매출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하는 반면, K-IFRS에서는 K-IFRS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를 적용하여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용어의 정의

K-IFRS와 K-GAAP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정의는 유사하다. K-IFRS에서 부채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발부채란 ①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또는 ②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를 의미한다. 한편, 우발자산이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의미한다.

K-GAAP에서 역시 K-IFRS와 동일한 의미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정의에서 불확실성의 판별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인식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 K-IFRS에서는 K-GAAP과는 달리 충당부채와 기타부채의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타부채와 구별되며, 따라서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하는 반면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기타부채의 일부분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다) 인식기준

①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K-IFRS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⁵⁹⁴) 또는 의제의무⁵⁹⁵)가 존재한다.
-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

594) 법적의무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② 법률, ③ 기타 법적 효력(K-IFRS 제1037호 문단10).

595) 의제의무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①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 ② 위 ①의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함(K-IFRS 제1037호 문단10).

능성이 높다.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K-GAAP 역시 K-IFRS와 유사하게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 자산의 유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K-IFRS의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경우(probable)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반면, K-GAAP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highly probable)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으로 50%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80%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⁵⁹⁶⁾.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K-GAAP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충당부채가 재무제표에 계상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채금액과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발부채의 경우 K-IFRS와 K-GAAP에서는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⁵⁹⁷⁾. 다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산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당해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자산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변제의 가능성을 주석에 공시한다. 그리고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상황이 변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K-GAAP에서는 자산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게 된 경우 인식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자산의 유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경우가 아닌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 및 공시기준을 정리하면 [그림 II-2]와 같다.

596) 신현걸 외(2009) p. 484.

597) K-IFRS 제1037호 문단27, K-GAAP 제17호 문단20.

[그림 II-2]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 및 공시기준

발생가능성 : 0%		50%	80%	100%
K-GAAP :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총당부채 인식
K-IFRS :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총당부채 인식	

② 우발자산

K-IFRS와 K-GAAP에서는 우발자산 역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⁵⁹⁸⁾. 단,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정도에 따라 우발자산은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K-GAAP의 경우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K-IFRS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높은 경우는 80% 이상의 가능성을, 높은 경우는 50%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K-IFRS의 도입으로 우발자산이 주석으로 공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우발자산 관련 상황변화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해당 자산과 함께 관련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K-IFRS와 K-GAAP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처리에 해당한다.

우발자산의 인식 및 공시기준을 정리하면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우발자산의 공시기준

발생가능성 : 0%		50%	80%	100%
K-GAAP :	미인식			우발자산 공시
K-IFRS :	미인식	우발자산 공시		

598) K-IFRS 제1037호 문단31, K-GAAP 제17호 문단24.

라) 측정기준

① 최선의 추정치

K-IFRS와 K-GAAP에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 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자가 판단한다. 특히, K-IFRS에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하되,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가능한 결과와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며,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⁵⁹⁹⁾

제품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보장하는 보증서와 함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임.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는 1백만원, 중요한 결함일 경우에는 4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함. 과거경험 및 미래예상에 따르면, 과세기간에 판매된 제품 중 75%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될 것으로, 5%는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begin{aligned} \text{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 &= 0 \times 75\% + 1,000,000 \times 20\% + 4,000,000 \times 5\% \\ &= 400,000 \end{aligned}$$

② 현재가치 평가

또한 K-IFRS와 K-GAAP에서는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충당부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가치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

599) K-IFRS 제1037호 문단39.

율은 해당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나,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K-IFRS와 K-GAAP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 충당부채의 변제, 변동 및 사용

① 충당부채의 변제

충당부채의 변제와 관련하여 K-IFRS와 K-GAAP에서는 기업이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3자가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 주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 의무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제3자 변제에 따른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K-GAAP의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과 상계할 것을 강제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충당부채의 변동 및 사용

충당부채의 변동과 관련하여 K-IFRS와 K-GAAP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

한 경우 장부금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시켜야 하는데 해당 증가금액에 대해 양 회계기준에서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화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충당부채의 사용은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할 경우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지출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충당부채의 변동과 관련하여 양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K-GAAP의 경우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⁶⁰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K-IFRS의 경우 충당부채의 주식 공시사항으로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충당부채의 후속 평가 시 당초의 할인율이 아닌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상이한 처리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K-GAAP의 경우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K-IFRS에서는 공정가치평가를 허용하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K-IFRS의 도입으로 충당부채를 매 기말 현행 할인율로 재측정을 하게 됨에 따라 충당부채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측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③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K-IFRS에서는 K-GAAP과는 달리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측정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해석서 제2101호를 두어 관련 회계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해석서는 ① 현금유출의 추정변경, ② 할인율의 변경, ③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할인액의 상각으로 충당부채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③의 경우

600) K-GAAP 제17호 문단40.

K-GAAP에서 역시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①과 ②의 후속적인 측정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K-IFRS에서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금유출의 추정변경 및 할인율의 변경에 따라 충당부채가 변경된 경우 자산을 원가법으로 측정했다면 자산의 원가에서 조정하고, 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했다면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에서 조정한다는 것이다.

2) 법인세법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전제로 하여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는 반면, 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정도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⁶⁰¹⁾ 및 대손충당금 등의 충당금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 등에 한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데, 이는 세법에서 특별히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외의 충당부채(예를 들어, 반품추정부채, 복구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구조조정충당부채 등)는 아직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매포인트 등의 손금인식시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관련 예규에 의하면, 그 손금귀속시기를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

60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5조)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대비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세법상 이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⁶⁰²⁾.

3)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의 적용이 충당부채 등 관련 법인세법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충당부채의 귀속시기에 대한 검토

기업회계상 계상된 충당부채가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관련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에서 비용 혹은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회계의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관련 부채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세법의 경우 이와 같이 추정에 바탕을 둔 부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련 비용 역시 그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세법에서 기업회계와 같이 추정에 바탕을 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판단 및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져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손금과 관련한 의무확정주의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유지되어야 하는 세법의 기본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침해할 수 없는 세법의 고유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해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을 일치시키는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602) 서이 46012-11711, 2002. 9. 13.

나) 세무조정 사항 변동에 대한 검토

① 충당부채 인식 금액 증가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관련 세 가지 요건 중 그 두 번째인 자원의 유출 가능성 정도와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매우 높은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K-IFRS에서는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충당부채가 재무제표에 계상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조정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후속 측정 시 적용 할인율의 변동

K-IFRS와 K-GAAP에서는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충당부채의 후속 측정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K-IFRS에서는 당초의 할인율이 아닌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매해 충당부채 금액이 현행 할인율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충당부채 및 관련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의 사례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충당부채 금액이 변동하더라도 충당부채로 계상되는 부분은 세무상 전액 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다만,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실무 관련 기업의 납세준용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337

〈 사례 〉⁶⁰³⁾ •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 10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구조물은 2007년 1월 1일 ₩1,000,000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을 시작함 • 동 일자로 추정된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액은 ₩100,000임 • 구조물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함 • 내용연수 : 10년 • 유효이자율 : 10%(2007. 1. 1), 11%(2007. 12. 31.) 〈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구분	K-GAAP	K-IFRS	세무조정
2007. 1. 1	건축물 1,038,554 / 현금 1,000,000 / 복구충당부채 38,554* * ₩100,000 × 0.38554 (10년, 10%, 1의 현재가치) = ₩38,554	좌동	익금산입) 복구충당부 채 38,554 (유보) 손금산입) 건축물 38,554 (△ 유보)
2007. 12. 31	이자비용 3,855* 감가상각비 103,855** / 복구충당부채 3,855 / 감가상각비누계액 103,855 * ₩38,554 × 10% = ₩3,855 ** (₩1,038,554 - 0) × 1/10 = ₩103,855	좌동	≡ K-GAAP 하에서는 손금불산입) 복구충당 부채 3,855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누계액 3,855 (유보)
	없음 (K-GAAP의 경우 충당부채의 재측정 시 당초의 할인율을 적 용하므로 할인율의 변동에 따 른 추가 회계처리가 필요없음)	복구충당부채 3,317* / 건축물 3,317 * (₩38,554 + 3,855) - 100,000 × 0.39092 (9년, 11%, ₩1의 현재 가치) = ₩3,317	≡ K-IFRS 하에서는 손금불산입) 복구충당 부채 3,855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누계액 3,855 (유보) 손금산입) 복구충당부 채 3,317 (△ 유보) 익금산입) 건축물 3,317 (유보)

603) 신현걸 외(2009) p.489의 예제를 수정한 것임.

③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부여한 거래에 대해 K-GAAP의 경우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하는 반면, K-IFRS에서는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비용으로 인식하던 것이 매출액을 덜 인식하는 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출액이 변동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준용하는 세법규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⁶⁰⁴⁾. 그리고 고객충성제도 관련 세무조정의 경우 조정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조정과목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⁰⁵⁾.

4) 충당부채 등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충당부채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은 <표 II-75>와 같이 정리된다.

604) 기업회계상 매출액 변동에 따라 법인세법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3. 수익과 원가'의 '가. 수익'을 참조할 것.

605) K-GAAP하에서는 '손금불산입' 마일리지 충당금 XXX(유보)'로 처리하던 것을 K-IFRS에서는 '익금산입' 매출 XXX(유보)'로 처리함.

〈표 II-75〉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	권리의 무확정주의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금액 증가	현행 규정 유지
우발자산·부채의 주석 공시 기준	- 우발자산: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공시 -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경우 공시	- 우발자산: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시 -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경우 공시	N/A	N/A	N/A
충당부채의 후속 측정 시 적용 할인율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	현행 할인율 적용	권리의 무확정주의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금액 변동	현행 규정 유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별도 규정 없음	N/A	N/A	N/A
고객충성제도	충당부채 계상 대상에 포함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고객이 구매포인트 등을 사용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	세무조정금액은 변함없이 조정항목이 변동됨	현행 규정 유지

4. 금융상품

이하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K-IFRS, K-GAAP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 금융상품 : 표시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은 IFRS 기준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 Presentation”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K-GAAP에 없던 개념이 도입된 부분이므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다. 따라서 주로 K-IFRS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법인세법의 내용과 비교하도록 한다.

K-IFRS 제1032호는(K-IFRS와 K-GAAP의 차이는 K-IFRS를 설명하면서 포함) 금융상품이 무엇이고 금융상품을 어떻게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지,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및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상계는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금융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품을 금융부채, 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금융부채, 지분상품 가운데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회계상 부채, 자본이 달라진다. 법인세법은 회계상 부채, 자본이 달라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것이며, 일부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세법과 K-IFRS 규정의 차이 및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K-IFRS의 규정

가) 금융상품의 정의와 구분

① 금융상품의 정의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이다. 즉,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다른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Ⅱ-76>과 같다. 이는 K-IFRS와 IFRS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표 Ⅱ-76>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

【금융자산】 ① 현금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④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함)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금융부채】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함)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수취할 권리가 금융자산이 아닌 선급금, 선급비용,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등이나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선납세금, 우발자산 등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는지, 대가가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리 구분된다. 즉, 자기지분상품을 주고 대가를 수취할 때 수취하는 대가가 금액으로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을 수 있고, 결제수단인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II-77>과 같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대가와 수량이 전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기보다는 특정 금액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표 II-77> 자기지분상품결제 시 금융상품의 분류

대가 \ 지분상품의 수량	확정	미확정
확정	지분상품으로 분류	금융자산·금융부채로 분류
미확정	금융자산·금융부채로 분류	금융자산·금융부채로 분류

주: 신현걸 외(2009) p. 340.

②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이다⁶⁰⁶⁾. 계약상 의무는 앞서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자산의 인도나 교환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자기지분으로 결제되는 계약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금융부채의 조건을 갖춘 계약상 의무가 있는

606) K-IFRS 제1032호 문단17.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되고 지분상품이 아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예외가 있다⁶⁰⁷⁾.

K-IFRS와 K-GAAP에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은 법적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환우선주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가 되기도 하고 지분상품이 되기도 한다. 상환우선주는 법적형식으로 보면 지분상품이지만, K-IFRS는 그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기도 하고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상환우선주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주고 일정기간 후에 소각이 예정된 주식이다.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보유자가 특정일이나 결정가능금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금융부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발행자가 재량적으로 상환시점 및 결정가능금액을 결정 가능하다면 이는 발행시점에 계약상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분상품이다. 즉, 계약상 의무이므로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가 이행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해당 채무를 발행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⁶⁰⁸⁾.

607) K-IFRS 제1032호 문단16A.

- ① 뜻가능금융상품 중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고,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며,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이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함. 또한 해당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기대현금흐름이 해당기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 및 미인식된 순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 기초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 ② 일반 금융상품 중 발행자가 청산된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다른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에 속하며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유도해야 하는 동일한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함.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또는 과세조건의 변동이나 발행자의 미래수익, 순이익 또는 부채비율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금융자산을 회피하거나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결제조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⁶⁰⁹⁾.

③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의 요소와 자본의 요소가 복합적인 금융상품이다. K-IFRS 및 IFRS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⁶¹⁰⁾. 그리고 분리하여 표시할 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⁶¹¹⁾. 부채요소의 결정금액은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만약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라면 부채요소의 결정금액은 유사한 신용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 등은 없는 채무상품의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자본요소 결정금액은 전환권(신주인수권)이 된다. 이렇게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 후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에서 자본요소에 해당하는 전환권이 최초 분리시점과는 달리 주식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경우처럼 공정가치가 변동된 경우이다. 이렇게 공정가치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복합금융상품

608) K-IFRS 제1032호 문단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609) K-IFRS 제1032호 문단25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610) K-IFRS 제1032호 문단28.

611) K-IFRS 제1032호 문단31.

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대한 분류는 수정하지 않는다.

④ 자기주식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⁶¹²⁾.

⑤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반면에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상환하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누적적 상환우선주의 경우에 배당을 포함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상환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금 지급액은 금융부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⁶¹³⁾. 반면에 지분상품의 상환 또는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⁶¹⁴⁾. 예를 들어 전환사채

612) K-IFRS 제1032호 문단33. K-GAAP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본에서 차감된다(K-GAAP 제21호).

613) K-IFRS 제1032호 문단35.

614) K-IFRS 제1032호 문단36.

를 재매입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분하여 배분하며, 부채요소의 재매입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요소의 재매입손익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자’와 동일한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금융부채의 일부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또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⁶¹⁵⁾. 이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항상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첫째,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표시할 수 있으므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상계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나, 상계권리 없이 상계의도만을 가진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없다.

615) K-IFRS 제1032호 문단35.

2) 법인세법의 규정 및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상품의 구분 기준

법인세법은 K-IFRS와 달리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규정이 있기도 하고 관련 규정이 없기도 하다. 또한 K-IFRS와 IFRS는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상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K-IFRS와 법인세법에서 범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K-IFRS에서 금융상품(비금융상품)으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비금융상품(금융상품)으로 달리 분류하거나, K-IFRS에서 금융부채(지분상품)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지분상품(금융부채)으로 달리 분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류의 차이가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예와 분류의 차이로 발생 가능한 세무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환우선주

상환주식은 상환할 이익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상환금액을 상환받고 당해 주식을 소각할 예정된 주식이다. 상환주식 중에는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있는데 이것이 상환우선주이다.

법인세법은 상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우선주는 현행 상법상 주식⁶¹⁶⁾으로 지분증권에 해당되어, 투자자는 지분증권 그리고 발행자

616)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상환우선주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K-IFRS에 의하면 상환우선주의 발행자가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만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분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와 상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법률적인 사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법에서는 사채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⁶¹⁷⁾. 즉 태생적으로 상환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이며, 미래에 대한 상환의무 또는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존재형식을 중시한 것으로 본다. 상환우선주가 상법상 부채로 인정된다면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동일한 논리에 따라 법률적으로 부채로 회계처리되지만 회계상으로 지분증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시점에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배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세무상으로는 이익의 처분으로 발행자의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금액은 없다. 이에 비하여 회계상으로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가 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지급이자에 이익의 처분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의 차이는 상환우선주와 같이 K-IFRS상 지급이자 성격인 배당을 세무상으로는 부인하는 직접 영향 외에 세무상과 회계상 지급이자 총액의 차이, 차입금 총액의 차이, 자기자본의 차이를 유발하여 이를 이용한 세무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을

617) 송종준, 「회사법상 재무관련제도의 개정논의와 과제」, 『경영법률』, Vol.16, No.2,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p. 69.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영향을 정리한다.

② 기타

다음으로 풋가능 금융상품⁶¹⁸⁾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풋가능 금융상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풋가능 금융상품은 통상적으로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조합 및 이와 유사한 기업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그 상환금액은 발행자의 순자산가치 중에서 소유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이다. 파트너십의 출자금, 뮤추얼펀드, 협동조합 등의 출자금의 경우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K-IFRS에서는 이러한 풋가능 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조합 등에 대하여 지분상품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과세소득을 계산하면서 자본으로 분류하여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 등에서 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상환우선주가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법상 주식이며 법인세법도 동일한 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한다⁶¹⁹⁾. 상환우선주를

618) 풋가능 금융상품(puttable instrument)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또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임.

619) 서면2첩-1710(2005. 10. 24.)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

K-IFRS에 따라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자 또는 투자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K-IFRS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배당수령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또한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서 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로 계상되고 회계상 평가감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는 세법상 평가감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보고하더라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 중 일부분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⁶²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비율이 산정되며,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상환우선주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채무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으로 보아야 한다⁶²¹⁾.

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함.

서면2탕-1796(2005. 11. 8.)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620) 법인세법 제18조의 3, 동 시행령 제17조의 3.

621) 법인세제과-240, 2006.03.27.

다) 과소자본세제

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은 자기자본에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① 순자산기준금액과 ② 납입자본금기준금액 중 많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순자산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납입자본금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이다.

예를 들어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출자하면서 출자의 대부분을 상환우선주에 투자한 경우를 가정하여 K-IFRS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K-IFRS에 의하면 상환우선주는 내국법인의 금융부채에 해당하여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출자의 대부분을 상환우선주에 투자하였으므로 K-IFRS에 의한 자기자본은 아주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과 납입자본금이 기준이 되므로 상환우선주는 제외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자기자본(K-IFRS에 따라 상환우선주가 자본이 아닌 부채가 되면서 자기자본이 감소),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K-IFRS에 따라 상환우선주가 자본이 아닌 부채가 되면서 납입자본총액도 감소)이 변동되면서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내국법인이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되는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상환우선주 분류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을 정리하면

〈표 II-78〉과 같다.

〈표 II-78〉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구분	K-IFRS	세법
발행자	• 이자비용	• 배당소득으로 보아 손금부인
	• 원천징수	• 외국인에게 귀속 시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금융부채에 대한 평가감	• 부채 평가 불인정
	• 부채비율의 증가	• 자본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투자자	• 이자소득	•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분율에 따른 익금 불산입 적용

라) 기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가 달라지면서 회계상 순자산가액이나 자기지분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세무상 회계상 순자산가액이나 자기지분가액을 기초로 한 세무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영향 이외에 순자산가액이나 자기지분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세무상 영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간단히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합병 등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에서는 합병대가 등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는바, 자기자본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결정할 때에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달라지면 중소기업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은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

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변동하면 무체재산권의 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3)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기존의 K-GAAP이 금융상품의 유형인 유가증권, 전환증권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에 비하여 K-IFRS는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정의를 통하여 원칙을 규정하였다. IFRS의 도입으로 금융상품 등의 전반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개별상품의 유형별로 취득원가, 평가 등을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규정한 IFRS에 맞추어 금융상품의 범위를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법인세법 전체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IFRS 제 1032호(금융상품: 표시)가 법적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면서 따른 세법상에 끼치는 영향은 회계상 부채의 가액, 자기자본의 가액, 지급이자의 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달라진 부채의 가액, 자기자본의 가액, 지급이자의 가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세법상 K-IFRS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법의 기존방향을 고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차적으로는 달라진 부채, 자기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세법상 한도규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회계상의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세법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개별유형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유형을 구분하면서 개별상품의 정의는 상법 등 다른 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기업회계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기준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많은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방법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좀더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법이 상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조건부결제요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는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세법에서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부채 및 자본의 분류를 배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도 부채로 분류하는데, 현재 세법의 한 축이 되는 동업기업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법인세법이 K-IFRS를 수용하여 금융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으로 보다 많은 신종자본증권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세법이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법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달라진 부채, 자기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세법상 한도규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합지분이나 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면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자기자본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법적형식의 테두리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던 지분상품이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면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채수준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과소자본세제 등에 대해서는 그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금융상품 : 표시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금융상품 : 표시의 내용은 〈표 II-7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79〉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범위	• 전환증권, 유가증권 등과 같이 개별유형별로 범위결정 • 형식을 중요시함	•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의와 원칙적으로 결정 • 법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함	• 개별유형별로 범위를 결정되 상법 등 관련 법을 준용 • 관련 법에 의한 법형식을 중요시	• 자본/부채의 분류가 달라지면서 관련 손익의 성격 및 자본/부채기준의 세무상 한도가 변경 • 부채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	• 장기적으로 자본/부채구분에 대한 세법의 독자적 기준 필요 • 세무상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상환 우선주	자본으로 분류	부채/자본으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상환우선주의 배당이 지급이자로 계상	현행규정유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조합지분 등	자본으로 분류	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자본임을 전제로 한 동업기업과세제도 등과 배치	현행규정유지

나.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및 제13호 “채권·채무조정”,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52-14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규정되어 있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적용범위

K-GAAP은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이 기업회계기준서와 해석 등에 산재되어 있는 반면, K-IFRS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기준서(즉, K-IFRS 제1039호)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⁶²²⁾.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또는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일부 제외)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가 적용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일부 제외)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는 발행자의 금융상품(일부 제외)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 보험계약 또는 (나)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기준서를 적용하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일부 제외)
- (6)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계약
- (7) 일부 대출약정
-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일부 제외)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당기 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

⁶²²⁾ K-IFRS 제1039호 문단2.

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나) 금융상품의 분류

K-GAAP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만기보유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금융부채의 분류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⁶²³⁾.

K-IFRS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만기보유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된다⁶²⁴⁾.

금융상품 분류와 관련된 K-IFRS와 K-GAAP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II-80>과 같다.

<표 II-80> 금융상품의 분류¹⁾

구분	K-IFRS	K-GAAP
금융 자산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단기매매항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됨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함 - 최초 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의 일부임 - 파생상품(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제외) (2)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²⁾ - 지정을 통하여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경우³⁾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	1.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2. 단기매매증권 :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3.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4. 매출채권, 대여금 등

623) K-GAAP 제8호 문단7, 기업회계기준.

624) K-IFRS 제1039호 문단9.

구분	K-IFRS	K-GAAP
	되는 경우¹⁾ – 하나 이상의 내재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단,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됨이 명백하거나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제외) 2.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 단,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제외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상품 • 단,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항목·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제외 4.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금융부채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 단기매매항목 (2)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기타의 금융부채	명시적 규정 없음

주: 1) K-IFRS 제1039호 문단9, 11A, AG4D, AG4I

K-GAAP 제8호 문단7~8, 16, 기업회계기준

- 2)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 3) (사례) 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대부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해 금융자산과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모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면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음
- 4) (사례) 이자나 배당 및 공정가치 변동 등의 형태로 총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형 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실체인 경우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양자 간에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별도의 범주로 포함하는 반면 K-GAAP에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둘째, K-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이 가능한 반면 K-GAAP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특히,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정이 가능한 당기손익인식항목과 달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지정은 특별한 조건 없이도 가능하다. 셋째, K-IFRS에서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의 부채로 구분하는 반면 K-GAAP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과 측정

①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현행 K-GAAP에서는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의 인식시점과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다. 다만,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며⁶²⁵⁾,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매매일에 거래를 인식한다⁶²⁶⁾.

이에 반해 K-IFRS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⁶²⁷⁾,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⁶²⁸⁾. 매매일 회계처리와 결제일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표 Ⅱ-81>과 같다.

625) K-GAAP 제8호 문단5.

626) K-GAAP 제8호 문단6.

627) K-IFRS 제1039호 문단14.

628) K-IFRS 제1039호 문단38.

〈표 II-81〉 매매일 회계처리와 결제일 회계처리¹⁾

매매일 회계처리	결제일 회계처리
(1)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것과 (2)매매일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매입자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1)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자산을 인식하는 것과 (2)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함 •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회계처리함 - 원가나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하되, 손상차손은 인식함 -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자본으로 인식함

주: 1) K-IFRS 제1039호 문단AG 55~56, 44, 57.

② 금융상품의 최초 측정

K-GAAP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 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자산으로 인식하 여야 하며⁶²⁹⁾, 유가증권의 발행자는 발행가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 다⁶³⁰⁾.

K-IFRS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 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⁶²⁹⁾ K-GAAP 제8호 문단17.

⁶³⁰⁾ 기업회계기준 제64조 및 제65조.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⁶³¹⁾.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 K-IFRS와 K-GAAP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Ⅱ-82>와 같다.

<표 Ⅱ-82>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과 측정

구분	K-IFRS	K-GAAP
최초 인식	1. 인식시점 :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 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 매매일 회계처리와 결제일 회계처리 중 선택 가능	1. 인식시점 : 명시적 규정 없음(단,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인식) 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 매매일 회계처리 강제
최초 측정	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거래원가는 즉시 당기손익 반영) 2. 그 외의 경우 : 공정가치 + 거래원가	1. 유가증권의 취득자 :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2. 유가증권의 발행자 : 발행가액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서는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에 대하여 매매일 회계처리와 결제일 회계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K-GAAP에서는 매매일 회계처리만을 인정한다. 둘째, K-GAAP과 달리 K-IFRS에서는 금융자산이든 금융부채든 관계없이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를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로 본다. 셋째, K-GAAP에서는 취득부대비용을 무조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나, K-IFRS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부채에 해당하면 거래원가를 금융상품의 취득원가에서 조정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⁶³¹⁾ K-IFRS 제1039호 문단43.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 시 그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더라도 보고기간 말에 비유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라)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손익

①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K-GAAP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⁶³²⁾. 이때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⁶³³⁾.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⁶³⁴⁾.

K-IFRS에 따르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한다⁶³⁵⁾. 이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⁶³⁶⁾.

②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K-GAAP에 따르면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평가한다⁶³⁷⁾.

632) K-GAAP 제8호 문단20.

633) K-GAAP 제8호 문단30.

634) K-GAAP 제8호 문단18, 19.

635) K-IFRS 제1039호 문단46.

636) K-IFRS 제1039호 문단55.

637) 기업회계기준 제64조~제66조

K-IFRS에 따르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의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한다⁶³⁸⁾.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관련된 K-IFRS와 K-GAAP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II-83>과 같다.

<표 II-83>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손익

구분	K-IFRS ¹⁾				K-GAAP ²⁾		
금융 자산	범주		후속측정 방법	후속측정손익 회계처리	범주	후속측정 방법	후속측정손익 회계처리
	위험 회피 대상 항목 아닌 경우	당기손익 인식금융 자산	공정가치 ¹⁾	공정가치 변동 을 당기손익으 로 인식함	단기매매 증권	공정가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 기손익항목으로 처리 함
		매도가능 금융자산	공정가치 ¹⁾	공정가치 변동 을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함 ²⁾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³⁾ 을 사용하여 계 산한 이자수익 을 당기손익으 로 인식함	매도가능 증권	공정가치 ¹⁾	미실현보유손익은 자 본항목으로 처리함 ²⁾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³⁾ 을 사 용하여 계산한 이자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회계처리		만기보유 증권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 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가격이 공시되지 않 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 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함					*1)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함		
*2) 손상차손·채권의 상각후원가의 변동 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유효이자율법 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					*2) 손상차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함. 주식과 채권 모두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 되,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모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외화환산손익		

638) K-IFRS 제1039호 문단47, 55.

구분	K-IFRS ¹⁾	K-GAAP ²⁾
	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금융부채	1.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부채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2) 기타의 부채 유효이자율법 ³⁾ 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예외) ①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K-IFRS 제1036호 문단29와 31을 적용하여 측정 ② 금융보증계약,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에서 K-IFRS 제1018호(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회계처리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 ³⁾ 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함

주: 1) K-IFRS 제1039호 문단46~47, 55~56, AG 83

2) K-GAAP 제8호 문단18~20, 30, 기업회계기준 등에 대한 해석 53-70 (10-3),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30

3) K-GAAP에 따르면 유효이자율이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함. 이에 반해 K-IFRS에서는 유효이자율을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자산가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음. K-IFRS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2008b, pp. 225~226 수정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주요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에서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평가해야 하나, K-IFRS에 따르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K-GAAP에서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모두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나(단,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K-IFRS에서는 지분상품만 자본으로 인식하고, 채무상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마) 공정가치의 측정

K-IFRS에 따르면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⁶³⁹⁾.

K-GAAP에 따르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⁶⁴⁰⁾.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은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다면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되,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⁶⁴¹⁾.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639) K-IFRS 제1039호 문단48A.

640) K-GAAP 제8호 문단21.

641) K-GAAP 제8호 문단23, 24.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⁶⁴²⁾.

바) 계정재분류

K-GAAP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⁶⁴³⁾. 한편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⁶⁴⁴⁾.

K-IFRS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⁶⁴⁵⁾. 그러나 단기매매항목(파생상품 제외)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⁶⁴⁶⁾. 또한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⁶⁴⁷⁾. 한편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

642) K-GAAP 제8호 문단29.

643) K-GAAP 제8호 문단45 (가).

644) K-GAAP 제8호 문단45 (나).

645) K-IFRS 제1039호 문단50.

646) K-IFRS 제1039호 문단50B, 50D.

647) K-IFRS 제1039호 문단50E.

류한 경우에는 분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⁶⁴⁸⁾.

금융자산의 분류변경과 관련된 K-IFRS와 K-GAAP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II-84>와 같다.

<표 II-84>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구분	재분류					
K-IFRS			변경 후			
			당기손익인식	매도가능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
	변경 전	당기손익인식	단기매매	○ ¹⁾	○ ¹⁾	○ ¹⁾
		인식	지정자산	×	×	×
		매도가능	×	×	○ ²⁾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만기보유	×	○ ³⁾	×	×
	1) 단기매매항목(파생상품 제외)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음 2)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3)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K-GAAP			변경 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변경 전	단기매매증권	×	○ ¹⁾	○ ¹⁾	×
		매도가능증권	×	×	○ ²⁾	×
		만기보유증권	×	○ ²⁾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1)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가능하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함 2)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분류가 가능함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2008b, p. 227을 수정함

648) K-IFRS 제1039호 문단51, 9.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금융상품의 재분류와 관련하여 양자 간에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K-IFRS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둘째, K-GAAP에서는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생긴 경우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셋째, K-GAAP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재분류와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금융자산의 손상 및 대손과 관련된 K-IFRS와 K-GAAP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II -85>와 같다.

〈표 II-85〉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구분	회계처리		
K-IFRS	구분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
	당기 손익 인식		
	공정가치 평가	N/A	N/A
	취득원가 평가 ¹⁾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환입하지 않음
	매도 가능		
	공정가치 평가 ²⁾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 지분상품 : 환입하지 않음 • 채무상품 :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취득원가 평가 ¹⁾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동일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동일함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 ³⁾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함	•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 • 단,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
1) K-IFRS 제1039호 문단66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 2) K-IFRS 제1039호 문단67~70 3) K-IFRS 제1039호 문단63, 65			

구분	회계처리		
K-GAAP	구분	감액손실	감액손실 환입
	단기매매	N/A	N/A
	매도 가능	공정가치 평가¹⁾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함 - 채무증권 : 회수가능가액(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 지분증권 :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취득원가 평가²⁾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유가증권 발행자의 순자산율,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함	명시적 규정 없음
	만기보유 ³⁾	원리금을 계약상의 조건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가증권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함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대여금 및 수취채권 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1) K-GAAP 제8호 문단41~44

2) K-GAAP 제8호 문단39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3) K-GAAP 제8호 문단36, 38

4)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금융자산의 손상 및 대손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나, K-IFRS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⁶⁴⁹⁾. 둘째, K-IFRS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 인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신용손실은 미래 예상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K-GAAP에 따르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 금융자산의 제거

K-GAAP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⁶⁵⁰⁾.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⁶⁵¹⁾. 반면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⁶⁵²⁾.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⁶⁵³⁾.

649)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감액사유와 해소로 인한 부분과 기타의 사유로 인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650) K-GAAP 제8호 문단48, 49,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2.

651) K-GAAP 제8호 문단5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3.가.

652)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3.나.

65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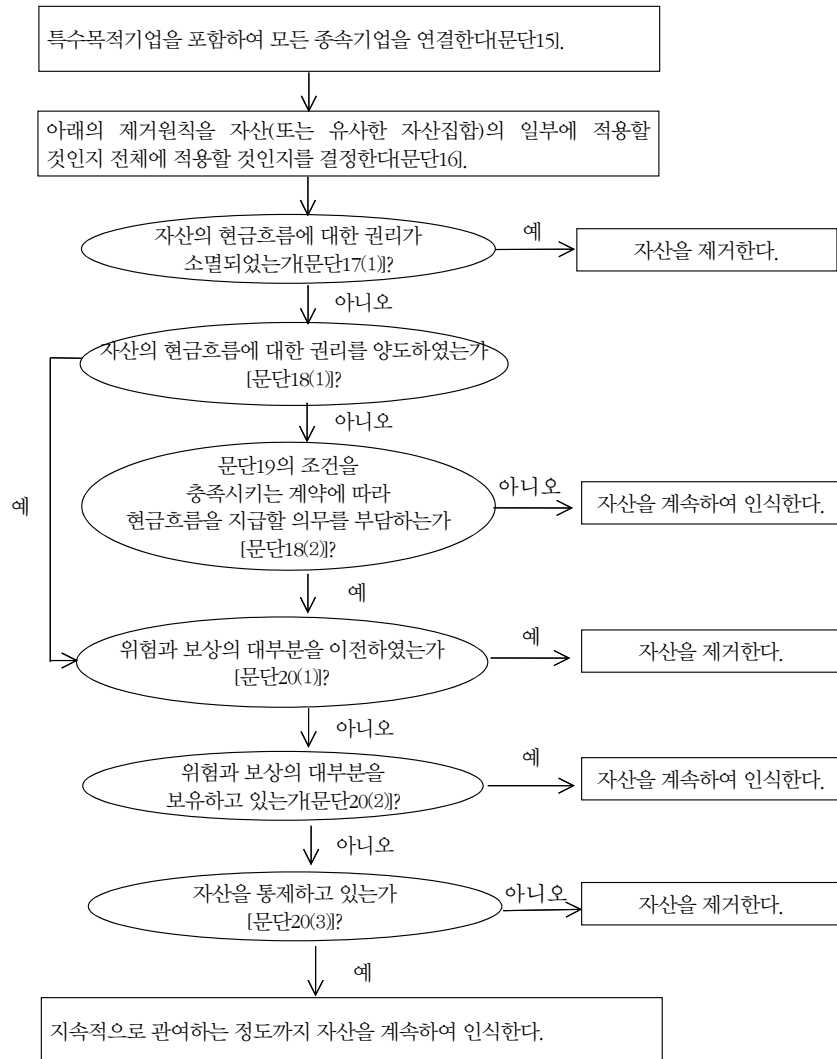
K-IFRS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⁶⁵⁴⁾.

- (가)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나)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 (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②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다음 [그림 Ⅱ-4]는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654) K-IFRS 제1039호 문단15~37.

[그림 II-4] 금융자산의 제거 흐름도



자료: K-IFRS 제1039호 문단AG36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하여 제거조건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양자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K-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시점, 제거조건, 적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K-GAAP에 비해 이해 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⁶⁵⁵⁾. 또한, K-GAAP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 양도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K-IFRS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유동화가 양도거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⁶⁵⁶⁾.

자) 금융부채의 제거

K-GAAP에서는 조건변경⁶⁵⁷⁾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⁶⁵⁸⁾.

이에 반해 K-IFRS에서는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포함)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바⁶⁵⁹⁾,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본다⁶⁶⁰⁾.

655) 한국회계기준원(2008),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p. 221.

656) 유동화전문화의 지분인수 및 후순위채 매입 등 간접적으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각거래로 보기 힘들.

657)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 ① 이자율의 인하, ②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 ③ 원금의 감면, ④ 발생이자율의 감면.

658) K-GAAP 제13호 문단19.

659) K-IFRS 제1039호 문단40.

금융부채의 제거와 관련하여 양자 간에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서는 계약조건의 실질적 변경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둘째, K-IFRS에서는 계약조건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나, K-GAAP에서는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한다. 셋째, K-GAAP 제13호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⁶⁶¹⁾ K-IFRS에서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차) 파생상품

① 파생상품의 정의

K-GAAP에 따르면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⁶⁶²⁾.

-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 (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 (다) 차액결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K-IFRS에 따르면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말한다⁶⁶³⁾.

660) K-IFRS 제1039호 문단AG 62.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고,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함.

661) K-GAAP 제13호 문단6.

662)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3.

663) K-IFRS 제1039호 문단9.

- (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 (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다) 미래에 결제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K-GAAP에서는 차액결제 가능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미래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총액결제 조건을 허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K-GAAP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며,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⁶⁶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⁶⁶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공정가액 위험회피⁶⁶⁶⁾라면 당기손익으로, 현금흐름 위험회피⁶⁶⁷⁾라면 당기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 또는 기타 포괄손익(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⁶⁶⁸⁾. K-IFRS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⁶⁶⁹⁾.

664)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6.가.나.

665)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6.다.

666)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임.

667)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임.

668)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8.라. 9.가.

669) K-IFRS 제1039호 문단89, 95.

2)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금융상품의 범위 및 분류

① 법인세법의 규정

금융상품의 범위 및 분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의하는 바는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지분상품(주식 등)과 채무상품(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현행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체계는 (구)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이해 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과 측정

① 인식시점

(가) 법인세법의 규정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⁶⁷⁰⁾.

한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매매 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⁶⁷¹⁾.

(나)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등록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식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에 대해 K-GAAP의 입장(매매일 회계처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바, 정형화된 매도의 경우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결제일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결제일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매매일에 양도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손익귀속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상품의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결제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의 인식시점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거래빈도가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익귀속시기의 차이가 복잡한 세무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수

670)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671) 서이 46012-10172, 2001.09.14.

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취득가액

(가) 법인세법의 규정

금융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⁶⁷²⁾. 유가증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나⁶⁷³⁾,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⁶⁷⁴⁾. 금융상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정리하면 <표 II-86>과 같다.

<표 II-86> 금융상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¹⁾

구분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및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주: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67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673)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67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나)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IFRS에서는 취득 당시 공정가치를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로 보는바, 취득 시점에 이익과 손실을 모두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는바, 취득원가의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⁶⁷⁵⁾.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라면 매입가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K-IFRS에 의한 취득원가와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원가 간에 실질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그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K-IFRS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기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면서 결국 취득원가에 포함된 거래원가가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K-IFRS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세법상 시가 평가가 허용되는 일부 유가증권⁶⁷⁶⁾과 금융상품의 거래가 빈번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기업의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675) 단,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역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676)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위하여 설정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보험회사가 시가법에 의한 평가를 신고한 경우.

다)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손익

① 법인세법의 규정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매도가능금융자산·만기보유금융자산의 평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⁶⁷⁷⁾.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⁶⁷⁸⁾. 다만,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하며⁶⁷⁹⁾,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위하여 설정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총평균법·이동평균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⁶⁸⁰⁾. 현행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표 Ⅱ-87>과 같다.

677)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678)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679)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680)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표 II-87〉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구분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임의변경
일반적인 경우	주식 등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	총평균법	당초 신고한 방법과 총평균법 중 큰 가액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		
예외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위하여 설정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¹⁾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²⁾	시가법		

주: 1)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즉,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함

(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기타 부채의 평가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⁶⁸¹⁾. 따라서 장기할부조건⁶⁸²⁾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⁶⁸³⁾ 및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⁶⁸⁴⁾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평가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 배제규정

681) 법인세법 제43조.

682)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68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는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⁶⁸⁵⁾.

②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에 의한 평가만을 인정하는바,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기보유채무증권과 매도가능채무증권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은 익금불산입(익금산입)하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한다. 채무증권(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의 상각후원가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K-IFRS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표 II-88>과 같다.

68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685)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

〈표 II-88〉 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구분	계정과목	평가방법	평가손익	세무조정
금융 자산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손익 (당기손익)	평가손익을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후,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함
	만기보유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	이자수익 (당기손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을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처분한 후,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함
	매도가능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손익 (자본)	평가손익을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또는 「익금불산입(△유보)&손금불산입(기타)」 처분 한 후,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함
			상각후원가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 (당기손익)	- 일반법인: 외화평가손익을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한 후,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함 - 은행: 세무조정 없음
			이자수익 (당기손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을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처분한 후,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함
금융 부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 원가	이자수익 (당기손익)	-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 세무조정 없음 - 장기금전대차거래로 발생한 채권: 현재가치할인 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 정이 필요함
	당기손익 인식 금융부채	공정가치	평가손익 (당기손익)	평가손익을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후, 상환 또는 처분 시 추인함
금융 부채	기타	상각후 원가	이자수익 (당기손익)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세무조정 없음 - 장기금전대차거래로 발생한 채무: 현재가치할인 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 정이 필요함

K-IFRS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금융상품의 개수가 많고 거래빈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무조정과 이의 사후관리에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도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고, 채무증권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은 세법상 익금(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상품의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공정가치 평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 여부에 따라 기업의 과세소득이 달라짐으로써 기업 간 과세형평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공정가치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정이 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가치선택권으로 인한 과세형평 침해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정가치선택권의 존재가 공정가치 평가 도입에 문제가 된다면 단기매매항목에 한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역시 공정가치 평가를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되, 한번 선택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면 공정가치 평가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해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조세회피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가치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및 대손

① 유가증권

(가) 법인세법의 규정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⁶⁸⁶⁾.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⁶⁸⁷⁾.

- (1)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다)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2)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나)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바, 손상차손이나

686)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687)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손상차손환입은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K-IFRS의 도입 이후에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원래부터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계처리의 변경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가) 법인세법의 규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표 II-89>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⁶⁸⁸⁾. 다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⁶⁸⁹⁾.

<표 II-89>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구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일반법인		손금산입 한도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¹⁾)
금융기관	특정 금융기관 ²⁾	손금산입 한도=Max(①, ②)
		①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자산건전성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 손실)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기타의 금융기관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 × 2% 또는 대손실적률 ¹⁾
		손금산입 한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¹⁾)

주: 1)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2)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신탁업자·자금중개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지주회사

688)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689)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나)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GAAP과 달리 K-IFRS에서는 손상사건의 발생이 있어야만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K-IFRS 도입 이후에는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상액의 감소는 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반 법인에 비해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K-IFRS 도입 이후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최소 적립액 기준이 회계상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한도가 사라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① 법인세법의 규정

(가) 제거시점

법인세법은 금융상품의 제거시기 및 제거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채권의 양도 또는 자산유동화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며⁶⁹⁰⁾,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본다⁶⁹¹⁾. 즉, 법인세법에서는 채권의 양도거래 또는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동 해석에 따라 처리하면 이를 완전히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K-GAAP과 K-IFRS에서 규정하는 제거의 개념 자체가 실질적 차이는 없기 때문에 K-IFRS의 도입이 제거와 관련된 법인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K-IFRS에서는 받을어음할인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매각거래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유동화거래가 사실상 매각거래에서 제외되고 담보부부채의 발생으로 회계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채권의 매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기업회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에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자산유동화를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과소자본세제의 세무상 한도가 달라지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특히, 받을어음할인 및 자산유동화에 대한 매각거래)의 제거시기 및 제거요건 등에 대한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받을어음할인 및 자산유동화 거래는 거래빈도가 많기에 당분간 현행 세법규정을 유지하고, 보다 정교한 세법상 처리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90) 재법인 46012-180, 2001.10.17.

691) 서이 46012-10743, 2001.12.14.

바)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① 법인세법의 규정

(가) 채권자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⁶⁹²⁾.

(나) 채무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⁶⁹³⁾.

②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FRS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의 범위에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채권·채무조정과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의 특례 규정은 채무자가 재무적 곤란에 빠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재무적 곤란에 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9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693)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9.

사) 파생상품⁶⁹⁴⁾

①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으로 정의한다⁶⁹⁵⁾.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⁶⁹⁶⁾, 은행 및 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통화선도⁶⁹⁷⁾ 및 통화스왑⁶⁹⁸⁾에 한해 선택적으로 평가손익의 인식을 허용하고 있다⁶⁹⁹⁾.

②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방법에 K-GAAP과 K-IFRS의 내용 간에 실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K-IFRS의 도입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법인세 세무조정에 미칠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양하고 복잡해진 파생상품회계처리기준과 달리 법인세법에는 파생상품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거의 없는바⁷⁰⁰⁾, 파생상품의 종류별로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통칙 등에서 예시한다면 납세자의 이해 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94)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에, 뒷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한 논의 시 추가로 논의하고자 함.

69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4.

696)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697)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698)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 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699)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및 제76조 제2항 내지 제4항.

700)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는 2008년 7월 25일 삭제됨.

3)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9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90>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2. 금융부채: 명시적 규정 없음	1.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2.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의 금융부채	1. 유가증권: 주식,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 기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명시적 규정 없음	(구)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분류체계 사용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시점	1. 일반원칙: 명시적 규정 없음(단,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인식) 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거래: 매매일	1. 일반원칙: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 2.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 매매일과 결제일 중 선택	1. 일반원칙: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 매매일	인식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관련된 기업의 회계처리 수용
금융상품의 취득 원가	1. 유가증권의 취득자: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2. 유가증권의 발행자: 발행가액	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공정가치 2. 기타: 공정가치 + 거래원가	매입가액 + 부대비용(단,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경우에는 시가)	- 취득 시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정 필요 -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의 거래원가 포함 여부	세법상 시가평가가 허용되는 일부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기업의 회계처리 수용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393

〈표 II-90〉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금융상품의 평가	1.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치(당기손익) 2.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치(자본) 3. 대여금 및 수취채권·만기보유증권 : 상각후원가(당기손익)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 공정가치(당기손익) 2.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자본)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기타의 부채 : 상각후원가(당기손익)	원가법(단,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위하여 설정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허용)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익, 채무증권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이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무조정과 이의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 발생	• 일부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인정 검토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채무증권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 인정 • 금융업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인정 검토
금융자산의 손상 및 대손	1. 감액 -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손상발생의 증거가 있는 경우 감액손실 인식 가능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2. 감액손실 환입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1. 손상차손 -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 가능 2. 손상차손 환입 : 매도가능채무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1. 유가증권 : 원가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주식발행법이 파산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감액 인정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손상사건의 발생이 있어 회계상 대손충당금의 계상이 가능하나,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상액 감소로 인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특히, 금융기관)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
금융자산의 제거	-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봄 - 받을어음 할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제거여부 판단 - 대부분의 자산유동화가 매각거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차입거래)	- 금융상품의 제거 시기 및 제거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 미비 - 채권의 양도거래 및 자산유동화 : K-GAAP 수용	자산유동화 거래의 경우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에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금융상품의 제거 시기 및 제거요건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 마련 - 받을어음 할인 및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정은 현행규정유지

〈표 II-90〉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금융채무의 조건변경	1. 회계처리 : 현재 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2. 적용범위 :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만을 다룸	1. 회계처리 :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함 2. 적용범위 :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원화된 과세
파생상품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 당기손익 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 공정가액 위험회피라면 당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라면 당기손익 또는 자본	좌동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되, 은행이 보유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한해 선택적으로 평가손익 인식 허용	파생상품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미비	파생상품의 종류별로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통칙 등에서 예시

다. 보험계약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AS 4 “Insurance Contracts”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중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은 두 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K-IFRS 제1104호는 1단계로 제2단계 기준서가 제정될 예정인 2011년 이전까지 적용된다. 제1단계의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상품 구분 및 공시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부채에 대해 기존의 회계처리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2단계에서는 기존의 회계처리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의 평가에 공정가치접근법을 강제화할 계획이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가) 적용범위

① 일반원칙

K-IFRS 제1104호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보험계약으로 정한다⁷⁰¹⁾. 이때 보험계약이라 함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⁷⁰²⁾. 한편, K-GAAP에서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대상을 보험회사로 정하고 있다⁷⁰³⁾. 이러한 적용범위의 차이는 <표 II-91>과 같다.

<표 II-91> 기준서의 적용대상

K-IFRS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1)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및 보유한 재보험계약 (2) 보험자가 발행한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701) K-IFRS 제1104호 문단2.

702) K-IFRS 제1104호 부록 A.

70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2.

이와 같이 K-IFRS의 도입으로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으로 변동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비보험계약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거래주체가 아닌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가 거래의 실질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보험계약과 비보험계약의 구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경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해당 준칙을 적용했다면, K-IFRS에서는 보험자가 발행한 계약 중 보험계약에 한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므로 상품건별로 보험 계약 여부를 판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연금 관련 변액상품 등 위험전가가 없는 상품들이 보험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보험료수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보험료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K-IFRS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및 그 판단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K-IFRS 제1104호 부록 A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정의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의적 보험위험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 부록 B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23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즉,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해 보험자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다. 만약 상업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예상되는(즉, 확률로 가중평균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나머지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앞선 문장의 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에 대해 기준서에서 별도로 계량화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분류와 관련한 실무적용에 개별 기업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③ 내재파생상품의 평가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보험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 관련 그 평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부여한 옵션 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한편, K-IFRS 제1104호에서는 특정 내재파생상품에 대해 이를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K-IFRS 제1039호⁷⁰⁴⁾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거나 고정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일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전환, 연금전환과 같은 옵션 및 보증 등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해 보험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금액 및 당기손익에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옵션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소와 자산·부채의 변동성을 예측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 이와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이 없으므로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04)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039호 문단11).

- (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나)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다)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④ 저축요소의 분리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료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K-IFRS 제1104호에서는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요소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가) 보험자가 저축요소(내재된 해약옵션 포함)를 분리하여(즉,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다.
- (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요소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반면, 저축요소에 대해서는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험요소의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관련 보험료수익이 당기수익으로 처리되는 반면, 저축요소의 경우 K-IFRS 제1039호에 따라 금융부채로 처리된다. 그리고 금융부채로 인식된 저축요소는 추후 시가법 또는 원가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K-IFRS하에서는 저축요소 부분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료수익 금액이 줄어들고 대신 관련 금융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국내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 보험요소와 저축요소 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어서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저축요소를 분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⑤ 일반목적회계 및 감독목적회계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기구가 관리하며 보험회사의 감독 목적상 보험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준비금 인식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의 기준은 현행 준칙과는 일치하는 반면, K-IFRS와는 차이가 있다⁷⁰⁵⁾.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일반목적회계와 감독목적회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두 종류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관련 실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보험부채의 인식

① 일반규정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에 지급할 보험료,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비는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저축보험료)와 지급보험금만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순보험료식 적립방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K-IFRS에서는 순보험료뿐만 아니라 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및 수급비 등), 지급보험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사업비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보험료⁷⁰⁶⁾식 적립방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보험부채의 측정방법이 순보험료 방식에서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705) 책임준비금의 인식 관련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보험감독규정에서는 순보험료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K-IFRS에서는 영업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706)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및 수급비).

② 충당부채 인식 금지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 과목으로 하여 매기 계속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금지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위험준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⁷⁰⁷⁾. 그런데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누적하여 적립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환입하지 않으므로 결산일 현재 계약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준비금으로 계상된다. 따라서 과거 계약의 보험료 관련 적립금으로 미래 계약에서 발생할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부채를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준비금을 계상하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K-IFRS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를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⁷⁰⁸⁾.

이와 같이 K-IFRS하에서는 보험부채 관련 충당부채의 인식이 금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금액 및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재보험 회계처리 : 총액인식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재보험계약으로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⁰⁹⁾. 반면, K-IFRS에서는 당초 보험계약상 의무가 면제,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

707) 보험업회계처리 준칙 문단18.

708) K-IFRS 제1104호 문단14(1).

709)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15나.

상을 받는 재보험에 대해서는 이를 새로운 거래로 보아 별도의 재보험자산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및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을 상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⁷¹⁰⁾.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재보험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일마다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⁷¹¹⁾.

이와 같이 K-GAAP하에서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반면, K-IFRS하에서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지급여력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보험부채의 평가

① 일반규정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험료결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료적립금의 적립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회계연도 말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험료결손⁷¹²⁾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신계약비를 추가하여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결손이 신계약비 추가상각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하고, 이 역시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을 추

710) K-IFRS 제1104호 문단14(4).

711) K-IFRS 제1104호 문단20.

712) 보험료결손이란 보험료적립금 기말잔액이 미래의 보험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함.

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⁷¹³⁾.

한편, K-IFRS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험부채(관련 이연신계약비⁷¹⁴⁾와 무형자산이 차감된 금액)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¹⁵⁾. 그리고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부채적정성 평가 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⁷¹⁶⁾.

- (1)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 (2) 평가결과 보험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보험부채의 측정 시 부족계상액을 기존에 신계약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등에서 조정하던 것을 전액 보험부채로 조정하고 관련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부채의 측정 시 적용할 할인율 및 위험조정기준과 관련하여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제1단계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71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16가, 나

714) 신계약비(Acquisition Cost)라 함은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 동안 상각함.

715) K-IFRS 제1104호 문단15.

716) K-IFRS 제1104호 문단16.

때문에 현행 관행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이율 및 위험률을 보험계약 체결 시 그리고 전 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제2단계에서 현행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결산일마다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도입되는 경우 현행 시장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보험부채 금액이 급격하게 증감하여 그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⁷¹⁷⁾. 또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반영한 보험부채의 측정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프로세스의 정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그림자회계

보험자산의 실현손익은 보험부채, 관련 이연신계약비 및 무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IFRS에서 보험자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과 동일하게 상기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미실현손익의 실현을 가정하여 변동이 예상되는 재무제표 항목을 조정하는 것을 그림자회계라 한다.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림자회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나 이미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준칙에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림자회계를 적용한 것과 결과가 동일하다(아래의 사례를 참조).

717)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강제화되는 경우 보험부채가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험회사의 특성상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액을 직접 당기손익으로 반영함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의 당기손익의 변동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이와 같은 당기손익의 변동폭 확대는 특히 기초예정률인 이자율의 변경 시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이장희, 2009).

〈 사례 〉

- 이연신계약비가 추정 총이익의 일정비율로 계약기간 동안 상각됨
 - 계약시점에서 이연신계약비는 20, 보험계약으로 인한 추정 총이익은 100, 원가 50, 평가익(자본조정) 10인 매도가능증권을 보유
- ☞ 1. 매도가능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연신계약비 2를 상각하고, 상각액은 비용으로 처리함
- ☞ 2.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 자본조정 10이 발생하였지만, 이익 10이 발생한 것과 같이 이연신계약비 2를 상각하고, 상각액은 비용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처리함(그림자회계)

③ 임의배당요소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수입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에 계약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같은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K-IFRS에서는 임의배당요소⁷¹⁸⁾를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분리와 관련하여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임의배당요소를 부채나 자본이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장요소의 변동분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임의배당요소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K-IFRS의 도입으로 임의배당요소를 회사의 선택에 따라 부채 혹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금액 및 부

718) 임의배당요소라 함은 보증금부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금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함(K-IFRS 제1104호 부록 A).

- (1) 계약상 총급부금 중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 (2) 금액이나 시기는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 (3)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 (가)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생한 성과
 - (나)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투자수익
 - (다) 계약을 발행한 기업, 펀드 또는 그 밖의 기업의 당기손익

채비율에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의배당요소가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당기손익이 아닌 배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익 역시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IFRS에서 임의배당요소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규정하기로 하였으므로⁷¹⁹⁾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실무상 당장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의 규정

가) 적용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⁷²⁰⁾. 이때 보험회사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한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보험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⁷²¹⁾.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동일하게 책임준비금 설정대상을 보험계약이 아닌 보험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 중 비보험계약으로 분류된 계약, 보험계약에서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 또는 보험요소와 분리된 저축요소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

719) 한국회계기준원(2008b) p. 29.

720)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72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나) 보험부채의 인식

현행 보험업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⁷²²⁾.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⁷²³⁾. 즉, 법인세법상 보험부채의 인식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⁷²⁴⁾. 법인세법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임준비금의 설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래의 보험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 수입 중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감소를 통해 당해 법인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는 차원에서이다.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는 순보험료, 해약환급금, 지급보험금, 배당금 등이 포함되나 부가보험료, 사업비 등은 제외되어 있다.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①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 ③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위의 식에서 ③은 종전의 계약자배당준비금⁷²⁵⁾에 대한 것이다. 이 계약

722) 보험업법 제120조.

723)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72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

725) 계약자배당준비금이란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

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책임준비금의 한 종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 12월에 책임준비금의 손금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중 ①과 ②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되어 익금산입해야 하며, ③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책임준비금 외에도 보험회사가 비정상적인 비상위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경과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단,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한도로 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역시 책임준비금과 같이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결산 조정사항이며, 그 환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당, 위험롤차배당 및 사업비차배당 등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함.

다) 보험부채의 평가

보험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부채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⁷²⁶⁾. 단, 변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는 규정이 2009년 2월 4일 신설되었다⁷²⁷⁾.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보험계약과 비보험계약의 구분

K-IFRS하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료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비보험계약의 경우 관련 보험료수익이 당기수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처리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당기수익으로 계상하는 보험료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K-IFRS에 의하면 보험계약과 비보험계약의 구분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와 같이 보험회사의 비보험계약에 대해 이를 구분하여 별도로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만약 K-IFRS에 따라 회사가 비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 금융부채로 계상한 것을 세법에서도 당기이익이 아닌 부채로 인정할 경우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져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726)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727)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수 있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들이 아직 보험계약과 비보험계약의 구분 및 보험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구분 등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비보험계약의 비중을 높여 과세소득을 이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험료수익을 모두 당기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K-IFRS에서 보험계약과 비보험계약을 구분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거래의 실질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그 구분 관련 경험이 축적되어 그 기준이 보험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시점에서는 회사의 구분을 법인세법에서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료수익의 감소와 관련하여 이는 보험회사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계산 규정 등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준용하는 관련 법인세법 규정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⁷²⁸⁾.

나) 내재파생상품 및 저축요소에 대한 평가

K-IFRS하에서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와는 달리 보험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고 동 내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보험요소와 저축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K-IFRS 제1039호를 적용하여 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시가법 또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채의 임의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내재파생상품 및 저축요소

728) 기업회계상 매출액 변동에 따라 법인세법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2. 수익과 원가'의 '가. 수익'을 참조할 것.

를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시가로 평가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계상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부채를 세무상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기본원칙이 권리의무확정주의임을 고려하면, 미실현손익에 대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 시 미실현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손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면 주식보유비율이 높고 보유기간이 장기인 보험회사의 경우 그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변액보험에 한해 그 평가를 2009년부터 허용하고, 관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선택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토록 하였다. 물론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나, 보험회사 업종의 특성상 변액보험 외에 공정가치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비상위험준비금 불인정

K-IFRS하에서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는 달리 비상위험준비금 등 보험계약 관련 충당부채의 인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금액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런데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회사의 거대손실에 대한 대비로써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확보 및 재정건정성의 유지에 꼭 필요한 항목이기에

K-IFRS 도입 이후에도 보험업이나 관련 감독규정에서 계속 적립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규정은 보험업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비상위험준비금 등에 대한 것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비상위험준비금도 이익의 처분항목으로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서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여야 하며⁷²⁹⁾,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금액에 과세할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K-IFRS 도입 이후에도 보험업법이나 관련 감독규정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을 계속 요구한다면, 현재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의 이익잉여금으로의 환입에 대하여도 과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보험부채금액의 인식 및 평가

K-IFRS하에서 보험부채의 측정방법은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채택하는 순보험료 방식이 아닌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순보험료와 지급보험료 외에 부가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사업비에 대해서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결산상 책임준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부가보험료, 사업비 등에 대해 책임준비금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험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2단계에서는 시가평가가 도입될 예정인데 법인세법

729) 한국회계기준원(2008a) p. 24.

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이고 임의 평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장래의 보험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 수입 중 일정액을 적립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감소를 통해 당해 법인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책임보험준비금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책임준비금 설정범위를 K-IFRS와 같은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려면 관련 보험업법 규정⁷³⁰⁾이 먼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임의배당요소

K-IFRS에서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는 달리 임의배당요소를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배당요소의 변동분에 대해 현행 준칙하에서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반면, K-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여 임의배당요소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 변동 시 당기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처리됨에 따라 당기손익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책임준비금의 한 종류라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손금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즉, K-IFRS하에서는 임의배당요소 중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 그 변동분이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데, 법인세법상 책임준비

7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영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분류된 임의배당요소의 변동분은 세무상으로도 손금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의 한 종류로 이를 법인세법상으로도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4) 보험계약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보험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은 <표 II-92>와 같이 정리된다.

<표 II-92> 보험계약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보험회사	보험계약	보험회사	• 적용대상이 기업 회계와 불일치 • 보험료수익 감소에 따른 기업회 계상 매출액 준 용기준 영향	• 단기 : 현행규 정 유지 • 장기 : 기업회 계와 일치
	내재파생 상품	분리하지 않음	주계약에서 분리 · 공정가치 평가	• 자산의 임의평 가 불인정 • 단, 변액보험의 경우 시가평가 선택가능	세무조정 추가	
	저축 요소	분리하지 않음	분리 · 금융부채로 보아 시가법 또는 원가법으로 평가			
보험 부채 의 인식	보험부채 의 측정	순보험료 방식(순 보험료, 지급보험 금)	영업보험료 방식 (순보험료, 부가보 험료, 지급보험금, 해약환급금, 배당 금, 사업비)	해약환급금, 지급 보험금, 배당준비 금을 한도로 함	세무조정금액 증 가	장기적으로 K-IFRS를 수용
	충당부채 인식금지	비상위험준비금 등 적립 인정	비상위험준비금 등 적립 불인정	결산조정사항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 적용 불 가해짐	-이익처분항목 으로 신고조정 으로 전환
	재보험 회계처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 로 표시	별도의 재보험자 산과 손익으로 인식	N/A	N/A	N/A

〈표 II-92〉의 계속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보험부채의 평가	보험부채의 평가	보험료 결손에 대해 신계약비 추가상각,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등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 보험료적립금 추가적립 순으로 처리	- 부채적정성 평가: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 또한 제2단계에 서는 시가평가 도입 예정	부채의 임의평가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정 추가	- 현행규정유지 - 장기적으로 IFRS에 의한 시가평가 확대 검토
	그립자 회계	인정됨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정 발생	현행규정 유지
	임의배당 요소	계약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준비금 설정	- 부채 혹은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함 - 자본으로 분류된 임의배당요소의 변동은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됨	책임준비금의 설정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자본으로 분류된 임의 배당요소의 변동분을 손급으로 인식할 수 없음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을 검토

5. 결합회계

다음으로 결합회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K-IFRS, K-GAAP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 사업결합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은 K-IFRS의 경우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K-GAAP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결합에 관한 K-IFRS 제1103호는 국제회계기

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제3호 “Business Combination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K-IFRS 제1103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제3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사업결합에 관한 K-IFRS 제1103호와 K-GAAP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가) 적용범위

K-IFRS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업결합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사업결합이란 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⁷³¹⁾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 매입, 다른 기업의 순자산 전부의 매입, 다른 기업의 부채의 인수, 다른 기업의 순자산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형성하는 일부 순자산에 대한 매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⁷³²⁾. 다만, ① 별개의 기업이나 사업이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하는 사업결합 ②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사업결합⁷³³⁾, ③ 둘 이상의 상호실체⁷³⁴⁾ 간 사업결합 및 ④ 하나의 보고기업을 형성하기 위하여, 별개 기업이나 사업이 소유지분의 취득 없이 계약상으로만 하는 사업결합⁷³⁵⁾의 경우에는 K-IFRS 제1103호를

731) K-IFRS 제1103호 부록 A.

732) K-IFRS 제1103호 문단5.

733) 개인이나 개인집단이 사업결합 이전과 이후에 모든 결합참여 기업이나 사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 결합참여 기업이나 사업 중에 취득자가 없게 됨. 따라서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음.

734) 투자자에게 소유된 기업이 아니며, 보험계약자나 참여자에게 직접적이고 비례적으로 원가를 감소시키거나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상호 보험 기업이나 상호 조합과 같은 기업.

735) 예를 들면, 이중 상장 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별 기업들이 계약상으로만 통합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사업결합⁷³⁶⁾은 K-IFRS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K-GAAP은 ‘사업결합’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 포함)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⁷³⁷⁾. 따라서 기업결합은 타 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 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이면, 그 거래를 기업결합으로 본다⁷³⁸⁾.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⁷³⁹⁾. 그러나 K-GAAP에는 K-IFRS와는 달리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사업결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나) 회계처리 방법

K-IFRS의 경우,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⁷⁴⁰⁾. 반면에 K-GAAP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법을 적용하지만, 일정한 요건⁷⁴¹⁾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⁷⁴²⁾.

하는 사업결합.

736) K-IFRS 제1103호 문단10~11, 사업결합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 기업이나 사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 예를 들어, 동일한 개인집단이 결합참여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 합의하여 각 결합참여기업에 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집합적 능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

737)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3.

738)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2-1.

739)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2-2.

740) K-IFRS 제1103호 문단14.

매수법은 취득자의 입장에서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취득자는 순자산을 매수하고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및 우발부채를 인식한다⁷⁴³⁾. 반면에, 지분통합법에 따르면, 결합참여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한다고 보아 회계처리한다.

다) 매수법

매수법은 첫째, 취득자의 식별, 둘째, 사업결합원가의 측정, 셋째, 취득일에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하여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절차를 따른다.

① 취득자의 식별

K-IFRS에서는 K-GAAP과는 달리 사업결합참여회사 중 취득은 모든 사업결합에서 식별되어야 하므로, 거래의 당사자 중 취득자를 식별하는 것은 K-IFRS상 중요한 문제이다. 취득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을 말한다⁷⁴⁴⁾. 지배력은 기업이

74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가.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 나. 결합참여회사 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74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4.1.

743) K-IFRS 제1103호 문단15.

744) K-IFRS 제1103호 문단17.

나 사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⁷⁴⁵⁾. 일반적으로 다른 결합참여회사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결합참여회사는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지배력 판단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으며, K-IFRS는 이에 관한 예⁷⁴⁶⁾를 제시하고 있다.

취득자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합참여기업의 공정가치, 자산이나 수익의 상대적 중요성, 현금 및 다른 자산의 지급 여부, 경영진의 통제 가능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식별한다.

그러나 법적 취득자가 경제적인 취득자와 다를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종속기업이 법적인 지배기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역취득이라고 한다. 즉, 역취득에 의한 사업결합은 자신의 지분이 취득되는 기업을 취득자로 하고, 발행기업을 피취득자로 한다. 역취득에서는 법적 종속기업(회계목적의 취득자)이 법적 지배기업(회계목적의 피취득자)의 소유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결합원가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⁷⁴⁷⁾.

K-GAAP의 경우, 매수회사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통합법을 사

745) K-IFRS 제1103호 문단19.

74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결합의 결과로 그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K-IFRS 제1103호 문단19).

-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다른 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이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4) 다른 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747) K-IFRS 제1103호 부록 B. 문단B5.

용할 수 있으며, 매수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법을 사용한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⁷⁴⁸⁾.

- 가.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 나. 결합참여회사 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 간의 결합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하는 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실체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며, 결합참여회사의 경영진이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업결합은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는 기업결합으로 보아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한다⁷⁴⁹⁾.

② 사업결합원가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원가는 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제공한 자산,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 및 발행한 지분상품에 대한 교환일의 공정가치와 ②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모든 원가의 합계액으로 측정한다⁷⁵⁰⁾. 지배력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발행한 상장

748)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5.

749)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5-1과 5-2.

750) K-IFRS 제1103호 문단24.

된 지분상품은 대부분의 경우 교환일의 공표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한다⁷⁵¹⁾. 그러나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표가격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⁷⁵²⁾. 사업결합을 위해 회계전문가, 법률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된다⁷⁵³⁾. 그러나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의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⁷⁵⁴⁾.

K-GAAP의 경우, 매수원가는 ①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과 ②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측정한다⁷⁵⁵⁾. 또한,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은 발행일의 종가로 한다. 시장성 없는 주식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한다⁷⁵⁶⁾.

K-IFRS의 경우, 미래사건을 조건으로 사업결합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결합계약에서 미래사건을 조건으로 사업결합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정은 조정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⁷⁵⁷⁾. 반면, K-GAAP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③ 취득한 자산·부채·우발부채에 대한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K-IFRS의 경우, 취득자가 취득한 자산·부채·우발부채의 취득가액은

751) K-IFRS 제1103호 문단27.

752) K-IFRS 제1103호 문단27.

753) K-IFRS 제1103호 문단29.

754) K-IFRS 제1103호 문단30~31.

755)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

756)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5.

757) K-IFRS 제1103호 문단32.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하여 결정한다. 자산(무형자산 제외)은 그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취득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부채(우발부채 제외)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이나 우발부채는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공정가치로 인식한다⁷⁵⁸⁾. 다만,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⁷⁵⁹⁾. 피취득자가 K-IFRS 제1037호에 의해서 기존에 구조조정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인식하지만, 사업결합의 결과로 예상되는 미래 손실이나 그 밖의 원가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⁷⁶⁰⁾.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은 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⁷⁶¹⁾. 매수법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인 취득일부터 적용하므로, 취득자의 취득이 법률적으로 거래가 반드시 종료되거나 확정될 필요가 없다⁷⁶²⁾.

K-GAAP도 마찬가지로,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 대차대조표상 계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일에 존재하는 모든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포함하며,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매수일 이후 이행될 피매수회사의 사업 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매수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정요건⁷⁶³⁾을 모

758) K-IFRS 제1103호 문단37.

759) K-IFRS 제1103호 문단36.

760) K-IFRS 제1103호 문단41.

761) K-IFRS 제1103호 문단45.

762) K-IFRS 제1103호 문단39.

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식별 가능한 충당금으로 계상한다. 매수일 이후에 발생한 부채나 손실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매수의 직접 결과로서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매수일에 매수회사의 부담이 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계상하고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부채의 일부로 본다⁷⁶⁴⁾.

④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⁷⁶⁵⁾.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K-IFRS 제1036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⁷⁶⁶⁾. 따라서 최초 인식 후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⁷⁶⁷⁾.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초과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⁷⁶⁸⁾.

76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7 다.

- 1) 피매수회사의 사업 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매수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발표되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2) 매수일 이후 3월(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작성일) 이내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는 경우
 - (i) 관련 사업
 - (ii)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장
 - (iii) 계획실행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 담당업무 및 소속사업장
 - (iv) 예상경비
 - (v) 계획의 시행시기

764)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7 나.

765) K-IFRS 제1103호 문단51.

766) K-IFRS 제1103호 문단55.

767) K-IFRS 제1103호 문단54.

K-GAAP의 경우에도,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⁷⁶⁹⁾.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⁷⁷⁰⁾.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도 K-IFRS와 K-GAAP 간에 차이가 있다. K-IFRS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이 이전대가로 지급한 취득자 지분에 미달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는 취득자가 염가매수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렇게 인식된 부의 영업권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⁷⁷¹⁾.

K-IFRS와는 달리, K-GAAP의 경우,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⁷⁷²⁾.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며,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①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거나 ②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⁷⁷³⁾.

768) K-IFRS 제1103호 문단56.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이전에는 피취득자의 자산·부채·우발채무의 식별 및 측정, 그리고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측정을 재검토함.

769)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가.

770)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다.

771) K-IFRS 제1103호 문단34.

77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0. 가.

77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0. 다. 라.

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이 둘 이상의 교환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즉, 단계마다 개별투자 원가와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비교하여 매수법을 적용한다.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의 조정은 재평가에 해당되므로 재평가로 회계처리한다⁷⁷⁴⁾.

K-GAAP의 경우,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매수일에 일괄하여 인식한다⁷⁷⁵⁾.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⁷⁷⁶⁾.

⑥ 최초회계처리의 조정

K-IFRS의 경우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우발부채에 할당된 공정가치 또는 사업결합원가가 잠정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취득자는 이를 당해 잠정가치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한다⁷⁷⁷⁾. 다만, 최초의 회계처리는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고, 조정은 취득일부터 확정된 가액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결합 최초회계처리가 완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비교표시 정보는 최초회계처리가 취득일에 완료되었더라면 표시되었을 정보로 나타내어야 한다⁷⁷⁸⁾.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를 완료한 후에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조

774) K-IFRS 제1103호 문단59.

775)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1. 가.

776)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1-1.

777) K-IFRS 제1103호 문단62.

778) K-IFRS 제1103호 문단62. 다.

정은 K-IFRS 제1008호에 따른 오류수정⁷⁷⁹⁾만을 인식한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 완료 후의 조정은 추정변경의 효과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된다⁷⁸⁰⁾.

K-GAAP의 경우, 매수일 이후 매수일에 인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이 잘못 계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시점에서 당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고⁷⁸¹⁾, 동 계상액 또는 수정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한다.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계상하거나 기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⁷⁸²⁾.

라) 지분통합법

지분통합법은 K-GAAP에서만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매수회사의 식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분통합법에 따르면, 결합참여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다만 결합참여회사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하여야 한다⁷⁸³⁾. 기업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조정한다⁷⁸⁴⁾. 지분통합과

779) 소급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오류가 발생한 과거 회계기간의 비교정보를 수정하여 당해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함.

780) K-IFRS 제1103호 문단63.

781)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3. 가.

78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3. 나.

78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6. 가.

784)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6. 나.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발생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⁷⁸⁵⁾.

2) 관련 법인세법 규정

가) 회계처리 방법

K-IFRS는 매수법에 의하여, K-GAAP는 매수법이나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의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 방법을 특정하지는 않고,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⁷⁸⁶⁾.

나) 취득자의 식별

K-IFRS나 K-GAAP과는 달리, 법인세법은 실질적인 매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상 합병회사를 매수회사로 본다⁷⁸⁷⁾. 따라서 법인세법상 매수회사와 기업회계상 매수회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법적 피매수회사(회계상 매수회사)의 자산·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법적 매수회사(회계상 피매수회사)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2008년 12월 25일 이전의 경우, 역합병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부당공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합병의 요건이 충족되는 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26일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⁷⁸⁸⁾의 범위에서

785)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6. 다.

78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

787) 법인-643, 2009.05.29.

는 공제하지 아니한다⁷⁸⁹⁾. 이는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따라 결손금 공제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 자산·부채 등의 승계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이 승계된다.

- ①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유보금액 중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본

788) 구분정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789)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다⁷⁹⁰⁾.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⁷⁹¹⁾. 내국법인이 합병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⁷⁹²⁾. 다만,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⁷⁹³⁾.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⁷⁹⁴⁾.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기업회계에 따라, 지배회사가 연결종속회사를 합병할 경우, 연결종속회사의 자산·부채는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법의 경우, 피합병회사인 연결종속회사의 자산·부채 승계가액은 연결재무

790) 법인-3534, 2008.11.21.

791)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79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함.

793)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3.

794)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1-3호.

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⁷⁹⁵⁾.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으로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⁷⁹⁶⁾.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④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⁷⁹⁷⁾.

라) 합병차익과 합병차손(부의영업권과 영업권)

법인세법은, 상법의 규정을 빌려, 합병차익을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

795) 서면2탐-330, 2006.02.10.

796)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797)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⁷⁹⁸⁾, 이는 자본준비금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기업회계는 이 초과금액의 일부를 부의영업권(K-GAAP)이나 당기손익(K-IFRS)으로 보아 무형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법인세법의 경우, 자본의 증감은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므로, 익금불산입한다. 다만,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⁷⁹⁹⁾은 익금에 산입한다⁸⁰⁰⁾. 이는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합병차손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합병차손에 관한 회계적인 개념인 영업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한다⁸⁰¹⁾. 그러나 단순히 대차를 맞추기 위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합병과 관련한 손익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⁸⁰²⁾.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이를 당

798)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799)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800)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80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80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합병계약에 의하여 부담할 합병에 따르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⁸⁰³⁾.

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둘 이상의 교환거래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의 경우, K-IFRS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영업권을 계산하나, K-GAAP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취득일에 일괄적으로 영업권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의 경우 합병을 위하여 최종적인 취득 이전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의 경우에도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은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한다⁸⁰⁴⁾.

사) 잠정적인 회계처리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⁸⁰⁵⁾. 신고를 위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⁸⁰⁶⁾. 이러한 신고서는 확정적인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이후에 신고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내국법인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⁸⁰⁷⁾.

80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0

804)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805)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806)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807) 국세기본법 제45조, 46조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아래에서 K-IFRS의 도입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가) 회계처리 방법

K-IFRS의 경우,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으로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부채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법인세법의 경우, 특정한 회계처리 방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로부터 승계 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평가한다. 따라서 지분통합법의 폐지에 따라 합병으로 승계된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법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K-IFRS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K-IFRS 도입 기업은 장부가액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K-GAAP 도입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K-GAAP 도입 기업의 경우, 여전히 장부가액에 따른 합병이 가능하므로,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K-IFRS 도입 기업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K-IFRS 도입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K-IFRS 도입 초기의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K-IFRS와 K-GAAP 도입 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K-IFRS 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K-IFRS는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여, 동

일한 회계사건에 대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다른 두 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비교 가능성을 증진시킨 것이다. 또한 사실상 과거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사업결합이 거의 없으므로⁸⁰⁸⁾, 지분통합법의 폐지로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K-IFRS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을 달성한다는 측면도 있다⁸⁰⁹⁾.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세법도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처리하는 K-IFRS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취득자의 식별

법인세법에서는 상법상 합병회사를 매수회사로 보므로, 기업회계상 취득자(매수회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법적 피합병회사(회계상 합병회사)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가 이연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법적 합병회사(회계상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가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며, 이는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법적 합병회사(회계상 피합병회사)의 잉여금이 자본계정에 표시되므로 세무상 잉여금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 목적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역합병(역취득)의 경우, 실질적인 매수회사(취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808) 신현걸·정재연(2005)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금감위에 합병종료보고서를 제출한 103개 합병건 중 조사대상 101건에서 지분통합법을 적용한 합병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809) 한국회계기준원(2008a). p. 12.

다) 자산·부채의 승계

K-IFRS의 경우, 개별기업에서는 인식되지 않는 우발부채와 무형자산 등이 사업결합으로 인해 인식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법의 경우,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승계한 가액에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에,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세무회계에서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을 고려할 경우, K-IFRS에 의해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우발부채와 무형자산 중 법인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상각하지 않으며, 대신 정기적으로 자산손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자산손상액을 손실에 포함시킨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자산성을 인정하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합병차손으로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K-IFRS 경우, K-GAAP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K-GAAP의 경우, 영업권을 정기적으로 상각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관리 역시 정기적으로 필요한 반면, K-IFRS의 경우, 자산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만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업권을 합병차손으로 보는 현행 법인세법의 견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영업권에 관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영업권의 상각에 대하여도 K-IFRS에서는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통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20년 이내, 세법에서는 5년에 걸쳐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결산조정으로 되어 있는 세법의 규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는 회계상에서는 별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경우는 이를 합병차익에 포함하고 별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인정방법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세법이 K-IFRS와 조화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잠정적 회계처리

K-IFRS의 경우, 사업결합에 관한 최초의 회계처리를 잠정적으로 수행한 후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무상 결산연도가 경과한 이후에 확정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잠정적인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최초 신고한 가액은 세법상 신고가액이 되며,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K-IFRS의 잠정적인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잠정적인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납세자에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 미확정된 신고를 통한 납세자의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사업결합과 관련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잠정적인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K-IFRS

에서 도입한 잠정적 회계처리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업결합에 대한 요약

이상의 사업결합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표 II-9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93> 사업결합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회계처리		매수법, 지분통합법	매수법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규정 적용불가	단기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규정의 보완. 장기적으로 K-IFRS와 조화
취득자 식별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법상 합병기업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매수회사(취득자)가 달라질 가능성	실질적인 매수회사(취득자)를 세법에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자산·부채의 승계		피취득자 장부상 자산·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발부채, 무형자산 등의 인식이 가능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부채의 승계가능성	현행 제도 유지(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부채만 승계)
영업권	측정	매수원가-취득자산의 공정가액	(사업결합원가+지배력없는 지분)-취득자산의 공정가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 비밀 등으로 유상대가를 지급한 것만 인정	인정범위가 달라,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	장기적으로 K-IFRS와 조화가 필요
	상각	20년 이내 상각	손상검사	5년	방법과 기간이 다름	신고조정인정
부의 영업권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로 상각	여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합병차익에 포함	인정범위, 방법이 다름	장기적으로 K-IFRS와 조화가 필요
잠정적 회계처리		불인정	인정	불인정	조세회피 가능성 증대	현행 제도 유지

나. 관계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은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와 K-GAAP 제15호 “지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K-IFRS와 K-GAAP의 차이를 중심으로 K-IFRS를 설명하고 법인세법의 내용과 비교하도록 한다.

1) K-IFRS와 K-GAAP의 비교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지분법 적용 시에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와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적용범위 부분이고 둘째, 지분법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며 셋째, 관계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손상차손 부분이다.

가) 적용범위

① 작성 재무제표

K-IFRS 제1028호는 관계기업투자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종속기업이나 조인트벤처는 관계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K-GAAP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에 따라 K-IFRS와 K-GAAP하에서 각 기업이 작성할 재무제표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인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여 B기업의 완전모회사이면서 C기업에도 투자하여 C기업에 25%지분을 가지면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K-IFRS와 K-GAAP에 따른 A기업의 재무제표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IFRS에 따르면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종속회사인 B에 대해서는 연결회계처리를 하고, 관계회사인 C에 대해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세무상 목적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별도재무제표⁸¹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C기업(관계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에 비하여 B기업(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인식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며, 관계회사와 달리 지분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K-GAAP에 따르면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K-IFRS와 동일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B와 C 모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A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분법 적용제외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예외조항⁸¹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가 종속기업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조건과 유사한 조건⁸¹²⁾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

810)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재무제표, 조인트벤처 참여자로서 소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재무제표임. K-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종속회사주식은 지분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 또는 금융상품기준서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됨.

811) K-IFRS 제1027호 문단10. 중간 지배회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배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종속회사인 경우 또는 100% 종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소수주주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회사의 주식 또는 채무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회사가 금융상품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최상위지배회사나 상위지배회사가 IFRS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812) K-IFRS 제1028호 문단13.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하지 아니한다. K-GAAP에 의해서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가증권에는 지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⁸¹³⁾. 이때,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K-IFRS 제1105호에 의하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비하여, K-GAAP에서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라면 요건없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매각예정자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③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K-IFRS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⁸¹⁴⁾.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에는 투자자 외의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투자자가 항상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투자자가 현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⁸¹⁵⁾. 잠재적 의결권은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투자자의 다른 소유주(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투자자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투자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투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813) K-GAAP 제15호 문단9.

814) K-IFRS 제1028호 문단6.

815) K-IFRS 제1028호 문단6과 문단8.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⁸¹⁶⁾. K-GAAP은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⁸¹⁷⁾.

K-IFRS와 K-GAAP의 차이는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지배회사의 포함 여부이다. 즉, K-GAAP의 경우에 20% 지분율을 판단할 때 그리고 간접비율을 계산할 때 지배회사가 포함되지만, K-IFRS는 지배회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지분법

지분법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⁸¹⁸⁾.

지분법은 투자주식의 투자회사가 관계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고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K-IFRS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며, K-GAAP은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된다. 해당 투자주식이 금융자산으로 인식될 때 최초 원가는 K-IFRS에 의하면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고, 이 공정가치가 당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⁸¹⁹⁾. K-GAAP에

816) K-IFRS 제1028호 문단9 단서.

817) K-GAAP 제5호 문단5.

818) K-IFRS 제1028호 문단11.

819) K-IFRS 제1028호 문단18.

서도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에⁸²⁰⁾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치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분법 적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K-IFRS에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K-GAAP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는 지분법이라는 회계처리방법의 특성상 K-IFRS를 적용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업권의 인식 등과 같이 K-IFRS와 K-GAAP이 달리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차이를 설명한다.

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과 피투자회사 순손익 보고

취득시점에는 지분법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는데, 피투자회사가 순손익을 보고하면 순이익 중 지분비율만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감시킨다.

② 투자차액의 제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현재 투자회사의 투자계정 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제거차액이 발생한다. 투자차액은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K-GAAP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상각하고⁸²¹⁾, 공정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있다⁸²²⁾.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비화폐성

820) K-GAAP 제15호 문단36

821) 기업인수합병준칙 9.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함.

822) 기업인수합병준칙 9.다 및 라.

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는 것은 피투자회사의 비화폐성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이 투자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K-IFRS에서는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혹은 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순자산가액변동의 원천에 따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여 처리한다. 순자산가액의 변동원천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또한 자본잉여금·자본조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미실현이익의 제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취득한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관련 손익은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외부로 판매되기 전까지는 미실현손익이므로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투자회사에 발생한 재고자산매각과 관련된 손익은 전액 제거하고,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발생한 재고자산매각과 관련된 손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거하는 것이다.

⑤ 배당금 수취

배당금 수취액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⁸²³⁾.

823) K-GAAP 제5호 문단20.

⑥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매각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된 당해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누적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한다⁸²⁴⁾.

⑦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금액이 “0” 이하가 될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여야 한다.

K-IFRS에 의하면 관계기업의 투자지분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⁸²⁵⁾. 이는 K-GAAP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손상차손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손상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K-IFRS 제1039호에 따라 판단한다. 손상차손에 대한 판단은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을 단일자산으로 취급하여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행한다. 계상된 손상차손은 환입도 가능하다. 그러나 관계기업에 대한 영업권은 투자자산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K-GAAP에서도 장부가액보다 회수가능가액이 적은 경우에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으며, K-IFRS와 차이가 나는 점은 감액손실을 인식할 때 미상각된 투자차액인 영업권이 있으며 이를 우선 감액한다는 점이다. K-IFRS는 투자차액에 대하여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K-GAAP과 같은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다.

824) K-GAAP 제5호 문단34.

825) K-IFRS 제1028호 문단29.

2)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의 과세단위는 개별 법인이다. 즉, 과세단위가 피지배회사를 포함하는 연결실체가 아니라 개별 법인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개별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 등에 첨부하는 서류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종속기업 등 투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원가법만을 인정하기 때문에⁸²⁶⁾, 관계회사주식에 대해서도 원가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한 회계처리를 이를 환원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 법인세법의 내용으로 피투자회사의 배당금은 회계상으로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서 차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에 해당한다. 이때 배당금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등에서 수취하는 경우에 수입배당익금불산입 규정을 고려하여 익금으로 산입할 금액을 결정한다.

826) 법인세법 제75조.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과세소득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60조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인지 연결재무제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K-GAAP에서는 기준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K-IFRS는 개별과 연결에 모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지 별도재무제표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⁸²⁷⁾.

한국모회사가 연결자회사를 가진 경우에 K-GAAP에서는 연결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K-IFRS에 따르면 연결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대상이 되는 기본재무제표는 종속회사가 포함된 별도재무제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K-IFRS에 의하면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K-IFRS 제1027호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⁸²⁸⁾.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연결종속회사주식은 원가법 또는 공정가액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기존의 지분법에서 발생하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가법이나 공정가액법으로 처리한 연결종속회사 주식의 가

827)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차이는 본 보고서의 주석 31)을 참조.

828)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별도재무제표도 외부감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외감법 제2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액과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원칙인 원가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즉, 연결중속회사에 대하여 원가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세무상 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이다⁸²⁹⁾.

상황별 K-IFRS의 작성재무제표는 <표 II -94>와 같다.

<표 II -94> 각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¹⁾

상황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주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중속자회사는 연결회계처리, 관계기업은 지분법적용)
	별도재무제표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의 경우 별도재무제표 작성(중속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함) (K-IFRS 제1027호 문단 38)
연결자회사는 없으나, 관계기업에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임(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
연결자회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모두 없는 회사		K-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K-IFRS 제1028호 문단5)

주: 1) K-IFRS의 관련 조문과 금융감독원(2008)의 p.137의 표를 수정한 것임

② 개정방향

법인세법 제60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인 K-IFRS를 준용한 재무제표가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연결대상회사의 경우에는 K-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세법상

829) 연결회사와 관련된 세무조정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함.

재무제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위의 표에서 각 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재무제표임을 세법상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회사의 범위

K-IFRS와 K-GAAP의 차이로 K-GAAP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K-IFRS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관계회사에 대한 결정에서 간접소유비율에서 K-IFRS가 지배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K-GAAP은 지배회사를 포함하는 규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거나, 지분법 적용의 예외 중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분류의 차이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회계상으로는 해당 투자주식이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를 적용하게 되는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를 적용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지분법 적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은 없고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무상으로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되든지 원가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원가법 외의 다른 규정을 인정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므로 지분법 적용대상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 지분법의 적용

지분법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가액변동에 따른 회계처리는 내용에 따라 회계상 손익에 반영하거나 이익잉여금

에 반영하거나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지분법의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K-IFRS와 K-GAAP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95>와 같다.

<표 II-95> 지분법의 지분가액 조정에 대한 세무조정

구분		처리방법	세무조정
피투자회사 순자산 변동	당기순이익	지분법 손익 (손익계산서)	차)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 대)지분법이익 ×× 지분법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한 후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유보)처분
	이익잉여금	지분법 이익 잉여금변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차)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 대)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과대계상분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잉여금 과대계상분에 대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 후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자본잉여금	지분법 자본 변동(자본조정)	차)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 대)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과대계상분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 과대계상분에 대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 후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자본조정	지분법 자본 변동(자본조정)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과대계상분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 과대계상분에 대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 후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K-IFRS와 K-GAAP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은 영업권의 계상에 대한 부분이다. 즉, K-IFRS에서는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등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지분율을 곱한 가액과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별도 계상되는 것이 아니기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업권은 손상차손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상각이나 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K-GAAP에서는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 혹은 환입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투자주식을 취득하면서 공정가치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비포합주식으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규⁸³⁰⁾에 비추어 보면 세법상 영업권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분법에 따라 발생한 영업권은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영업권이 되고 이에 따른 상각과 환입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K-GAAP에 따라 영업권 혹은 부의 영업권이 계상되었으면 세무조정이 필요하지만, K-IFRS에 따라 영업권 혹은 부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K-IFRS에 의하면 오히려 세무조정이 간소화되는 부분이다.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K-IFRS와 K-GAAP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지분법의 중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즉, K-IFRS에 의하면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를 따르게 된 투자주식의 최초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K-GAAP에서는 장부가액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은 투자주식과 유가증권 모두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방법이 바뀐 것이지 해당 투자주식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기손익으로 계상된 손익을 부인하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필요로 한다.

4) 관계기업투자 요약

이상의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내용은 <표 Ⅱ-9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30) 서이 46012-10226, 2003.01.30.

〈표 II -96〉 관계기업투자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중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 K-GAAP하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관계회사뿐만 아니라 중속회사에 대한 투자도 지분법으로 평가함. 중속회사 투자에 대한 평가규정이 별도로 있음 • 중속회사, 조인트벤처, 지분법피투자사: 지분법으로 평가	• IFRS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에 중속회사와 조인트벤처를 포함하지 않음 • 중속기업: 연결로 반영 • 관계기업: 지분법으로 반영 • 조인트벤처: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으로 반영 •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중속회사/관계회사는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함	개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연결대상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간접보유의 범위	• 지배회사 지분도 판단 시 포함	• 지분을 판단 시 지배기업 지분은 배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N/A	N/A
영업권	• 별도 계산하여 상각함	• 별도 계산되지 않기에 상각하지 않음	상각하지 않음	N/A	N/A
부의 영업권	• 다음의 순서로 인식 1) 미래손실에 대응 2) 비유동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 3) 잔여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즉시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환입하지 않음	N/A	N/A
지분법종단	• 유가증권으로 대체되는 가액은 지분법의 장부가액	• 금융자산으로 대체되는 가액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 차이를 당기손익	원가법	N/A	당기손익을 부인

다.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은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및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에서 규정하고 있다. K-IFRS와 IFRS의 차이는 없으며 K-IFRS와 K-GAAP 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K-IFRS의 내용을 크게 기준서의 적용범위, 참여자의 회계처리, 조인트벤처의 회계처리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K-IFRS와 K-GAAP 간에 차이 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1) K-IFRS와 K-GAAP의 규정

가) 적용범위

① 조인트벤처의 정의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의 약정”으로 정의된다⁸³¹⁾. 여기서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⁸³²⁾.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므로 하나의 참여자가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의 활동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형태는 조인트벤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 약정에 따라서 공동지배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투자자가 계약상 약정 없이 유의적 영향력

831) K-IFRS 제1031호 문단3.

832) K-IFRS 제1031호 문단3.

을 행사하는 관계기업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

② 조인트벤처의 형태

조인트벤처를 형태에 따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K-IFRS 제1031호에 대한 적용 여부는 조인트벤처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법적 실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조인트벤처라는 법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공동지배사업은 공동지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실체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각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조인트벤처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각 참여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참여자 자신이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수익 중 해당 참여자에 대한 분배금액을 참여자 자신의 재무제표의 일부로 인식한다.

둘째, 공동지배자산도 조인트벤처의 영업을 위하여 별도의 실체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조인트벤처의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따라서 각 참여자는 공동지배자산에 대하여 참여자의 지분을 분배받고,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산출물을 분배받으며 발생비용 중 합의된 부분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도 조인트벤처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공동지배 자산 중 각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참여자 자신이 발생시킨 비용, 다른 참여자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인트벤처 공동지배자산의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공동지배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 중 해당 참여자에 대한 분배금액, 해당 참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을 참여자 자신의 재무제표의 일부로 인식한다.

셋째,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영업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별도의 실체를 조직한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참여자가 공동지배약정을 통하여 실

체를 공동지배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기업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실체인 조인트벤처는 자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참여자는 공동지배 기업에 출자하는 형태이다.

③ 기준서 적용범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IFRS 제1031호 기준서는 조인트벤처의 정의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가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조인트벤처의 한 형태인 공동지배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조인트벤처의 한 형태인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지만 K-IFRS 제1039호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조인트벤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는 “조인트벤처”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회계처리방법(비례연결 혹은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이다. 이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가진 지배기업으로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참여자가 지배기업은 아니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조건과 유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⁸³³⁾.

나) 공동지배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처리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는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선택하여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인식한다.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을 한다는 의미는 참여자의 재무상태표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자산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과 공동으로

833) K-IFRS 제1031호 문단1과 문단2.

책임지는 부채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포함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공동 지배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이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즉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중에서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⁸³⁴⁾.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참여자의 기존 재무제표의 유사계정과목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지분법을 통하여 인식할 있는데, 여기서 지분법은 K-IFRS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⁸³⁵⁾.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K-GAAP에서는 지분법만 허용하고 있으나, K-IFRS는 원칙적으로 비례연결을 채택하고 선택적으로 지분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자가 어떤 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⁸³⁶⁾.

다)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는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형태의 거래와 조인트벤처가 참여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의 거래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손익 중 다른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손익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

834) 비례연결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이만우외(2009) p. 62를 참조.

83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설명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836) K-IFRS 제1027호 문단45.

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비화폐성자산을 조인트벤처에 출자하고 조인트벤처의 투자지분 외에 현금이나 출자된 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전액 실현된 것으로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처분이익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K-IFRS의 규정은 K-GAAP과는 차이가 있는데, K-GAAP에서는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은 그 실체의 형태에 따라 법인, 파트너십 등에 따라 그 과세를 달리한다. 회계상으로는 법적인 형태나 구조에 관계없이 조인트벤처의 정의에 합당한 경우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므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조인트벤처는 형태에 따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실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공동지배기업은 법적 실체가 있고 해당 법적 실체는 법인, 동업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공동지배기업이 선택한 법적 실체에 따른 개별 세법 즉, 법인세법이나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K-IFRS의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인세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K-IFRS와 K-GAAP의 차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세제의 내용만 설명한다.

3)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가) 공동지배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처리

K-IFRS에 의하면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지분을 인식함에 있어서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비하여 K-GAAP의 경우에는 지분법만을 허용한다. 회계상 지분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분법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환원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내용에서 언급된 문제와 동일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⁸³⁷⁾. 그런데 K-IFRS에 따라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비례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으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비례연결은 참여자의 재무상태표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자산과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의 지분만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무목적상으로는 법적 실체별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세무상 한도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재무제표도 공동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기 이전으로 환원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에서 참여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산을 출자한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세법이 참여자가 출자한 재산을 유상양도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목적물이 대체물이나 소비물인 경우에는 언제나 그 소유권 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소유(합유)로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야 하고, 비대체물이나 비소비물에 관하여는 소유

83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설명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권 자체의 출자로 추정하기보다는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해당 자산의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본다⁸³⁸⁾. 따라서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이 거래가 세무상 양도로 인정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한 요약

이상의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내용은 <표 Ⅱ-9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Ⅱ-97>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공동 지배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지분법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원가법	비례연결인 경우에 재무제표를 구분할 필요	참여자가 비례연결의 경우 구분재무제표를 작성
조인트벤처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한 경우	대가로 투자지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음	대가로 투자지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로 판단	소유권의 이전 등으로 달리 판단	참여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인식 차이	참여자의 세무조정 필요

838) 대법 84누 549, 1985. 2. 13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 심사 양도 2000-85, 2000. 11. 10.

6.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세제에 관한 연구: 은행업을 중심으로

가. K-IFRS를 적용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상장 여부, 금융권역별 구분에 따라 상이하⁸³⁹⁾.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 종합금융, 카드회사는 상장·비상장 모두 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상호저축은행과 기타 여신전문업법상의 금융기관은 상장법인에 한하여 K-IFRS를 적용하고 상호금융기관은 K-IFRS 적용을 배제하였다.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협동조합의 특성으로 기인한 문제점을 선결한 후에 도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절에서는 K-IFRS를 적용하는 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중심으로, K-IFRS의 도입으로 은행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K-GAAP과 K-IFRS의 규정을 비교한 후, 관련 법인세법 규정과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K-IFRS의 모든 규정은 은행업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K-IFRS의 규정 중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른 업종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한 정리는 생략하고자 한다.

839) 금융감독원, 외감법 개정내용 및 IFRS 관련 주요현안 해설, 2009. 2.

나. K-IFRS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에 미치는 주요 내용

1) 재무제표 표시 : 영업수익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에서 금융회사의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성된다(〈표 II-98〉 참조)⁸⁴⁰⁾.

〈표 II-98〉 은행업의 영업수익

K-GAAP의 손익계산서	K-IFRS의 포괄손익계산서
영업수익 이자수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액 대출채권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배당금수익 기타의 영업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파생상품거래이익	영업수익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음

자료: K-GAAP 제24호 부록 4 일부 수정

840) K-GAAP 제24호 문단21, A67~75.

이에 비하여 K-IFRS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은행의 영업수익은 해당은행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 있다. 가령 특정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외형확대를 추구하는 경우 K-GAAP에서 영업수익에 포함되지 않던 영업외수익 항목(가령 지분법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등)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우리나라의 회계제정기구나 금융감독당국이 별도로 영업수익을 정의하게 되면, IASB에서 영업수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다양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K-IFRS의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준용하고 있어 K-IFRS에서 영업수익에 대한 구분을 기업에게 위임한다면, 법인세 과세소득은 해당기업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은 법인세법에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⁴¹⁾. 이에 따라 기업 간의 과세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업수익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업종 기관의 협의체(가령 은행연합회, 보험업협회, 증권협회 등)가 회계전문가, 금융감독당국, 회계제정기구,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업종별 기업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해당업종의 표

8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Ⅳ장의 “기업회계기준의 준용 여부”의 내용을 참조.

준재무제표의 양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업계 자체에서 정한 재무제표가 마련된다면 법인세법에서 K-IFRS의 영업수익을 계속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⁸⁴²⁾.

둘째, 앞의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업회계상의 영업수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금융 영업환경의 변화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 빈번하게 세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 금융용역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과 K-IFRS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⁴³⁾. 다만 용역제공이 특정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와 실무적 편의에 의하여 진행률 산정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금융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수수료, 특정행위의 완료시점에 인식하는 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 담

842) 최근 금융기관 간의 협의회를 통하여 IFRS에 부합하는 상세한 계정과목 정의 등을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한국금융(www.fntimes.com) 2009.9.21.).

843) K-IFRS 제1018호 문단20.

거래의 진행률 산정에서 K-IFRS은 신뢰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양한 측정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 수행한 누적용역원가의 비율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보 및 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거래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등 금융상품에 대한 관여를 가져오는 경우에 용역수수료를 이자수익으로 이연하여 인식한다.

이때 K-GAAP과 K-IFRS에서 정의하는 유효이자율은 차이가 있다. K-GAAP에서의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하지만, K-IFRS의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의미한다⁸⁴⁴⁾.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세법에 의하면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인식 시점은 용역제공 완료일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보험료 등)는 현금주의(기간 미경과분에 따른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에 따라 인식하되,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 등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⁸⁴⁵⁾.

특히 금융업의 이연대출부대수익과 이연대출부대비용에 대해서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기관의 해석사례에 의존하였다. 2007년 1월에 고시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

844) K-IFRS 제1039호 문단9.

845)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463

에 대응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규정하여 K-GAAP을 준용하는 해석이었다⁸⁴⁶⁾.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⁸⁴⁷⁾에 따라 선수이자 성격인 대출부대수익을 이연처리한 경우,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적용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2009년 6월 30일에 고시된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연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용역완료일에 의한 현금주의원칙으로 변경되었다⁸⁴⁸⁾. 즉 대출부대수익은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법인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인식에 대한 K-GAAP, K-IFRS 및 법인세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99>와 같다.

846) 서면2탐-224, 2007.01.31.

847) 「대출부대수익 및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2002-9, 2002.11.5.

848) 조심 2008서 2609, 2009.06.30.

〈표 II-99〉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구분	K-GAAP	K-IFRS	세법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에 대한 이자수익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된 개설수수료 : 유효이자율 ¹⁾ 에 의한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이 아닌 금융자산의 개설 또는 취득에 관련된 개설 수수료 : 유효이자율 ²⁾ 법에 의한 이자수익	대출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조심2008서2609)
	자금의 대출에 관련된 개설수수료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이 아닌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 수수료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특정대출의 발생이 거의 확실한 대출수수료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특정대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K-IFRS 1039호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약정 수수료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용역제공 수수료	대출관련 용역수수료 : 용역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 인식	좌동	현금주의
	발생 가능성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의 특정대출 수수료 : 약정 기간의 수익인식	특정대출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K-IFRS 1039호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약정 수수료 : 약정기간의 수익인식	
	N/A	투자관리수수료 : 용역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인식	
특정행위에 대한 수수료	주식배정수수료 : 주식배정 완료 시에 수익인식	좌동	현금주의
	중개수수료 : 대출약정 용역 완료 시에 수익인식	좌동	
	신디케이트 주선수수료 : 주선용역 완료 시에 수익인식	좌동	

주: 1) K-GAAP의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

2) K-IFRS의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의미

자료: K-GAAP 제24호 부록4 일부 수정

K-IFRS가 도입되는 경우 현재의 세법해석에 따르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용역수수료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장

기의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무조정의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K-IFRS에서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른 개설수수료도 이연처리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세법해석은 대출상품에 국한하고 있어 금융부채의 개설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대출용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선수이자의 성격이고,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기간 손익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며, 금융업종의 업무특성 및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법인세법에서 K-IFRS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수익 : 연체미수이자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에서 이자수익 인식조건은 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 수입금액의 측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⁸⁴⁹⁾. 이와 관련하여 은행업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⁸⁵⁰⁾.

이에 반해 K-IFRS에서는 이자수익 인식의 첫 번째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K-GAAP의 “매우 높음”에서 단순히 “높음”으로 완화하였다⁸⁵¹⁾. 또한 이미 수익을 인식한 경우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⁵²⁾. 이

849) K-GAAP 제4호 문단28.

850) 은행업회계처리기준 제19-1조.

851) K-IFRS 제1018호 문단29.

852) K-IFRS 제1018호 문단34.

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완화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K-IFRS의 도입으로 연체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장부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 이자수익의 인식조건에 대한 K-GAAP과 K-IFRS의 규정을 비교하면 <표 II-100>과 같다.

<표 II-100> 은행의 이자수익 인식조건

K-GAAP의 이자수익	K-IFRS의 이자수익
- 인식조건 : 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수입금액 측정에 신뢰성 존재	- 인식조건 : 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② 수입금액 측정에 신뢰성 존재
회수가능성에 따른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달리 인식함	별도 규정 없음
-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는 채권의 범위¹⁾ (가) 결산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가 있는 대출금(내국수입유선스 포함), 지급보증대 지급금, 부도통지를 받은 매입외환 및 연체 중인 신용카드계정 여신 등에 대한 미수 수익 (나) 결산일 전영업일 현재 어음·수표부도거래처(어음교환소 규약에서 정하는 거래 중지처분대상을 말한다), 이자감면·유예거래처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 규약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모든 채권의 미수 수익 (다) 전 (가) 또는 (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	연체채권이 손상채권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주: 1)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 회계처리 기준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세법에서 금융업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현금주의(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수익은 제외)로 인식하되, 결산상 기간 경과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하고 있다⁸⁵³⁾. 이와 같은 경우 K-IFRS에 따라 장부에 인식된 미수이자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권리의 확정에 대해 판례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 없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⁸⁵⁴⁾ 하면서 소득의 익금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의 성숙·확정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⁸⁵⁵⁾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판례에 의하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에 따라 사업연도 결산서에 미수이자(수입)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자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은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⁸⁵⁶⁾.

법인세법 규정과 판례의 내용을 보면 K-GAAP과 은행업회계처리기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식하지 않던 불량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이 K-IFRS의 도입으로 장부에 계상되면 법인세법상 전액 과세되어 금융

85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854) 대법원 79누296, 80.4.22.

855) 대법원 79누441, 81.2.10.

856) 대법원 2002두11479, 2004.02.13.

기관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납세자별로 인식하는 이자수익이 달라, 과세형평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납세자 스스로가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의 성숙·확정 정도를 연체 건별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연체 건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에 K-IFRS의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은행사업자가 보유한 불량채권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다면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규정의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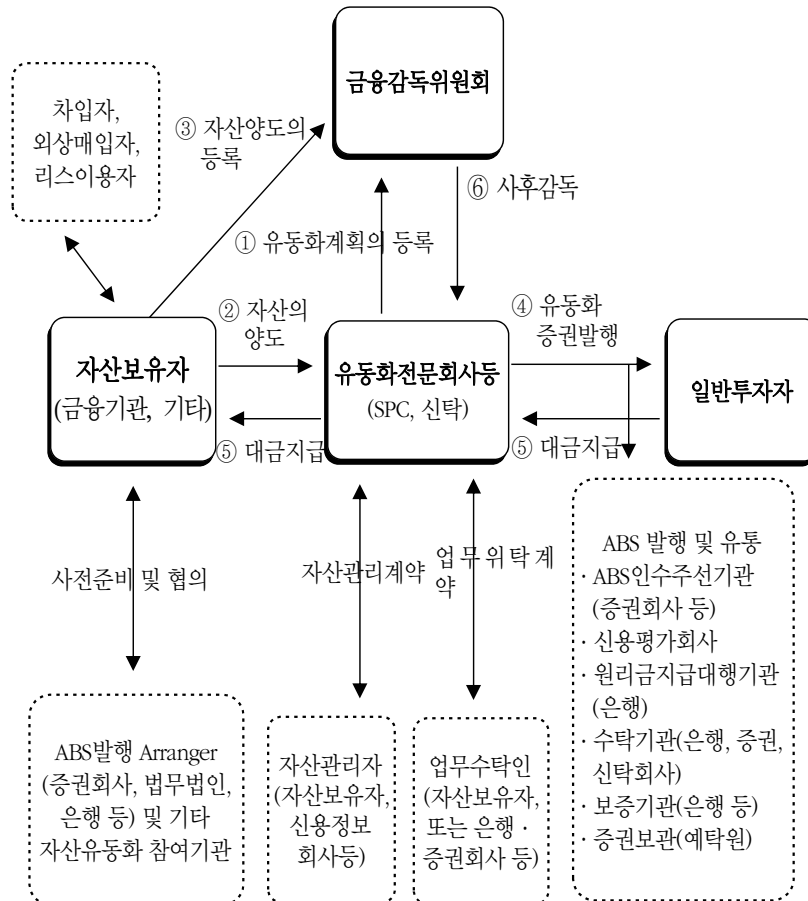
4) 자산유동화⁸⁵⁷⁾

가) K-GAAP과 K-IFRS 비교

기본적인 자산유동화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 Ⅱ-5]와 같다.

857) 이 부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 부분의 “금융자산: 금융자산제거”와 내용이 동일하나, 이 부분에서는 은행업으로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였음.

[그림 II-5] 자산유동화의 발행 개요



자료: 금융감독원(200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 p. 49.

K-GAAP과 K-IFRS에서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하여 제거조건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K-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시점, 제거조건, 그 적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K-GAAP에 비해 이해 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⁸⁵⁸⁾.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보유자⁸⁵⁹⁾에 은행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동화거래에 대한 K-GAAP과 K-IFRS의 입장 차이는 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앞부분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K-GAAP에 의하면 자산유동화법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로 의제하고 있지만⁸⁶⁰⁾, K-IFRS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소멸 여부, 위험과 보상접근법, 통제접근법, 지속적 관여접근법의 순차적 적용을 통해 매각거래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다.

858) 한국회계기준원(2008a) p. 221

859)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 제2조(자산보유자의 정의)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삭제 <2007.8.3>
- 자. 삭제 <2007.8.3>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860)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2-14).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현행 법인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⁸⁶¹⁾에 따른 채권 이전거래는 양도거래로 보고 있다⁸⁶²⁾. 즉 세법과 K-GAAP은 자산유동화법을 수용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의 입법취지가 자산유동화의 활성화 도모를 통한 금융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금융업법인)의 파산위험을 단절하기 위해서 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⁸⁶³⁾.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K-GAAP과 세법에서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금전 대차에 따른 담보목적의 양도(secured finance)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true sale)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이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자산유동화한 거래를 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채권의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채권거래를 양도거래로 본다”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내용을 법인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61)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2) 서이 46012-10743, 2001.12.14.

863) 이상섭 외(1999), p.141~142.

5) 대손충당금 :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에 따르면 금융업의 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의 채권으로 정의하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⁶⁴⁾. 또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은행계정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해당자산에 대해서 각각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⁸⁶⁵⁾. 이 경우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⁸⁶⁶⁾.

- 업무보고서 은행계정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해당 자산
 - :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콜론,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외화),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사모사채, 팩토링채권, 출자전환채권

K-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4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상품으로 정의하였다⁸⁶⁷⁾.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은행의 경우 손상차손(대손충당금)을 인식할 수 있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도 포함된다.

864) K-GAAP 제24호 문단13, A27~A37.

865)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7조 및 제28조.

866)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11조.

867) K-IFRS 제1039호 문단9.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473

첫째, 금융상품 지정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금융상품의 재분류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은행이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 정기에금을 예치하고 단기간에 매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 예치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다⁸⁶⁸⁾.

셋째, 은행이 비파생지분상품(가령 상환우선주)을 취득하였는데, 발행자가 비파생지분상품을 부채로 기록하고 당해 지분상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 비파생지분상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⁸⁶⁹⁾.

넷째, K-IFRS의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 중 종전의 K-GAAP과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채권의 매각거래 인식 여부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K-IFRS와 K-GAAP의 규정은 <표 Ⅱ-10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868) K-IFRS 제1039호 실무적용지침 B23.

869) K-IFRS 제1039호 실무적용지침 B22.

〈표 II-101〉 금융상품의 분류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K-IFRS	K-GAAP	법인세법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상품	대출채권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재분류에 의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N/A	유가증권
	단기 매매목적이 아닌 은행의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지급금액이 확정 또는 결정 가능하며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는 비파생지분상품(단 발행자의 부채로 계상)	만기보유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차입거래로 인식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이전된 채권	N/A	N/A
당기손익 인식금융 자산	당기 매매항목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
	당기지정(대여금 및 수취채권)	N/A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당기지정(만기보유금융자산)	N/A	유가증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매도지정(대여금 및 수취채권)	N/A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매도지정(만기보유금융자산)	N/A	유가증권
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

앞의 표에서 보듯이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위가 K-GAAP에 비하여 넓어지게 된다.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를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⁸⁷⁰⁾.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채권은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⁸⁷¹⁾.

법인세법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준용한다면,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는 금융상품의 지정 또는 재분류에 의한 선택적 회계처리, 금융상품에 대한 경영자의 보유목적,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따라 법인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보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870)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871) 법인세법 제19조의 2.

6) 대손충당금 : 손상차손의 인식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인정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는 현재가치평가방식(DCF), 시가평가 등 공정가액 평가방식, 손해율 또는 연체율 전이분석을 이용한 경험손실률 평가방식(migration 또는 roll-rate), 예상손실 산출모델 평가방식 등이 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FLC)에 따라 정상(normal), 요주의(special mention),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그리고 추정손실(estimated loss)의 5가지로 구분한 후(〈표 II-102〉 참조), 그 결과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⁸⁷²⁾. 결국 은행은 감독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K-GAAP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산한 대손충당금 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⁸⁷³⁾.

872)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와 제29조.

873) 금융감독원,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2,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http://www.fss.or.kr/kr/law/case/lawcase_v.jsp?seqno=108&menu=law050000

〈표 II-102〉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구분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설정률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	-	• 대출채권 등: 0.85% 이상 • 가계자금대출: 1% 이상 • 신용카드채권: 1.5% 이상
요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 대출채권 등: 7% 이상 • 가계자금대출: 10% 이상 • 신용카드채권: 15% 이상
고정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 절차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대출채권 등: 20% 이상 • 가계자금대출: 20% 이상 • 신용카드채권: 20% 이상
회수 의문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 대출채권 등: 50% 이상 • 가계자금대출: 55% 이상 • 신용카드채권: 60% 이상
추정 손실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 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대출채권 등: 100% • 가계자금대출: 100% • 신용카드채권: 100%

자료: 금융감독원(200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 〈표 3〉 및 은행업감독규정

K-IFRS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⁸⁷⁴⁾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 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이에 따라 K-IFRS에서는 손상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손상차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K-GAAP에서는 해당 채권에 손상사건의 발생이 없어도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법인세법에서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 채권 잔액에 일정비율(2%와 대손실적률⁸⁷⁵⁾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되,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금융기관⁸⁷⁶⁾

874) K-IFRS 제1039호 문단59. 손상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사건의 예시.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5)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6)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 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가)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나)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 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875)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

876)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

은 금융감독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제도에 따라 설정한 금액과 앞서 언급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다⁸⁷⁷⁾.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에 대한 각 규정의 내용은 <표 II-103>과 같다.

<표 II-103>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손상차손)

구분	K-GAAP		K-IFRS	세법	
산 정 방 법	- 모든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 MAX(㉠, ㉡)		- 모든 은행, 상장된 상호저축은행 - 장부가액 -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최초 유효이자율법 적용)	MAX(㉠, ㉡) 단 일반금융기관은 ㉠만 적용	
	㉠ 합리적·객관적인 기준	- 현재가치방법 - 공정가액평가방법 - 경험손실률평가방법 - 예산손실산출모델 평가방법		㉠ 법정비율기준	Max(2%, 대손실적률)
	㉡감독규정에 의한 기준	대손충당금최소적립제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감독규정에 의한 기준	대손충당금최소적립제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인식	손상사건의 발생이 없어도 충당금 인식가능		손상사건이 발생하여야만 인식가능	결산상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비처리 가능	

그리고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기업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K-IFRS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독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보다 작은 경우,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K-IFRS 회계처리에 따라 K-IFRS

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신탁업자·자금중개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지주회사

877) 법인세법 제42조, 동법령 제61조.

도입 초기에 적지 않은 세부담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⁸⁷⁸⁾.

K-IFRS의 도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감독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사실상 장부에 계상하기 어렵게 되어 감독목적의 대손충당금과 재무회계 목적의 대손충당금을 이원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⁸⁷⁹⁾. 즉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은 K-IFRS의 재무제표와 별도로 감독목적에 부합한 재무제표의 제출을 은행 등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⁸⁸⁰⁾. 또한 K-IFRS를 적용받는 은행과 K-GAAP을 적용받는 비상장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농·수협 등)은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K-IFRS를 적용해도 종전과 동일하게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세법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결산조정 항목인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K-IFRS가 도입되어도 은행 등은 대손충당금 또는 손상차손에 대해서 재무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와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대손충당금이 신고조정으로 전환된다면,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세무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감독목적의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법인

878) K-IFRS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인식은 선택적 면제항목(Optional exemptions) 또는 의무적 면제항목(Mandatory exemption)에 해당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 시 소급하여 인식하여야 함.

879) 한국회계기준원(2008a), pp. 228~229

880)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제3~4항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 은행 등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세법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결산조정에 준하는 근거자료가 별도로 구비된다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현행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 중립성 및 형평성을 구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파생상품 : 파생상품 평가손익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과 K-IFRS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은 파생상품의 정의 요건 중 결제조건의 차이가 있을 뿐 평가손익의 인식방법도 동일하다. 즉 K-GAAP에서 파생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차액결제의 기능을 전제로 하지만, K-IFRS에서는 미래결제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은행이 거래하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회피회계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법인세법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직접 과세규정은 없고, 유권해석만이 있다⁸⁸¹⁾. 즉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권리

88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에서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였지만 2008년 7월 25일에 삭제되었음.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않아 K-IFRS의 도입으로 인한 세무회계처리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파생상품의 거래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⁸⁸²⁾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있다⁸⁸³⁾. 이는 2007년 세법개정에서는 K-GAAP에 따른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 통화선도, 통화스왑, 통화옵션, 통화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인정해 주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평가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의 변화는 <표 II-104>와 같다.

88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7호에 열거된 금융기관을 의미.

883)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표 II-104〉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의 평가 변천

개정일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 적용 대상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거래 목적 : 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 - 파생상품 종류 : 통화스왑계약	- 적용 대상 : 일반법인 - 거래 목적 : 좌동 - 파생상품 종류 : 좌동	- 적용 대상 : 비금융기관 - 거래 목적 : 좌동 - 파생상품 종류 : 통화관련파생상품	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통화스왑의 정의 ▷환율변동 또는 이자율변동 위험회피 목적 ▷계약시점 : 약정 환율로 이종통화에 대한 원금교환 ▷계약기간 : 이종통화로 이자교환 ▷계약만기 : 이종통화로 원금교환	좌동	- 통화관련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先物)·스왑 및 옵션	-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이종통화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 약정환율로 인수도하는 거래 - 통화스왑 : 약정시기와 약정환율에 따라 이종표시 통화 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비고		자산유동화법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	적용대상을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이원화	비금융기관은 제외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목적은 환회피에서 확대	좌동
			파생상품 범위 확대	파생상품의 종류를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으로 축소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에 해당하여 파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세법에서 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위험에 대한 파생상품의 평가감을 인정해 주게 된 계기는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의

형평성의 조화를 정책적으로 통화스왑에 제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자산인 현물시장에 대한 환손익을 세법상 인정하고 있으므로 파생시장에 대한 환손익도 세법상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과세원칙도 없이 여러 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만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파생상품의 운용주체가 대부분 금융기관인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범위를 보다 확대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에 대한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업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시 K-IFRS의 규정을 적극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파생상품이 현물상품에서 파생된 것을 고려해 볼 때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때 은행업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K-IFRS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8) 파생상품 : 내재파생상품의 식별

가) K-GAAP과 K-IFRS 비교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이란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에 포함되어 복합상품(주계약+내재파생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파생상품을 의미하는데 K-GAAP과 K-IFRS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①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②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③ 복합상품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된다.

내재파생상품의 예로는 주식연계채권, 이자율연계채권, 신용연계채권, 통화연계채권 등 협의의 구조설계채권(structured note)을 들 수 있다⁸⁸⁴⁾. 주식연계채권(equity-linked note, ELN)은 일반채권의 가치에 관련 법인의 주식가치 또는 경영성적에 연계되어 있는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및 이익청구권 등의 가치가 내재된 채권을 의미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이익참가부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이자율연계채권은 표시이자율이 대표수익률 등 시장이자율에 연계되어 있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을 들 수 있다.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 CLN)은 신용등급 등 발행기업의 신용을 나타내는 지표의 변동에 연계하여 이자지불액이나 상환액이 변동하는 채권으로 확정이자부 채권과 신용디폴트 채권이 그 예이다. K-IFRS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며,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지분전환옵션으로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분리되어 회계처리된다⁸⁸⁵⁾.

또한 K-GAAP에서는 규정이 없었으나, K-IFRS에 신설된 내용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이 일정요건⁸⁸⁶⁾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합성된 합성금융상품(Synthetic instrument)은 각각 금융상품의 고유한 조건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양도되

884) 오윤(2002), p. 751.

885) K-IFRS 제1039호 실무적용지침 C3.

886) K-IFRS 제1039호 문단11A.

1.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음
2.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

거나 결제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취급한다⁸⁸⁷⁾. 이러한 혼합거래(hybrid transaction)는 4가지의 기본적인 파생상품인 선도·선물·옵션 및 스왑을 서로 조합하거나, 현물상품과 조합하여 매매되는 상품으로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⁸⁸⁸⁾.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주계약 또는 복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의 인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⁸⁸⁹⁾. 즉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발행시점에 전환권 등 및 상환할증금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전환권 등을 행사한 때 또는 만기시점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복합계약 또는 복합상품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개별 또는 복합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독립적인 개별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논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혼합거래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은행이 판매한 엔화스왑예금의 일부인 엔화선도 계약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익을 복합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파생상품거래익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재무부(재경부 소득 114, 2005.5.30)와 조세심판원(조심2008서 3607, 2008. 12. 1)의 입장은 엔화스왑파생상품은 복합거래로 본다는 것이

887) K-IFRS 제1039호 실무적용지침 C6.

888) 오윤(2002), p. 747

889)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었으나, 2009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엔화스왑예금에 포함된 엔화선도 계약은 엔화예금계약과 개별적인 거래로 보아 파생상품거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관청 및 판례 해석은 <표 II-105>와 같다.

<표 II-105>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관청 및 판례 해석

구분	내 용	해석
합성사채 (synthetic bond)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련의 거래를 동시에 수행 • 내국법인의 자기주식을 2회에 걸쳐 매입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입	개별거래 (서이46012-10 258, 2003.2.5)
환매조건부 (put option) 주식양도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 1. 배당금이 보장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부여	개별거래 (서면2팀2336, 2004.11.15)
엔화 스왑 예금	• 국내은행은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을 개발 판매 1. 고객은 엔화정기예금에 가입(엔화 매입) 2. 고객은 만기시점에 엔화를 은행에 매각하는 선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엔화선도계약) 3. 고객은 만기에 엔화예금을 상환받고 동시에 선도 계약을 이행	개별거래 (서울행정법 원2008구합12 542, 2009.06.18)

K-IFRS에 신설된 내용에 따라 1개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이 개별거래로 회계처리되지 않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현재의 판례 내용에 따라 개별거래로 인식해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금융공학의 발전과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권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계약 또는 복합상품 등은 개발단계부터 분리될 수 없도록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판례 또는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개별거래로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많은 납세협력비용(회계 또는 법률전문가의 세무자문비용, 과세관청 등과의 소송비용, 고객과의 신뢰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세법에서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K-IFRS가 개별 또는 복합 거래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⁸⁹⁰⁾에서 단계거래의 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⁸⁹¹⁾을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에서의 내재파생상품의 복합거래 또는 개별거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인세법이 K-IFRS의 규정을 적극 준용하여 이를 세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890)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891) 오윤(2005)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은 단계거래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계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단계별 거래에 대해 각각의 조세효과를 부여하는 대신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9) 환율변동효과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가) K-GAAP과 K-IFRS 비교

K-GAAP과 K-IFRS에서 규정하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업종별, 평가 대상의 범위, 환산방법 등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업에 대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에서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은행업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과 다른 방법으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은행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은행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K-GAAP에 따라 모든 외화자산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⁸⁹²⁾. 결국 비화폐성 외화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K-GAAP과 K-IFRS는 달리 규정하는 셈이다.

셋째, K-GAAP에서는 은행이 인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모두 당기손익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화폐성 외화항목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 비화폐성 외화항목의 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그에 대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⁸⁹³⁾.

넷째, K-GAAP에서는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K-IFRS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892) K-IFRS 제1021호 문단23~25.

893) K-IFRS 제1021호 문단28~31.

다섯째, 금융기관이 휴무하여 외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K-GAAP에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고시환율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최초로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⁸⁹⁴⁾. 그러나 K-IFRS에서는 다음회계연도의 최초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⁹⁵⁾.

나)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⁸⁹⁶⁾. 다만 외화파생상품의 경우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으로 제한하고, 외화파생상품의 환율적용 방법⁸⁹⁷⁾을 선택 신고하고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세법규정은 은행업에 대하여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하는 은행회계처리준칙의 외화자산부채 평가규정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K-IFRS가 도입되는 경우 적지 않은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K-IFRS에 의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에 이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업의 외화환산에 대한 K-IFRS 규정을

89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3-2]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경우의 결산환율 적용.

895) K-IFRS 제1021호 문단26.

896)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897)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2008.2.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 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세법에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을 구분하여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K-IFRS 규정을 세법에서 준용하는 것이다. 세법과 K-IFRS의 규정 차이가 비화폐성 항목에 기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의 자산부채 항목의 대부분이 화폐성이고 비화폐성 항목의 비중이 크지 않기에 평가대상의 구분에 대한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의 환율적용은 K-IFRS와 세법⁸⁹⁸⁾ 및 K-GAAP이 상충되어, 환율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은행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고 최장 3일(12월 31일부터 1월 2일) 이내의 환율변동이 미미한 경우를 예상한다면 K-IFRS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0) 기타

본절에서는 K-IFRS의 도입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앞에 언급한 사항 이외의 K-IFRS의 다른 항목도 은행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항목의 경우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기에 본 절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의 지급보증충당금과 같은 충당부채에 대하여 K-GAAP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높은 경우”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해외지점 재무제표의 환산, 고객충성제도, 상환우선주 등의 처리에 대한 K-IFRS의 규정도 은행

898)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앞 절의 내용이나 관련 연구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⁸⁹⁹⁾.

다. K-IFRS 도입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K-IFRS 도입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은 <표 II-10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99) 이영한·최원석(2008)은 K-IFRS의 도입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임.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493

〈표 II-106〉 K-IFRS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에 미치는 내용 분석 요약

구분		K-GAAP 은행감독규정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향
영업수익 표시 방법		규정에 명시	없음	기업회계기준 준용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 차이 발생	-기업간 통일된 기준 필요 -표시방법에 대한 세법상 별도 규정 신설
수익	금융용역수수료	진행기준	좌동	현금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	장기적으로 K-IFRS 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연체미수이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	현금주의(결산 반영 시 인정)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 차이 발생	세법 규정의 보완
금융상품의 제거		양도거래	차입거래	양도거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세 부담 차이 발생	세법 규정의 보완
대손충당금 (손상차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변동성 없음	변동성 확대	기업회계기준 준용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 차이 발생	세법 규정의 보완
	대손충당금의 인식	- 예상손실율 - 감독규정	손실발생액 기준으로 인식	- 채권잔액의 일 정률 - 결산조정	- 손상차손의 과 소인식으로 세 부담 증가 - K-GAAP 적용 기업과 K-IFRS 적용기업 간 세 부담 차이 존재	결산조정을 신고 조정으로 전환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평가인식	위험회피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당기손익 등 규정이 있음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음(통화선도, 통화스왑은 인정)	- 세법상 평가대상 차이 - 일관성 있는 과세원칙 부재	K-IFRS 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내재파생상품의 인식	당기손익인식으로 보는 복합계약 신설		규정은 없으나, 개별거래로 보아 과세판단	명문규정이 없이, 개별거래로 보아 과세판단	K-IFRS 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화폐성·비화폐성 구분 없음	화폐성·비화폐성 구분	구분없음	환산대상의 차이 존재	K-IFRS 준용

7. K-IFRS의 최초 채택

우리나라 기업이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K-IFRS 제1101호는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들이 전환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최초 IFRS 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기준서이다⁹⁰⁰⁾. 이에 K-IFRS에 대응하는 K-GAAP의 규정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K-IFRS 제1101호의 내용을 파악한 후, 현행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K-IFRS 제1101호의 주요 내용

1) K-IFRS 최초 적용기업의 공시일정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기업은 도입 연도에 적어도 ① 3개의 재무상태표, ② 2개의 포괄손익계산서, ③ 2개의 현금흐름표 그리고 ④ 2개의 자본변동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K-IFRS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여야 한다⁹⁰¹⁾.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 2011년 1월 1일에 최초로 K-IFRS를 채택하는 경우(채택일), 첫해인 2011년 12월 31일(보고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를 보고하여야 한다⁹⁰²⁾.

① 3개의 재무상태표 : 2010년 1월 1일(전환일), 2010년 12월 31일(채택일), 2011년 12월 31일(보고일). 이 경우 K-IFRS에 따른 개시재무상태

900) 금융감독원(2008) p. 64.

901) K-IFRS 제1101호 문단21.

902) 이하의 설명은 금융감독원(2008)의 pp.61~64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표는 2010년 1월 1일자로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이다.

- ② 2개의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이 경우 실제 K-IFRS를 채택하지 않은 2010년에 대한 재무제표도 비교용으로 K-IFRS에 맞게 전환하여야 한다.

2) 개시 K-IFRS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기업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말 현재 시행 중인 K-IFRS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그 출발점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⁹⁰³⁾.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③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분류한다.
- ④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무상태표를 K-IFRS에 맞게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K-IFRS 제1101호에는 최초 K-IFRS 적용 시 소급적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03) K-IFRS 제1101호 문단2.

3) 개시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처리를 K-IFRS에 맞게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 K-IFRS의 소급적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최초 K-IFRS 적용 시 선택적 면제조항 및 의무적 예외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선택적 면제조항 및 의무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K-IFRS 보고기간 말에 시행 중인 모든 K-IFRS를 소급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모든 자산·부채의 인식, 측정 및 재분류는 K-IFRS에 의하고, 개시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 회계정책 간 차이로 인한 조정금액은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⁹⁰⁴⁾.

K-IFRS 제1101호에 의한 선택적 면제조항과 의무적 예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택적 면제조항

K-IFRS를 최초로 채택하여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다음의 14가지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⁹⁰⁵⁾.

- ① 사업결합 :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

904) K-IFRS 제1101호 문단10 및 문단11.

905) K-IFRS 제1101호 문단18에 의거 동 기준서 부록 C-E의 내용을 금융감독원(2008) pp. 62~63에 정리한 것임.

음. 이 규정은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음

- ③ 종업원급여 : 전환 후 범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전환일까지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인식할 수 있음
- ④ 누적환산차이 :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고, 이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환산차이만 포함할 수 있음
- ⑤ 복합금융상품 :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없는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음
- ⑥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 (종속기업 등이 지배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하는 경우) 종속기업 등의 전환일의 재무제표에 (a) 지배기업의 전환일에 기초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 또는 (b) 종속기업 등의 전환일에 관련 기준서에 따른 금액으로 측정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등보다 늦게 IFRS를 채택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연결조정 등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 IFRS 전환일의 별도재무제표에 계상할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원가법 적용 시)을 간주원가(전환일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공정가치 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로 측정 가능
- ⑦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 전환일 전에 인식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환일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기준충족 시)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 ⑧ 주식기준보상거래 : (a) 2002.11.7.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과 (b) 2002.11.7. 이후 부여되었고 전환일과 2005.1.1. 중 늦은 날에 가득된 경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할 필요 없음
- ⑨ 보험계약 : 2005.1.1. 이전에 IFRS로 전환하는 보험사는 IFRS 4 “보험계약”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됨(우리나라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⑩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부채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측정함
- ⑪ 리스 :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약정에 대하여 전환일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리스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⑫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 K-IFRS 제1039호 AG76의 마지막 문장과 AG76A를 2002.10.25.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또는 2004.1.1.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용이 가능함
- ⑬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 :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초에 관련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종전 장부가액을 인정하되 손상검사는 수행
- ⑭ 차입원가 : 2009.1.1과 전환일 중 늦은 날 이전에 자본화가 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화할 이자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음

나) 의무적 예외사항

개시 재무상태표를 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K-IFRS 최초 채택연도에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⁹⁰⁶⁾.

-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 K-IFRS 제1039호의 제거규정은 2004.1.1. 이후 거래부터 전진적용하며, 2004년 이전에 제거한 비파생금융자산·부채는 새로이 인식할 수 없음
- ② 위험회피회계 : 전환일에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로 보고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906) K-IFRS 제1101호 문단14부터 17 그리고 부록 B의 내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2008)의 p. 63에 정리된 내용임.

이연손익을 제거함

- ③ 추정치 : 전환일 현재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회계기준에서 동일한 시점에 했던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함
-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중단영업 : 2005년 이후에 분류기준에 충족하는 자산과 영업에 전진적용

K-IFRS 제1101호는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들이 전환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최초 IFRS 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기준서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동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선택적 면제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IFRS에 의한 개시 재무상태표는 변동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선택적 면제조항의 선택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⁹⁰⁷⁾.

907)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ICAEW)의 조사(ICAEW, 2007, pp. 88-95)에 의하면 IFRS 1에서 규정한 선택적 면제조항을 실제 적용한 유럽 기업은 총 151개 조사대상기업 중

- ① 149개 기업이 IFRS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포함
- ② 91개 기업은 IAS 32호에 따라 재작성, 84개 기업은 IAS 39호에 따라 재작성
- ③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기업은 IFRS 3(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 적용
- ④ 31개 기업이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등에 공정가치 적용
- ⑤ 무형자산의 간주원가로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사용한 기업은 없었음
- ⑥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기업이 사업결합, 누적환산차이, 복합금융상품, 주식기준 보상에 대한 면제조항을 사용(금융감독원, 2008, p.64에서 재인용).

다) K-IFRS에서 별도로 인식하였어야 할 자산·부채를 과거 회계
기준에서 인식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앞에 언급하였듯이 K-IFRS에서는 이를 최초로 채택한 경우 기업들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여러 면제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소급적용 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부채 식별과 관련된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당 기간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K-IFRS에서 별도로 인식하였어야 할 자산과 부채를 과거 회계기준에서 인식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 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부채가 K-IFRS에 따라 인식되었어야 할 자산·부채라면, 이는 해당 K-IFRS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⁹⁰⁸⁾. 예를 들어⁹⁰⁹⁾, K-IFRS 채택 전에 사업결합을 한 기업에서 사업결합 당시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와 외부로부터 취득한 상표등록을 영업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가창출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종전의 회계처리 규정은 K-IFRS 제1101호에 따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르면 자가창출 브랜드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가창출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종전의 회계처리는 K-IFRS하에서도 정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외부로부터 구입하였던 상표등록은 K-IFRS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기

908) K-IFRS 제1101호 BC37, BC38 및 BC70의 내용을 참조. 구체적인 사례는 동 기준서의 실무적용지침 IG44에 규정되어 있음.

909) 이하의 예는 박상은(2008) p. 51~53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한 것임.

에 피취득자 자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어야 할 무형자산이므로, 상기 K-IFRS 제1101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K-IFRS 제1101호에 의한 소급적용 면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K-IFRS에 따른 측정이 요구되며, 과거에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부채가 있을 경우, 별도로 인식하여 개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즉 K-IFRS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더라도 과거의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금액을 K-IFRS의 최초 도입 시에 무조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전환일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1호에 의한 면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대표적인 전환항목의 예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에서 행하여야 할 대표적인 항목의 예는 K-IFRS 제1101호의 실무적용지침에 예시되어 있다. 동 지침에 예시된 항목 중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이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이나 상각률이 K-IFRS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추정 내용연수의 변경이나 감가상각형태의 변경은 K-IFRS에 의하여 추정의 변경이 있는 때부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이나 상각률이 K-IFRS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세금목적만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K-IFRS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시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⁹¹⁰⁾.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하여도 앞의

910) K-IFRS 제1101호 실무지침서 IG7.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⁹¹¹⁾.

이외에 K-IFRS와 K-GAAP의 규정에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소급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계약 중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에 대한 인식방법, 후입선출법 적용 등 재고자산과 관련된 규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개시 재무상태표에 소급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K-IFRS와 K-GAAP 간의 항목분류에 따른 차이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환우선주는 상황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며,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은 추가로 설정하지 못하며 부채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K-IFRS 제1101호에서는 K-IFRS의 최초 채택으로 인한 조정사항은 전환일 현재 개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조정사항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K-IFRS의 최초 채택으로 인하여 장부상 자산·부채가액과 세무상 자산·부채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잉여금 조정은 기타로, 관련 자산, 부채는 유보로 처분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⁹¹²⁾.

그러나 K-IFRS의 최초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11) K-IFRS 제1101호 실무지침서 IG 사례 2의 (4).

912) 정창모 외(2008) p.34.

1) 면제규정 선택기업과 미선택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 최초 채택 시 면제규정은 해당 기업의 선택 사항이다. 이에 따라 면제규정을 선택한 기업과 선택하지 않은 기업 간에 법인세법상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대부분의 면제규정이 기업의 손익과 관련된 사항보다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며, 이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인정하기가 어렵기에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손익과 관련이 있는 사항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K-IFRS 최초 채택에 대한 면제규정은 기업의 자산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IFRS 최초 도입에 따라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금액과 각종 손익의 금액이 변할 가능성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강성민 외(2005)는 2005년에 IFRS를 도입한 영국기업과 호주기업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IFRS 최초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기업회계기준과 새로이 채택된 IFRS에 의한 재무제표 모두를 이용 가능한 2004년도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여,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IFRS 도입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이익수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며, 특히 변동한 정도를 보면 기업들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⁹¹³⁾.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중 기업회계상 자산규모 등을 준용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K-IFRS 면제조항을 선택한 기업과 선택하지 않은 기업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9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선민·한봉희·황인태(2009)의 내용을 참조.

2) 면제규정을 선택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전환에 따른 작성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K-IFRS 제1101호에는 각종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규정 중 K-IFRS의 최초 적용 시에는 면제하여 주는 항목도 있으나, 이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면제규정 중 대표적인 것은 “유형자산·투자부동산·무형자산에 대한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규정이다. 즉 “K-IFRS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⁹¹⁴⁾. 이에 따라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⁹¹⁵⁾.

이러한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것은 앞부분의 여러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K-IFRS의 최초 채택의 경우 면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세무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⁹¹⁶⁾.

3) 소급적용의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관리 문제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이를 소급수정하는 경우라도 이익잉여

914) K-IFRS 제1101호 부록 D 문단D5, D7을 참조.

915) K-IFRS 제1101호 부록 D 문단D6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도 사용 가능함.

916) 실무적으로 이러한 세무조정은 K-IFRS가 최초 적용되는 기준일자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부터 K-IFRS를 채택하기로 한 기업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의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앞에 언급한 유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2010년에 대한 세무조정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기에, 2010년에 대한 새로운 세무조정을 2011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추가하여야 할 것임.

금에 반영하므로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의 경우는 소급수정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K-IFRS상 비상위험준비금을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는 보험업의 경우이다. 즉 기왕에 적립되어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여 이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 등으로 수정하며, 법인세법상 이에 대한 과세 여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⁹¹⁷⁾. 또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후입선출법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K-IFRS의 최초 채택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상 소급적용한 각종 수정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에, 이로 인하여 K-IFRS의 최초 도입 시 세무조정사항은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며, 유보로 처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애로가 있음에도 K-IFRS 최초 채택 시 소급수정 사항 중 공정가치의 평가 등 법인세법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항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17) 한국경제신문(인터넷). 2009. 7. 26. “세금·적립금 폭탄 온다. 보험사, 국제회계기준 비상”.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외국의 사례

본 장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른 주요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IFRS가 법인세법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적합한 규정인지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한 유럽연합(EU) 각국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주요 외국의 IFRS 도입에 따른 세법대응방안도 간단히 정리한다⁹¹⁸⁾.

1. IFRS 규정의 법인세법 규정으로의 적합성 여부

기업회계규정과 세법규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최근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IFRS를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IFRS의 기본 개념이 세법의 취지와 맞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과세규정에 대한 제정권한에 대한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⁹¹⁹⁾.

가. IFRS의 기본개념과 세법

IFRS를 세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IFRS의 기본개념이 세

918) 이 부분의 내용은 Newton(2006),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대한상공회의소(2008), 한국공인회계사회(2008)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919) 이하의 내용은 Newton(2006)의 pp.3~9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법상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FRS의 기본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IFRS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⁹²⁰⁾.

“to develop ... a single set of high-quality, understandable and enforceable global accounting standards that require high quality, transparent and comparable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financial reporting to help participants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other users to make economic decisions”

위의 문단에서 보듯이 IFRS의 기본목적은 주식시장 참여자, 즉 주식투자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업 및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정보의 마련이 IFRS의 주목적이다. 이에 따라 IFRS의 주요 이용자는 주식투자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IFRS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다. 각 개념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개념이 세무목적의 관점에서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무상태표 중심

IFRS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중심이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다. 이에 비하여 과거의 성과를 집계하는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부산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세무당국에서는 과거의 성과에 근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920) Paragraph 6 of Preface to IFRS.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무상태표에 초점을 두는 IFRS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회계상 중요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세무상 중요한 금액도 재무상태표 중심의 IFRS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세무상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제공을 IFRS에서는 간과할 수 있다.

2) 공정가치의 사용

세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IFRS가 도입되면서 공정가치를 사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일 수 있다.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IFRS에서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평가는 세무상 관점에서는 미실현손익이기에, 당장 기업의 현금 흐름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IFRS의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평가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이에 따라 IFRS의 기본개념인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평가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경제적 실질의 강조

IFRS는 다른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 이에 비하여 세법은 법의 테두리에 있기에 거래의 법적인 형식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법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세법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는 IFRS를 세법의 기본개념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이다. 즉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증권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나, 세법은 법적인 형식을 중

요시하여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로 보아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IFRS와 법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세법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IFRS의 기본개념과 세법의 원칙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IFRS는 투자자 중심으로 “해당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세법은 기업이 달성한 과거의 실제 성과에 근거하여 “해당기업의 실제 세금납부 능력”을 알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로 IFRS의 기본개념과 그 개념에서 제공되는 여러 정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 과세규정 제정권한

IFRS를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과세관청은 자국의 과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여야 한다. 현재 IFRS를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기업회계기준(이하 local GAAP이라함)을 IFRS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증가한다면 local GAAP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국가에서는 IFRS의 규정을 세무상 목적으로 점차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과세규정 제정권한이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이러한 과세규정 제정권한의 축소는 세무당국에서 IFRS를 세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FRS의 기본개념이 세법상의 기본원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과 IFRS를 세무상 규정으로 도입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과세규

정 제정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IFRS를 세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최근 세계 각국에 도입되는 IFRS 규정을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최근 많은 국가들이 IFRS를 채택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반영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나라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IFRS 도입에 대응하고 있다. 즉 IFRS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 세무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대표적으로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도 있고, 과세소득 계산상 IFRS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도 있다. 이와 같이 IFRS 채택에 따라 국가마다 세무상 대응방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나라마다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기업회계의 규정(특히, IFRS)을 세법에서 반영하는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접근방법을 먼저 소개한 후, 다음 절에서 실제 IFRS를 도입한 EU의 각국에서는 어떠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방법

기업회계기준이 변화할 경우, 세법이 반드시 변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 IFRS의 도입은 기업회계기준의 근본적인 변화이기에, IFRS의 도입에 따라 세법에서도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IFRS의 도입에 따라 세무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⁹²¹⁾.

921) 이 부분의 내용은 Newton(2006)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 독립적 접근방법 (Independent approach)

이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인 IFRS 규정과 관계없이, 오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회계기준과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IFRS 채택과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세무상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파악된 자국의 회계기준인 local GAAP에 따라 세무상 장부를 유지할 수도 있다. 즉 이 방법에서 각 기업은 세법규정에 의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의존적 접근방법(Dependent approach)

이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에 의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하여도 IFRS를 적용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IFRS의 규정을 회계목적과 세무목적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3) 중도적 접근방법(Qusi-dependent approach)

이 방법은 IFRS에 근거하여 계산된 기업회계상의 장부를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IFRS에 의하여 계산된 순이익을 과세소득의 근거로 하되, 세법상의 규정과 IFRS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나. 각 대응방법의 장·단점

앞에 언급한 세 가지 대응방법의 장·단점은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⁹²²⁾.

<표 Ⅲ-1> IFRS 도입에 대한 대응방법의 장·단점

방법	주요 장·단점	
독립적 접근 방법	장점	- 과세규정 제정 권한을 해당 국가 계속 유지 - 현행 세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적음 - IFRS 규정과 세법 기본원칙 간에 충돌문제가 없으며, 손익변동성 문제도 없음
	단점	- 세무상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는 데 따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커짐 - 기업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계산이 복잡해짐
의존적 접근 방법	장점	- 세무상 별도의 장부가 필요없음 - IFRS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복잡한 세법개정이 필요없음 -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계산이 간단함
	단점	- 세법상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IFRS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손익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액의 변동성이 커짐 - 과세규정 제정권한의 포기
중도적 접근 방법	장점	- 세무상 별도의 장부가 필요없음 - IFRS와 세법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다 분명히 파악가능함 - 과세규정 제정권한을 계속 유지함
	단점	- 세법이 복잡하여지며, IFRS 규정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필요함 - 세법과 IFRS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위의 방법 중에서 개념적으로는 중도적 접근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⁹²³⁾. 이 방법은 기업회계와 세법 간 규정의 불일치와 미실현손익과

922) 이 표는 Newton(2006)의 pp.10~13의 내용과 이영한·최원석(2008) p.11의 <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923) Newton (2006)도 중도적 접근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추천하였음.

세 문제 등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당국도 세법제정권한을 계속 보유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local GAAP이 IFRS에 맞게 계속 수정·변경되어 가는 상황에서, 세법과 IFRS 간의 차이를 계속 조정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IFRS를 도입한 유럽국가 중 영국의 경우는 종전의 “독립적 접근방법”에서 “중도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였으나, 이 전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적 접근방법에 따른 비용과 노력의 투입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응방법

IFRS를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EU 각국은 세법 측면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상이한 대응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나라마다 IFRS 도입에 따라 세법 측면에서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세무 측면에서 받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 ① 해당 국가가 앞의 세 접근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하였는가?
- ② 해당 국가가 개별기업의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를 채택하였는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EU 각국의 대응방법을 표시하면 <표 Ⅲ-2>와 같다⁹²⁴⁾.

924) EU 국가의 IFRS 도입의 구체적 형태는 금융감독원(2008) pp.41~42를 참조.

〈표 III-2〉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IFRS 적용과 세법 대응방법

접근방법 IFRS 적용	의존적	중도적	독립적
강제적용	Cyprus, Czech, Greece, Lithuania, Slovenia	Iceland, Malta, Slovakia, Spain, Italy	Estonia
선택적용	Hungary, Luxemburg, Switzerland	Denmark, Finland, Ireland, Portugal*, United Kingdom	Norway, Poland, Netherland
적용안함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Lavita*, Sweden		

주: Newton(2006)의 그림 1과 그림 2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상장법인에 대한 것을 적용한 것이며,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금융감독원 (2008)의 pp. 40~41의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Slovakia, Spain, Slovenia는 적용 안 함(Not permitted)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은행에 대하여만 강제 적용

IFRS의 도입으로 세법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는 “의존적 접근방법” 혹은 “중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국가 중 개별기업에 대하여도 IFRS를 채택한 경우(강제든 선택이든)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IFRS에 맞게 현재 준비중이므로 IFRS 도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국가는 IFRS 도입이 과세소득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IFRS 도입에 대한 세법상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비하여 “독립적 접근방법”을 취하였거나 “의존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국가 중 개별기업에 대하여는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IFRS 도입에 따라 세법측면에서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local GAAP도 IFRS에 맞게 개정이 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국가에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

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IFRS의 적용으로 기업 회계상 이연법인세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영향이 있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IFRS 도입을 전후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접근방법을 변경한 국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종전에는 “독립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으나, IFRS 도입 후 “중도적 접근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법규정을 마련하는 데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하되었다. 이에 비하여 노르웨이는 “의존적 접근방법”에서 “독립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IFRS를 2005년에 도입한 EU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IFRS 도입에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다.

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앞의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는 “중도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세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하여도 IFRS 채택을 강제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마련될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IFRS의 내용을 상당부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커짐에도,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당분간 종전과 같은 “중도적 접근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K-IFRS 도입에 따라 세법상 규정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하여 세법상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IFRS 규정 중 세법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규정을 세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적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기업에서 해야 하는 세무조정항목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K-IFRS 도입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장부와는 별도로 세법규정에 맞는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많은 기업이 현재도 별도의 장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중도적 접근방법”을 당분간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 K-IFRS와 세법상 규정의 차이가 점차 커져 기업의 입장에서 K-IFRS에서 출발하여 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이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현재의 “중도적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독립적 접근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세법규정은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과세소득계산과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세법에서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법상 수입금액부터 과세소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세법의 여러 규정은 삭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법상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K-IFRS를 실제 도입하였을 때 이를 채택한 기업의 실제 자료를 보다 세심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당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⁹²⁵⁾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외국에서 IFRS를 도입할 때 세법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EU 국가 중 영국과 독일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EU 국가 중 호주와 싱가포르에 대하여 기술한 후, 기타 국가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국의 경우⁹²⁶⁾

1) IFRS 도입과정

영국은 EU의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하였으며, 영국 내 상장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비상장기업은 IFRS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기업은 영국의 local GAAP과 IFRS 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기업 중 어느 한 기업에서 IFRS를 적용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결대상이 되는 다른 모든 기업도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현재의 IT system의 문제)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의 local GAAP과 IFRS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925) 이 부분은 Newton(2006),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대한상공회의소(2008), 한국공인회계사회(2008)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926) IFRS 도입 시 영국 국세청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은 HMRC의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the UK tax implications』, <http://www.hmrc.gov.uk>를 참조.

2) IFRS의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

영국에서는 local GAAP에 의한 재무제표나 IFRS에 의한 재무제표 모두를 세무상 인정한다. 이에 따라 영국의 기업은 세무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장부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회계기준의 선택에 따라 과세소득도 달라질 수가 있다.

영국의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IFRS를 세무목적에서도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법상 많은 개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세법은 IFRS 도입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세무당국의 업무와 납세자의 납세준용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HMRC는 IFRS 도입에 따른 일부 항목에 대한 세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세무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3)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쟁점사항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영국 세무당국에서 고려하였던 주요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²⁷⁾.

가) 수익인식

영국의 local GAAP에는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다가, 2003년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수익인식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는 장기계약, 계약의 병합과 분할, 상환청구권이 있는 판매 등 주요한 다섯 가지 수

927)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HMRC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p. 222~226의 내용을 참조.

익인식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세법은 이러한 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을 세무상 수익인식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수익인식기준이 변화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세무상 조세부담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국세청은 회계규정의 변경으로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세무상 효과를 3년에서 6년에 걸쳐 인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무형자산

영국의 local GAAP에서는 회계상 무형자산을 감모상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IFRS 도입 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감모상각에 대한 세무상 인정문제가 대두하였다. 이에 영국의 국세청은 무형자산의 상각 여부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2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권에 대하여 세무상 손금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종업원급여

영국의 과세당국은 IFRS에 의한 연금가치의 변화 등에 따른 종업원급여 계산방식은 세무상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제 지급액기준으로 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즉 세법에서는 pension simplific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회계상 금액과는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기능통화

영국의 과세관청은 세무신고 시 영국 파운드화가 아닌 다른 외화를 기

능통화로 정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하여 외화 기능통화로 작성된 세무신고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나. 독일의 경우

1) IFRS 도입과정

독일의 상장기업은 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독일상법(Handelsgesetzbuch, HGB)에 의한 local GAAP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독일의 상법(HGB) 규정도 IFRS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IFRS에 의한 재무정보를 공시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독일의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IFRS를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별도재무제표는 local GAAP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독일상법(HGB)에 의한 local GAAP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회계정보의 질적 타당성 및 기업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local GAAP을 IFRS와 완전히 일치시키면서, 보다 간단하고 보다 경제적인 규정으로 만들기 위한 독일상법 개정안(the German Accounting Law Modernization Act (Bilanzrechtsmodernisierungsgesetz-BilMoG))이 2007년 11월부터 연구되어 왔다⁹²⁸⁾. 이러한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어 2009년 12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⁹²⁹⁾.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local GAAP을 IFRS와 일

928) Deloitte(2009).

929) KPMG(2009).

치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

독일의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독일 local GAAP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2004년의 독일상법 개정 시 IFRS를 과세표준 계산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 번째로, IFRS에서는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확대되는바, 이는 미실 현이익의 인식과 이에 대한 과세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IFRS를 채택할 경우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에, 일관성 있고 쉽게 계산될 수 있는 과세소득을 중시하는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IFRS에 의한 손익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로 IFRS의 채택으로 독일 과세당국의 세법제정권한이 약화될 수가 있다. IFRS가 독일법체계 및 독일 정부가 아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 공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을 하기 위한 세무상 목적으로는 IFRS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IFRS와 일치시키기 위한 상법개정안 등 회계상의 노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3)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쟁점사항

IFRS 도입과 관련하여 독일 세무당국에서 고려하였던 주요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자산

개정된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종전에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던 개발비,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 판권, 타이틀 등 내부적으로 창설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세무상으로는 연구비, 개발비 모두 관련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없던 세법과의 차이가 새로 발생하게 되었다⁹³⁰⁾.

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기존의 독일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만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였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그 보유목적에 구분 없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 호주의 경우⁹³¹⁾

1) IFRS 도입과정

호주는 IFRS를 일부 조정하여⁹³²⁾ Australian equivalent to IFRS (A-IFRS)

930) 자세한 내용은 IAM(2009), Delloite(2009)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의 pp.211~212을 참조.

931) 이 부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p.213~217를 주로 참조하였음.

932) 호주 법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부 영어 표현을 바꾸고, IFRS에서 제시하고

를 2004년 7월에 제정하여 자국 기준화 절차를 거쳤으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다⁹³³⁾. A-IFRS는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대상회사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 대상회사인 상장기업, 소규모가 아닌 비상장기업 및 외국계기업의 자회사 모두가 A-IFRS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호주는 A-IFRS를 제정하면서 허용하지 않았던 일부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호주만의 특수한 공시 요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A-IFRS를 IFRS 원문에 보다 근접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⁹³⁴⁾.

2)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⁹³⁵⁾

호주 세법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별개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능이익(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 가능한 손금(allowable deductions)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즉 호주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이 아닌 세법규정에 따라 별도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했기에, A-IFRS의 도입으로 세법규정과 기업회계기준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세법규정이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아니라, 재무비율을 인용하는 경우 과세소득산출 시 적용되는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결정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하여 호주 세무당국에서는 세무상 A-IFRS를 적용한 장부를 이용한 최상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하거나, A-IFRS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세법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있는 선택적인 기준의 일부를 제거하고 공시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933) A-IFRS의 자세한 내용은 Delloitte-Australia(2005)를 참조.

934) 금융감독원(2008) p. 33.

935) 이 내용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의 pp.218~221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3)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쟁점사항

IFRS 도입과 관련하여 호주 세무당국에서 고려하였던 주요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³⁶⁾.

가) 자본·부채의 분류

호주세법에서의 자본·부채의 분류는 IFRS의 분류기준과 다를 수 있기에, 호주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나) 기능통화환산

호주 세무당국에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호주 국세청의 “기능통화에 대한 지침(Foreign exchange (forex) : guide to functional currency rules)”에 의하면⁹³⁷⁾, 호주달러(\$A)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호주달러(\$A)로 다시 환산할 필요가 없다. 즉 기능통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순액으로 계산된 과세소득이나 결손금만을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기능통화로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기능통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능통화에 의한 세액계산은 본사가 호주인 기업과 호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적용대상이다.

936) A-IFRS와 호주세법의 주요 차이는 ATO(2006a)을 참조.

937) 자세한 내용은 ATO(2006b)를 참조.

라. 싱가포르의 경우⁹³⁸⁾

1) IFRS 도입과정

싱가포르는 2002년 관련 상법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기업이 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IFRS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내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SFRS를 따라 연결·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

싱가포르의 경우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세법상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로 인하여 싱가포르의 세법은 IFRS의 규정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SFRS39도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세법도 일부 예외사항과 도입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3)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쟁점사항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세무당국에서 고려하였던 주요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38) 이 부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p.213~217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가) 기능통화

SFRS에 따라 싱가포르달러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공시 목적으로 외화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2004년에 최초로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분부터 다양한 기능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였다⁹³⁹⁾. 이 규정에 의하면 싱가포르 달러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한 기업의 경우, 과세소득의 산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액은 싱가포르 국세청이 공시하는 평균환율로 환산한 싱가포르달러로 표시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금융상품의 분류

SFRS에 의하여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세법은 법적인 형식을 중시하여 세무상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으로 분류된 상환우선주 등과 관련된 배당지급액이 회계상 이자로 계상되더라도 이를 이자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싱가포르 국세청의 경우 2005년에 IFRS39를 도입하면서 회계상 수익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하고, 수익계정으로 계상된 기초자산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손익도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매도가 능증권으로 세무상 자본계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

939)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IRAS(2004)를 참조.

상 손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⁹⁴⁰⁾.

라) 감가상각비

기업이 회계상 계상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충당금(capital allowance)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한다⁹⁴¹⁾.

마) 종업원급여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Central Provision Fund(CFC)로 하여 연방연금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당기비용으로 계상되며, CFC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마. 기타 외국의 경우⁹⁴²⁾

1) 이탈리아의 경우

가) IFRS 도입과정

이탈리아도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상장법인, 은행·

940)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IRAS(2005)를 참조.

941) 자본충당금(capital allowance)이란 회계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나 감모상각비를 세무상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공제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임. 싱가포르의 구체적인 규정은 IRAS(2009)를 참조.

942) 이 부분은 Newton(2006) pp. 20~34와 한국공인회계사회(2008) pp. 107~117을 참조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보험 등 금융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하여도 IFRS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IFR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IFRS 도입에 따른 과세관청의 입장

이탈리아에서는 local GAAP이나 IFRS에 의하여 계산된 순이익을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에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기업이 채택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다.

첫 번째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원칙(derivation principle)이다. 기업의 과세소득은 IFRS에 따라 계산된 회계상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IFRS의 적용으로 자본에 직접 계상된 항목을 가감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수정된 이익에 대해 세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세무조정사항을 적용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로 중립성 원칙(principle of neutrality)으로 IFRS를 도입한 기업과 local GAAP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기업 간에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원칙이다.

IFRS의 도입으로 세법상 일부항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리스거래, 외화통화거래, 자본화비용, 파생상품 등) 법인세법 전반에 걸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IFRS 도입에 따른 세법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앞으로 보다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2) 그리스의 경우

가) IFRS 도입과정

2005년부터 그리스는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기업도 IFRS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IFRS 도입에 따른 과세관청의 입장

그리스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local GAAP에 의하여 계산된 순이익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IFRS와 local GAAP의 차이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IFRS에 의한 손익을 세법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세법규정이 개정되었다. 특히 IFRS에 의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나 손상처리에 대하여 자산의 처분이나 폐기 등으로 관련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세무상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IFRS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리스의 세무당국은 세법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 아일랜드의 경우

가) IFRS 도입과정

아일랜드에서는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는 IFRS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와 별도재무제표는 local GAAP이나 IFRS 중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미 채택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도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local GAAP과 IFRS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IFRS 도입에 따른 과세관청의 입장

아일랜드의 세무당국은 IFRS 도입 초기인 2005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IFRS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IFRS에 의한 회계장부도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에 의한 세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로 IFRS

에 의한 장부에 반영된 손익은 그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손채권을 포함하여 IFRS로의 전환과정이 세무상 어떻게 취급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였다. 또한 네 번째로 IFRS하에서 자본화를 요구한 이자비용과 R&D비용에 대한 세무상 혜택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 이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자산유동화회사들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마련하였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 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였다.

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규정 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문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고 납세자에 대한 안내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앞의 제Ⅱ장에서 항목별로 K-IFRS 도입 시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미 제시하였다.

이에 본 제Ⅳ장에서는 우선, 앞으로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사항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항목별로 제시된 제Ⅱ장의 내용 중에서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K-IFRS 규정과 관련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이어 향후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할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사항

앞으로 세무당국에서 K-IFRS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법인세법의 원칙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세법의 개정방안이 다른 세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세법상 지켜져야 할 여러 원칙 중에 K-IFRS 도입에 따라 세법개정 시 고려할 원칙은 다음

과 같다.

1) 조세평등주의

우선 조세평등주의를 들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K-IFRS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K-IFRS를 도입한 기업 간의 과세형평문제가 있다. K-IFRS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즉 각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하기에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회계상 인식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기준도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높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업에 맡겨져 있어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업 간에 인식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K-IFRS를 도입한 기업 간에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로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 방향으로 향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간의 조세형평문제도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서 고려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조기도입한 기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 간의 조세형평문제도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의 조세형평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11년 이후에 상장기업은 K-IFRS를 적용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그 내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바⁹⁴³⁾, 이 경우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형

94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09년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IASB에서 제정

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의 문제가 없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고,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⁹⁴⁴⁾. 이에 따라서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⁹⁴⁵⁾.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IFRS의 도입 후에도 계속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IFRS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개정 시에도 계속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FRS 규정에 의한 경우 공정가치평가가 여러 계정과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실현손익이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세법상의 인식기준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경우에는 IFRS에 의한 미실현손익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IFRS에 의한 공정가치평가는 세법상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법인세법을 포함한 세법을 집행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비상장기업을 위한 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FRS for SMEs)과 정합시킬 예정이다. 일반 IFRS와 IFRS for SMEs와의 차이에 대한 비교는 금융감독원(2009.7.12)이나 공인회계사(2009년 8월 호, p. 17)를 참조.

944)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945) 이철재(2009) p. 373.

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다⁹⁴⁶⁾.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⁴⁷⁾.

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존중은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법 개정 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IFRS는 종전 규칙중심의 회계기준과 달리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기에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도 다양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IFRS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입장에서 여전히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할지는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납세자에 대한 고려

K-IFRS도입에 따라 향후 법인세법을 개정할 경우 실제 K-IFRS를 적용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K-IFRS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에 대한 고려와 K-IFRS의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946) 국세기본법 제20조.

947) 법인세법 제43조.

1) K-IFRS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노력과 비용의 고려

K-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할 경우, IFRS를 실제 도입하는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자본시장의 자유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단일 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이며, 기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에, 향후 법인세법 개정 시에 실제 IFRS를 도입한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IFRS의 도입을 위한 비용과 준비기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IFRS 의무적용기업 1,906사(2008년 10월 말 기준 일반 상장기업 1,672사 및 금융회사 234사(비상장 172사 포함))를 대상으로 IFRS 도입영향, 준비실태 및 애로점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⁹⁴⁸⁾. 총응답기업 1,114개사(응답률 58.4%) 중 26.5%가 IFRS 도입에 착수하였고, 미착수기업의 72.0%가 2009년 중 착수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45.7%, 자산 5,000억원 이상 일반기업의 64.5%가 도입에 착수한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11.1%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회사와 규모가 큰 회사가 IFRS 도입준비가 빠른 것을 나타낸다. IFRS 평균 도입추정비용은 기업특성 및 용역범위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기업 5.7억원과 금융회사 34.3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상장기업은 평균 11.1억원, 코스닥등록법인은 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규모별로는 500억원 미만 기업은 1.2억원, 500억~1,000억원 기업은 2.6억원, 2조원 이상 기업은 39.1억원 등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179.7억원, 증권·선물 9.8억원, 보험 26.3억원, 중소서민금융기관은 15.9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회사가 다른 업종의 회사보다

948) 금융감독원(2009.4.3.)의 설문조사 결과 참조.

IFRS 도입비용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에 IFRS 도입용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9개 회계법인(대형(Big4) 4개 법인, 중형(금감원 품질관리감리대상) 18개 법인, 소형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IFRS 도입영향, 준비실태 및 애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97개 법인(응답률 89.0%)의 설문결과 IFRS 도입 평균소요 시간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일반회사는 4.2~12.7개월, 금융회사는 6.9~17.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기업의 경우 일반회사는 2.8~8.5개월, 금융회사는 6.0~15.0개월로 연결작성기업보다 0.9~4.2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FRS 도입 소요 시간은 금융회사가 일반회사보다 길었으며, 연결작성법인이 이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보다 IFRS 도입기간이 길었다. 앞에 언급한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2009년 1월)에서는 도입 평균소요시간은 연결작성 일반 10.9개월, 금융 18.6개월, 연결미작성 일반 9.2개월, 금융 11.8개월로 파악이 되었던바, 회계법인이 IFRS 도입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⁹⁴⁹⁾. 이와 같이 IFRS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거나 앞으로 하여야 할 입장이다. IFRS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세제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IFRS의 도입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법을 개정할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기업의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사항 중 세법상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IFRS에서는 손상차손을

949) 금융감독원(2009.8.5.)의 설문조사 결과 참조.

통하여 자산의 가치하락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상차손 측정의 객관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IFRS체제에서는 기존의 일정한 상각기간에 걸친 감가상각 대신 손상차손에 의한 가치하락의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비용을 고려하여 세법이 손상차손을 인정하는 범위를 현재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세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K-IFRS 도입 이후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지속하기 위한 관점에서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항이 결산조정사항이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IFRS하에서 이러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에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IFRS도입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K-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고려

비록 K-IFRS가 2011년도부터 정식 도입되지만, 일부 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에 도입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K-IFRS를 조기에 도입할 예정이다⁹⁵⁰⁾. 이러한 조기도입 기업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하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에, 향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K-IFRS의 조기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기도입 기업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 간의 과세형평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향후 법인세법 개정 시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였는

95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일보(2009.9.17.) “삼성전자·LG전자 등 27개사 IFRS 내년 조기도입”을 참조.

데 조기도입 기업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이러한 불이익은 최소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이번 절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제Ⅱ장에서 항목별로 K-IFRS 도입 시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K-IFRS의 규정 중 재무제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앞의 제Ⅱ장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사항을 추후 법인세법 개정 시 고려할 중요한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우선 K-IFRS의 채택으로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이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공정시가의 평가,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기능통화의 도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법인세법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가치평가⁹⁵¹⁾

전통적인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역사적 원가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더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K-IFRS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공정가치평가를 향후 법인세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K-IFRS, K-GAAP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K-IFRS, K-GAAP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① K-IFRS에서의 공정가치평가

K-IFRS에서는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우선, K-IFRS에서는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내용은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⁹⁵²⁾.

- (1) 유형자산 :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다. 재평가모형이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951)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이 “손상차손”이나, 이 부분은 재무제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정리되어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함.

952) 이 부분에서는 항목별 개요만을 살펴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 있음.

- (2) 무형자산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투자부동산 : 기업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도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4) 확정급여제도하에서의 사외적립자산 :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를 현재가치로 인식하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 (5) 기타 : 이 외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생물자원과 수확물 평가에도 공정가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② K-GAAP의 자산·부채 평가기준

현행 K-GAAP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말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K-GAAP이 개정되었다. 즉 유형자산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유형자산 분류별로 재평가하며, 공정가액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의 경우는 3~5년 주기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였지만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여전히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③ 법인세법의 자산·부채 평가기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의 변화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

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⁹⁵³⁾.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손익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 ①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 ②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③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⑤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⑥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 ⑦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손익을 세법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미실현손익으로서 법인세법상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미 IFRS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⁹⁵⁴⁾. 이러한 문제

953)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954) 싱가포르, 스페인, 이탈리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손익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이외에 미실현손익의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는 점, 공정가치평가액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⁹⁵⁵⁾, 기업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 조정 가능성, 그리고 공정가치평가를 선택한 기업과 선택하지 않은 기업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⁹⁵⁶⁾, 공정가치평가를 세법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도 공정가치평가와 이로 인한 평가손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기에, K-IFRS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K-IFRS를 채택하여 공정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자산관리장부와 세법상 자산관리장부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K-IFRS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문제, 이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의 허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이 더욱 복잡해지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와 관련된 자산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에 법인세법을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⁹⁵⁷⁾.

2)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이란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절차를 말한다⁹⁵⁸⁾.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955) 공정가치의 구체적인 측정에 대한 문제점은 임승연 외(2008)에 정리되어 있음.

956) 오윤택(2009)의 pp. 152~153.

957) 오윤택(2009) p. 84에서도 이와 유사한 권고를 함.

958) 한국공인회계사회(2008)의 p. 114. 결산조정을 기업의 결산에 의하여 손금인정이 확정된다는 의미로 '결산확정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결산조정'으로 표현함.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 를 손금으로 계상한 때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⁹⁵⁹⁾.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으로 감가상각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각종 충당금의 계상액,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IFRS가 도입될 경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우선 K-IFRS에서 회계처리가 될 수 없는 결산조정항목의 예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K-IFRS에서 회계처리할 수 없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의 예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K-IFRS에서 인정하지 않은 회계처리방법인 경우, 해당 항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⁹⁶⁰⁾.

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

법인세법에서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K-IFRS의 공정가치 평가모형에 의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하거나 해당 자산의 손상 발생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 인식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시에 해당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게 된다. 동 유보금액은 추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한도미달액의 손금추인과정에서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동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에 대응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업의 결산에 반영될 수 없게 된다.

959) 김문철·이준규(2008).

960) 김문철·이준규(2008)와 오현택(2008) p. 154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② 영업권상각

K-IFRS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허용하지 않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권상각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조정사항이기에 이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K-IFRS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③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K-IFRS에서는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결산조정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전입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이는 K-IFRS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문제점

결산조정제도는 법인세법상의 손금범위액이 회계기준에 의한 비용보다 큰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과 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재무제표의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조건으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회계처리가 왜곡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양자 모두 타당성이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가 서로 대체적인 것이 아니며 기업으로 하여금 양자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⁹⁶¹⁾.

회계기준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마련되었을 때는 이러한 결산조정사

항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지가 줄어들어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현재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할 조건과 내용에서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비한정 내용연수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 전입액 포함),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⁶²⁾.

다) 개선방안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IFRS 도입 이전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IFRS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시기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① 결산조정사항을 임의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

우선 모든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결산조정사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는 세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법은 각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결산조정사항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행 단일 장부에 의한 유도법의 구조를 유지하므로 현행법의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961) 김문철·이준규(2008)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962) 오윤택(2009) p. 155를 수정한 것임.

실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⁹⁶³⁾. 그러나 이 방법은 신고조정사항이 너무 많아 조정사항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작할 소지가 있다⁹⁶⁴⁾. 또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인 결산능력이 부족하여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다⁹⁶⁵⁾.

② 결산조정사항을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 방법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손금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 모든 신고조정을 강제로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제신고조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자의 결산과는 무관하게 세법에서 정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세무조정의 과정을 단순화하고 이로 인하여 경영자가 임의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⁹⁶⁶⁾. 그러나 이 방법도 강제신고조정사항이 많아 조정사항이 복잡하고, 이에 따라 결산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강제조정이더라도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③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여러 측면에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일본·독일 등과는 달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각각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산구조의 이원화는 세무조정에 의한

963) 박정우·정래용(2005).

964) 이를 막기 위하여 신고조정된 내용을 재신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965) 최기호 외(2006) p. 17.

966) 최기호 외(2006) p. 22.

조정에서 조정대상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 조정사항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막을 수 있다⁹⁶⁷⁾.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를 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이기에 납세자인 기업과 행정당국에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⁹⁶⁸⁾.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업회계규정의 준용 여부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고 있다⁹⁶⁹⁾.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여러 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등 관련 계정금액을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규정에 의하면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는 K-IFRS에 따라 작성하거나 계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K-IFRS는 기존의 K-GAAP과 달리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동일한 거래에도 기업 간에 회계처리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의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967) 이만우(1998).

968) 최기호 외(2006) p. 16.

969) 법인세법 제43조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가)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한 현행 세법의 규정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기업회계기준이 언급된 세법의 관련 규정

관련 법		관련조항
법인세법	법	제42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20조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의 4 【파생상품】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기본통칙	4-0…3 【비용배분 원칙】 14-0…2 【기간손익계산 원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19-19…44 【받을여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 19-19…46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수도 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 549

〈표 IV-1〉의 계속

관련 법		관련조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34-62...8 【채권조정 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34-62...9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액의 처리】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40-68...3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42-74...6 【작업설비 등의 평가】 60-0...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00조의 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72-0...2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주: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p. 231~23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한 것임. 그리고 음영으로 표시된 규정은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련된 것임.

이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자산, 부채, 자본 혹은 손익금액을 준용한 경우가 많다.

나) K-IFRS의 도입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K-GAAP의 경우에는 규칙 중심의 기준체계(Rule-based Standards)이기에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간에 동일한 회계처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새로 도입되는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이기에 모든 기업 활동에 대하여 세부

적인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⁹⁷⁰⁾. 이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IFRS의 도입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 간의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현재의 관련 세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계산의 경우이다.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상 인식되는 매출액이 기업마다 다르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접대비한도액이 달라져 결국에는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회계상의 금액을 이용하여 세법상 한도액을 계산하는 다른 과목에도 공히 적용된다. 따라서 K-IFRS가 도입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관련 세법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를 도입한 경우 기업 간 서로 다른 회계처리와 이로 인한 과세형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세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나 손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 후에 기업 간의 과세형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970) 금융감독원(2008) p. 14의 문구 수정.

4) 기능통화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원화 이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본자유화, 글로벌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 원화 이외의 통화를 주요 영업활동의 통화로 사용할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인세법에서도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나 싱가포르 등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세법상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IFRS를 도입할 예정인 미국에서도 기능통화개념을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도 법인세법상 기능통화개념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와는 무역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무역거래가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중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K-IFRS에서 규정한 기능통화의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법인세법에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기능통화의 적용범위다. 즉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능통화 사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제이기에, 기능통화의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적

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기능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인세법상 기능통화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법인세법상 불확정개념⁹⁷¹⁾은 줄어들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회계상으로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기업회계상 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장부를 기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능통화의 개념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에 대한 방법이다. 법인세법에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이 가능하다. 우선 첫째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능통화로 표시된 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을 원화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이미 기능통화개념을 사용하는 싱가포르, 호주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한 기업의 경우, 과세소득의 산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액은 평균 환율 혹은 기말환율로 환산하여 해당 국가의 표시통화로 표시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가장 낮은 장점이 있다⁹⁷²⁾. 그러나 세법상 한도계산이 필요한 금액의 경우, 표시통화에 의하여 규정된 세법규정을 기능통화에 의한 한도액으로 환산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⁹⁷³⁾.

두 번째 방법으로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행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기능

971) 불확정개념에 대하여는 아래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와 불확정개념의 해석”의 내용을 참조.

972) 오윤택(2009) p. 76.

973) 이에 대한 예는 한국조세연구원(2009)의 p. 66의 예를 참조.

통화를 도입하더라도,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⁹⁷⁴⁾. 이에 K-IFRS하에서도 표시통화에 의한 과세소득의 산출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현재 원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세무조정방법과 유사하므로 실무상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법상 각종 한도를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표시통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관련 법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동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상 재무제표로 인정받는 것에는 실무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법상 재무제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이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기업의 장부 및 세부부속명세서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둘의 금액을 서로 조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⁹⁷⁵⁾ 어려움이 예상된다.

5)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와 불확정개념의 해석⁹⁷⁶⁾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이다. 이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974) K-IFRS 제1021호 문단38.

975) 오윤택(2009) p. 77.

976) 이 부분의 내용은 이상신(2008)의 내용을 주로 참조함.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 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FRS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⁹⁷⁷⁾.

그러나 IFRS는 원칙중심으로 복잡한 회계현상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입장에서 보면 IFRS 도입 이후 법률상 불확정개념⁹⁷⁸⁾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물론 불확정개념을 원칙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이지만⁹⁷⁹⁾,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많은 불확정개념이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원칙중심인 IFRS의 도입으로 법률상 불확정개념이 증가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 간의 회계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져 기업 간의 과세형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세무조정 시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원칙중심의 IFRS 성격상 법률상 불확정개념의 증가는 피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더욱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IFRS의 입장은 회계기준의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며,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IFRS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질의회신제도도 IFRS의 불확정개념을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질의회신제도를 운용하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의 주요 국가의 경우 질의자에게 개별적으로 회신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하되, 주요한 내용은 유럽증권감독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운

977) 금융감독원(2008) p.14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함.

978) 불확정개념이란 세법의 규정이 “정당한 사유”, “필요가 인정되는 때”, “현저한 손실” 등과 같이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말함.

979) 이창희(2008) p. 101.

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⁹⁸⁰⁾ 법인세법의 관점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세법상 불확정개념이 더욱 증가하여 이에 따른 기업 간 과세형평 훼손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시행 중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불확실성, 상충되는 해석들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식 관련 평가, 퇴직연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연결범위 등에 대하여 회계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⁹⁸¹⁾. 이 이외에 세법의 입장에서 IFRS의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은 “공정가치”라는 표현이다⁹⁸²⁾. 공정가치의 산정을 어떻게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업마다 서로 다른 금액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외에 기능통화의 도입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라고 정의하고 있는데⁹⁸³⁾, 이러한 정의는 법인세법상 관점에서는 불확정개념이기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더욱 더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법상의 관점에서 많은 불확정개념을 포함하는 IFRS가 도입되면, 세법상 불확정개념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된다.

불확정개념은 성문의 규정을 만드는 한 불가결한 것이어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⁹⁸⁴⁾. 그러나 원칙중심으로 되어 있어 법률상 불확정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K-IFRS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기업회계상의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보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법인세법 관점에서 K-IFRS에 포함된 많은 불확정개념을 보

980) 조세일보(2009. 8. 21).

981) 파이낸셜 뉴스(2008. 3. 9).

982) 이상신(2008).

983) K-IFRS 제1021호 문단8.

984) 이상신(2008).

다 확정된 개념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향후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별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이 부분에서는 앞의 제Ⅱ장에서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 중 앞으로 법인세법 개정 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향후 법인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재무제표

가) 재무제표 명칭과 종류

법인세법상 재무제표의 명칭을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명칭이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K-IFRS에서 재무제표로 인정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인세법상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이 없거나 세무조정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나) 재무제표 형식

K-IFRS에서는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⁹⁸⁵⁾. 그러나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세법에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준재무제

985) K-IFRS에 의한 최소한의 표시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총18개 항목(K-IFRS 제1001호 문단54), 손익계산서에는 총9개 항목(K-IFRS 제1001호 문단82), 그리고 주석은 총4개 항목(K-IFRS 제1001호 문단114)이 규정되어 있음.

표 양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 중 세무상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이에 첨부되는 부속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동일한 정보가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⁹⁸⁶⁾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⁹⁸⁷⁾.

2)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

K-IFRS에 의하면 기업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므로 K-IFRS하에서 법인세법상 기업의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기본재무제표가 어떠한 재무제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K-IFRS하에서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하거나 관련법규 등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규정할 수 있기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는 K-IFRS하의 별도재무제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⁹⁸⁸⁾. 만일 종속기업이 없는

986) 기업정보의 국제적 통용 및 빠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국제 표준 전산언어임.

987) 2007년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국제 표준 전산언어인 XBRL(확장성 기업 보고언어)이 도입되기로 하고 계속 추진하였으나, 최근 이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988) K-GAAP에서는 개별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K-IFRS에서 별도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사용함. K-IFRS의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고 보다 간단한 방법인 자산손상을 인식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나, K-GAAP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종속회사는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점이 K-IFRS의 별도재무제표와 다른 점임.

이러한 점에서 K-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대신 K-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로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업회계상 지분법 평

회사의 경우에는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⁹⁸⁹⁾.

또한 K-IFRS하에서는 당기순이익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당기순이익만을 구성요소로 포함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기타포괄손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세법상 미실현손익이기에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산출을 위한 출발점으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기본재무제표는 기업별 별도재무제표가 되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이 됨을 법인세법에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경우, 진행기준의 적용방법과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법인세법상 개선이 요구된다.

가) 진행기준의 적용방법

K-IFRS의 도입으로 진행기준의 적용방법과 누적발생원가에 차이가 발생한다.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에는 차이가 없으나, 공사수익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손금)에 차이가 있다. K-IFRS에서는 진행률로 계산한 원가(총 추정원가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를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나, 현행 법인세법과 K-GAAP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즉 실제 발생

가에 따른 손익을 세무조정하여야 함(물론 K-IFRS의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에도 손상차손이나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이 있어야 함).

989) 금융감독원에서는 개별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작성지침을 외감법 등 관련법규에 반영할 예정임(금융감독원, 2009.2.11).

원가를 공사원가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K-IFRS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공사원가가 당기 발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되거나, 추가 손금으로 계상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진행기준으로 인식한다면,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두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행 법인세법을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예약매출) 손익의 귀속시기

K-IFRS 도입으로 아파트 분양판매와 같은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재화의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주거용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수익은 K-IFRS하에서는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매출인식시점이 현재보다 지연된다. 물론 건설사와 분양권자 간의 공사율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기준이 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양권자가 돈을 지급한다면, 분양공사의 수익을 현행처럼 진행률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⁹⁹⁰⁾.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법도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부동산의 판매수익인식방법을 장기적으로는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에 대한 규정 중 K-IFRS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퇴직급여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규정이다. 즉 K-IFRS는 미래에 대한 예측방식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990) 조세일보(2009.6.10).

K-GAAP이나 법인세법의 경우는 청산가치개념에 의하여 일시퇴직을 가정한 퇴직금추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가치에 근거한 K-IFRS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부채를 종업원의 미래 퇴직 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등에 대한 예측과 여러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퇴직급여부채의 계산에 사용된 각종 가정과 그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⁹⁹¹⁾. 이에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규정은 현행 규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외화환산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부채 혹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한 환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⁹⁹²⁾. 우선 기업이 보유한 외화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환산결과 발생한 환산손익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반 업종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K-GAAP과 달리 K-IFRS하에서는 업종에 예외가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는 현행 법인세법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법상 환산손익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은행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미실현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일반기업에 대한 외화환산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인세법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991) 김문철·이준규(2008).

992) 기능통화에 대한 것은 앞부분에 논의하였기에 이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함.

은행업의 경우 현재의 법인세법에서는 은행업무에 속하는 외화의 취급을 과세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기에, K-IFRS가 도입된 이후에 은행업에 대하여도 현행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만일 은행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환산방법은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업에 대하여 화폐성·비화폐성의 구분이 없이 환산하는 법인세법의 규정과 이를 구분하여 환산하는 K-IFRS의 규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환산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해당 기업의 애로가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방법이다. 현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법인세법에서 기능통화개념이 도입된다면,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이에 현행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를 폐지하고,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 재무제표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⁹⁹³⁾.

6) 재고자산

K-IFRS의 도입으로 재고자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입선출법의 적용을 중단한다면 일부 업종의 경우 기업회계상 상당한 금액의 이익이 발생하여 추가

993) 오윤택(2009) pp. 77~78.

로 납부할 세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입선출법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재고자산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법에 비하여 기업의 영업성과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법인세법 역시 향후 후입선출법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왔던 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에 이러한 금액을 일정기간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⁹⁹⁴⁾.

7)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K-IFRS의 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이다. 그러나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그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K-IFRS의 도입으로 하나의 개별자산 내에서도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K-IFRS에서는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전체 개별자산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구성요소별 상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감가상각 단위와 관련하여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특정 구성요소의 취득원가가 중요하므로 K-IFRS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자산과 다른 내용연수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경우⁹⁹⁵⁾, 현행 법인세법하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갖는 구성요소에 대해 별도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994) 영국의 경우 회계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세무상 효과를 3년에서 6년에 걸쳐 인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둔 바 있음(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 225).

995)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 특정 구성요소를 전체 항공기나 선박과는 다른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임.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K-IFRS에 의한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K-IFRS하에서 인식한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K-IFRS에 의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손상차손만큼 적어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손상차손의 금액만큼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 규정이 감가상각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IFRS에 의한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에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하거나, K-IFRS에 의하여 인식한 손상차손 중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인정방식을 신고조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인식이연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크지 않다면,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시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허용금액 전액을 강제신고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⁹⁹⁶⁾.

8) 무형자산

K-IFRS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류가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법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자산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K-IFRS의 규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

996) 오윤택(2009) pp.86~87.

하여야 할 것이다.

K-IFRS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⁹⁹⁷⁾.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영업권인바, 영업권상각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K-IFRS와 현행 법인세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부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K-IFRS에 의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으로 하는 방법으로 향후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제신고조정 제도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자산손상과 손상차손

K-IFRS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매년 감가상각하는 대신,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한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K-IFRS상 손상차손은 추정하여 계산된 것으로 경영자의 재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자의 결정에 따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에, K-IFRS에 의한 손상차손을 세법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K-IFRS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로 인하여 손상차손 혹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은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로 본다면 감가상각 시부인에 포함

997) 무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부분에서 다룬다.

되어 감가상각 관련 유보액의 관리에 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지, 자산에 대한 임의평가감인지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 규정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K-IFRS에 의해 인식된 손상차손 중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산손상이 확정이라는 납세자의 입증에 필요한 것이고, 그 입증절차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감가상각을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하고 K-IFRS에서 인식한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여 주는 방향⁹⁹⁸⁾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0) 금융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K-IFRS 규정으로 법인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상환우선주의 분류, 금융자산의 손상 및 대손 등이다⁹⁹⁹⁾.

가) 금융상품의 분류

우선, 상환우선주는 K-IFRS에 의하면 상환우선주의 발행자가 확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상으로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의 차이는 회사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이자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혹은 배당으로 구분하여야 하

998) 오윤택(2009) pp. 85~86.

999) 금융자산의 시가평가는 앞부분의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와 맥락이 같기에 이 부분에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함.

는지가 달라진다.

물론 세법에서 회계상의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세법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를 개별유형별로 구분함에 있어 개별상품의 정의는 상법 등의 다른 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에, 기업회계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기준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많은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금융상품 분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는 조건부결제요건 등 회계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어 법인세법이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채·자본의 분류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세법의 규정을 고쳐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법인세법이 K-IFRS를 수용하여 금융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법인세법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많은 신종자본증권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세법이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법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K-IFRS에서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과 수취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의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K-GAAP과 법인세법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IFRS에서는 손상사건의 발생이 있어야만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

기 때문에 K-IFRS 도입 이후에는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상액의 감소는 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반 법인에 비해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K-IFRS 도입 이후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최소 적립액 기준이 회계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가 사라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세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1) 보험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하여 매기 계속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를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FRS하에서는 보험부채 관련 충당부채의 인식이 금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금액 및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규정은 보험업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비상위험준비금 등에 대한 규정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결합회계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K-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부의)영업권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법 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방법에서, K-IFRS에서는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지분통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즉,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으로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경우, 특정한 회계처리 방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로부터 승계 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평가한다. 따라서 지분통합법을 인정하지 않는 K-IFRS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K-IFRS의 도입으로 장부가액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K-GAAP을 적용하여 합병하는 기업의 경우 여전히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이 가능하므로,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K-IFRS 도입 기업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K-IFRS 도입 초기의 일시적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K-IFRS와 K-GAAP 도입 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K-IFRS 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¹⁰⁰⁰). 그

러나 사실상 과거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사업결합이 거의 없으므로, 지분통합법의 폐지가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K-IFRS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을 달성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세법도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처리하는 K-IFRS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의)영업권(혹은 합병차익·합병차손)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상법의 규정 등 법적인 규정으로 합병차익 혹은 합병차손을 정의한다. 이에 비하여 K-IFRS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합병차익 혹은 합병차손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K-IFRS와 법인세법의 결함회계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함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기에,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상각에 대하여도 K-IFRS에서는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통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5년에 걸쳐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결산조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앞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도 추가로 고려하여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1000) 오윤택(2009, p. 156)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K-IFRS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하되, 이때 발생하는 세무상 합병평가차익을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안을 제안함.

가) 법인세비용의 구분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기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법인세비용의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중단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이다. 이에 따라 K-IFRS의 도입으로 변경된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의 구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인세비용을 구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과정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과정에서 상계된 법인세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인세비용이 세무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양식을 수정하는 등 세법상 관련 법인세비용의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차입원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도록 강제한 K-IFRS의 규정과 건설자금이자자의 자본화를 강제한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은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자본화대상자산, 자본화대상차입금, 외환차이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K-IFRS와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 정도와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매우 높은 경우(80% 이상 가능성)”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높은 경우(50%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충당부채가 재무제표에 계상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유지되어야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 571

하는 세법의 기본방향으로,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해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을 일치시키는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기타 항목

K-IFRS의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전 과목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의 제Ⅱ장에서 제시한 항목별 법인세법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K-IFRS 도입 이후 법인세법 개정 시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향후 연도별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안

앞에서는 항목별로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IFRS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외부적으로는 세제당국이 법인세법 개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¹⁰⁰¹⁾. 왜냐하면 세제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법인세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규정이 원칙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은 예외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은 2010년에 이루어져 본격적인 시행은 2011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K-IFRS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에 대한 혼란

1001) 세제당국에서는 2009년 초부터 K-IFRS 도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 회계법인 및 학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K-IFRS의 도입에 따른 연도별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지침이나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 2009년 말 혹은 2010년 초 :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발표

2009년도에는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향후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원칙에 대하여는 세제당국에서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향후 법인세법 개정의 일정, 즉 로드맵을 발표하면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불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2010년도 초반 혹은 중반 이전 : 전체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K-IFRS의 규정 중 여러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향후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방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공정가치 평가, 결산조정사항,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 기능통화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2010년도 하반기 이전 : 개별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방안의 제시

이 시점에서는 2011년 K-IFRS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시점이며 K-IFRS

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발표와 법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본 연구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구체적인 항목, 특히 제Ⅳ장에 언급된 주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법의 수용·개정 혹은 새로운 규정의 제정 여부에 대한 방침과 아울러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정양식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양식을 확정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납세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2011년 이후

이 시점 이후에는 우선, 개정된 법인세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개정·제정된 규정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간의 규정일치에 따른 협상에 따라 IFRS의 계속적인 개정·제정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출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지, 혹은 이 두 규정을 이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FRS의 기준별로 현행 K-GAAP, 앞으로 도입될 K-IFRS,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점, 공정가치평가의 확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 및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별도(개별)재무제표가 과세소득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무확정주의에 의한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법인세법 입장에서 공정가치평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은 경제적 실질 이외에 법적인 형식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기에 K-IFRS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가 용인되는 원칙중심의 K-IFRS 규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기업 간의 과세의 공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모든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하여, 손금을 인정받을 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K-IFRS 규정 중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능통화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이외에 구체적인 적용방식에서 K-IFRS와 차이가 있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과세소득에 큰 영향이 없다면 K-IFRS의 규정을 적극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두 규정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록 K-IFRS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이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K-IFRS의 규정으로 공정가치평가가 부분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K-IFRS의 도입에 앞서 기준서별로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 중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규정이 우선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은 예외규정이어야 한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구체적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이후인 2010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간 이전에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생각이 된다.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K-IFRS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수 이외에 현재 IFRS의 제정기관인 IASB와 미국회계기준 제정기관인 FASB 간의 규정일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IFRS의 내용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수도 현재의 법인세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행과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중도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앞으로 IFRS의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정 여부도 매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과 기업회계에서 출발하여 과

세소득을 계산하는 중도적인 접근방법으로의 법인세법을 계속 유지할 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만일 기업회계와의 차이가 계속 커지거나, 기업회계기준이 계속 변동하게 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 접근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민 · 한봉희 · 황인태,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2009, pp. 281~312.
- 권성수 · 김영준, 『최신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영화조세통람, 2008.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8.
- 금융감독원, 「외감법 개정 내용 및 IFRS 관련 주요 현안 해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2.11.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관련 설문결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4.3.
- 금융감독원, 「IASB, IFRS for SMEs 발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7.12.
- 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의 IFRS 도입 준비 관련 설문결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8.5.
- 김문철 · 이준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 pp. 155~185.
- 김선문, 「개정 외감법 · 령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2009년 2월호, 2009, pp. 8~15.
- 김진수,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08.
- 박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사업결합 면제규정의 적용」,

- 『공인회계사』, 2008년 7월호, pp. 51~53.
- 박재환·정도진, 「국제회계기준도입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2008
공동심포지엄, 2008.
- 박정우·손상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결산확
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
권 제1호, 2001, pp. 53~91.
- 박정우·정래용,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영화조세통람, 2005.
- 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 삼일회계법인, 『법인세의 실무』, 2008a.
- 삼일회계법인, 『IFRS 기준서별 해설(Ⅰ)』, 2008b.
- 삼일회계법인, 『IFRS 기준서별 해설(Ⅱ)』, 2009.
- 삼일회계법인, www.samili.com
- 손혁·최성호·박성진, 「국제회계기준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이 세무상 미
치는 효과」,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국회
계학회 2008공동학술심포지엄, 2008.
- 송인만·윤순석·최관, 『K-IFRS 중급재무회계』, 신영사, 2009.
- 송종준, 「회사법상 재무관련제도의 개정논의와 과제」, 『경영법률』 Vol.16
No.2, 2006, pp. 71~92.
- 신찬수, 「우리나라의 그룹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5.
- 신찬수·정창모, 『법인세의 실무』, 삼일인포마인, 2005.
- 신현걸·정재연, 「우리나라의 합병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
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4권, 2005, pp. 105~128.
- 신현걸·정재연,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
국회계학회 2008 공동심포지엄, 2008.

- 신현걸 · 최창규 · 김현식, 『IFRS 중급회계』, 탐진, 2009.
- 오윤,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1집 제2호, 2005, pp. 233~278.
- 오윤, 『금융거래와 조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2.
- 오윤택,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세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9.
- 이만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 방안」, 『공인회계사』 1998년 7월호, 1998, pp. 48~51.
- 이만우 · 신현걸 · 최창규 · 김현식, 『IFRS 고급회계』 탐진, 2009.
- 이상섭 · 김진수 · 한상국,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이상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 적용의 법적 쟁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 pp. 171~193.
- 이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3권 제3호, 2007, pp. 189~228.
- 이영한 · 최원석,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 · 한국회계학회 2008 공동심포지엄, 2008.
- 이장희,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시 이자율 변동이 보험부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2009, pp. 105~122.
- 이정민,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삼일인포마인, 2007.
- 이준규, 『세법개론』, 영화조세통람, 2008.
- 이창희, 『세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8.
- 이철재, 『세법강의』(2009년판), 세경사, 2009.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 임승연 · 최선화 · 송인만 · 고승의 · 이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47호, 2008, pp. 59~85.
- 정창모 · 이동건 · 유제영 · 박종열 · 김경미 · 이태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유의사항 및 세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 조세일보, 「재정부, IFRS 도입 “세법 큰 변화없어” … ‘느긋’」, 2009.5.19.
- 조세일보, 「건설사 수익 ‘넌뛰기’ 불가피」, 2009.6.10.
- 조세일보, 「[인터뷰] 최금환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IFRS 예정대로 추진”, 2009.8.21.
- 조세일보, 2009.9.17. 「삼성전자 · LG전자 등 27개사 IFRS 내년 조기도입」
- 파이낸셜뉴스, 「[회계, 국경이 사라진다] ⑥ 국제기준 조기도입국 영국」, 2009.3.31.
- 최기호 · 문성훈, 「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2007년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 최기호 · 윤상수 · 정규언, 『결산조정항목의 강제신고조정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 한국경제신문(인터넷), 「세금 · 적립금 폭탄 온다’ ..보험사, 국제회계기준 비상」, 2009.7.26.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 세무 용어 총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200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 개선의견』, 200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IFRS 도입에 따른 세제 개선의견』, 2009.
- 한국조세연구원,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2008a.

- 한국회계기준원, 『일본의 IFRS 채택을 위한 최근 진전사항』, 2008.5.7, 2008b.
- 한영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비교해설』, 한영회계법인, 2007.
- 한영회계법인, 『K-IFRS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연구』, 2008.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blueprint for Tax implications*, 2006a,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58517.htm>.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Foreign exchange (forex) : guide to functional currency rule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blueprint for Tax implications*, 2006b, <http://www.ato.gov.au/corporate/>(이하생략)
- Deloitte Australia, *Differences between Australian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IFR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http://www.iasplus.com/au/0509differences.pdf>.
- Deloitte Germany, “Current amendment to accounting legislation The German act on modernisation of accounting regulations,” *Praxis-Forum Alert newsletter*, 2009, <http://www.iasplus.com/europe/0908newslettergermanlaw.pdf>.
- HM Revenue & Customs(HMR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the UK tax implications*, http://www.hmrc.gov.uk/practitioners/int_accounting.htm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Incom Tax Act (chapter 134) Income Tax (Functional Currency) Regulations 2004*, 2004, 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Quick_Links/Tax_Acts/(이하 생략)

- _____, *Income Tax Implication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FRS 39-Financial Instruments : Recognitions & Measurement*, 2005, [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이하생략\)](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이하생략)).
- _____, *Capital allowance*, 2009, http://www.iras.gov.sg/irasHome/page_ektid616.aspx#howdoicalculatecapitalallowance.
-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ICAEW),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ICAEW, 2007
-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IAM). 2009. "Intangible assets and the Accounting Modernisation Act", *International Report*, 21 January 2009.
- KPMG. "German Accounting Law Modernization Act," *German Tax Monthly*, May 2009.
- Newton, David, *IFRS : Tax implications for the EU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are you ready?*, PriceWaterHouseCoopers, 2006.

〈국문요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태섭 외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FRS의 기준서별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및 현행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K-IFRS 도입으로 향후 법인세법을 개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K-IFRS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많은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미실 현손익인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K-IFRS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 결산조정사항이다. K-IFRS의 도입으로 결산조정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금액을 결산 비용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K-IFRS 이후에도 계속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이므로, 기업 간에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는 세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기능통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인세법에서도 K-IFRS에 규정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능통화의 적용범위나 과세소득의 산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재무제표의 형식과 과세소득산출을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다. K-IFRS는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형식이 없으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기업 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을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S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점을 법인세법에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항목별로 K-IFRS 도입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항목에 대하여 추후 법인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A Study on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ae Sup Shim, et al.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make suggestions on reforming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fter reviewing the differences among the K-IFRS(IFRS adopted into Korean corporates in 2011), the curren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K-GAAP), and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tax law, this study analyzes several tax issues and then suggests amendments for those issues.

Some reforms needed after adopting the K-IFRS are as follows;

First, K-IFRS apply the fair value evaluation method when they measure the values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etc. However, the tax law needs not adopt the fair value evaluation, because the profits and losses from changes in fair value are yet not realized and therefore not taxable.

Second, there are several expense items that firms should reflect o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make them tax-deductible. There are differences in recognition criteria of these expense items between the corporate tax law and K-IFR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irms face

tradeoffs between tax savings and potential benefits from not violating K-IFRS. To resolve these such problems, some tax codes are needed to be revised so that the recognition differences can be adjusted through tax reconciliation.

Third, it is reconsidered that the Korean tax law continues to apply the accounting standard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Because IFRS are basically principle-based standards, so the same transactions are not usually recorded in the same way, and this impairs the fairness of tax laws. Therefore, there should be some revisions on the current tax codes that uses the accounting standards.

Fourth, the Korean tax law needs to adopt the functional currencies, since the current K-GAAP and K-IFRS has already done so. Specific provisions need to be enacted as to decide the range of application and methods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ssociated with the functional currencies.

Finally, the format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more clarified in the tax laws, because there are no officialized formats under the K-IFRS. Therefore, the Korean tax law should make standard financial statements for tax reporting purpose. Also, separate financial statement, not consolidate financial statement, should be used as primary statements for calculating taxable income, and the tax law should clearly specify this point.

There are also many tax codes different from K-IFRS that should be reconsidered. If necessary, these items need to be amended soon.

■ 저자 약력

심 태 섭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 공인회계사, 영화회계법인 세화회계법인 근무
- 현,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 현,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 진 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경제학 박사
-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 자 은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 석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기 은 선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김 태 훈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안진회계법인 근무
-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송 은 주

- 세종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상업교육학 석사
- 현,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미국공인회계사)

정 희 선

-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조 진 권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 석사
- 안진회계법인 근무
-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代) FAX: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66-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정가 17,000원